

2019

영주권제도

편 램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영주권 편람은 외교부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된 자료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편람의 내용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정 국가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해당 국가의 관계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

영주권제도

편 램

영주권제도

있는 나라

1. 가나	10	16. 루마니아	79	31. 벨리즈	133
2. 과테말라	15	17. 리투아니아	84	3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35
3. 그레나다	20	18. 말라위	86	33. 볼리비아	140
4. 그리스	22	19. 말레이시아	89	34. 북마케도니아	144
5. 남아프리카공화국	27	20. 멕시코	92	35. 불가리아	148
6. 네덜란드	31	21. 모리셔스	96	36. 브라질	153
7. 노르웨이	36	22. 몬테네그로	101	37. 브루나이	156
8. 뉴질랜드	38	23. 몰도바	105	38. 사모아	160
9. 니카라과	45	24. 미국	107	39. 사이프러스	162
10. 덴마크	50	25. 미얀마	112	40. 세르비아	166
11. 도미니카공화국	55	26. 바베이도스	119	41. 세인트루시아	171
12. 독일	64	27. 방글라데시	121	4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74
13. 동티모르	68	28. 베네수엘라	122	43. 수리남	176
14. 라오스	70	29. 베트남	123	44. 스웨덴	178
15. 러시아	75	30. 벨라루스	128	45. 스위스	181
				46. 스페인	185
				47. 슬로바키아	191
				48. 슬로베니아	197
				49. 싱가포르	202
				50. 아랍에미리트	206



Part

1

51. 아르메니아공화국	211	71. 잠비아	292	86. 트리니다드토바고	357
52. 아르헨티나	212	72. 조지아	295	87. 파나마	359
53. 아이슬란드	217	73. 중국	300	88. 파라과이	365
54. 아일랜드	219	74. 짐바브웨	304	89. 파키스탄	369
55. 아제르바이잔	224	75. 체코	307	90. 파푸아뉴기니	371
56. 알바니아	227	76. 칠레	311	91. 페루	374
57. 앙골라	230	77. 캐나다	315	92. 포르투갈	378
58. 에스토니아	234	78. 케냐	322	93. 폴란드	382
59. 에콰도르	237	79. 코스타리카	326	94. 프랑스	385
60. 엘살바도르	241	80. 콜롬비아	330	95. 핀란드	390
61. 영국	245	81. 콩고민주공화국	333	96. 필리핀	393
62. 오스트리아	251	82. 쿡제도	335	97. 헝가리	398
63. 온두라스	257	83. 크로아티아	338	98. 호주	404
64. 우간다	261	84. 타이완	342	99. 홍콩(2009)	408
65. 우루과이	263	85. 태국	346		
66. 우크라이나	267				
67. 이스라엘	274				
68. 이탈리아(2012)	279				
69. 일본	283				
70. 자메이카	289				

영주권제도

없는

나라

1. 가봉(2012)	414	16. 모로코	454
2. 감비아	418	17. 모리타니아	460
3. 기니	420	18. 모잠비크	461
4. 기니비사우	422	19. 몽골	464
5. 나이지리아	424	20. 바누아투	470
6. 남수단(2012)	427	21. 바레인	472
7. 네팔(2012)	429	22. 벨기에	474
8. 니제르	431	23. 부룬디	479
9. 라이베리아	433	24. 사우디아라비아	481
10. 레바논	436	25. 세네갈	485
11. 룩셈부르크	439	26. 수단	487
12. 르완다	443	27. 스리랑카	491
13. 리비아	445	28. 시에라리온	496
14. 마다가스카르	447	29. 아이티	499
15. 말리	452	30. 아프가니스탄	501



Part

2

31. 알제리	503	46. 카타르	548
32. 에티오피아	507	47. 카보베르데(2012)	551
33. 예멘	509	48. 캄보디아	553
34. 오만	512	49. 코모로	558
35. 요르단	514	50. 코트디부아르(2009)	561
36. 우즈베키스탄	518	51. 콩고공화국	563
37. 이라크	524	52. 쿠웨이트	565
38. 이란	526	53. 키르기스스탄	568
39. 이집트	528	54. 타지키스탄	572
40. 인도	533	55. 탄자니아	575
41. 인도네시아(2009)	536	56. 터키(2009)	579
4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38	57. 통가	581
43. 차드	540	58. 투르크메니스탄	583
44. 카메룬	542	59. 튀니지	585
45. 카자흐스탄	545	60. 피지	588



영주권제도 편람

영주권제도 있는 나라

1

Part

가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미국
미얀마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공화국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2012)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짐바브웨
체코

칠레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제도
크로아티아
타이완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2009)

가 나

Ghana

I. 영주권

1. 명칭 : Indefinite Residence Permit

2. 형태 : 여권부착용 비자 스티커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청일 기준 12개월 연속 가나에 거주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두루 갖춘 자
 - 8년 동안 통산 6년 이상을 거주한 자
 - 공증인, 변호사, 내무장관이 승인한 관료들 중 2명의 서면 보증을 받은 자
 - 12개월 이상 수감된 사실이 없는 자
 - 가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내무장관이 인정한 자
 - 영주권 취득 후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자
 -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자
 - 단, 이민국장은 특별한 경우에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가나인과 혼인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12개월 연속 가나에 거주하고 다음 요건을 두루 갖춘 자
 - 통산 3년 이상 거주자
 - 12개월 이상 수감된 사실이 없는 자
 - 영주권 취득 후 영구 거주하려는 자
 - 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자

5. **수속절차** : 이민국 요구 서류 작성 제출 후 심사(약 3개월~6개월 소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지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가나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7. **부활제도**
 - 이민국장의 결정에 따라, 회복 신청 또는 신규 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효력상실 사유와 동일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가나 이민국(www.ghanaimmigration.org)
 - 홈페이지에 영주권 제도 안내 부재 및 온라인 신청 불가
 - 관련법령 : 이민법(Immigration Act 2000, Act 573) 제13조 내지 제16조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지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가나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효력 상실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한 영주권이 있는 한 별도 입국 사증 불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입국사증 불요, 취업허가 불요
 - 영주권 소지자의 18세 미만 출생 또는 입양자녀에 대해 동반 허가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 제6조 내지 제8조
 - 가나에서 출생한 자 및 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가 가나 국적을 보유하고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자(제6조 제2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7세 이하인 자는 가나 출생으로 간주(제6조 제3항)

- 부모가 모두 가나 국적이 아닌 16세 이하인 자가 가나 국민에게 입양된 경우(제6조 제4항)
- 가나 국민과 혼인하였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의회가 제정한 법령에 따른 국적 취득(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 남성은 영주권자여야 혼인에 따른 국적 취득 가능(제7조 제5항)
- 혼인무효가 되더라도 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국적 보유(제7조 제3항)
- 혼인으로 가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의 자녀도 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국적 보유(제7조 제4항)
- 이중국적 인정(제8조 제1항), 이중국적자의 임용제한 직위(제8조 제2항)
- (이중국적 불인정 국가의) 외국인과 혼인으로 자국 국적을 포기한 가나 국민은 혼인 해소 시 가나 국적 회복(제8조 제3항)
- 국적법(Citizenship Act 2000, Act 591) 제9조 내지 제14조
 - 입양(제9조), 혼인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 규정(제9조 내지 12조)
 - 귀화 자격 요건 규정(제13조 및 제14조)
 - 국적포기(제17조) 및 국적박탈(제18조)

2. 국적취득조건

- 16세 미만으로 가나 국민에 의해 입양된 자(제9조)
-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제10조)
 - 선량한 자로서 국적 취득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나에 거주한 자. 단, 내무장관은 특별한 경우에 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가나 전통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
 - 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내무장관은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확인
- 외국인 귀화(제14조)
 - 신청일 기준 12개월 연속 가나에 거주한 자로서 8년 동안 통산 6년 이상을 거주한 자
 - 공증인, 변호사, 고위 정부 관료들 중 2명의 서면 보증을 받은 자

- 가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가나 전통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
- 가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 가나 사회와 동화되었거나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자
- 영구적으로 가나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유효한 거주허가증을 소지한 자
- 내무장관은 특별한 경우에 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내무장관은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상기 조건 가운데 가나 전통언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수정 또는 유권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국적상실조건

- 국적포기(제17조)
 - 이중 국적인 가나 국민(혼인 등으로 인해 가나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의 가나 국적 포기
 - (이중국적 불인정 국가의) 외국인과 혼인으로 자국 국적을 포기한 가나 국민은 혼인 해소 시 가나 국적 회복
- 국적박탈(제18조)
 - 가나에서 출생하거나 가나 국민에 의해 입양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상급법원(High Court)은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국가 안보, 공공 도덕에 위해가 되는 활동을 하는 자와 불법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국적 박탈

4. 기타사항

- 가나동포에 대한 거주권(Right of Abode) 부여(이민법 제17조 내지 제19조)
 - 18세 이상인 자로서 외국 국적취득으로 가나 국적을 잃은 자, 가나 해외동포의 자손 등이 신청 가능
 - 영주권 자격 요건과 동일하나 거주기간 요건은 면제되며, 효과는 영주권자와 동일

IV. 영주권 견본



과테말라

Republic of Guatemala

I. 영주권

1. 명칭 : VISA DE RESIDENTE PERMANENTE
2. 형태
 - 영주권 증명서
 - 여권에 영주 거주비자 스티커
 - 거주지 행정기관 발급 신분증(DPI)
3. 유효기간 : 5년(매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과테말라 국민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
 - 임시 거주비자 취득 후 5년 경과 자
 - 과테말라 국민과 결혼 후 1년 이상 경과 자
 - 결혼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복수 임시 거주비자 발급
 - 연금수령자 및 금리 생활자
 - 월 수령 U\$1,000 이상, 부양가족 1인 추가시마다 \$200 추가
 - 과테말라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 종교인(카톨릭, 신교)
5. 수속절차 : 유효한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여권유효증명서 등 신청할 비자 종류에 맞는 서류 구비 후 이민청 방문하여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사전 허락 없이 1년 이상 국외체류
- 납세의무 불이행
- 법원의 판결
- 제출서류가 위·변조된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 취소절차 후 일반 발급절차로 재진행

8. 포기제도 : DPI를 발급기관에 반납하고 이민청장 앞으로 영주권 포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세금미납 등 미결문제가 없음을 이민청장에게 증명해야함)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청, [http ://www.migracion.gob.gt](http://www.migracion.gob.gt)

10. 기타사항

- '19.4.22 자로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지침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
더 이상 여권 내 스티커 형식의 영주비자 발급이 아닌 DPI로 대체될 예정이라 함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 필요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을 제외하고 과테말라 국민과 동등

4. 기타사항

- '19.4.22 과테말라 이민법 변경으로, 임시비자 5년 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복수국적 허용, 속지주의, 속인주의

2. 국적취득조건

- 신청 당시 적법한 비자(영주비자, 단기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5년 이상 과테말라에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또는 합산 1년 이상 국외체제 하면 안 됨
- 성인이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함(대리 신청 불가)

3. 국적상실조건

- 국적 취득 제출 서류 위조 적발 즉시 상실
-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 공공질서 또는 사회제도에 반하는 행위,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귀화자가 과테말라 국적을 부인하는 경우
- 중대한 범죄경력이 있는 귀화자의 경우, 5년 동안 품행이 단정치 않은 경우
- 국가보호 및 헌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민의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외의 개인적인 용무로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이민청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포기 가능.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 CUI : 사회보장번호
- NOMBRE : 이름
- APELLIDO : 성
- NACIONALIDAD : 국적
- PAIS DE NAC : 출생국가
- SEXO : 성별
- FECHA DE NACIMIENTO : 생년월일
- FIRMA : 서명
- LUGAR DE NACIMIENTO : 출생지
- VECINDAD : 등록청
- ESTADO CIVIL : 혼인상태
- PUEBLO : 지역
- FECHA DE VENCIMIENTO : 만료기간
- NUMERO DE SERIE : 일련번호



- RESIDENCIA PERMANENTE : 영주권
- FECHA EMISION : 발급일
- VENCIMIENTO : 만료일
- NUM PASAPORTE : 여권번호

- ENTRADAS : 사증종류
- APELLIDOS, NOMBRES : 성, 이름
- SEXO : 성별
- NACIONALIDAD : 국적

2. 영주권 증명서

○ 구 영주권 증명서



○ 신 영주권 증명서(2014년 11월 - 현재)



그레나다

Grenad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Card
2. 형태 : Card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Justice of the Peace 또는 Notary Public의 서명을 받은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
 - 출생국 혹은 그레나다에서 받은 추천서
 - 은행잔고 확인서
 - 출생국과 그레나다에서 받은 Police certificate(6개월 이내 발행)
 - 여권용 사진 4장, 출생등록증 원본/사본
 - 영주권 신청 서면
 - 건강 확인증(신청 후 6개월 이내 실시한 것, 반드시 그레나다의 St. George's 병원에서 실시한 것이어야 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시 효력 상실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Permanent Secretary office of the Prime Minister(<http://www.gov.gd/ministries/opm.html>)

10. 기타사항 : 신청비용 1,873미불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 자격(일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받아야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FOR INVESTORS(ΔΕΛΤΙΟ ΔΙΑΜΟΝΗΣ)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그리스 내 25만유로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한 제3국인 본인 및 가족
5. 수속절차
 - 신청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시민보호부 산하 이주정책 사무국(원스톱 숏 부서)을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
 - 신청서 2부
 - 사진 4장
 - 수수료
 - 여권 사본
 - 범죄경력증명서 사본
 - 건강진단서
 - 여행자 보험 사본
 - 부동산 매입증명서 사본(공증 필요)
 - 중개인 또는 변호사 계약서 사본

- 부동산 거래 합법성(법률 3386/2005) 확인증(공증 필요)
- 토지대장 사본
- 매입절차 미완료 시, 25만 유로 이상의 재산소유 증명(은행 잔고증명서 등)
- 시민보호부 산하 이주정책 사무국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생체인식정보 등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범죄행위로 인해 2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을 제3국 시민에게 매각한 경우

7. 부활제도 : 효력 상실 시 재신청

8. 포기제도 : 당국에 소정의 양식 신청 및 반환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시민보호부 산하 이주정책 사무국

- <http://immigration.gov.gr/web/guest/home>

10. 기타사항

- 그리스의 영주권 제도는 그리스의 EU가입을 계기로 그리스 시민과 혼인한 EU 회원국 시민 및 제3국 시민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4년 투자유치 목적으로 영주권 대상 확대
 - 투자유치 목적 영주권 제도 : 법률 4251/2014, 4332/2015 8조 14항
- 부동산 투자 영주권은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가 혜택
 -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그리스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그리스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
 - 그리스 내 회사 설립 가능, 필요시 부동산을 영주권과 함께 타국인에게 양도 가능(소유기간의 제한 없음)
 - 영주권자는 쉥겐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 가능

Ⅱ.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외 체류기간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해외 체류기간 제한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경제 활동 불가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법률 3731/2008, 4251/2014, 4332/2015, 4452/2017, 4531/2018, 4604/2019

2. 국적취득조건

- 국적취득절차 시 성인이어야 함
- 국적취득 신청 전 최근 10년간에 형벌과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모독, 국가 배반행위, 의도적 살인 또는 인신 상해, 마약거래 또는 배포, 불법 활동을 통한 수입, 국제 경제 범법행위,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법행위, 화폐관련 범죄, 공안 및 사법결정에 대한 불복, 미성년 납치, 성적 자유 억압 및 경제적 착취, 절도, 사기, 횡령, 협박, 고리대금 행위, 중개관련법 악용, 위조, 위증, 중상-비방, 밀수, 무기거래, 인신매매-밀입국 조장 업패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 또는 최소 1년간의 구류 처벌 경력이 없어야 함.
- 추방 기록이 없는 자
- 충분한 그리스 언어능력,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필수
- 국적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은 3년(유럽시민권자, 정치적 망명자, 그리스인 배우자 등), 7년(장기체류사증 소지자, 부동산 투자 영주권 소지자 등), 12년(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으로 구분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취득이 거짓증빙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음이 판명될 경우

4. 기타사항

○ 제출 서류

- 국적취득신청서
- 수수료
- 여권사본
- 체류허가증 사본
- 출생증명서
- 최근 회계연도 세금정산서 또는 세금신고서 사본

○ 심사과정

- 시청 또는 구청에 국적취득 신청서 제출
- 지역사무국에서 1차 서류검토를 거쳐 이상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범죄기록서, 비추방증명서,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해 증빙용) 제출 요구
- 내무부에서 2차 서류검토, 체류 지역의 경찰기록 조회
- 내무부로부터 출석요구서 영수증과 함께 인터뷰 요청 (정당화되지 않는 사유로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적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됨)
- 국적 취득 시 내무부 산하 지방사무국에서 국적취득증명서를 발행함. 그 서류를 통해 경찰서에 시민등록증을 발급받음.
- 그리스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이므로, 현지 국적 취득 시 한국여권 반납을 요구하지 않음. 반면에 국적취득 이전에 발행된 기타 체류허가증은 취소를 위해 반납됨.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영주권)
2. 형태 : 최초 영주권 취득 시 확인 레터를 받은 후 I.D. 책자 발급
3. 유효기간 : 무제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영주권자와 혼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워크퍼밋(노동허가증)으로 5년 이상 일했고 영구적인 직업이 있을 경우
 - 매달 R37,000(약 USD2,700) 수입이 있을 시 은퇴 영주권 부여
5. 수속절차
 - 재정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학력증명서, 통장 잔액증명서, 여권사본 및 전 남아공 비자 사본 등 서류 제출 후 남아공 내무부에서 최소 8개월 심사기간 후 결과 통보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국내법 위반, 국외체재 허용기간(3년) 초과 등
7. 부활제도 :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VFS(Visa facility services),
www.vfsglobal.com/dha/southafrica/
10. 기타사항 : 2014년 이민법 개정 이후 영주권취득이 어려워지고 있음.

Ⅱ. 영주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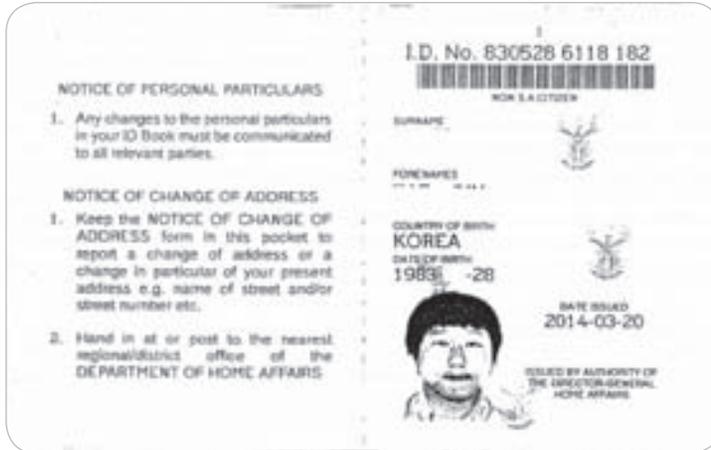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3년 이내 남아공 1회 방문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없음(시민권자만 투표 가능)
 - 의료 혜택 있음(국립병원에서 치료 시 경제능력에 따라서 치료비 차등지급, 직업이 없거나 학생일 경우 무상 진료가능)
 - 의무교육 혜택은 없으나 남아공 대학 진학 시 남아공 시민권자와 같은 학비 지급, 보통 외국인 학생(학생 비자 소지)은 대학교 학비가 남아공 시민권자보다 약 2배 이상 학비를 지급하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같은 학비를 지급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현재 남아공 국적법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1995년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정당의 주도하에 제정
2. 국적취득조건
 - 영주권 취득 5년후 국적 신청 가능(의무조항 아님)
3. 국적상실조건
 - 1988년 6월 이전 허가서(Exemption Letter) 없이 7년 이상 남아공에 없으면 국적 상실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2. 영주권 증명서


DEPARTMENT: HOME AFFAIRS
REPUBLIC OF SOUTH AFRICA
PERMANENT RESIDENCE PERMIT
SECTIONS 26 AND 27 OF ACT NO. 13 OF 2002
DHA-882

PERMIT NUMBER CPT 367 REFERENCE NO CPT 367/10

In terms of the provisions of section 26^a or 27^a of the Immigration Act, 2002 (Act No. 13 of 2002),
 sub-section 27(E) in the category of RETIRED
 Surname _____
 First name(s) _____
 Date of birth 1983 28 Gender MALE

has been authorized to enter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or the purpose of taking up permanent residence,
 or if he/she on the date of approval of the application, already enjoys therein legally to settle permanently.
 Unless the holder of this permit enters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for the purpose of permanent settlement
 before or on 2011-04-23 the permanent residence permit shall lapse

Date of issue 2011-04-21
 Issuing officer SEHWAMBO M S
 Rank S A C
 Issuing office HEAD OFFI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PRIVATE AND OTHER

2011-04-21

DHA/100014 101

For DIRECTOR-GENERAL: HOME AFFAIRS SEHWAMBO M S
Print Surname and initials
KETELO C N
Print Surname and initials

For DIRECTOR-GENERAL: HOME AFFAIRS _____
Print Surname and initials

Note

- (1) This permit is issued once only and must be duly safeguarded.
- (2) If both signatures do not appear above, this permit is invalid.
- (3) The permit number must be quoted in all communications with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 (4) This permit is issued without essays or amendments.
- (5) Permanent residents who are absent from the Republic for three years or longer may lose their right to permanent residence in the Republic. A period of absence may only be interrupted by an admission and return to the Republic.

Endorsement/Conditions

Control Number
No. A 110167

* Delete whichever is not applicable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Permit(네덜란드어 : Verblijfsvergunning Regulier voor onbepaalde Tijd)
2. 형태 : 카드(중앙 청색 + 좌우여백 분홍색)
3. 유효기간 : 5년(5년 마다 카드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소 5년 이상 네덜란드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거주허가를 받은 자
 - 인턴십, 학업, 워킹홀리데이 등의 임시체류목적인 경우는 제외
 -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기혼자 : 월 1,745.07 유로(휴가상여금 제외 시 1,615.80유로)
 - 편부모 : 월 1,221.54 유로(휴가상여금 제외 시 1,131.06유로)
 - 독 신 : 월 1,221.54 유로(휴가상여금 제외 시 1,131.06유로)
 - 영주권 취득 시험(Inburgerings examen)을 통과한 자
5. 수속절차
 - 영주권신청서에 여권사본, 소득증명서, 영주권시험 통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출입국 이민국(IND)에 제출(수수료 : 171유로(성인), 57유로(18세 미만))
 - 출입국이민국 심사 후 영주권 카드 발급
 - 2014년 3월 이전 Type II와 EU/EER Type 등 2종류 발급
 - 2014년 4월 이후 Type II와 Type V 등 2종류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Type II : 네덜란드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Type V
 - EU/ EER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네덜란드 외 EU/EER 회원국 국가에서 6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네덜란드 출입국 이민국(www.ind.nl)

10. 기타사항

- 대한민국 국민은 2014년 3월 이전에는 통상 Type II를, EU/EER 국적자 배우자와 가족인 경우에는 EU/EER Type을 발급 받았음.
- 2014년 4월 이후에는 보통 Type II를, 특별한 경우(네덜란드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일을 한 경우) Type V를 발급 받음.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 Type II : 네덜란드 외 국가에서 6개월 미만
- Type V : EU/EER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교육, 사회복지, 의료보험, 연금 등 경제, 사회적 인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인과 동일한 권리 향유(단, 선거권은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속인주의 원칙

- 부 또는 모가 네덜란드 국적자일 경우 출생을 통한 자녀는 네덜란드 국적을 부여받음.
- 부 또는 모가 네덜란드 국적자일 경우 입양한 자녀는 네덜란드 국적을 부여받음.
-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계속 거주하였으며, 국적취득조건에 적합한 자는 네덜란드 국적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함.

2. 국적취득조건

- 일반적인 조건
 - 18세 이상의 성인(18세 미만일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
 - 네덜란드 거주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국적취득 신청시 거주증이 유효한 자
 - 네덜란드어를 이해하고 읽기, 쓰기, 듣기 등의 평가 시험을 통과한 자
 - 네덜란드와 해외에서 범죄경력 없는 자
 -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네덜란드시민권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구속기간 만료, 벌금 납부 완료,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등의 의무를 필하여야 함.
 - 현재 소지한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함.(이 규정에는 예외사항도 있음.)
 -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함.
- 5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조건 예외
 - 네덜란드 국적자와 결혼하여 3년 이상 동거한 경우
 - 입양 및 인지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네덜란드 국적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며,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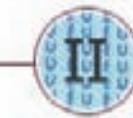
4. 기타사항 : 네덜란드 출입국 이민국(www.ind.nl)

- 2019.1월부터 국적취득 수수료 변동(성인기준 881유로, 파트너 추가로 함께 신청 시 1,124유로, 미성년자 자녀 신청 시 130유로 추가비용 지불을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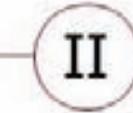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 Type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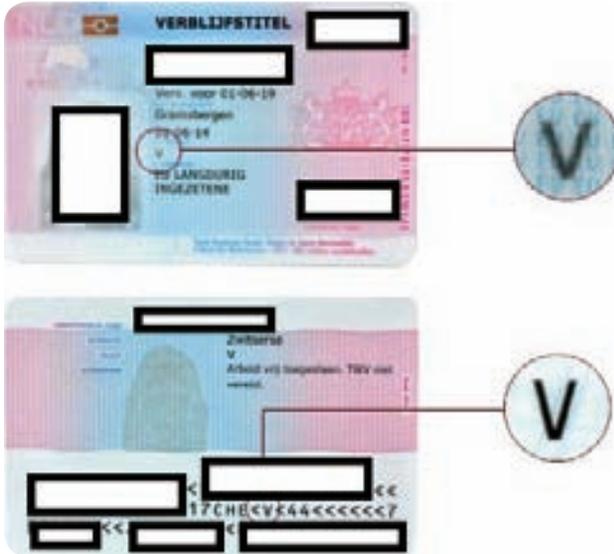


Verblijfstitel(체류허가증)
 Name(성,이름)
 Vervaldatum(유효기간)
 2019년 06월 01일 만료
 Plaats en datum afgifte
 (발급지 및 발급일)
 Zwolle, 2014.06.01
 Type document(종류): II
 Bijzonderheden(부기)
 Regulier Onbepaalde TIJD
 (일반 영주권)
 Geboortedatum en- plaats
 (생년월일 및 출생지)
 Nationaliteit(국적)
 Geslacht(성별)
 V(여자)
 Bijzonderheden(부기)
 노동허가 부여, 추가
 노동허가 필요 없음



- ※ Type II, V(불입), EU/EER Type은 기본형태는 같으며, 위의 동그라미 안에 II, V 및 EU/EER 등 종류가 명기됨.
- ※ 우리 국민인 EU/EER 국민 배우자 등은 영주권 앞면에 EU/EER onDERDAAN, Familiaal EU/EER이 기재되며, 영주권 뒷면에 Nationaliteit(국적)에는 Zuidkoreaanse(한국)이 부가사항으로 Duurzame Verblijf(장기거주)가 기재됨.

○ Type(V) -추가 견본 첨부



I. 영주권

1. 명칭 : 영구 거주허가증(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분홍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2년(2년마다 카드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이전 3년간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소지하고 노르웨이에 거주하였으며, 영주권 신청시점에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소지한 자
 - * 영주권 취득의 조건이 되는 거주허가는 전문직 종사(Skilled workers),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s), 가족이주(Family immigration), 망명(Asylum) 등으로 제한되며, 학생(Student), 입주가사도우미(Au pair)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영주권 신청 시점 이전 12개월 간,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세전 소득이 NOK 246,246 이상인 자(2019년 현재 기준)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노르웨이어 학습과정 250시간 이상 + 노르웨이 사회문화 학습 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수속절차 :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뒤, 지정된 시간에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 유지 신청 없이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위해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경우

I. 영주권

1. 명칭 : 조건부 영주권(Resident Visa) /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2. 형태 : 여권부착식 스티커(Physical visa label) / 전자식 출력 비자(eVisa)
3. 유효기간 : 조건부 영주권은 유효기간 있음(통상적으로 2년), 영구영주권은 무기한(Indefinite)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 조건부 영주권 : 24개월 이상 뉴질랜드 미거주시 또는 아래 항목 요건 미충족시 상실
 - 사업이민(Entrepreneur): 투자자나 기업가로서 뉴질랜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있는 사람으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일 경우, 2년 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기사업비자 신청시 승인된 요건을 충족시 영주권 신청 가능. 기업워크비자 소지자일 경우, 최소 50만 뉴불을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풀타임 직원을 3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6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
 - 남섬 지역 기여자(South Island Contribution Resident Visa): 남섬 지역 기여 취업 비자(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상 명기된 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외 고시된 기준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 취업자 1(Investor 1 Resident Visa) : 최소 뉴화 1000만불(원화 약 78억 원)을 뉴질랜드에 3년 이상 투자하고, 이외 고시된 요건 (거주기간 등) 충족시 신청 가능
 - 취업자 2(Investor 2 Resident Visa) : 경력 있는 사업가로서, (1) 뉴화 300만불(원화 약 24억 원)을 뉴질랜드에 4년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2)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3) 이외 고시된 요건 (EOI 등)을 충족시 신청 가능
 - 가족(Family category) : 뉴질랜드의 시민 혹은 영주권 등급(Resident class visa)의 비자 소지자의 경우, 동거기간 및 가족 관계의 진실성 등의 이민성에서 고시하는 요건 충족 시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 가능
 단, 뉴질랜드의 시민 혹은 영주권 등급(Resident class visa)의 비자 소지자는 부모 초청 불가(2019년 2분기 기준, 언제 다시 허용할지 공시된 바 없음). 은퇴부모영주권(Parent retirement resident visa)은 현재 열려 있으며, 부모가 뉴화 100만불(원화 약 8억 원)을 뉴질랜드에 투자하고, 뉴화 50만불(원화 약 4억 원) 예치, 연소득 뉴화 6만불(원화 약 5천만원) 등 이외 기타 고시된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 취업(장, 단기 부족직업군 종사자) : 고용 시장,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이민성에서 공시하는 산업 분야 및 직업군에 한하여, 고시된 요건 (임금 및 EOI 등) 충족 시 영주권 신청 가능
- 나. 영구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음 조건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 2년간 매년 184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
 - 2년간 매년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국세청에 의해 세금납부 거주자 (tax residence status) 자격 인정
 - 2년간 100만 뉴불 이상의 대뉴질랜드 투자

- 뉴질랜드에서 12개월 이상 사업체 수립 또는 인수
- 최근 12개월 동안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였으며, 모든 직계가족이 2년간 184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였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정규직장을 보유

5. 수속절차

- 이민성에 의향서를 제출하여 채택
- 영주권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이민성에 접수하여 회보를 기다림
- 상황에 따라 인터뷰 후 발급

6. **효력상실 사유** (취소사유) :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24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때. 각 카테고리 별 제한 사항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7. **부활제도** :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등으로 인해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시, 뉴질랜드 체류시 상황(범죄경력, 세금납부 상황 등)을 이민국 직원이 심사하여 부활 가능

8. **포기제도** : 이민국 또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뉴질랜드 이민성(New Zealand Immigration) www.immigration.govt.nz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조건부 영주권자 2년(24개월), 영구영주권자는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제한 없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대부분의 권한과 지위가 시민권자와 동일하나, (1)영주권자는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할 수 없고, (2)피선거권이 제한되며, (3)일부 장학금 수령

에 제한이 있으며, (4)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나 일부 복지 수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5) 뉴질랜드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시민권 법령 1977 (Citizenship Act 1977) 1장 6절(Part 1, 6)에서 명시하는바, 출생(Birth), 상속(Descend) 혹은 수여(Grant)에 의하여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2. 국적취득조건

- 1949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였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출생 하였을 경우,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국적자이거나 이민법령 2009(Immigration Act 2009)에 명시된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이거나, 쿡제도, 니우에 혹은 토켈라우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
- 출생 혹은 입양 시 부모 중 한 명이 뉴질랜드 국적자일 경우
- 이민법령 2009(Immigration Act 2009)에 명시된 조항을 충족하여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가능하며, 내무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취득과정에서 사기, 위증,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김으로써 국적 취득이 되었을 경우
- 뉴질랜드 국적을 유지하며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뉴질랜드의 이권 및 안전(the interests of New zealand)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뉴질랜드 국적을 유지하며, 타국의 국적을 이용하여 이권 및 안전(the interests of New zealand)에 반하는 특권(Privileges)이나 의무(duties)를 행사한 경우

3. 전자식 출력 비자(eVisa)

○ 조건부 영주권(Resident Visa)



15 May 2018
 Application number: 12345678

Your Resident Visa has been updated to reflect your new passport.

Resident Visa details

Applicant: Joe Bloggs
Date of Birth: 01 January 1989

Gender: Male	Passport number: A12345678
Nationality: CN	Client number: 87654321

The start date of your visa is: 21 May 2018
 You must arrive in New Zealand before: N/A
 The number of times you may enter New Zealand using this visa is: Multiple
 The last date you may travel and re-enter to New Zealand is: 21 May 2020
 Visa expiry date: Indefinite

The conditions of your visa: Visa is invalid if holder is outside NZ with expired travel conditions.
 Please apply for transfer of this visa when the passport expires.

PRINT THIS DOCUMENT AND CARRY IT WITH YOUR PASSPORT WHEN TRAVELLING

The details above reflect the electronic record of your visa held by Immigration New Zealand (INZ). You do not require a visa label in your passport. Do not attempt to alter this letter. It is an offence under the Immigration Act 2009 to use a document that you know has been altered.

Please check that the above visa details match your passport before you travel and contact INZ immediately if there are any errors.

You may be asked to show this letter when you check in for your flight to New Zealand and/or when you arrive in New Zealand. If you cannot show this letter when asked, the airline may not let you board your flight or you may be delayed when entering New Zealand.

Your resident visa and travel conditions

Your resident visa allows you to live, work, and study in New Zealand indefinitely. It will not expire while you remain in New Zealand. You will have the ability to travel in and out of New Zealand as many times as you like for a certain period after your resident visa is granted. This is called your travel conditions.

Your travel conditions are valid until **21 May 2020**.

니카라과

Nicaragua

I. 영주권

1. 명칭

- 임시영주권(Residencial Temporal)
- 영주권(Residencial Permanente)

2. 형태 : 신분증 형태(연노란색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임시영주권 : 1년(3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영주권
 - 영주권자의 가족
 - 자영업자
 - 회사와 노동계약을 맺은 외국인
 - 공공기관, 일반기관, 국영회사 등과 계약을 맺은 과학자, 학자, 전문가, 엔지니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기보유자
 - 다국적 기업의 임원, 직원
 - 관계당국이 인정한 언론종사자
 - 종교인
 - 난민, 망명인

○ 영주권

- 임시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된 자
- 시민권자의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확인서 제출 가능자
- 투자자 : 최소 U\$ 30,000 투자자로 니카라과 재무부의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자
- 연금생활자 : 매월 \$750 이상 연금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상기 신청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 난민, 망명자

5. 수속절차 : 아래 서류들을 구비하여 이민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권사본
 - 증명사진 2장(여권사진크기)
 - 출생증명서 혹은 귀화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증명서
- ※ 스페인어로 발급된 서류가 아닌 경우, 스페인어 번역본 및 공증 혹은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활동 시
- 투자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자가 국가 경제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 시
- 연금생활자 자격의 영주권자가 연금 수령이 중단되었거나, 혹은 임대업자 자격의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임대비 또는 관련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 강간, 인신매매, 아동 성학대, 가정폭력 등과 연관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 법원의 위자료 판결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성매매, 인신매매, 불법거래 등을 행하거나 조장하거나 혹은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 국가의 정치 및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활동 시
- 3년 징역형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혹은 3년 이상 거주하였다도 공공질서 및 규범에 반하는 범죄자의 경우

7. 부활제도

- 이민청장에게 영주권 취소에 대한 재검토 요청 혹은 내무부 장관에게 항소 제기 가능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에 대한 서류(서한) 제출 및 영주권 반환 시 출국비자가 발급됨.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청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임시영주권 : 6개월
- 영주권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외 체류 허용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입국신청을 통해 비영주권자로 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정치적 권리(참정권) 및 헌법으로 제정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니카라과 국민과 동일한 권리 및 사회적 보장을 누릴 수 있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수정헌법 제761조 동 헌법 제8장에서 니카라과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및 효력발생에 관한 요건 명시
 - > 제8장 제1절(개요), 제2절(국적의 취득), 제3절(이중국적), 제4절(국적의 상실), 제5절(국적의 회복), 제6절(국적의 취득 및 회복에 따른 효력 발생)

2. 국적취득조건

- 영주권 취득 후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니카라과 사회, 경제, 문화, 과학 등에 기여하는 투자 목적의 영주권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니카라과 국적의 자녀가 있는, 2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3. 국적상실조건

- 외국국적 취득
- 니카라과 국적 포기
- 니카라과 입출국 시, 원 국적 및 취득 국적의 불분명한 사용
- 국적취득을 위한 허위서류 제출
- 외국 침략 시 영토 방위 참여 거부(국가 의무 불이행 시)
- 반역죄로 판결 받은 경우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분홍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무기한 (단, 카드 노후화 등의 사유로 10년 단위로 갱신해야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8년 거주자의 경우
 - 18세 이상
 - 현재 덴마크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자
 - 덴마크에 합법적이고 연속적으로 8년 이상 체류한 자
 -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 연체된 공공 부채가 없는 자
 - 특정 형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덴마크 거주 선언과 자기부양에 동의한 자
 - 현재 취업 중인 자
 - 여권 등 증명서상 신분이 위조되지 않은 자
 - 덴마크 언어 시험 PD2 이상 통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되는 자
 - 최근 4년기간 중 정규직 또는 자영업으로 덴마크에서 3년 6개월 이상 고용된 자
 - (*)아래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자격이 갖춰져야 함
 - ① 덴마크 언어 시험 PD3 이상 통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되는 자

- ② 최근 4년 6개월 기간 중, 정규직 또는 자영업으로 덴마크에서 최소 4년 이상 고용된 자
- ③ 덴마크의 활동적 시민 시험을 통과하거나 1년 이상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한 자
- ④ 연간 소득이 세전 286,526.16 DKK 이상인 경우 (2019년 기준)

○ 4년 거주자의 경우

- 덴마크에서 합법적이고 연속적으로 4년 이상 체류 하고, 위 8년 거주자의 영주권 취득 조건 (*)마지막 사항에서 4가지 모두 충족 되는 자

○ 특별 신청 자격요건

- 신청 시점에 신청자의 나이가 정확히 18세 이며 (19세가 될 경우 신청 불가) 덴마크에서 연속적으로 최근 8년간 체류하였으며, 덴마크에서 초등학교 (9학년까지 있는 형태) 졸업 이후 일 또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한 자

- 덴마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자

- ① South Schleswig 의 소수민족
- ② 아르헨티나에 있는 덴마크 소수민족
- ③ 과거에 덴마크 시민이었거나 부모가 덴마크에서 태어난 순수 덴마크 인일 경우

5. 수속절차

- 덴마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ID 생성 -> 신청수수료 지불 ->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4일 이내 이민국 방문 후 지문 및 사진 등록)

- 신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소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정치적 난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경우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아 CPR번호 (개인식별 번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부활제도: 처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

8. 포기제도: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www.newtodenmark.dk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속적으로 최대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12개월 이상 해외 체류 희망 시,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 시 최대 2년 동안 해외 체류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지방자치정부 선거권 부여
-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부여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덴마크 시민권 신청자는 거주지, 연령, 능력, 공공 부채 여부, 자기부양 능력, 덴마크의 사회에 대한 지식 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신청자가 덴마크 사회에 충실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덴마크의 헌법을 비롯한 덴마크의 법을 준수하고 덴마크의 기본적인 가치와 법적 원칙을 존중한다고 선언하는 조건임.

2. 국적취득조건 : 체류자격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덴마크 사회에 대한 충성과 충성을 서약한 자
- 영주권 소지자
- 덴마크에서 9년 이상 거주한 자
-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
- 연체된 공공 부채가 없는 자
- 특정형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덴마크 언어 시험 PD3 이상 통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되는 자
- 시민권 시험을 통과한 자
- 체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헌정식에 참석한 자

3. 국적상실조건

- 위장 결혼 등 사기행위로 덴마크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덴마크 형법 12조, 13조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조항 중 하나 이상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의 선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후 덴마크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I. 영주권

1. 명칭 : 임시거주증 / 영주권

- 임시거주증 : RESIDENCIA TEMPORAL(RT-9)
 - ※ 도미니카공화국 임시거주증은 3종으로 구분 : RESIDENCIA TEMPORAL(RT-9) / RESIDENCIA TEMPORAL IABORAL(RT-3) / RESIDENCIA TEMPORAL(RT-4)
 - ☞ RT-9와 RT-3은 주민증(Cédula) 발급 대상 / RT-4는 비발급 대상
- 영주권 (4년 유효) : RESIDENCIA PERMANENTE
- 영구 영주권 (10년 유효) : RESIDENCIA DEFINITIVA

2. 형태 : 카드(흰색 플라스틱, 위조방지 이미지)

3. 유효기간 : 1년(최초 임시거주증), 4년(영주권), 10년(영구 영주권)으로 구분

4.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신청자격

- 도미니카공화국에 <내국인과 결혼>, <투자이민>, <취업자>, <종교 및 NGO 활동자>로 90일 이상 장기간 체류를 원할 경우,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은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 변경 및 임시거주증 등 신청 가능
 -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 <http://embadomcorea.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서소문동), 태평로빌딩 19층
 - 연락처 : Tel 82-2-756-3513 / email : embadomcorea@gmail.com

-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종류 : RS(Visa de Residencia, 거주비자), 상업복수비자(NM1), 상업비자(NM) 등 (※비자 종류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에 문의)
- RS(Visa de Residencia, 거주비자) : 내국인과 결혼 / 영주권을 소지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초청 / 투자이민자(최소 USD200,000 이상) / 연금 혹은 금리 수급자
- NM1(취업비자) : 도미니카공화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현지 기업체 소속 1년 이상 근로자 동반비자(DPM-1년) 발급 가능
- NM(상업(비즈니스)복수비자) : 중소기업운영, 종교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봉사활동 체류자 등 도미니카(공) 입국 전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 상업복수비자(NM) 신청
 - ※ 종교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동반비자(DPM) 발급 가능. 그 이외의 상업, 사업의 경우 동반비자 발급 불가

나. 취득조건

- 도미니카공화국에 90일 이상 체류 또는 거주 목적으로 입국을 원할 경우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을 통해 <거주비자(RS : Visa de Residencia)>, <취업비자(NM1)>, <상업비자(NM)>을 취득한 자로서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이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 자격 변경 신고를 한 자
 - ※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비자신청 문의, 제출서류는 스페인어 번역공증 및 대한민국 정부 발행 문서의 경우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 필수 (비자를 발급받을 시 제출한 서류도 함께 돌려받음)

5. 수속절차

가. Residencia Temporal : 임시거주증(1년 유효)

- 거주비자(RS, Visa de Residencia), 취업비자(NM1), 상업복수비자(NM) 취득자에 한해 최초 임시거주증 신청 가능하며, 5년간 1년 단위 갱신가능
- 임시거주증(Residencia Temporal) :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이민청을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1년 유효기간의 임시거주증(Residencia Temporal) 취득
 - ※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임시거주증 신청 불가

- 매년 갱신 (만료기간 30일 전에 갱신 신청)
- 수속절차 : 주한도미니카대사관에서 목적별 비자 취득 시 반환 받은 서류를 지참하고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여 30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스캔(jpg파일)하여 아래 이민청 사이트를 통해 등록 및 승인 요청 --> 승인일정을 통보 받은 신청자는 모든 서류 원본 및 복사본을 이민청에 직접 제출(수속기간 90일 소요)

① 이민청 사이트 신청 : <https://www.migracion.gob.do/>

☞ Residencias 메뉴 -> Solicitudes de Residencia 메뉴 -> Solicitar en Línea 메뉴 클릭 및 접수

☞ 이민청 제출 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 2부, 도미니카 비자 원본(RS, NM1, NM등)원본, 사진(2*2 cm, 정면 및 측면 각 6부),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재정증명서, 근로계약서,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 발행 확인서, 이민청 지정 보험사 보증보험, 이민청 지정 병원 건강진단서(수수료 성인 4,500페소 / 미성년자 3,000페소)

※ 한국 정부 발행 국문서는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함

② 이민청 수속 절차

i)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이민청 외국인정책본부 (Departamento de Extranjería de al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방문 임시거주증 신청서 작성, 지문채취 및 서면 인터뷰 실시

- 신청 수수료 : 10,000페소

ii) 이민청에 임시거주증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90일 후 이민청 재방문(영수증 지참 요), 이민청에서 “신분증 및 주민증 확인서 (Constancia de Cédula y Carnet de Residencia)” 수령 예정일 통보

iii) 중앙선거위원회(Junta Central Electoral)를 방문(지정된 일자)하여 외국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거주증 원본 수령

☞ Residencia Temporal(RT-4)의 경우 주민증(Cédula) 신청 불가

③ 갱신 수수료

- i) 연간 갱신 수수료 : 5,000페소(잔여 유효기간 30일전)
- ii) 갱신 연체료 : 500페소

나. Residencia Permanente : 영주권(4년 유효)

- 4년 유효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 1년 유효의 임시거주증을 5년간 소지한 자로서 기간만료 30일 전 영주권 신청 (소요기간 : 90일)
 - ☞ 5년간 갱신한 마지막 임시거주증 만료 30일 전 영주권 신청 가능
- 유효기간 : 4년
 - ※ 임시거주증에서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최초 신청 시 1년 유효의 영주권 발급, 다음 해 신청 시 4년 유효 영주권 취득 가능

- 수속절차 : 마지막년도 임시거주증증(Residencia Temporal) 원본 지참

① 이민청 사이트 신청 : <https://www.migracion.gob.do/>

☞ Residencias 메뉴 -> Solicitudes de Residencia 메뉴 -> Solicitar en Línea 메뉴 클릭 및 접수

☞ 이민청 제출 서류 :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청 발행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발행일 30일 이내), 임시거주증 원본, 주민증(Cédula) 원본, 사진(2*2 cm, 정면 및 측면 각 6부), 여권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재정증명서(차량등록증, 부동산취득증, 은행잔고증명서), 이민청 지정 보험사 보증보험, 이민청 지정 병원 건강진단서(수수료 성인 4,500페소 / 미성년자 3,000페소)

※ 국문서의 경우 스페인어 번역공증 필수

② 이민청 수속 절차

- i)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영주권 자격변경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준비 후 이민청 방문
 -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및 사본 2부를 준비 각 폴더별로 준비

- ii) 이민청 직원 인터뷰 수행
- iii) 수수료 : 12,000페소(소지하고 있는 임시거주증이 유효기간 만료일 경우 벌금 500페소 추가 부과)

③ 갱신 수수료

- i) 4년간 갱신 수수료 : 12,000페소(잔여 유효기간 30일 전)
- ii) 갱신 연체료 : 600페소

다. Residencia Definitiva : 영구 영주권

- 4년 유효 영주권 소지 후 10년이 경과하면 신청자격 부여
- Residencia Definitiva (영구 영주권) : 10년 이상 Residencia Permanente(영주권) 소지자(소요기간 : 5일)
- 유효기간 : 10년
- 수속절차 : 4년 유효 영주권 원본 지참

① 이민청 사이트 신청 : <https://www.migracion.gob.do/>

☞ Residencias 메뉴 -> Solicitudes de Residencia 메뉴 -> Solicitar en Línea 메뉴 클릭 및 접수

☞ 이민청 제출 서류 : 이민청장 앞 영구영주권 자격변경 서한, 사진(2*2 cm, 정면 및 측면 각 2부), 여권원본 및 사본(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영주권 원본 및 사본(1부), 주민증 원본 및 사본(1부),

※ 국문서의 경우 스페인어 번역공증 필수

② 이민청 수속 절차

- i)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영주권 자격변경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지참 후 이민청 방문
- ii) 이민청 직원 인터뷰 수행
- iii) 수수료 : 20,000페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상실

7. 부활제도 :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일정 벌금 납부후 갱신 가능

8. 포기제도 : 포기제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 연락처 : 1-809-508-2555

– 주 소 : Av. George Washington, Esquina Héroes De Luperón
de Centro de los Héroes,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 홈페이지 : <https://www.migracion.gob.do/>

10. 기타사항

○ 영주권 수수료 변경 및 외국인 체류 보장보험 가입

– 2014.11.1일자로 영주권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며, 이민청 홈페이지 Tarifas Servicios에서 확인 가능

–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이민청 심사관의 체류도과 기관 유효성 판정 결과에 따라 비자유효 도과 기관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 되오니 아래 이민청 사이트를 접속하여 도과 기관별 수수료 확인

☞ 이민청 사이트 신청 : <https://www.migracion.gob.do/>

– 이민청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외국인 체류 보증보험(Póliza Garantía)>를 가입한 보험증서 필히 제출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을 획득한 후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국외 체재 가능

※ 단, 임시거주증 및 영주권 신청 또는 갱신 시 영주권 만료일 기준 전·후 3개월씩 총 6개월은 국외 체재 불가

2. 재입국허가제도

-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 유효기간 초과 해외 체류 시 : 이민청을 방문하여 해외 체류 사유서(체류기간 및 목적 포함) 제출 / 해외체류 신고 시 재입국 허가 기간은 영주권 유효기간 기준으로 산정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기업체 운영, 일정규모의 부동산 취득 및 매매 등 헌법에 명시된 외국인 예외 조항 이외에 도미니카공화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재산권 행사 가능

4. 영주권 신청 시 주의 사항

- 이민청 직원의 서류 심사 시 서류보완 사례가 빈발한 바, 국문 제출 서류는 번역본 및 번역공증, 한국정부 발행 문서의 경우 번역문이 포함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서류로 준비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상 속지주의(출생주의)로 국적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14.5.23일자로 개정된 국적법(귀화법 169조-14항)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부모하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부여
 - 여행 통과자 및 불법체류자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취득 불가
- 외국인 지위 정상화 국가계획에 1929.6.8.~2007.4.18. 기간 동안 “비거주 외국인 부모에서 출생해 주민등록된 자녀” 및 “비정상적인 지위의 부모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특별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민자 지위의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령 제 285-04호 이민법에 의거 외국인으로 등록 가능 하며 이민자 지위 취득 후 24개월 뒤에 귀화 신청 가능

2. 국적취득조건

- 도미니카공화국은 복수 국적 인정국가이며, 18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가능
 - 유효한 영주권을 2년 이상 소지한 자
 - 투자영주권을 6개월 이상 소지한 자
 - 도미니카공화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한 경우
 -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기관 또는 국방부 소속 기술 서비스 지원 및 전문가로 활동하는 외국인
- 귀화 신청 절차
 - 도미니카공화국 내무경찰부 장관(Secretario de Interior y Policía)에 신청
 - 제출서류 : 사진 5부(2*2 정면), 주민증, 유효 영주권,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등 각 원본 및 사본 5부, 보증확인서, 국적기록 등 공증본, 재정증명서, 납세증명서, 관보 영수증 및 여권 사본 3부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상실은 대통령령에 의해 수행되며, 귀화 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상실 또는 취소 가능

- 허위문서 제출 확인 시 귀화 취소
-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범죄 및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 반정부 시위 가담 및 정치적 행위를 했을 경우
-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취득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10년 이상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 도미니카공화국 영토에 있는 외국정부기관에 고용되어 근무 하는 경우

IV. 영주권 견본



I. 영주권

1. 명칭 : 영주허가(Niederlassungserlaubnis)
2. 형태 : 장기체류비자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법(Aufenthaltsgesetz) 9조 의거
 - 5년 이상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를 소지하고
 - 생계수단이 확실하며
 - 최소 60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독일연방 내의 안전과 공중질서를 해하지 않은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 충분한 독일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 독일연방 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본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함
5. 수속절차
 - 자격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관청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허가 소지자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사전에 외국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인관청에 고지한 체류기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 (체류법 51조 1항 7호)
 - ※ 영주허가는 상기와 같은 경우 소멸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영주허가소지자는 영주허가의 상실 없이 외국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음
 - 독일연방 내에서 최소 15년간 적법한 체류를 했으며 생계가 보장된 경우
 - 독일인과 혼인한 경우
 - 군 복무를 위해 본국에 체류한 경우. 단 복무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독일에 입국해야함
- 여권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타 국적이 변경 혹은 상실될 경우 영주허가 효력이 상실됨

7. 부활제도

- 효력을 상실한 영주허가는 재차 그 효력이 부활되는 경우는 없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해야함 (신청자격은 4번 항목과 동일)

8. 포기제도

- 영주허가 소지자가 외국인관청에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영주허가 효력이 상실됨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영주허가를 발급하는 외국인관청은 각 도시에 산재
(베를린 :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121864/>)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제한 국외체류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허가를 상실한 자는 독일 재입국시 비자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허가는 체류법상 최상위의 체류자격으로서 사회복지(예 : 자녀양육보조금)를 보장하며, 또한 추방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취업에 따르는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일부 주에서는 읍·면·동장 선거(Kommunalwahl)에 한해 투표권 부여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독일 기본법(Grundgesetz 헌법)상 국적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독일국적은 박탈당할 수 없다. 국적상실은 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하며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상실될 경우 이로 인해 동인이 무국적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기본법 16조 1항)
- 국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
 -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혈통주의로서 아이출생시 부모의 국적부여 (국적법 4조 1항)
 - 이중국적 및 다국적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예외상황을 두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국적법 12조 1항)

2. 국적취득조건

-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의 기본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준수를 서약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무이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는 경우
 - 생계수단이 확실하며 본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 형사처벌 기록이 없을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여러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 독일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외국인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 국방부의 허가 없이 외국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 출생을 통해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년이 되어 국적 선택 시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IV. 영주권 견본

- 영주허가 카드



동티모르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영주권 자격으로 동티모르에 12년 연속 체류자
 - 임시영주권 자격으로 체류 중 범죄로 인해 단독 또는 누적으로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추방명령을 받은 자
 - 법정에서 3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자
 - 영주권 신청 시 위조 서류로 신청한 자
 - 임시영주권 소지자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6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통산 10개월 체류한 자
 - 영주권 소지자로서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24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3년간 통산 30개월 이상 체류한 자

-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이민국 (<http://migracao.gov.tl>)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임시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최대 6개월 연속 체류 하거나 통산 10개월 미만 허용
-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최대 24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3년간 통산 30개월 미만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라오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영주권카드(적색 플라스틱) 및 외국인가족부(A5 크기 수첩)
3. 유효기간 : 제한 없음(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일반(신청자가 라오스 국민과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는 경우)
 - 10년 이상 계속하여 라오스에 거주하였을 것
 - 가족관계(라오스 국민과 결혼 또는 입양 등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 라오스인과 결혼한 자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라오스에 거주하였을 것
 - 부 또는 모가 라오스 국민인 외국인
 - 라오스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 또는 부모가 라오스 국적 기록이 있는 자
 - 10년 이상 라오스에 거주한 외국인의 부모 또는 자
 - 특별능력자(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인 경우) 등
 - 50만 불 이상 라오스에 투자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자
 - 라오스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 또는 능력을 지닌 자
 - 라오스 정부로부터 특별한 영주허가를 부여받은 자
 - 국가안전 및 경제개발에 기여한 자로서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업적 및 활동을 인정하였음을 증명 가능한 자

5. **수속절차** : 외교부 영사국에 신청서 제출 후 외교부와公安부에서 검토 및 승인하고 公安부에서 영주권 발급(라오스인의 보증필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또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영주권은 상실되며 국외로 추방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외교부 영사국, 公安부 외국인체류과
10. **기타** : 현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 라오스 인종 및 무국적자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영주에 관한 총리령』(제 472호)가 2011.12.13.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라오스 公安부는 영주권 부여 시 외국인가족부 및 영주권신분증(ID Card)을 발급

II . 영주권자

1. **국외 체재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라오스 영주권 취득 시 公安부는 외국인가족부 및 외국인신분증(ID 카드)을 발급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라오스 국적자에게만 있음
 - 영주권자의 복지혜택 관련 법령 규정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 규정법령 : 라오스의 국적법 (2014.5.17일 발효)

2. 국적취득조건

- 국적취득 기초조건
 - 출생
 - 취득(귀화) 신청
 - 재취득
 - 부 또는 모가 라오스 사람인 자, 부모가 무국적자,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자
- 국적취득신청 가능조건
 - 18세 이상인 자
 - 라오스 헌법 및 법규를 존중하는 자
 - 라오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
 - 건강하고, 전염병, 마약 경력이 없는 자(건강 확인서 증명)
 - 범죄 기록이 없는 자(범죄경력 확인서 증명)
 - 국가안보 또는 경제 개발에 기여한 경력이 있는 자
 - 라오스 국익을 훼손한 경력이 없는 자
 - 본국의 국적을 이미 포기한 자
 - 라오스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직업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자 (은행 잔고 확인증명)

3. 국적상실조건

- 자발적 포기
 - 라오스 국회의원단의 승인 필요
 - 세금 미납자, 형을 선고받은 자, 라오스 국가안보 또는 국익 훼손을 시킨 자는 국적 포기 신청 불가

- 국적 취소
 -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국가명예 또는 국익훼손을 저지른 자
- 해외이주 상실
 - 허가 없이 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자
 - 허가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에서 거주한 자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2. 형태 : 수첩(여권형) 및 여권 사증면에 확인도장 날인
3. 유효기간 : 무기한(고속련 전문인력 및 동반가족 제외)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거주허가증(3년 이내)을 근거로 러시아 연방에서 8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임시거주 허가 없이 바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대상

1. 러시아 국적자이며 러시아에 영구거주하는 부모, 자녀가 있는 외국인
2. 러시아연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인가를 받은 정규교육 형식의 고등 교육과정 이수하고 우수한 성적의 학력 및 자격에 관한 문서를 받은 외국인

5. 러시아어 · 역사 · 법률지식 시험

- 시험장소 : 복합이민센터 또는 인증기관 <http://testcons.ru/testing-map/>
- 시험면제 : 장애인 · 18세 미만 · 60세 이상 · 고급전문인력(가족포함) · 졸업 증명서(러시아) · 과거 소련국적자

6. 효력 상실 사유(취소사유) : 반국가 행위, 테러, 최근 5년 이내 추방 또는 강제퇴거,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추방 또는 강제퇴거, 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날조, 마약류 범죄 등 강력범죄자, 유죄판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질서 및 외국인 체류규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6개월 이상 외국 거주(단, 중병으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외국에서 출국할 수 없는 상황, 본인의 병역의무로 인해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취소사유 예외 적용), 본인 취소요청 시

7.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내무부 이민국(지역사무소)
- 안내기관 : 복합이민센터(신청서작성 · 공증 · 러시아어 시험 · 건강검진 등)
<https://mc.mos.ru/ru/worker/mmc/residence-permit>

II . 영주권자

1. 거주등록 : 7일 이내 등록

2. 체류현황보고서(уведомление о подтверждении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2개월 내 거주지 관할 내무부 이민국(지역사무소)에 체류현황보고서 제출(러시아정부서비스통합포털 또는 우편)

※ 매 5년마다 내무부 이민국 지역사무소에 직접 제출

3. 영주권 재발급(교체)

- 14세, 20세, 25세가 되었을 경우
- 성, 이름, 날짜 및 출생지, 국적이 변경된 경우
- 마모, 손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영주권이 향후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지방선거 투표권, 연금수령, 노동허가 불요, 자유로운 입출국 및 러시아내 이동

IV. 체류현황보고서 견본

Уведом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7.01.2007 № 2

ФОРМА
Уведомления и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л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гистрация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УВЕДОМЛЕНИЕ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л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 (фамилия, имя (имена), отчество (при наличии)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уведомление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вое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наличия в себе следующих сведений:

1)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_____
(адресный номер, адрес и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 место (места) работы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осуществления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ечение очередного года от дня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или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покажила паспорт)

Дата (месяц и год)	Место работы, должность	Адрес места работы
привык	сначала	

3) период выплаты из бюдж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ечение очередного года от дня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или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покажила паспорт)

Годовые выплаты	Сумма выплат

Открытая часть бланка уведомления и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л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_____ (фамилия, имя (имена), отчество (при наличии)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_____ (адресный номер, адрес и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орга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изовый или визовый, срок, место выдачи, вид (визы) и (или)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покажила паспорт)

_____ (срок и место выдачи, дата и мес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_____ (сро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есто в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едомление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воего прожи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едомление права _____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_____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_____ 2011 г. _____ (подпись иностранного лица, проживающего в России)

Обратная сторона бланка уведомления и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ли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 размер и источник дохода за отчетный год от дня получения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покажила паспорт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данные прожи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источник дохода	Размер дохода

Вместе с уведомлением прилаг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1) документ, удостоверяющий личность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этом качестве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документа, номер, срок действия)

_____ (дата выдачи или окончания)

2)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_____ (номер, срок, дата выдачи или окончания)

3)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_____ (номер, срок, дата выдачи или окончания)

4) документы об источнике дохода,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и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уведомление (покажила паспорт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и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данные проживан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документа, номер, срок действия, дата выдачи или окончания)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_____ (наиме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рга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едомление права _____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_____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_____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_____ 2011 г. _____ (подпись иностранного лица, проживающего в России)

루마니아

Romania

I. 영주권

1. 명칭 : PERMIS DE SEDERE PERMANENTA
2. 형태 : ID 카드
3. 유효기간 : 5년(가족영주권은 10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년 이상의 거주허가를 받아, 그 거주허가 연장을 통해 5년 이상(유학생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동 5년 이상의 거주 기간 중, 6개월 연속 비(非)EU 국가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비(非)EU 국가 총 체류기간이 10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병역의무, 출산, 파견, 주재,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목적, 연구활동 등으로 비(非)EU 국가에 체류한 기간 및 단기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1백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일종의 골든 영주권, 또는 투자이민 제도에 해당)
 - 영주권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 ※ 동반가족 영주권 : 영주권 소지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입양아 포함)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 ※ 가족 영주권 : 루마니아인과 혼인한 외국인, 루마니아인의 외국 국적 소지 자녀, 루마니아인과 혼인한 자의 미성년 자녀, 루마니아 국적 소유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등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EU Blue Card 소지자
 - ※ EU Blue Card : “고급인력”으로 분류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고용허가/거주허가 통합증명서로서, 동 증명서 소지자는 타(他)EU 국가 취업이나 거주허가 취득 절차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우선권을 부여받음
-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자 등

5. 수속절차

- 관할지방 당국(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루마니아어 실력을 판단하기 위한 인터뷰 실시 가능)하면 영주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영주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영주권 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방당국(이민국)에 출석하여 장기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거주허가의 취소 혹은 거부
- 타국가에서 영주권 취득
- 12개월 이상 루마니아 역외에서 체류 (단, 타(他)EU회원국에서 임시 거주허가를 받고 체류한 경우는 예외)
- 타(他)EU 국가 및 EC공동체 국가 혹은 스위스에서 6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타(他)EU 국가 및 EC공동체 국가 혹은 스위스에서 2년 이상 연속 떠나있을 경우
- “가족 영주권자”일 경우 배우자가 타(他)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동반가족 영주권” 취소
 - ※ “동반가족 영주권자”였던 자가 성인이 되어, “동반가족 영주권”을 반납하고, “동반가족 거주허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자녀는 학업을 계속하거나 취업을 통해 계속 거주 가능하며, 이를 통해 5년 이상(학업의 경우 10년 이상) 합법적 거주를 하였을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7. 부활제도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 또는 연속 12개월 이상 루마니아 영토 밖에서 체류하여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루마니아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연속 12개월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루마니아 영토 밖으로 거주지 이전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General Inspectorate for Immigration)
 - 홈페이지 : <http://igi.mai.gov.ro>
 - 전화번호 : (+40) 21-410-9940
 - 팩스 : (+40) 21-410-7501
 - 이메일 : igi@mai.gov.ro
 - 참고정보(영어)
<http://igi.mai.gov.ro/detalii/pagina/en/Granting-right-of-premanent-residence/79>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속 12개월 이하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을 제외하고 루마니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루마니아 국적법 조항 No.21/1991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
 - 부모 중 한 명이 루마니아 국적인 경우
- 입양에 따른 국적취득
 - 루마니아 국적인에 의해 입양된 경우
- 일반귀화 : 루마니아에서 출생하고 거주지가 있거나 여타 국가에서 출생하였으나 루마니아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자, 루마니아 국적자와 혼인하여 혼인날짜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자
 - 18세 이상인 자
 - 루마니아나 여타 국가에서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 루마니아어를 구사하며, 루마니아 문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자
 - 루마니아의 헌법과 국가 조항을 아는 자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체류기간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 EU 국가 시민인 자
 - 난민 지위를 취득한 자
 - 루마니아에 100만 유로 이상 투자한 자

3. 국적상실조건

-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루마니아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리투아니아

Republic of Lithuania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 (체류허가증)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EU 회원국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 (5년 중에 2년은 반드시 리투아니아에서 체류해야 함)
5. 수속 절차 : 5년 동안 받은 비자증명서를 가지고 내무부 또는 경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1년 동안 특정 사유 없이 체류하지 않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내무부 또는 경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포기 신청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또는 경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
www.migracija.lt
10. 기타사항 : 신청 시 리투아니아내 거주지 입증 서류(집/아파트) 및 소득세 지불 증명 필요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 부모가 리투아니아 국적일 경우 및 10년 이상 거주한 자
3. 국적상실조건 : 외국 국적 취득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2. 영주권 증명서 : 상기 카드가 증명서를 대체함.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증명서, 비자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허가 또는 동반가족허가를 받고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 말라위 국적자의 배우자
 - 은퇴 후 말라위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노인
 -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및 NGO 종사자의 경우 노동허가 종류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이 달라짐
5. 수속절차
 - 수속기관 :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 신청절차
 - 영주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 영주권 승인 후 30일 이내 영주권 비용 지불
 -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은 일단 발급되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거나 아래의 경우 효력이 상실됨
 - 중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경우
 - 말라위 내무부가 기피인물(persona-non-grata)로 지정하는 경우
 - 1년 이상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말라위를 떠난 지 5년이 되지 않은 과거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 과거 거주사실증명 및 재정증명 제출 필요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 의사를 이민국에 통보하고 영주권을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https://www.immigration.gov.mw/>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 소지자는 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라위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Citizenship Act CAP 15 :01 of the Law of Malawi

2. 국적취득조건

- 부모 중 일방이 말라위 국적자로 출생한 자녀
- 말라위 남성과 결혼하여 최소 5년 이상 거주자
- 영연방 가입국가의 시민인 경우, 5년 이상 말라위에 거주하면서 규정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 영연방 가입국가의 시민이 아닌 경우, 7년 이상 말라위 거주하면서 규정된 언어구사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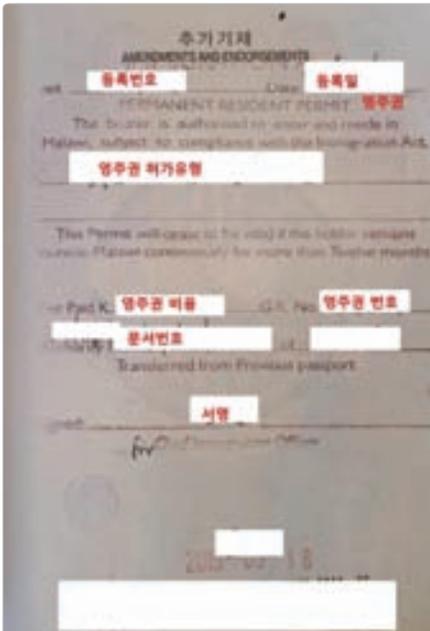
3. 국적상실조건

- 본인이 직접 국적을 포기할 경우(포기 후 3개월 이내 다른 국적을 취득해야 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2. 영주권 증명서



번역본

말레이시아

Malaysia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2. 형태 : 빨간색의 신분증 카드(MyPR)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투자자(Investors)
 - 말레이시아 은행에 미화 2백만 불 이상의 고정예금 예치(5년 후 인출 허용)
 - 배우자와 18세 이하 자녀는 말레이시아에서 5년 이상 거주 시
 - 전문가(Experts)
 - 전문성, 재능, 기술이 국제기구에 의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말레이시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직종사자(Professional)
 - 해당 분야에서 특출한 기술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로서 말레이시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 국적자와 혼인한 자로서 장기방문패스(Long Term Visit Pass)를 소지하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6세 이하 자녀

○ 포인트 시스템(Point System)

- 7가지 기준(Age, Qualification, Duration of stay in Malaysia, Familiarity with the Malaysia Institute, The values of investments, Working experience in Malaysia, Proficiency in Bahasa Malaysia)을 토대로 평가하여 최소 65점 이상을 얻은 자

5. **수속절차** : 지원자 중 투자자(Investors)와 전문가(Experts)는 푸트라자야 이민국 본청에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지원자는 관할 이민국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행실이 바르지 않은 경우
- 말레이시아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 연루되는 경우
- 말레이시아 안전, 보안, 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체에 연루되는 경우

7. **부활제도** : 있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말레이시아 이민국(<http://www.imi.gov.my>)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제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면제 대상임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기간 제한 없이 말레이시아에 체류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 학업, 취업, 사업 등 가능
- 부동산 소유 가능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Constitution of Malaysia, Malaysian nationality law

2. 국적취득조건

- 영주권자
-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의 외국인 아내가 말레이시아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자녀
- 말레이시아에 최소 10년에서 12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시민권 포기
- 외국 시민권 취득 또는 행사 시
- 귀화 시
- 시민권이 박탈된 자의 자녀

Ⅳ. 영주권 견본



멕시코

Mexico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

2. 형태 : 영주권 비자카드 (초록색 플라스틱 카드, 8.5cm x 5.4cm)

3. 유효기간

- 무기한 (유효기간 없음)
- 3세 미만 : 1년
- 3세 이상 ~ 18세 미만 : 4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단기) 거주비자 (Residente Temporal)로 4년 이상 거주 시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의 부모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와 직계 2촌(후손 또는 선조)
- 멕시코 국적 배우자 또는 동거인(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또는 혼인 외 자녀가 있어야 함)이 있는 경우, 첫 2년은 단기 거주비자 자격으로 체류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정치적 망명자, 난민, 보완적 보호자 (proteccion complementaria), 무국적 결정자
- 가족단위 보존 권리에 따른 조건
- 퇴직자, 연금 수령자
- 기타 : 이민국의 포인트 시스템 (sistema de puntos)에 따른 결정

5. **수속절차** : 취득조건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신청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구 출국 시
 - 다른 거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획득 시
 - 이민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된 서류 제출 시
 - 멕시코 내무부의 허가 없이 2-5년간 멕시코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장기 출국 계획 시 멕시코 내무부에 통지 해야함)
 - 멕시코 법에 의거,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해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7. **부활제도** : 있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www.gob.mx/inm
10. **기타사항** : 이전에는 영주권이 임시영주권(Inmigrante)과 영주권(Inmigrado)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2년 11월 이민법 개정 후 영주권(Residente Permanente)으로 통합됨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법에 의거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투표권/선거권만 없을 뿐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 보장
4. **기타사항** : 이민국에 영구 출국 보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에 대한 국외체재 허용 기간은 별도로 없음. 2014년 5월 연방 관보에 공시된 주민법(Ley general de Poblacion)에서 해당 항목 삭제됨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멕시코 국적 취득은 출생 또는 귀화의 방법으로 가능함
- 출생 : 멕시코 내 출생자 (멕시코 또는 외국 국적자의 부모), 멕시코 외 타국 출생자 (멕시코 부모)
- 귀화 : 멕시코 외교부로부터 귀화 허가서를 받은자

2. 국적취득조건

- 귀화 의사 표명
- 현국적 포기(renuncia) 및 선언문(protesta) : 멕시코인으로서의 법률을 따르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함
- 스페인어 검증 (언어 구사력, 멕시코 역사 및 문화 이해도)
- 귀화신청일자 기준 멕시코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멕시코인 후손의 경우 멕시코에 2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 자격 취득)
- 선천적 멕시코 출생 자녀가 있는 자
- 멕시코인과 혼인한 자 (멕시코 내 같은 주소지에 멕시코 배우자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없음 (멕시코 국적 상실 불가능)

4. 기타사항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는 멕시코 국적 상실이 불가능하나, 귀화 신청자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멕시코 국적 상실이 가능함
 - 멕시코 또는 해외에서의 수감기록이 있거나, 현재 재판 소송 등에 걸려 있는 경우
 - 구비서류 불충족 시
 - 멕시코 외교부 심사 기준 불충족 시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2. 영주권 증명서



- 1) Espacio para el nombre del documento: 비자 종류 기재란
 - * NUE: 외국인 번호
 - * Nombre/Name: 성명
 - * Nacionalidad/Nationality: 국적 * Pais/Country: 국가명
 - * Fecha de Nacimiento/Date of Birth: 생년월일 * Sexo/Sex: 성별
 - * CURP: 멕시코 주민등록번호
- 2) Espacio que indica permiso o no de trabajo: 체류 허가종류 기재란
 - 영주권의 경우 별도 기재사항 없으며, 취업비자 등 단기체류비자만 기재됨
 - * Fecha de vencimiento/Date of expiration: 만료일
- 3) Espacio para leyendas: 특이사항
- 4) Espacio para Código OCR: OCR 코드

I. 영주권

1. 명칭

- 투자자 직종거주허가(Investor Occupation Permit)
- 전문직종사자 직종거주허가(Professional Occupation Permit)
- 자영업자 직종거주허가(Self-Employed Occupation Permit)
- 은퇴자 거주허가(Retired Non-Citizen Residence Permit)
- 직종거주허가(OP) 및 거주허가(RP) 보유자의 가족 거주허가(Dependents of an OP or RP holder Residence Permit)

2. 형태 : A4 정도 크기의 문서, 카드(흰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10년(갱신가능/Permanent Residence Permit)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공통) 영주권 신청시점 바로 앞에 3년 이상 직종거주허가(OP) 및 거주허가(RP)를 소유한 자
- (Investor) 회사의 각 주주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연이은 총매출이 4천5백만 루피를 초과한 자
- (Self-employed) 지난 3년간의 매년 연소득이 3백만 루피를 초과한자
- (Professional) 지난 3년간 매월 기본월급이 최소 15만 루피에 상당한 자

5. 수속절차

- 필요서류
 - 여권원본 및 여권정보지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여권사진 4매
 - 지난 10년간 범죄경력이 없는 범죄경력증명서
 - (투자자,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모리셔스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최근 3년간의 수입 증명서 제출
 - (은퇴자) 해외에서 모리셔스로 연간 \$40,000 상당의 금액을 매년 3년 동안 송금한 내역 서류 제출
 - 모리셔스 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건강진단증명서 및 흉부 X-ray 사진 제출
 - 수수료 1,000루피 및 발급비 75,000루피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모리셔스 정부에서 무효화할 경우(범죄자, Permit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 투자자, 자영업자, 은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총리실(Home Affairs Division), 4층, New Government Centre, Port Louis
- passport.govmu.org/English
- www.edbmmauritius.org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0년(갱신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제도가 필요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모리셔스 시민법(Mauritius Citizenship Act)에 의한 보호를 받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모리셔스 시민법(MAURITIUS CITIZENSHIP ACT, ACT 45 OF 1968 – 14 DECEMBER 1968)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지에 따른 국적취득
 - 1995년 10월 1일 이전 모리셔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부모 국적이 모리셔스거나 외국국적이어도 모리셔스 국적을 취득한다.
 - 1995년 10월 1일 이후 모리셔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의 국적이 모리셔스일 경우 모리셔스 국적을 취득한다.
- 혈통에 따른 국적취득
 - 모리셔스 영토 외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의 국적이 출생에 의해 모리셔스 인일 경우 모리셔스 국적을 취득한다.
- 입양에 따른 국적취득
 - 모리셔스 국적자가 아닌 미성년자(18세 이하)를 입양할 경우, 입양자 일방이 모리셔스 국적자이거나, 공동입양의 경우 남성 입양자가 모리셔스 국적자일 경우, 해당 입양아는 모리셔스 국적을 취득한다.
 - 입양은 모리셔스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모리셔스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등록(registration)
 - 모리셔스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취득신청 이전 4년 동안 모리셔스 내에서 모리셔스 국적자와 동거거주를 할 경우, 해당 외국인 배우자는 모리셔스 국적취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적상실조건

- 등록(registration) 또는 귀화를 통해 모리셔스 국적을 취득한 자는 모리셔스 내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동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 내무부 장관은 등록 또는 귀화를 통해 모리셔스 국적을 취득한 자 중,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자, 또는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제테러리스트용의자로 지목된 자, △국적 취득후 7년 이내에 어느 국가에서건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 내무부 장관은 성년의 등록 또는 귀화를 통해 모리셔스 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 외국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연속으로 정상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충족될 경우 해당자의 모리셔스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가 모리셔스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규정된 방식으로 모리셔스 영사관 또는 내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시, 모리셔스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IV. 영주권 견본


 Section 9B of the IMMIGRATION ACT ORIGINAL
 Republic of Mauritius
 Passport and Immigration Office No. [REDACTED]

**RESIDENCE PERMIT
for Retired Non-Citizens**

Ref No. [REDACTED] [REDACTED] 2018

Sir,

This is to certify that you, [REDACTED] nationality and holder of [REDACTED] issued in [REDACTED] on [REDACTED] have been authorised to stay in Mauritius as a **RETIRED NON-CITIZEN** until [REDACTED] provided that you are in possession of a valid travel document.

2. During your residency period you should have sufficient funds for your upkeep.
3. You are advised to inform this office one month prior to the expiry of your Occupation Permit, of your proposed date of departure.
4. If you intend to travel abroad during the validity of your Occupation Permit, you are advised to produce this letter to the Immigration Control Officer at the points of control in Mauritius in order to facilitate your immigration clearance.
5. This permit is valid subject to the conditions specified overleaf.


R. O. JEEWON, DS.
Passport and Immigration Officer

[REDACTED]

**REPUBLIC OF MAURITIUS
UID FOR NON-CITIZENS**

ID No. [REDACTED]

Surname [REDACTED]

Other Name [REDACTED]

DOB [REDACTED] Gender [REDACTED]

Nationality [REDACTED]

Profession [REDACTED]

Signature of Holder [REDACTED]


 Issued by [REDACTED]

몬테네그로

Montenegro

I. 영주권

1. 명칭 : Stalni boravak (stalno nastanjenje)

2. 형태 : ID 카드

3. 유효기간 : 5년마다 갱신 (4세 이하는 2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체류 허가를 득한 외국인으로서 몬테네그로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경우
 - 단, 상기 '연속 거주'의 의미는 5년의 기간 중 몬테네그로 국외 체류 기간이 1회당 6개월 이내, 총 국외 체류기간의 합계는 10개월 이내여야 함을 의미
 - 예외적으로 국가 이익이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5년 미만 거주 조건으로도 취득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몬테네그로 시민권자거나, 부모 모두가 영주권을 가진 경우, 편부 또는 편모가 영주권을 가진 경우

5. 수속절차

- 여권, 재정(소득)증명, 건강보험증명, 거주지증명 및 등의 요건을 구비한 후 관계기관에 직접 신청
 - ※ 기초적인 몬테네그로어 구사 능력 필요(별도 기관 의뢰 평가 실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범법행위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험이 있거나, 강제추방을 당하는 경우
-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
- 해외로 이주한 것이 확인되거나, 해외에 연속적으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 몬테네그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7. 부활제도 : 3년간 합법적으로 몬테네그로에 거주한 경우, 신청 절차를 거쳐 영주권 회복 가능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www.mup.gov.me

10. 기타사항

-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시 유학이나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받은 체류 기간은 1/2만 인정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교육, 복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한 법적지위 보유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혈통주의 및 제한된 속지주의, 국제 조약 및 협정에 허가된 국적 취득

- 근거법령 : 몬테네그로 국적법(Montenegrin citizenship act)
“official Gazette of Montenegro” No. 13/08
- 국적 취득 : 동 법령 Article 4. ~ 18.
- 국적 상실 : 동 법령 Article 19. ~ 25.

2. 국적취득조건 : 몬테네그로 국적은 부모 국적, 출생지역, 귀화 등에 의하여 취득 가능

- 부모 국적에 의한 취득 : 출생시 부모 양쪽이 몬테네그로 국민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몬테네그로 국민인 경우
 - 출생지에 의한 취득 : 몬테네그로 내에서 출생하고, 부모 또는 부모의 국적이 불명인 경우
 - 귀화에 의한 취득
 - 18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하고, 주소지 및 경제능력 보증, 납세 이행, 기초 몬테네그로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몬테네그로 국민과 혼인한 지 최소 3년 이상이며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몬테네그로계 이주민 또는 후손으로서 몬테네그로에 2년 이상 거주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 ※ 부모가 귀화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도 시민권 취득.

3. 국적상실조건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당사자의 국적상실 요청 시
- 복수국적 보유 시, 법률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 박탈
- 국제 조약에 의한 경우

4. 기타사항

- 국적을 포기 및 상실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 재취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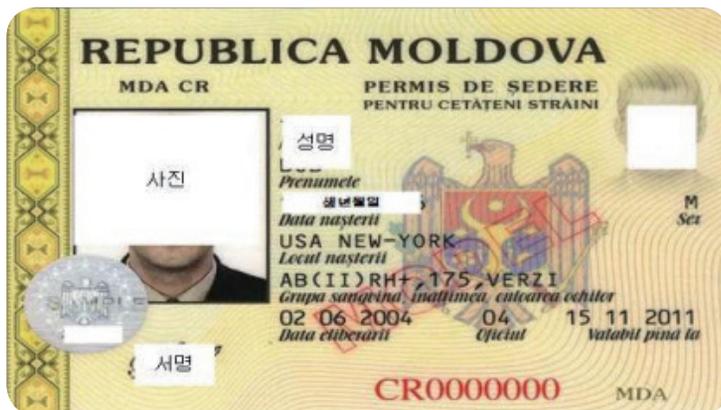
I. 영주권

1. 명칭 : Permission for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카드(노란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망명자 또는 난민을 제외한)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현지어를 구사하며 재정 능력이 있는 자
 -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로서 전문 기술자 및 능력을 갖춘 자
 - 가족이민에 따라 입국한 자
 - 몰도바 교육기관에 학업을 위해 입국한 자
 -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자
 - 투자자 1만-10만 달러(2년내), 10만-20만 달러(3년내), 25만 달러 이상(5년내)
5.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몰도바 국가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발급
 - 몰도바 국민의 자유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 영주권자가 외국인 및 무국적자 관련법을 어겼을 경우
 - 기타의 경우는 몰도바 법률에 따라
6.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mai.gov.md>(몰도바 내무부 이민국)

Ⅱ.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무기한(국적국 법에 따라)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자는 몰도바 국민과 유사

Ⅲ. 영주권 견본



미 국

United States of America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0년

-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취득한 조건부 영주권인 경우 2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등

-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연령, 혼인여부 무관), 부모

-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모든 연령)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약혼자의 자녀

- ※ 기타 예외적으로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혼인 21세 미만의 자녀, 혹은 부모로서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인 21세 미만의 자녀로서 미국 영주권자에 의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미국에서 태어난 외교관의 자녀

-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

○ 직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내 영구(풀타임) 고용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노동허가서와 I-140 양식(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을 접수,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을 함.
-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또는 기업가에게 주어지는 자격임.
- 특출한 기술(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스스로 영주권 청원 가능함.
- 특정 직업을 통한 영주권 : 미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이라크어 통역사로 일한 사람, 2003년 3월 20일 후로 미국 정부의 직원으로 또는 미국 정부를 위하여 1년 이상 일한 사람, 방송인, 국제기구종사자, NATO-6 비이민자와 가족, 보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여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의사(최소 5년 미국 내 의사가 없는 지역 또는 보훈청에서 일할 것을 약속해야함),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임.

○ 난민 또는 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으로 망명한 경우, 망명 지위를 얻은지 1년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함.
- 난민 또는 망명자의 가족으로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후 1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함(난민의 경우 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 요구되어짐).

5. 수속절차 :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수속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미국 이민 국적법상 237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가 추방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불법 입국 : (미국에 입국하기 전,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에 입국한지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의 미국으로 불법적인 입국을 알면서 도운 경우
- 위장 결혼 : 사기로 비자나 다른 서류를 취득해 미국에 체류하게 됐다고 여겨질 경우
- 범죄 경력 : 영주권자가 입국 후 5년 안에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부도덕한 범행에 대한 유죄판정을 받은 경우(아동학대, 스토킹, 가정 폭행 포함)

- 규제 물질 반입 : 입국 후 약물 남용, 중독자등 약물 반입을 시도한 경우, 규제 물질에 관련된 범행에 대한 유죄판정을 받은 경우
- 불법 무기 : 불법 무기 소지, 반입, 거래 등에 관련된 범행에 대한 유죄판정을 받은 경우
- 반역죄 :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반역죄, 국가기밀 유출죄, 국가안보위협죄에 대한 유죄판정을 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행위
- 임시여행이 아니고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 국외 체류 중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납세신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 라고 정의하는 행위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미국 이민국(USCIS, www.uscis.gov)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상 해외 거주 시 영주권이 파기될 수 있으므로 출국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함.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허가서를 미이민국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유효하나 재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미국 어느 주에서나 영구히 거주할 권리
-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할 권리
- 미국 연방 및 주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미얀마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영주권 증명서(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전문직인 외국인 및 과거 미얀마 국적자

- 과거 미얀마 국적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전 거주 비자 미 소유자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 전 과거 10년간 거주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미얀마에서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자
- 관련 사업 분야에 경력이 있으며 미얀마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미얀마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영주권 취득 후 관련 업종의 법률, 규칙, 지침 등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

나. 외국인 투자자 및 과거 미얀마 국적의 투자자

- 과거 미얀마 국적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전 거주 비자 미 소유자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간 거주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미얀마에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연속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투자하며 외국인투자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영주권 취득 후 관련 업종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
- 투자 규모에 상응한 사업 자금 보유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이나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후 있는 자
- 미얀마 국적자와 혼인관계를 최소 2년 지속한 자
- 영주권 취득 신청 중 취소되는 경우
 - 사망
 - 원국적의 국민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미얀마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미얀마 국적의 부모님이 자녀를 포기한 경우

다. 전문인 또는 투자자가 아닌 과거 미얀마 국적자

- 영주권 취득 전 미얀마 거주 비자 미 취득자
- 미얀마 국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
- 미얀마 거주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자 또는 거주에 필요한 생활비를 미얀마 거주 현지인이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회사를 운영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후 있는 자.

라. 미얀마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 미얀마 국적자와 결혼한 자 및 그들의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와 양자
- 과거 미얀마 국적자인 경우 거주 비자 미 취득자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간 거주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미얀마에서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연속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이나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

5. 수속절차

가. 영주권 신청서류

- 영주권 신청서(서식 : Ah Ma Na-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3장(1.5 × 2 inches)
- 유효한 여권 및 사본
- 신청자 국적 증명서
- 최소한 1년 이상의 채용 증명서 또는 추천서
- 전문 자격증 및 재직회사 또는 기관 등의 추천서

- 영주권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 가족 증명서
 - 가족 구성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서
 - 결혼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18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해당 정부에서 발급된 영문 출생증명서
 - 18세 이하의 양자가 있는 경우, 관련 정부에서 발급된 영문 입양증명서
- 미얀마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투자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및 회사 등록증명서
 - 사업계획서
 - 다른 국가에서 사업체를 운영했을 경우, 3년간의 회사 계좌 기록
- 기술 전문직이나 투자자가 아닌 과거 미얀마 국적자의 경우 동인에 대한 보증인 개인정보 및 추천서
- 미얀마 국적을 가진 사람과 특별 관계(결혼 등)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 미얀마 국적자가 작성한 외국인 영주권 신청서
 - 영주권 신청 외국인은 현재 미얀마 국적의 배우자 이외에는 다른 배우자가 없다는 영문 증빙서류

나. 발급 및 교부

- 영주권 신청인은 영주권 발급 승인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영주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 Ah Ma Na-2)
 - 유효한 여권 및 사본,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 증명서
- 영주권 발급 통지서 원본
- 영주권 신청인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나이, 직업 등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
 - 자녀의 출생증명서
 - 18세 미만의 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 영주권 발급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통보 60일 이내 영주권 증명서 발급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철회일로부터 120일 이내 해당 사유의 근거를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중앙이행위원회에서 국익을 위해 규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국가 정당에 참여 또는 기여하거나, 그 단체에서 활동했을 경우
- 반 인종적, 종교적 활동 조성 및 선동에 기여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영주권 신청서에 부정, 사기행위, 위조 또는 불법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미얀마 국적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얀마 국적자의 배우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 미얀마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18세 미만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미얀마 국적자가 국적을 상실 했을 경우
- 전문직 또는 투자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중앙이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업 직종을 변경했을 경우
- 영주권 만료 후 180일 이내에 영주권을 재등록하지 안한 경우
- 영주권 관련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영주권자 사망 또는 추방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인구부(<http://www.mip.gov.mm>)

10. 기타사항

- 미얀마 정부는 2014.11.18 영주권제도를 도입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5년 기간 동안 연속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사유서 제출 등 정부 허가 취득 필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실존법에 따라 본인 명의로 구입한 복합단지의 아파트(콘도미니엄)를 법률에 의거 매매처리 가능
-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영주권 취득자의 가족들을 거주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거주 비자가 없는 가까운 친척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자격 부여
- 영주권 만료 전까지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을 이용하여 복수로 미얀마 입출국 자격 부여
- 영주권 취득 후 90일 이내에 본인의 물품을 가져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면제
- 정부가 지정한 체류 제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영주권자에게 허용된 사업체 운영 자격 부여
- 미얀마 국적자와 동일하게 의료 혜택 자격 부여
- 교육부 규정에 따라 미얀마 학교에 등록 수학할 자격 부여

4. 기타사항

-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5년, 재신청 시 5년 연장 가능
- 영주권은 1년마다 확인 등록절차 필요, 만료일 60일 전 직접 신청
 - 영주권 확인 등록 신청서(Ah Ma Na-3)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주권 발급 통지서 원본 및 사본
 - 투자자의 경우 : 납세사실 증명서 및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수수료(연간)
- 최초 신청비 \$500(환불불가)
 - 외국인 : \$1,000
 - 미얀마 전 국적자 : \$500
 -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 \$300
 - 갱신기간 경과 30일 ~ 90일 과태료 : \$200
 - 갱신기간 경과 90일 ~ 180일 과태료 : \$500
 - 분실 재발급 : \$300

바베이도스

Barbados

I. 영주권

1. 명칭 : Status of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적법절차로 입국한 자
 - 이민자 자격(Status of immigrant)으로 5년 바베이도스에 거주한 자
 - 배우자가 바베이도스 출생 혹은 혈통을 이유로 바베이도스 국민인 자
 -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 중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및 △추방명령 후 바베이도스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
 - 출생증명서(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포함)
 - 결혼 증명서
 - 바베이도스 어머니와 바베이도스인이 아닌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신청자일 경우, 어머니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결혼 증명서
 - 건강 증명서
 - 범죄 경력 증명서

- 납세 증명서
- 여권 사진 4매
- 고용 확인서(letter of employment)
- 신청비용 BB\$ 300(약 150미불)
- 여권 사본(첫 장)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바베이도스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총리실 내 방위안보부, 바베이도스 이민국(Barbadps Immigration Department) (<http://www.immigration.gov.bb>)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여권에 찍힌 확인 도장으로 자유롭게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시민권자의 권리 및 복지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방글라데시

Bangladesh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
2. 형태 : 방글라데시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발행 공문서(증명서)
3. 유효기간 : 제한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방글라데시 산업/상업상 project에 미화 7만 5천불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는 투자외국인
5. 수속절차 : 내무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특정되어 있지 않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내무부, www.mha.gov.bd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이사항 없음

베네수엘라

Venezuela

I. 영주권

1. 명칭 : Visa de Residente
2. 형태 : 비자(여권에 도장)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짐
5. 수속절차
 - 3년 이상 거주 후 내무부 소속 이민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2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내외에서 범법행위로 영주권을 상실할 정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신청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7. 부활제도
 - 효력상실 후 재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영주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8.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베네수엘라 이민청(Saime), <http://www.saime.gob.ve/>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사회보장제도 가입 가능(의료보험 등)
 - 10년 이상 거주 시 지방선거 참정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됨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자
 -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베네수엘라 국적의 부 또는 모 아래 태어난 자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① 베네수엘라 내 10년 이상 연속 거주하여 귀화증을 취득한 자. 다만, 카리브 국가, 라틴아메리카, 포르투갈, 스페인 국적자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조건
 - ② 베네수엘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자
 - ③ 상기 1,2에 해당하는 외국국적자의 자녀 중 5년 이상 연속하여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고, 21세 이전 베네수엘라 국적을 선택한 경우
2. 국적취득조건 : 영주권 취득 후 10년 이상 거주 시 국적 신청 자격이 주어짐
3. 국적상실조건
 - 국내외에서 범법행위로 영주권을 상실할 정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신청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2. 영주권 증명서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Status

2. 형태 : 카드(종이)

3. 유효기간 : 10년(매 10년마다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청자격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에 공헌한 자 및 정부 훈포장 수여자
- 베트남에 임시 거주 중인 과학자 또는 전문가
- 베트남에 거주 중인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 2000년 이전부터 베트남에 임시 거주 중인 무국적자

○ 취득조건

- 베트남 내 합법적 거주지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수입이 있는 자
- 과학자 및 전문가의 경우 관계 장관, 기관장 등으로부터의 추천서
- 베트남 국민의 가족인 경우 3년 이상 베트남 거주

5. 수속절차

- 출입국관리국에 신청서 제출 → 공안부 장관 결정(최장 4개월 소요, 보완서류 심사 시 최대 2개월 추가 소요 가능) → 출입국관리국이 지역 관할 공안에 결과 통보 → 관할 공안이 신청자에 서면 통보 → 3개월 내 영주권 카드 수령

○ 필요서류

- 영주권 신청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한국), 대사관 공한, 여권 사본, 영주권 취득조건 입증서류, 베트남 가족 보증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당사항 없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영주권 카드 반납(영주 목적으로 출국 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https://xuatnhapcanh.gov.vn>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별도 제한 규정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베트남 국민과 동일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베트남 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베트남인으로서의 역량 보유

○ 베트남 전통 및 관습을 존중하고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

※ △베트남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베트남 조국 건설과 국방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베트남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의 경우 상기 2가지 요건만 필요

※ 일반인은 아래 3개 요건도 필요하며 원 국적도 포기하여야 함.

- ① 베트남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정도의 베트남에 대한 이해
- ② 국적 취득 신청 이전에 5년 이상 베트남에 거주
- ③ 베트남 내 생활 영위가 가능할 정도의 안정적 소득

3. 국적상실조건

- 베트남 국익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

IV. 영주권 견본

The image shows two pages of a Vietnamese Permanent Residence Card. The left page is the front side, and the right page is the back side containing important information.

Front Side (Left Page):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9811

Ảnh
Photo

**BẢN MẪU
SPECIMEN**

**THẺ THƯỜNG TRÚ
PERMANENT RESIDENCE CARD**

Họ (Name) _____
Số (No.) _____

Cấp an ninh/TP
Issued by the Public Security of Province/City on _____ cấp cho

Họ tên _____
Full name _____
Giới tính (Sex) nam (M) / nữ (F) []
Sinh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Date of birth (day, month, year) _____
Mang hộ chiếu của (Holding the passport of) _____

Số (Passport number) _____
Thường trú tại _____
Is permitted to reside permanently at _____

Cấp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Date of issue (day, month, year) _____
TRƯỞNG TRƯỞNG QUẢN LÝ ANH
Chief of Immigration Office

Back Side (Right Page):

NHỮNG ĐIỀU CẦN CHÚ Ý

1. Người mang thẻ này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Việt Nam.
2. Người mang thẻ này phải:
 - Xuất trình thẻ khi cần chức trách yêu cầu.
 - Bảo quản, giữ gìn thẻ cẩn thận.
 - Làm thủ tục xin cấp thẻ mới nếu có nhu cầu thay đổi nơi đăng ghi trong thẻ.
 - Có văn bản trình báo ngay với cơ quan cấp thẻ khi thẻ bị hư hỏng, mất lạc.
 - Dự kỳ 3 năm kể từ ngày cấp, trực tiếp đến cơ quan cấp thẻ để đổi thẻ mới.
3. Nghiêm cấm các hành vi: làm giả, tẩy xóa, sửa chữa, mua bán, cho người khác mượn và sử dụng thẻ.

IMPORTANT INFORMATION

1. The holder of this card does not require a Vietnamese visa.
2. The card holder must:
 - Show the card to the authorities on request.
 - Keep this card carefully.
 - Apply for a new card if any change or alteration of its particulars is required.
 - Immediately report in writing to the issuing office in case of damage or loss of the card.
 - Apply in person at the issuing office for a replacement of the card every three years since it is issued.
3. Any case of forgery, unofficial alteration, mutilation or sale of this card is strictly prohibited, as is its lending for unlawful use.

벨라루스

Belarus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виднажительство)

2. 형태 : 수첩식 여권형태(청록색 표지)

3. 유효기간

- 최초 발급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60세까지 5년 단위로 갱신
- 60세 이후에는 기간갱신 없이 100세까지 유효기간 부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벨라루스 국민과 혼인 또는 가까운 친인척인 경우
- 벨라루스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 가족 재결합의 권리가 있는 경우
- 벨라루스에 7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 과거 벨라루스 국적을 보유한 경우
- 벨라루스에 필요한 근로자이거나 전문가인 경우
- 특별한 재능 보유자, 벨라루스에 뛰어난 공적으로 기여한 자이거나,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벨라루스 투자사업에 150,000유로 이상을 투자한 경우
- 벨라루스 민족이거나, 과거 벨라루스에서 출생한 벨라루스인의 혈통을 이어 받은 직계 자손

- 상기 조항 외, 예외적으로 벨라루스 대통령의 동의하에 내각 결정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가능
- 5. 수속절차** : 신청자격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기관인 내무부 산하 이민국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취득
-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1년에 5회 이상 벨라루스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벨라루스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법률이 규정한 벌금을 기한내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받은 경우
 - 영주권 취득에 관한 근거가 소멸된 경우
 -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한 경우
 - 영주권자 부부 및 그의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동반 가족이 벨라루스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1년에 6개월 이상 없을 경우
 - 벨라루스 입국규제자 명단에 포함되거나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경우
 - 극단주의, 테러, 밀수, 마약, 무기밀매, 인신매매 등 국가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을 한 경우
 - 벨라루스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병에 걸린 경우
 - 벨라루스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파혼하거나 법적으로 결혼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영주권 취득에 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속였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강제 추방된 경우
- 7. 부활제도** : 원칙적으로 최초 영주권 취득 시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나, 영주권 상실사유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
- 8. 포기제도** : 특별한 제도는 없으며, 영주권자가 담당 기관에 포기 신청서 제출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벨라루스 내무부 이민국 (www.mvd.gov.by)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에 180일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소지자는 벨라루스 출·입국 시 별도의 비자 불요, 영주권을 여권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가 벨라루스 국민과 동일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
- 국적법(2002.8.1. 발효) : 벨라루스 국적 개념, 취득/유지/상실, 신청 절차, 관계 기관 권한 및 국적 관련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 규정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시 부모중 한 명이 벨라루스 국적자인 경우(출생지와 무관) 또는 부모가 벨라루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벨라루스에 상주하며 자녀를 출생한 경우
- 벨라루스에서 출생한 외국인 고아의 경우
- 18세 이상의 성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적 취득을 신청한 경우
 - 벨라루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의사소통 가능
 - 벨라루스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벨라루스에 지속 상주(벨라루스 외 국외거주 기간이 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지속 상주로 간주)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소득
 - 벨라루스 국적 취득과 동시에 원국적 포기, 단 원국적 포기를 개인이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벨라루스 정부에 의해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자가 '7년간 벨라루스에 지속적인 상주 조건'을 제외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7년 미만 영주권자일지라도 국적취득 신청 가능
 - 벨라루스 민족이거나, 과거 벨라루스에서 출생한 벨라루스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자손
 - 특별한 재능 보유자, 벨라루스에 뛰어난 공적으로 기여한 자이거나,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과거 벨라루스 국적 보유자
- 부모 사망, 친권 포기 또는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일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자발적 상실
 - 18세 이상 성인은 벨라루스 국적포기 신청 가능. 단,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자,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자 및 △타국적 미보유자 또는 취득이 불분명한 자는 불허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양 부모의 동의하에 국적상실 신청이 가능하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 미성년자 동의까지 필요
- 강제적 상실
 - 외국 군대, 경찰, 정보, 법률 및 기타 정부기관에 종사할 경우
 - 이중국적을 보유할 경우(이중국적 불허)
 - 국제협정에 따라 필요시 국적상실 결정
 - 국적 취득에 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속였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사항

- 벨라루스 국적법 사이트 참고
 - https://kodeksy-by.com/zakon_rb_o_grazhdanstve.htm

I. 영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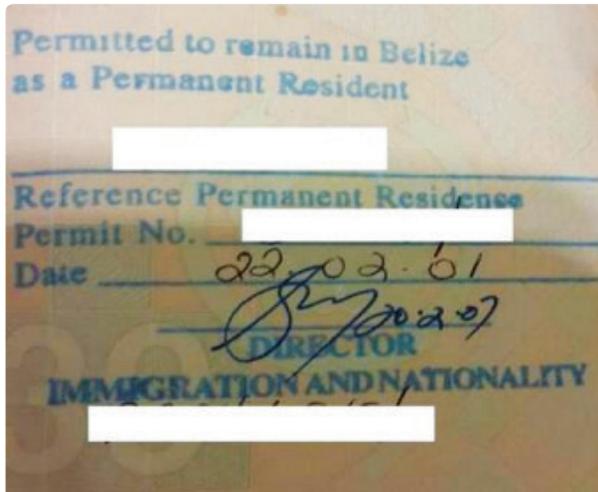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Status
2. 형태 : 소지 여권에 Permanent Resident Stamp 각인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단기체류자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14일 이상 국외 체류 시 불허)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벨리즈 경찰청 발행 무범죄경력 증명서(Belize Police Record),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 건강진단서(Certificate of Health, HIV & VDRL 비 보균자 증명 포함), 여권사진 3매,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은행잔고확인서(Local Bank Statement) 또는 재정상태 증명서, 노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 임시노동허가증(Temporary Employment Permit), 세금납부증명서(Income Tax Statement)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사기, 은닉, 실수, 허위진술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주권자가 벨리즈 국익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 범죄로 기소될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이민국에 반납사유를 작성한 서한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ity
+(501)822-3860/822-0739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동산, 부동산, 주식 취득 등 경제활동 허용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음

III . 영주권 견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Stalni boravak)
2. 형태 : 스티커(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무기한(여권 갱신 시 스티커 재발급)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 거주 허가 취득 후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 5년 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1회 6개월 이내, 총 10개월 이내인 경우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
 - 단, EU 블루카드 소지자는 5년 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1회 12개월 이내, 총 18개월 이내인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생활능력이 있는 자
 - 의료보험 가입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용어 및 공용문자 중 하나의 구사·해독 가능자
 - 미취학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초·중·고 또는 대학 교육 이수자, 60세 이상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자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Service for Foreigners' Affairs)에 영주권 발급 신청
- 최종 영주권 부여 여부는 안보부(Ministry of Security)가 결정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권 포기를 신청한 경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공공질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법질서 위반 및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 불법 입국, 체류, 출국에 관련되거나 인신매매에 관여한 경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입국, 체류할 목적으로만 결혼, 입양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의해 결정된 경우
- 체류허가 신청 시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 위조된 여권을 사용한 경우
- 영주권자의 존재가 법질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재한 경우
 - 1년 미만 국외체재한 경우라도 제반 정황상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된 경우 영주권 효력상실 가능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영주권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http://www.sps.gov.ba>)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내

-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제한 경우 영주권 효력 상실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또는 영리활동이 가능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법(Law on Citizenship of Bosnia and Herzegovina)에서 국적의 취득, 취득조건, 상실조건 등 국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율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1국가 2체제(보·헤연방 및 스르프스카 공화국)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보·헤 연방 시민 및 스르프스카 공화국 시민 모두 보·헤 국적을 보유하며, 어느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시민권을 변경하더라도 보·헤 국적 보유에는 이상이 없음.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은 △혈통, △보·헤 영토 내에서 출생(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무국적자만 해당되며, 외국인의 자녀는 불포함), △입양, △귀화, △국제조약에 의거해 취득 가능

2. 국적취득조건

- 18세 이상인 자
- 국적 신청일 현재 최소 3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하면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한 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용 언어 중 하나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추방을 당하고 추방조치의 효력이 종료된 자
- 국적 신청일로부터 8년 이내에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 국적 신청일 현재 혹은 국적 취득 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명 필요
 - 단, 해당국이 국적포기를 허용하지 않거나 제반 상황 상 국적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형사절차의 대상이 아닌 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
- 생활능력이 있는 자
- 납세의 의무를 다한 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헌법 및 법질서 준수 서약서에 서명 한 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시민권 취득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자

3. 국적상실조건

-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상대국간 양자협정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한 경우 예외
- 본인의 자발적인 국적 포기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공식적인 국적 취소 처분
- 국제조약에 의한 국적 상실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볼리비아

Bolivi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cia Definitiva (과거에는 Residencia Permanente 또는 Radicatoia Definitiva)

2. 형태 : 스티커 부착식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 명기하지 않음

※ 볼리비아의 경우 영구 영주권 외 임시체류증에도 Permanencia Definitiva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바, 임시체류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소 3년 볼리비아에서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 대상

※ 영주권 소유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최소 3년 체류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

※ 3년 체류기간에는 취업 또는 가족동반 등의 사유로 인한 체류만 포함되며, 학업/건강상의 이유/인도적인 사유 등의 체류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5. 수속절차

○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함.

– 유효한 여권(원본 및 사본)

– 유효한 외국인 신분증(실물 및 사본)

–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 FELCC와 FELCN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는 제외)

– REJAP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는 제외)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인터폴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는 제외)
- 볼리비아 내 활동(취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능력증빙서류(은행잔고 최근 3개월, 근로계약서 등)
- 사진(4x4, 흰색바탕)
- 기타 체류조건에 따라 이민청 등에서 요청하는 서류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이민청에 해외체류 신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국외 체류 시 효력 상실
- 사기 또는 허위행위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주권 취득 목적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방을 당할 경우
- 볼리비아 법 730의 26조 상의 금지행위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 2년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 시 2년을 초과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이민청에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볼리비아 이민청 www.migracion.gov.bo

10. 기타사항

-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영주권 취득 불가능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2년

- 이민청에 해외체류 신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국외 체류 시 효력 상실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4. 기타사항

- 과거에는 2년 임시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규정이 변경되어 3년 임시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 제141-제143조제141조[국적취득], 제142조[귀화], 제143조[이중국적]

2. 국적취득조건 : 볼리비아 출생 또는 귀화(귀화 시 최소 체류조건 충족 필요), 부모 중 1인이 볼리비아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귀화 시 최소 체류조건 : 3년(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년)

- ① 볼리비아 국적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 ② 볼리비아에서 군 복무를 수행한 경우
- ③ 볼리비아에 기여하여 의회로부터 볼리비아 국적취득을 인정받은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없음

- ※ 볼리비아 법령에는 국적상실 또는 포기 관련 조항이 없음 (아울러, 볼리비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할 의무도 없음.)

북마케도니아

Republic of North Macedoni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만 5세부터 27세까지 : 5년
 - 만 27세 이후 : 10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북마케도니아 내 최소 5년 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국제보호(International Protection) 하에 북마케도니아 내 최소 5년 간 체류한 자
 - 영주권 소지자와 혼인 또는 가족관계(부양가족 포함)가 성립되는 자로서, 북마케도니아 내 최소 5년 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
 - 허가의 경우, 신청서 접수 기준 약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범죄 행위로 인해 최소 1년의 금고형의 최종 판결을 받은 자, 또는 국가 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영주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기입한 자

- 내무부의 허가 없이 북마케도니아 영토 밖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자
- 국제보호(International Protection)가 종료된 자
- 강제 추방 또는 입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기관명 : 내무부 이민국 (Directorate “Migration”, Ministry of Interior)
- 주소 : 9, Dimche Mirchev, Skopje, North Macedonia
- 전화번호 : +389 2 311 7222
- 홈페이지 : <http://www.mvr.gov.mk/>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일 경우 내무부로부터 별도의 국외체제 허가 필요

2. 재입국 허가제도 : 별도의 비자 없이 북마케도니아 출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북마케도니아 국민과 동일한 권리 보장 (선거권, 피선거권 제외)
-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북마케도니아 거주 가능
- 취업, 직업교육, 학업 등
- 사회 보장 등 납세자로서의 혜택 등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ЗАКОН ЗА ДРЖАВЈАНСТВО НА РЕПУБЛИКА МАКЕДОНИЈА
(Law on Citizenship of Republic of North Macedonia)

2. 국적취득조건

- 혈통 : 부모 중 최소 1명이 북마케도니아 국적인 자
- 출생 : 북마케도니아에서 출생했으며, 부모가 불분명하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 일반귀화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
 - 영주권을 소지한 자로 최소 8년간 북마케도니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거지 및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 수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
 - 법에 의한 기소 또는 최소 1년 형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자
 - 기존 시민권 보유 국가 및 북마케도니아 내에서 진행 중인 형사 소송 대상이 아닌 자
 - 북마케도니아 언어를 완전히 숙달한 자 (정부의 관련 위원회 심사에 의해 결정)
 - 북마케도니아 정부로부터 체류 금지 관련 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
 -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
 - 북마케도니아의 충실한(Loyal) 시민권자가 되겠다고 서약한 자
 - 기 보유 국적을 포기한 자 또는 북마케도니아 시민권 취득시 기 보유 국적을 포기할 것을 증명한 자 (외국국적포기서약 등)
- ※ 예외
 - 북마케도니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3년이 경과하고 1년 간 계속 북마케도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북마케도니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8년이 경과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북마케도니아와 강력하고 효과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없음

IV. 영주권 건본

1. 영주권 카드



전면

불가리아

Bulgari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① 불가리아 혈통의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② 영주권 소지자와 혼인관계 성립 이후 5년 경과한 자로서, 불가리아 내 최소 5년 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③ 영주권 소지자인 외국인 또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의 비혼인 미성년 자녀
 - ④ 불가리아 시민권자의 부모로, 3년 간 불가리아 영토 내에서 합법적,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
 - ⑤ 지난 5년 간 합법적, 연속적으로 불가리아에 거주한 자로, 해당 기간 동안 불가리아 국외에서 체류 기간 총 30개월을 넘기지 않은 자
 - ⑥ 100만 레바(약 5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한 자 또는 상당의 자산을 매입한 자
 - ⑦ 합법적인 신용 기관과의 신탁 계약(5년 이상)으로 100만 레바(약 50만 유로) 상당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자
 - ⑧ 불가리아 비상장기업 자본에 600만 레바(약 300만 유로)이상 금액을 예치한 자
 - ⑨ 불가리아 혈통은 아니나, 불가리아에서 출생한 자로, 해외 거주로 인해 불가리아 국적 상실 또는 국적 포기를 행사한 자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⑩ 1998년 12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불가리아에 거주중이거나, 출생한 자로 부모가 불가리아 시민권자와 혼인한 자
- ⑪ 불가리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지난 5년간 불가리아에 계속 거주한 자
- ⑫ 1998년 12월 28일 이전에 입국하여 불가리아에 거주하며, 불가리아 영토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출생한 자로 구(舊) 소비에트 연방 시민권자가 아닌 자
- ⑬ 투자진흥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로부터 인증 받은 자
- ⑭ 사회보장기관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불가리아 시민권자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미성년자
- ⑮ 사회보장기관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불가리아 거주 외국인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미성년자
- ⑯ 불가리아 기업 자본에 50만 레바(약 25만 유로)를 투자하여, 사업체의 동업자 또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50만 레바(약 25만 유로) 이상의 유무형 고정자산을 획득하고, 최소 10개의 현지인 고용 창출, 법무부 인가를 받은 자
- ⑰ 투자 목적으로 장기 거주허가(Long Term Permit)를 받은 자로, 5년 간 투자를 지속 유지해온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영주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자
- 신청자격 ②의 경우, 영주권 승인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 혼인관계가 파기된 자
- 영주권 승인 후 1년 내에 불가리아에 거주정착하지 않은 자
- 유럽연합 회원국 외의 지역에서 연속 12개월 체류한 자
- 망명·난민법에 의거, 난민, 인도주의적 지원, 일시 보호 대상 등이 될 경우

- 망명·난민법에 의거, 망명한 자
- 불가리아 시민권자와의 혼인관계에 근거,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승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혼인관계가 파기된 자
- 불가리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영주권을 소지했으나, 2년 이상 불가리아 영토 내에 체류하지 않은 자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입국 거부 조치를 받은 자 중, 해당국과의 협의 후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불가리아 영토 외에서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불가리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영주권을 소지한 자 제외)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기관명 : 내무부 이민국 (Directorate “Migration”, Ministry of Interior)
- 주소 : 48, “Maria Luiza” blvd, Sofia, Bulgaria
- 전화번호 : +359 2 982 4585
- 홈페이지 : <http://www.mvr.bg>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효력상실 사유 참고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별도의 허가없이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불가리아 법과 비준된 국제 조약(Ratified International Treaty) 등에 의거 불가리아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 보장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ЗАКОН ЗА БЪЛГАРСКОТО ГРАЖДАНСТВО
(Law on Bulgarian Citizenship)

2. 국적취득조건

- 혈통 : 부모 중 최소 1명이 불가리아 국적인 자
 - 출생 : 불가리아에서 출생했으며, 어떤 국적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일반귀화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
 - 최소 5년 간 영주권 또는 장기거주 허가를 받은 자
 - 범죄 행위로 인해 불가리아 정부로부터 기소 또는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자
 - 수입 또는 직업 등 자기부양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교육부에 의해 불가리아 언어 능력이 증명된 자
- ※ 불가리아 국적취득 시,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기 소지하고 있는 국적 상실
- 불가리아 시민권자의 배우자
 -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의 국적을 보유한 자
 - 불가리아와 호혜주의 성립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

3. 국적상실조건

- 국가에 중대한 범죄 행동을 한 것으로 선고받은 후, 무국적자가 아닌 상태로 국외에 거주하는 자
- 한 사람의 국적 상실은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브라질

Brazil

I. 영주권

1. 명칭 : 외국인신분증(Cedula de Identida de Estrangeiro)에 PERMANENTE (영주)로 표시

※ 일반적으로 RNE(Registro Nacional de Estrangeiros ; National Registry of Foreigners)로 부르는 경우도 많음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최장 9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족 초청 : 브라질인 또는 브라질 영주권자의 가족
 - 배우자(비공식의 사실상 배우자 포함, 동성 배우자도 포함)
 - 자녀 : 18세 미만, 24세 미만 학생, 부양할 능력이 없고 특별보호가 필요한 자녀(연령제한 무)
 - 부모 :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모, 브라질 아이를 결정적으로 부양하는 부모
 - 형제자매, 손자, 증손자 : 미혼이며 고아로 브라질인 또는 브라질 영주권자의 법적인 보호하에 있으며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로 18세 미만자, 24세 미만의 학생,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은퇴자 이민 : 월 연금소득이 6,000 헤알 이상(은퇴자 본인 및 부양인 2명에 대한 영주권 발급)인 자, 추가 부양인 1인당 월 2,000헤알의 연금소득 추가

- 종교, 사회단체 지도자 : 종교나 사회복지단체 지도자
- 투자이민 : 15만헤알 이상 투자자
- 기업임원 : 1인당 60만 헤알 이상의 외국자본이 투자되어 있거나 또는 최소 15만 헤알 이상을 투자하고 2년 이내 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할 것을 확약한 회사에 파견 되는 임원
- 전문가이민 : 과학자나 전문가에 대한 브라질 기관의 초청

5. 수속절차

- 투자, 기업임원 및 전문가 이민 : 브라질내 초청 회사나 회사의 대리인이 브라질 노동 고용부에 '노동허가' 신청
 - 노동허가후 해외 주재 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
 - 입국 후 30일 이내 연방경찰에 등록
- 가족초청, 은퇴자 및 종교, 사회단체 지도자 이민 : 해외 주재 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
 - 입국 후 30일 이내 연방경찰에 등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24개월을 연속하여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무효됨

7. 부활제도 : 부활제도는 없으나, 상실 시 재신청이 가능함. 외국인신분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 시 과징금이 부과됨

8. 포기제도 : 본인이 원할 경우 연방경찰에 영주권 반납이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브라질 연방경찰(Polícia Federal : www.dpf.gov.br)

10. 기타사항 :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는 외국인신분증 갱신의무를 면제함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여권과 영주권 소지로 자유로이 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공직 입후보, 공직선거 시 투표권, 공무원 응시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영업활동, 교육 및 의료혜택을 누림

III. 영주권 견본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PR)

2. 형태 : Entry Permit (수첩 형태)

※ Entry Permit 발급 후 영주권자 IC 신분증(플라스틱 카드) 별도 신청 및 발급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브루나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혼인, 입양 등 가족 관계 및 조상의 브루나이 혈통과 관련된 신청자격 (11개 항목)

○ 브루나이 국적자 및 영주권자와 연고가 없는 외국인의 신청자격 (2개 항목)

– 브루나이의 경제, 개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으로 브루나이 이슬람계 은행 계좌에 50만 브루나이달러를 예치한 경우 (통상 본인 사업체 보유 · 운영 필요)

– 기술자, 의사, 법률가 등 전문가 직종의 외국인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경제 등에 기여한 외국인 및 전문가 직종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는 특별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브루나이에 대한 기여도, 브루나이의 전문가 수요, 브루나이 체류 기간 등을 종합 심사

5. **수속절차** : 영주권 신청 의향서 제출, 인터뷰 실시, 서류(양식)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관계기관 검증 및 추천, 심사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Chop(브루나이 정부가 여권에 날인하는 스탬프)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으로 처리
8. **포기제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Ministry of Home Affairs (<http://www.immigration.gov.bn>)
10. **기타사항**
 - 브루나이 정부는 2013년 영주권 신청 접수 중단 이후 2018년 재개
 - 브루나이 국적자 및 영주권자와 연고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브루나이 국적자 및 영주권자와 연고가 없는 우리 국민 신청자 중 영주권을 받은 국민은 아직 없음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Chop 유효기간 내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Entry Permit 유효기간 중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정부 · 공공기관 취업 가능, 연금 수급, 의료비 · 교육비 할인 등
 - ※ 부동산 소유는 할 수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Brunei Nationality Act

2. 국적취득조건

- 브루나이에서 출생한 성년의 경우 신청일 직전 15년 기간 내 총 합산 12년 이상 브루나이에 거주하고 신청일 직전 2년 동안 브루나이에서 거주해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니고 말레이어 시험을 통과할 것
 - 브루나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직전 25년 기간 내 총 합산 20년 이상 브루나이에서 거주하고 신청일 직전 2년 동안 브루나이에서 거주해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니고 브루나이에서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없고 말레이어 시험을 통과할 것
 - 브루나이 국적 남성과 혼인한 외국 국적 여성의 경우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하고, 신청 시점에 브루나이 국적 남성과의 혼인이 중단되거나 브루나이 국적이 아닌 남성과 혼인하고 있지 않을 것
- ※ 실질적으로 브루나이 국적 신청은 브루나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함

3. 국적상실조건

- 5년간 브루나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브루나이와 실질적인 연계성이 없는 경우,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브루나이 국적 또는 외국 국적 중 택일), 국적 포기를 선언한 경우 등

IV. 영주권 견본

1. Entry Permit



2. 영주권자 IC 신분증



사모아

Independent State of Samo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스티커
3. 유효기간 : 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범법사실이 없는 선량한 성품의 건강한 사람의 직업, 전문 기술, 사모아어 구사능력, 사모아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5. 수속절차 : 외국 주재 사모아공관 (뉴질랜드의 경우, 웰링턴에 소재)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모아 이민사무소로 문의 후 신청 가능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사모아 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사모아 이민사무소(Immigration Division)
 - 주소 : Po BoX L 1861, Apia, Samoa
 - 전화 : (685)20291/20292
 - 이메일 : immigration@samoa.ws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자는 사모아를 주 거주지로 해야 하며, 매년 6개월 이상 사모아에 거주하여야 함

I. 영주권

1. 명칭 : Adeia Metanastevsis(Immigration Permit)
2. 형태 : 카드형식 (과거, 단순 도장 또는 EU 국민은 노란색, 제 3국민은 분홍색 A4 종이로 발급)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2016년 외국인 및 이주 관련 규정 6(2)조에 의거 사이프러스는 다음의 범주에 한하여 이주허가(영주권)를 부여할 수 있음.

○ 범주 1

- 사이프러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은행잔고증명서(최소 30,000유로 이상, 최소 3년 이상 예치 가능 명시, 해외계좌에서 사이프러스 계좌로 입금 증명) 제출이 가능한 자

○ 범주 2

-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본인 연간 소득을 최소 30,000유로 확보한 자. 부양가족 동반 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1인당 최소 5,000 유로를, 부모의 경우 1인당 8,000유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 해외계좌에서 사이프러스 계좌로 입금된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금, 주식배당, 임대료 수익 등이 해당

○ **범주 3**

- 사이프러스 지적과(Department of Lands and Surveys)에서 발급한 부동산 권리증서(최소 300,000유로, VAT 제외) 또는 부동산 매입증명서(최소 200,000유로, VAT 제외) 제출이 가능한 자. 부동산 거래는 해외계좌에서 사이프러스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상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 이민자는 주택 2채(아파트, 단독주택)까지 매입이 가능함. 단 동일 부동산 업체로부터 주택 2채를 매입해야 하며, 최초로 판매되는 부동산이어야 함

5. 수속절차

- 신청자는 이주허가 신청서(MIP1)를 작성하여 내무부 산하登記 및 이민 관리국(Civil Registry and Migration Department)에 직접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범주에 따라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함. 내무부 사무차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내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최소 2년 이상 연속 부재 시 영주권 상실**7. 부활제도 : 효력 상실 시 재신청 가능****8. 포기제도 : 당국에 권리포기 단순 서면 신고****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登記 및 이민관리국(Civil Registry and Migration Department, www.moi.gov.cy)****II . 영주권자****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미만****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자국에 영구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간주하고 있어 자국민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은 없고 개인적 보험가입을 요구함**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외국인 및 이민법 (소위, Chapter 105)
- 법률 2/1972, 개정법 (법률 54/1976, 50/1988, 197/1989, 100/1996, 43/1997, 14/1998, 22/2001, 164,2001, 88/2002, 66/2003, 178/2004, 8/2007, 184/2007, 29/2009, 143/2009, 153/2011, 41/2012, 100/2012, 117/2012, 32/2013, 49/2013, 88/2014, 129/2014, 17/2015)

2. 국적취득조건

- 귀화
 - 국적신청 전 최근 7년간 지속적이고 합법적인 체류를 했을 때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 국적취득신청서, 수수료,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2매, 출입국 증명서, 체류허가증 사본, 출생증명서, 국적취득의향서 현지신문에 이를 연속 게재, 범죄경력증명서
- 투자
 - 부동산(200만 유로) 매입, 기업 투자(200만 유로), AIF 또는 금융자산 등 대체 투자 펀드(200만 유로) 매입. 상기 투자의 조합.
- 절차
 - 내무부 산하登記 및 이민관리국에 신청 및 검토됨.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취득이 거짓증빙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음이 판명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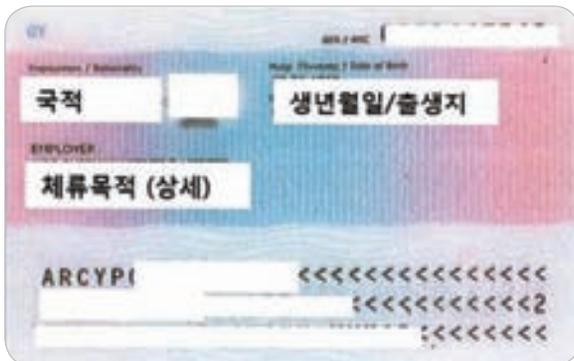
4. 기타사항 : 사이프러스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이므로, 현지 국적 취득 시 한국여권의 반납을 요구하지 않음. 반면에 국적취득 이전에 발행된 기타 체류 허가증은 취소를 위해 반납됨.

사이프러스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고대로부터 잦은 외세의 침입과 식민화 (그리스, 로마, 오스만투르크, 영국)를 겪은 역사적 배경을 갖는 바, 인구는 다

수의 그리스인계 사이프러스인들과 소수의 터키계 사이프러스인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등 극소수의 타민족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인해 국토의 37%가 점령된 상황 하에서 사이프러스 정부는 섬 전체를 자국 영토의 국제법상(UN & EU) 인정 확보에 주력해왔음. 그러므로 북부 점령지역은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터키군대의 불법점령으로 인해 국가의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바, 사이프러스 공화국은 북사이프러스에 존재하는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한 입국은 불법으로 간주하며 그 경우 자국의 영유권이 무시되었다고 여겨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바, 사이프러스에서의 거주, 영주, 또는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이에겐 각별한 유의가 요망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세르비아

Republic of Serbia

I. 영주권

1. 명칭 : Stalni boravak (stalno nastanjenje)
2. 형태 : 영주권 수첩 및 여권부착용 스티커
3. 유효기간 : 5년 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체류 허가를 득한 외국인으로서 세르비아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경우
 - 단, 상기 '연속 거주'의 의미는 5년의 기간 중 세르비아 국외 체류 기간이 1회 당 6개월 이내, 총 국외 체류기간의 합계는 10개월 이내여야 함을 의미
 - 세르비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임시체류 허가를 득한 상태로 최소 3년 이상 세르비아에 거주한 경우
 - 임시체류 허가를 득한 미성년자로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르비아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 세르비아 내에서 출생한 경우
 - 여타 임시체류 허가를 득한 외국인 중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세르비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 수속절차

- 여권, 재정(소득)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세르비아 내 등록 주소지, 출생 증명서, 학력증명서, 검진기록, (혼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사진 2장 등 구비서류와 함께 내무부 관할 부서에 직접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공공 질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거나, 세르비아 국가 및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보호 조치로서 퇴거 처분을 받거나 안보상의 조치로서 추방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
- 해외로 이주한 것이 확인되거나, 해외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7. 부활제도

- 세르비아에서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 임시체류허가를 3년간 연속으로 유지하면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www.mup.gov.rs

10. 기타사항

- 유학 목적의 임시체류 허가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유학 목적 체류 기간은 2분의 1만 인정)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님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혈통주의 원칙(제한된 속지주의 채택), 허가에 의한 국적 취득
 - 근거법령 : 세르비아 국적법(Law on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Serbia)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 No. 135/04, 일부 개정 No. 90/07
 - 국적 취득 : 동 법령 Article 6. ~ 26.
 - 국적 상실 : 동 법령 Article 27. ~ 37.

2. 국적취득조건

- 세르비아 국적은 부모 국적, 출생지역, 허가 등에 의하여 취득 가능
- 부모 국적에 따른 취득 : 출생시 부모 양쪽이 세르비아 국민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르비아 국민인 경우
- 출생지에 의한 취득 : 세르비아 내에서 출생하고, 부모 또는 부모의 국적이 불명인 경우

○ 허가에 의한 취득

- 세르비아 영주권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경제능력 및 외국 국적 포기 의사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허가에 의해 국적 취득 가능
- 외국인이면서 세르비아 국민 또는 영주권 취득자와 최소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자는 국적 취득 가능
- 세르비아계 이주민 또는 그 후손으로서 18세 이상 경제능력이 있는 자는 국적 취득 가능
 - ※ 부모가 허가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18세 이하 자녀도 시민권 취득.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상실(release of citizenship)
 - 18세 이상의 병역, 납세 등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외국 국적 취득자
- 국적이탈(renunciation of citizenship)
 -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거주한 25세 이전의 타국적 보유 세르비아 국적자
- 국제 조약에 의한 경우

4. 기타사항

- 국적을 포기 및 상실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적 재취득 가능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수첩



2. 영주권 스티커(여권 부착용)



세인트루시아

Saint Luci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y
2. 형태 : Certificate of residential status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취득 후 적어도 1년 계속하여 세인트루시아에 거주해야함)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 후, 다음 서류와 함께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에 제출
 - 세인트루시아 세관 확인증
 - 범죄 경력 증명서
 - 결혼 증명서 원본(이혼한 경우, 이혼 증명서 원본)
 - 여권용 사진 4매(사진 뒤 이름기재 요망)
 - 출생등록증 원본/사본
 -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인지(EC\$ 11.50, 약 4.3미불) 부착
 - 신청 접수 후, Certificate 비용 EC\$ 2,550(약 945미불) 지불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부정 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
- 거짓 증명서 제출
- 세인트루시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별도의 공지 없이 해외거주가 길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포기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ttp://homeaffairs.govt.lc>)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취득 후 이민국에서 여권에 확인 도장을 받은 뒤에는 Certificate를 소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부동산 매매 가능
-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 국가 보험 시스템 등록 가능
- 근로의 자유 보장

Ⅲ. 영주권 견본



Certificate of Residential Status

NAME:
 DATE OF BIRTH:
 COUNTRY OF BIRTH:
 NATIONALITY:
 PRESENT ADDRESS:
 PASSPORT NO.: DATE OF ISSUE: 1 2005
 MARITAL STATUS: **Married**
 Temporary residence for
 from **August 12, 2010** to **August 12, 2012**
 Permanent residence effective
 has been granted to
 in the State of Saint Lucia.



사진



서명
Permanent Secretary,
Home Affairs.

NOTE: This certificate along with passport must be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Police Headquarters, Castries.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실정법 위반 경력이 없는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와 함께 Citizenship, Residency and Work Permit Dependent에 제출
 - 여권 사진 2장
 - 최근 6개월간 거주 국가 범죄 경력 증명서
 - 은행잔고 확인서
 - 건강 증명서
 - 신청 수수료 EC\$ 150(약 56미불), 매년 영주 비용 EC\$ 2,400(약 889미불)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국가 재량에 따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Citizenship, Residency and Work Permit Department
(<http://www.pmoffice.gov.vc>)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기간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여권에 찍힌 영주허가 확인 도장이 있으면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권 및 근로권

수리남

Republic of Suriname

I. 영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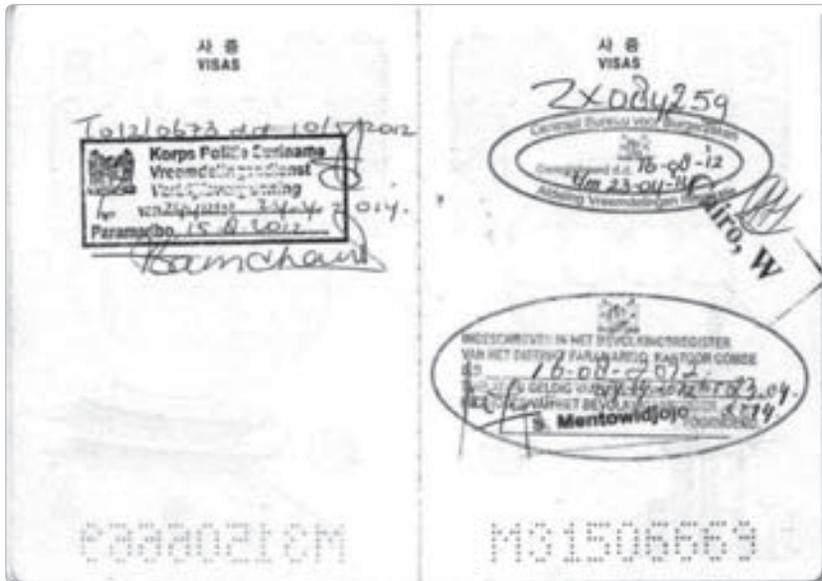
1. 명칭 : De Rresidnete Van de Republiek Surinam
2. 형태 : 비자(여권에 도장)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장기체류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거주한 자
 - 일정한 수입으로 수리남 생활이 보장되는 자
5. 수속절차 : Consulaire Zaken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6개월 이상 해외거주 시 및 범법행위 시
7. 부활제도 : 처음 신청 시와 동일 절차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 Consulaire Zaken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1개월 이상 체류 시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만 제한됨

Ⅲ.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uppehållstillstånd
2. 형태 : VISA(카드형)
3. 유효기간 : 5년 단위로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거주허가를 받은 후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5. 수속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시 생활능력, 범법이력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 발급 결정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신분증 위조 또는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 중요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및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민국이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취소여부 결정
7. 부활제도 :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민국에서 개별 사안 검토
8. 포기제도 :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민국에서 개별 사안 검토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www.migrationsverket.se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스웨덴 거주기간 동안 별도 허가절차 없이 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고, 일부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제한되며, 군인 등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음.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동등한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을 누림.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 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시 신청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외국국적 취득 계획 입증 서류 제출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취득시 스웨덴 국적 포기 가능
4. 기타사항 : 이중국적 허용(단, 타국 거주 이중국적자는 스웨덴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음)

스위스

Switzerland

I. 영주권

1. 명칭 : 영) C-Permit, 독) Niederlassungsbewilligung(C), 불) autorisation d'tablissement(C)
2. 형태 : 수첩(황색), 카드(분홍 바탕, 가운데 청색띠)
 - 수첩 : EU/EFTA 국민
 - 카드 : 非EU/EFTA 국민
3. 유효기간 :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거주 기간, 내국인 혼인여부 등
 - 거주 기간
 - 5년 이상 거주 : EU/EFTA 국민
 - 10년 이상 거주 : 非EU/EFTA 국민
 - ※ 미국 및 캐나다 국민은 별도 규정
 - 내국인과 혼인
 - 스위스 거주 : 혼인일로부터 5년 이후
 - 국외 거주 : 혼인일로부터 6년 이후
5. 수속절차 : 거주등록지 관할 이민청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징계
 - 허위정보 제공 및 중대 사실 누락 또는 은폐한 자
 - 징역형 및 형사상 중형 징계(구금 및 보호입원조치 포함)를 받은 자
 - 국내외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자
- 기타
 - 15년 미만 체류자가 지속적으로 한도 이상의 사회복지 수급을 요구할 경우

7. 부활제도 : 가능

- 영주권 효력상실 및 취소사유에 따라 회복 절차(재판 포함)는 구분하여 적용

8. 포기제도 : 국외이주 시 자진통보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스위스연방 이민청 및 거주등록지 관할 이민청

- www.sem.admin.ch/sem/en/home.html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이하 : 신고 없이 해외체재 가능
- 6개월 이상 : 관할 이민청에 영주권 유지허가 신청(최대 4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별도 규정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 등 일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부여

2. 영주권 증명서



스페인

Spain

I. 영주권

1. 명칭 : 장기 거주증(Residencia de larga duración)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혹은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EU 회원국 국적자의 가족이 아닌 자
 - 스페인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자
 - 스페인 또는 이전 거주국에서 스페인 법령에 명시된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스페인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자 혹은 스페인과 입국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은 자
 - 자의에 의한 본국 귀환 시 정해진 스페인 재입국 금지 기간 내에 있지 않은 자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 스페인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단, 5년간 스페인 출국 기간이 총 10개월(업무상 출국의 경우 1년)을 넘지 않고 1회 출국 시 연속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가능)
 - EU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EU 내 5년 연속 거주하되, 거주증 신청 직전 2년간 스페인에 2년 연속 거주한 자(단, 5년간 EU 출국 기간이 총 18개월을 넘지 않고 1회 출국 시 연속 국외 체류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가능)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로 본인 불입에 의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로 본인 불입에 의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
- 스페인에서 출생한 거주자로서 성년이 되어 거주증 신청 직전 최소 3년 연속 스페인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태생적 스페인 국민(부모 중 1명이 스페인 국적자인 자, 스페인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자, 부모 중 1명이 스페인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국적지로부터 국적을 부여 받지 못한 자 등)으로서 스페인 국적을 상실한 자
- 성년이 된 시점에 스페인 공공기관의 보호 하에 있되, 거주증 신청 직전 5년 연속 스페인에 거주한 자
-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무국적자, 망명자 등의 지위를 스페인에서 인정받은 자
- 스페인 경제, 과학, 문화 발전 또는 스페인의 대외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 (이 경우, 내무부 확인을 거쳐 거주증 발급처는 고용노동부가 됨)

5. 수속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이민청 경찰서에 신청(서류 제출/거주증 카드 발급/거주증 수령 등을 위해 총 3번 방문 필요)

※ 구비서류는 스페인어 혹은 관할지의 공용어로 번역 및 아포스티유 혹은 공증 필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증을 취득하거나 법에 의해 추방되는 경우
- 연속 12개월 이상 EU 이외 국가에 체류한 경우 (공익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비정부 기구, 재단, 협회에서 파견되어 연구 혹은 공익 발전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원조를 목적으로 해외에 단기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
- 다른 EU 국가의 EU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다른 EU 국가의 국제 보호를 받는 자로 인해 거주증을 취득한 경우, 관계 국가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거나 갱신 거부 혹은 취소가 되었을 경우

7. 부활제도 : 효력이 상실된 영주권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주권 부활 가능

-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혹은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EU 회원국 국적자의 가족이 아닌 자
- 스페인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자
-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자
- 스페인 또는 이전 거주국에서 스페인 법령에 명시된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스페인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자 혹은 스페인과 입국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은 자
- 2005년 국제 보건규칙에 따라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자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 의사를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민청에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관할 이민청 혹은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http://extranjeros.mitramiss.gob.es/es/InformacionInteres/InformacionProcedimientos/Ciudadanosnocomunitarios/hoja046/index.html>)

10. 기타사항 :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신청 필요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스페인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 향유(단, 지방선거의 경우 스페인과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예외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인정)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스페인 헌법 제1장 제11조는 스페인 국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스페인 국적은 제정된 법령에 의해 취득, 보유, 상실된다.
 - ‘선천적 스페인 국민’은 누구든지 그 국적을 박탈당할 수 없다.
 - 정부는 이베로아메리카(중남미) 국가 및 스페인과 특별히 연관된 국가와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 국가들에서 자국민에게 이와 같은 상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국민은 출신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스페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선천적 스페인 국민(스페인 민법 제1편 제1장 제17조) : a)부(父)또는 모(母)가 스페인 국민인 자 b)외국인인 부모로부터 스페인에서 출생하였으나, 부(父) 또는 모(母)가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스페인 주재 외교관 자녀 제외) c)외국인인 부모로부터 스페인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국가 법률이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자 d)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이에 따라 스페인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스페인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2. 국적취득조건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 국적 신청 직전 10년 연속 합법적으로 스페인에 체류한 자(단,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 자는 5년, 이베로아메리카 국가/안도라/필리핀/적도기니/포르투갈 국민 또는 세파르디(스페인 태생 유대인)는 2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의무 체류 기간 단축 가능)
-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거주 충족시 국적 취득 가능
 -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 스페인 국적자가 친권 행사자일 경우, 부모가 스페인 출생이며 스페인 국적을 가지는 경우, 가족관계 혹은 출생 확인을 만 18세 이후 하는 경우(확인을 마친 후로부터 2년 동안 신청 가능), 만 18세 이후 스페인 국적자로

부터 입양 되는 경우(공식 입양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 가능)

- 스페인 기관 혹은 후견인으로부터 2년간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
- 스페인 시민과 혼인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스페인 배우자의 미망인(배우자 사망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스페인 국적자의 조부모를 둔 해외 출생 스페인 국적자인 부모로부터 해외 출생한 자

- 스페인 정부가 왕령을 통해 예외적 상황임을 인정한 자
- 선천적 스페인 국민인 자(부모 중 1명이 스페인 국적자인 자, 스페인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자, 부모 중 1명이 스페인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스페인 주재 외교관 자녀 제외),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국적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자,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스페인 출생자 등)
- 실제 스페인 국적자는 아니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페인 관청 등록 사실(출생신고 등)을 바탕으로 스페인 국적을 10년간 향유한 자
- 스페인 국적자의 친권 하에 있는 자 또는 스페인에서 출생하고 부모 중 1명이 스페인 국적자인 자

3. 국적상실조건

- 외국에 거주 중인 성인으로서 자의로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단, 이베로아메리카 국가/안도라/필리핀/적도기니/포르투갈 국적 취득자에 한해 3년 이내 스페인 국적 유지 의사를 밝힐 경우 제외)
- 외국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3년간 성인이 되기 전 가지고 있던 국적만을 사용한 경우(단, 이베로아메리카 국가/안도라/필리핀/적도기니/포르투갈 국적 취득자에 한해 3년 이내 스페인 국적 유지 의사를 밝힐 경우 제외)
-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국민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스페인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해외 출생 스페인 국적 부모를 둔 스페인 국민으로서 성인이 된 이후 3년간 스페인 국적 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이 10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 스페인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의해 국적 상실
 - 스페인 국적 취득 시 포기한 국적을 스페인 국적 취득 후 3년간 사용한 경우
 - 스페인 정부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입대하거나 정치적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스페인 국적 취득 시 서류 위조 등 기망 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IV. 영주권 건본

1. 영주권 카드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I. 영주권

1. 명칭

- 5년 영구체류
- 무기한 영구체류
- 장기체류(무기한)

2. 형태 : 카드(적색, 청색이 포함된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5년 또는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영구체류
 - 슬로바키아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 피부양 친족
 - 슬로바키아 국민의 배우자인 제3국인의 보호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 5년 영구체류허가를 취득한 제3국인의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5년 영구체류허가를 취득한 제3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 영구체류허가를 취득한 제3국인의 자로서, 장기간의 건강상 이유로 자립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 슬로바키아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 무기한 영구체류
 - 5년 영구체류허가를 최소한 4년간 유지한 자
 - 무기한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제3국인의 18세 미만의 자녀

- 장기체류(무기한)
 - 슬로바키아 영토내 체류가 신청 전까지 5년간 계속적이고 적법하게 체류한 자
 - 장기체류 신청 전까지 유럽연합의 회원국,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당사자인 회원국 및 스위스 연방에서 블루카드 소지자로서 5년간 계속 적법하게 체류를 한 자
 - 슬로바키아에서 블루카드 소지자로서 최소 2년간 체류한 자

5. 수속절차

- 5년 영구체류
 - 접수처 : 대표부 또는 외국인 경찰서
 - 필요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진 2매(3X3.5cm), 체류목적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거주증명서
 -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 무기한 영구체류
 - 접수처 : 외국인 경찰서
 - 필요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진 2매(3X3.5cm), 은행잔고 증명서, 건강보험, 범죄경력증명서(무기한 영구체류를 소지한 제3국인의 14세 이상 18세미만의 자녀에 한함), 거주증명서, 지속적 체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확인서
 -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 장기체류(무기한)
 - 접수처 : 외국인 경찰서
 - 필요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유효한 여권, 사진 2매(3X3.5cm), 은행잔고 증명서, 거주증명서, 건강보험
 -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5년 영구체류 및 무기한 영구체류
 - 영구체류허가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슬로바키아 영토 내로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본인이 경찰에 체류의 종료에 관하여 고지하는 경우
 - 5년 영구체류기간이 만료하고, 무기한 영구체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추방형을 받거나 추방된 경우
 -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경찰이 영구체류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장기체류(무기한)
 - 본인이 장기체류를 포기한 경우
 - 추방형을 받거나 추방된 경우
 - 슬로바키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경찰이 장기체류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다른 회원국(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당사자인 회원국 및 스위스연방)에서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

7. 부활제도 :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영주권 만료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외국인 경찰서, www.minv.sk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5년 영구체류 및 무기한 영구체류 : 경찰에 고지 없이 180일 이상 해외에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취소
- 장기체류(무기한) :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취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사회복지, 의료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슬로바키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부여(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선거권 및 피선거권부여)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슬로바키아 국적법(40/1993)

2. 국적취득조건

- 슬로바키아 국적자의 자녀인 경우(최소한 부모 중 1명이 슬로바키아 국적자)
- 무국적자의 자녀가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출생한 경우
- 부모가 혈통주의 국적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자녀가 슬로바키아에서 출생하는 경우
- 귀화한 경우
 -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슬로바키아에서 8년 연속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 시점에 영주권이 유효한 상태여야 함. 8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슬로바키아 국적자와 혼인하여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경우
 - 경제,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슬로바키아 공익에 기여한 경우
 - 18세 이전에 최소 3년 이상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 전과가 없고 EU 국가에서 기소되어 재판 중이지 않아야 함.
- 슬로바키아로 망명했을 경우, 관련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망명 허가가 취소되지 않아야 함.
- 슬로바키아어를 구사(말하기, 글쓰기)할 수 있어야 하고, 슬로바키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함.

3. 국적상실조건

- o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적상실이 불가함.
 -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슬로바키아 법원에서 처벌받는 경우
 - 슬로바키아 내 사회보장 및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출생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하지 않음.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 o 5년 영구체류



○ 무기한 영구체류



○ 장기체류(무기한)



슬로베니아

Republic of Slovenia

I. 영주권

1. 명칭 : Dovoljenje za Stalno Prebivališče (Permanent Resident Permit)
2. 형태 : 카드 (2012년까지 책자 또는 스티커 형태였으나, 2013년 5월 8일 이후 모두 카드 형태로 변경됨)
3. 유효기간 : 무기한 (카드는 10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슬로베니아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자 (5년 중 슬로베니아에서의 부재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 미만이거나, 총합 10개월 미만인 경우도 신청 조건 충족함.) 단, 학업이나 직업 훈련의 이유로 슬로베니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는 총 체류 기간 중 반만 인정됨
 - 슬로베니아 후손인 경우
 - 슬로베니아 정부기관에 의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자
 - 슬로베니아 영주권자였다가 다른 EU 국가로 이동하여 영주권이 소멸된 자
 - 슬로베니아 영주권자였다가 다른 EU 국가에서 장기체류허가를 받아서 영주권이 소멸된 자
 - 슬로베니아 시민권자 또는 EEA(유럽경제공동체) 국민과 결혼한 경우
 - 난민 또는 슬로베니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2년 이상 슬로베니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EU Blue Card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 전 2년 간 슬로베니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였고 다른 EU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을 합하여 총 5년 이상인 경우

5. 수속절차 : 각 지방 행정기관 (Upravna enota)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직업, 유학, 치료목적이 아닌 이유로 1년 이상 슬로베니아 및 EU 지역을 떠나있을 경우
- 영주권자가 6년 이상 슬로베니아 및 EU 지역을 떠나있을 경우, 3개월 미만 임시 귀국의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음
- 타 EU 국가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을 경우

7. 부활제도

- 전 영주권 소지자였으나, 타국으로 이주하거나 슬로베니아 또는 EU 밖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이 소멸된 외국인
- 전 영주권 소지자였으나, 타국으로 이주하거나 슬로베니아 또는 EU 밖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이 소멸된 외국인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행정을 맡은 각 지방행정기관 (upravna enota)
- 슬로베니아 내무부 홈페이지 : www.mnz.gov.si
- 슬로베니아 내무부가 외국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
- www.infotujci.si (임시거주, 영주권 및 귀화에 관한 신청서 등 각종 정보)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내
 단, 직업 또는 학업과 치료 목적일 때는 1년 이상 체류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단, 영주거주 주소(permanent address)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짐.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슬로베니아 시민권에 관한 법(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Slovenia Act)』
2. 국적취득조건
 -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슬로베니아 국적인 자의 자녀
 - 18세 이상인 자
 - 슬로베니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과거 5년 연속으로 슬로베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수입을 보장받는 자
 - 슬로베니아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자(기본 언어능력 증빙 가능한 자)
 - 3개월 이상 구금되지 아니한 자 또는 1년 이상 실형을 살지 않은 자
 - 세금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
 - 슬로베니아 공공안전에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자
 -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슬로베니아 헌법에 준법정신을 갖춘 자

3. 국적상실조건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슬로베니아 헌법에 위배되는 조직 내 활동에 가담한 자
- 외국 정보조직원으로 활동하거나, 외국 정부 및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슬로베니아 권익에 해를 끼치는 자
- 슬로베니아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행한 자
- 행정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공공질서를 해친 범법자
- 슬로베니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IV. 영주권 견본

※ EU 모든 국가가 아래와 같이 카드형 비자를 발급하며 사용언어와 국기를 상징하는 문장만 다르며 입력내용과 순서는 동일함

1. 영주권 카드



I. 영주권

1. 명칭 : Blue I/C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없음

- 단,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허가를 득해야 Blue I/C 유효하며, 재입국허가를 득하지 않고 싱가포르 외 거주 시 효력 상실
- 재입국허가 기간은 기본 5년 (경우에 따라 1년만 연장될 수 있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A.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 배우자
- B. 시민권자의 노부모
- C. 취업 비자 소지자 (Employment Pass / S pass 소지자)
- D. 유학생
- E. 투자자

5. 수속절차

- A,B,C,D 조건자는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E 조건자는 이민국이 아닌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에서 신청(<http://www.contactsingapore.sg/GIP>)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출국 후 재입국허가 연장을 안 한 경우, 법 위반 또는 국가명예 훼손자

7. 부활제도 : 상실 후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본인의사에 따라 영주권 포기 가능

- 단, 영주권 포기 후 다른 장기체류비자 신청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A,B,C,D 자격자 : 이민국(<http://www.ica.gov.sg>)
- E 자격자 : 경제개발청(<http://www.contactsingapore.sg/GIP>)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재입국허가 기간(5년)

-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이전까지는 제3국에 체류하고 싱가포르로 귀국할 수 있음
-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제3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체류하는 대사관 또는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상기 신청자격의 A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21세 미만 남자인 영주권자는 병역 의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출국허가를 받아야 함
 - 13세~16.5세 병역의무자 대상자
 - *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2년 미만일 경우 출국허가서 작성하여 신청
 - * 해외체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출국허가서와 75,000 싱가포르 귀국보증금 납부
 - 16.5세 이상으로 미입영자인 경우
 - *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출국허가서와 75,000 싱가포르 귀국보증금 납부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없음
- A에 해당하는 신청자격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21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
- CPF(연금, 의료보험 (Medisave, Medishield) 및 주택기금) 의무가입
- 일반체류자에 비해 국, 공립학교 입학 및 학비 면에서 혜택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 안함
- 21세 미만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나 21세가 되는 해에 타국적 포기 및 싱가포르 시민권자로서의 충성서약을 해야 함.

2. 국적취득조건

-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된 21세 이상의 성인
-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혼인관계 2년 이상 유지한 자
- 국외 출생자로 부모 중 한 명이 싱가포르 국적인 자녀
- 가족 모두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자녀 동시 신청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21세 이전에 복수국적자로서 21세가 되는 해에 타국적 포기와 싱가포르 충성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 21세 이후에 타국적을 취득한 자
- 귀화신청 시 서류 위조 및 은닉/은폐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착오에 의해 귀화신청이 허가된 경우
- 싱가포르에 대해 불충 또는 불만의 행동/언행을 하는 귀화자
- 싱가포르 전쟁 당시 반역 행위를 했던 귀화자
- 귀화 후 5년 이내 1년 이상 징역 또는 S\$5,000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귀화자
- 공공의 안전 및 평화 질서를 위해한 귀화자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Blue I/C)



I. 영주권

1. 명칭 : 장기거주비자(Long-term Residence Visas)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5년 또는 10년 (자동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0년 유효 비자
 - 공공 투자(△투자기금 조성, △신규 회사 설립, △기존 회사 지분 취득 등) 1천만 디르함(약 272만 불) 이상인 투자자
 -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UAE 내 유효한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UAE 정부 인증을 받은 과학자, 예술가, 발명가, △특허 또는 유력 일간지에 출간된 과학 연구물 소지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소유자 및 학술 권위자, △일정 기준에 합치하는 의사 및 전문가 등)
 - 5년 유효 비자
 - UAE 내 부동산에 500만 디르함(약 136만 불) 이상 투자한 사람
 - 50만 디르함(약 14만 불) 이상 가치의 사업을 보유하거나, UAE 내 벤처기업 육성시설의 승인을 받은 사업가
 - 공립 및 사립 중등학교에서 최소 95% 이상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UAE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 당시 GPA가 최소 3.75이상인 자
5. 수속절차 : 연방 신원 및 시민청(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and Citizenship, ICA)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

-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당사항 없음
-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연방 신원 및 시민청(ICA), smartservices.ica.gov.ae
- 10. 기타사항 : 2018.11월 UAE 내각은 5년 또는 10년 유효한 장기 거주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Cabinet Resolution No. 56 of 2018)하였음.
 - 2019.5월 유효기간이 없는 특별 영주권(Gold Card)이 최초로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아랍에미리트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으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음.

II. 영주권자

-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이내
-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비자 스폰서(신원보증인) 없이 UAE 내 체류 가능하며, UAE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100% 소유권 보장
- 4. 기타사항 : 현재 영주권(장기거주비자)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권리 및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III. 국적제도

-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1972년 국적과 여권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 17 of 1972 on Nationality and Passports) - 법, 시민권,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2. 국적취득조건
 - 법에 의한 국적 취득

- 1925년 이전부터 1972년 연방법 발효 시까지 UAE 내 체류한 자
 - 아버지가 UAE 국적자인 자로서 UAE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자
 - 아버지가 불분명하고, 어머니가 UAE 국적자인 자로서 UAE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자
 - 아버지가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UAE 국적자인 자로서 UAE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자
 - UAE에서 출생하였고, 부모가 명확하지 않은 자
- 시민권에 의한 국적 취득
- UAE 국적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으로서 자녀 출산 및 국적 신청 후 7년이 경과한 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오만, 카타르, 바레인 출신 아랍인으로 UAE에 지속적, 합법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소득이 건전하고 평판이 좋으며, 명예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은 사람
 - UAE 이웃국가 출신의 아랍민족 구성원인 난민으로,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UAE 내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완전한 법적 능력을 향유하는 아랍인으로 UAE 내 지속적, 합법적으로 7년 이상 체류한 자 중 소득이 건전하고 평판이 좋으며, 부도덕·부정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 완전한 법적 능력을 향유하고 1940년 이전부터 UAE에 지속적, 합법적으로 체류하여 1972년 연방법 발효 이전 거주권을 갖고 있던 자 중 소득이 건전하고 평판이 좋으며, 부도덕·부정 관련 범죄경력이 없고 아랍어에 능통한 사람
 - 완전한 법적 능력을 향유하고 1972년 연방법 발효 이후의 20년을 포함하여 UAE에 30년 이상 지속적,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중 소득이 건전하고 평판이 좋으며, 부도덕·부정 관련 범죄경력이 없고 아랍어에 능통한 사람
 -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UAE에 특출한 기여를 한 자

- 외국인 아버지와 UAE 국적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지 6년이 경과한 자(동 6년간 어머니의 UAE 국적이 유지되어야 하며, 귀화 신청 당시의 행정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 외국인 아버지와 UAE 국적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외국인과 결혼한 자(귀화 신청 당시의 행정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
 - * 귀화에 의해 UAE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여성 배우자는 자신의 출신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됨.
 - * 귀화에 의해 UAE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미성년 자녀도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성년이 되는 해에 출생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

○ 기타

- UAE 대통령은 UAE 체류 기간 또는 법에서 정한 여타 조건과 관계없이 특정인에게 법에 의한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할 수 있고, 또는 귀화에 의한 국적을 부여할 수 있음.
- 위 국적 취득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국적을 포기할 것, △아랍어에 능통할 것, △소득이 건전할 것, △교육 조건을 충족할 것, △평판이 좋을 것, △부도덕·부정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신원검증을 통과할 것, △UAE에 충성을 맹세할 것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의 종류(법, 시민권, 귀화 등)에 관계없는 국적 상실 조건
 - 대테러법에 규정된 테러 행위를 범한 경우
 - UAE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행하여 연방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경우 및 UAE 법률상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경우 UAE 정부 허가 없이 외국 군대에 가담하여 동 군대를 떠날 것을 명령받았으나 거절한 경우
 - 적대적인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
 - 외국으로 귀화한 경우

○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 경우에도 국적이 상실됨.

- 부도덕·부정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경우
- 국적 취득 신청 근거에 위변조 및 거짓 정보가 포함된 경우
- 타국에서 시민권을 행사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여성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국적도 자동 상실됨.

4. 기타사항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법에 의한 국적자에게만 부여됨. 법에 의한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UAE 국적을 상실한 경우(이중국적 불허),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UAE 국적 회복 가능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 일반 비자와 동일한 형태



아르메니아 공화국

Republic of Armenia

I. 영주권

1. 명칭 : 상시거주허가증
2. 형태 : 카드형
3. 유효기간 : 5년(5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형, 10년(10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형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80일 이상 체류 예정 외국인
5. 수속절차 : 경찰 여권비자국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반국가 행위, 테러, 추방 또는 강제퇴거, 마약중독자 및 AIDS 보균자 등
7. 부활제도 : 신청절차에 따라 재취득
8. 포기제도 : 발급기관에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아르메니아공화국 경찰 여권비자국 홈페이지(인터넷 신청불가)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별도 명시 기간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무비자로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노동 가능, 자유로운 입출국, 사회기초보장

아르헨티나

Argentina

I. 영주권

1. 명칭 :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2. 형태 : 카드형(2012년 4월 20일 국립주민등록법, 제797법)

3. 유효기간

- 영구영주권 : 유효기간 없음(단, 10년마다 카드 갱신)
- 임시영주권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
- 단기체류권 : 3개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취업 이민 : 이민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등록이 되어있는 국내 사업체(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국외소득 생활자이민 : 매월 최소 AR\$30,000 이상의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국내체류비(직계가족 부양 생활비 포함)를 충당할 수 있는 자(국외 소득액의 출처증명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반입사실증명서 제출필)
- 연금/퇴직금 수령자 이민 : 정기적으로 연금 혹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연금/퇴직금 수령자(정부 혹은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수령액과 수령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필)

- 투자 이민 : 최소 AR\$1,500,000 이상의 사업자본을 국내에 투자한 자(투자 계획서 및 자금출처증명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반입사실증명서 제출필)
- 연구원 및 전문인력 : 과학, 기술, 연구 또는 자문 활동을 목적으로 국내 관련 분야에 고용된 자 또는 임원, 기술자, 사무직원 등으로 내외국법인체의 국내지사에 발령된 자(고용기관은 이민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예체능 특기자 : 이민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등록이 되어있는 국내 단체 및 관련분야에 예체능 특기자로 계약된 자
- 종교 이민 : 정부 인허가 종교집단에서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등의 자격으로 목회 또는 선교활동 종사자
 - ※ 영주권 수속 수수료 면제
- 환자 :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
- 학술교육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고용 교육기관은 이민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유학 이민 : 이민청에 등록된 교육부 인가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정규 과정(교환학생 과정 포함)을 이수중인 자(만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부 또는 모,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동반 출석하여 신청)
- 망명/난민 이민
 - 망명자 : 망명 확인 기관이 발행한 망명사실증명서 제출
 - 난민자 : 난민을 위한 국가위원회에서 발급한 난민증명서 제출
 - ※ 영주권 수속 수수료 면제
- 가족 이민 : 단기영주권을 가진 자의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의 미혼자녀 혹은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단기영주권을 가진 자가 만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부 또는 모,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동반 출석하여 신청)
 - ※ 취득 조건

- 아르헨티나 국적 혹은 영구영주권을 가진 자의 배우자, 부모, 만18세 미만의 미혼자녀 혹은 만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난민 포함)
- 임시영주권 취득 후 3년 연속 거주한 자(난민 포함)
- 외교관, 영사직, 국제기구 직원으로 3년 연속 근무한 자

5. 수속절차

- 기본제출서류
 - 입국도장이 날인된 유효한 여권
 -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아르헨티나 거주증명서
 - 사진 1장(4x4)
 - 최근 3년 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만16세 이상에 한함)
 - 아르헨티나 범죄경력증명서(만16세 이상에 한함)
 - 발급 수수료 AR\$ 6,100
 - ※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민 신청자 본인과 초청인이 이민청에 직접 영주권 수속 가능. 또한 이민청에서 관리하는 영주권 수속 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속 가능.
- 모든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혹은 발급국가 주재 아르헨티나대사관의 영사확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외국어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르헨티나 공인번역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공인번역사협회의 공증필.
-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서류 접수 후 30~60일 경과하면 거주지 주소로 발급된 카드형 영주권이 발송됨.
- 임시영주권 최초 취득 후 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 신청시 제출 서류는 최초 취득시 제출한 서류와 다를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연장 수수료(AR\$ 6,000) 납부 필.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임시영주권자 또는 단기체류허가증 소지자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갱신 등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영구/임시영주권자 또는 단기체류허가증 소지자가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국외 체재할 경우
- 아르헨티나 사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효력 상실된 영주권에 대한 별도의 부활제도는 없으며, 신규 신청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름

7.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아르헨티나 이민청, Direccion Nacional de Migraciones / www.migraciones.gov.ar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구영주권자 : 최대 2년
- 임시영주권자/단기체류허가자 : 부여된 체류허가 기간의 최대 1/2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한 영주권/단기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출입국이 자유로움
- 아르헨티나 사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소 5년 동안 재입국 불허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이란 신분으로 인해 교육기관(공립, 사립, 국립, 주립, 시립,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판, 사회구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음

○ 외국인들은 국가선거(대통령, 부대통령,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없으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부에노스 아이레스시 포함), 까따마르까주, 미시오네스주, 네우켄주 및 산타페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지사 선거, 시장선거 및 시의원선거에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음.(의무사항 아님)

※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 거주하는 영구영주권자인 경우 선거인등록사무소(<http://www.buenosaires.gov.ar/tramites/empadronamiento-de-extranjeros>)에 사전 등록하여야만 지자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Ⅲ. 영주권 건본

1. 영주권 카드



아이슬란드

Iceland

I. 영주권

1. 명칭 : 영구 거주허가증(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분홍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카드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이전 4년 간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소지하고 아이슬란드에 거주하였으며, 영주권 신청시점에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소지한 자
 - * 영주권 취득의 조건이 되는 거주허가는 전문직 종사(Work requiring expert knowledge), 가족이주(Family reunification) 등으로 제한됨
 -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아이슬란드어 학습과정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수속절차 : 아이슬란드 이민국에 구비서류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자국에서 병역의무 이행, 해외 근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18개월을 초과하여 외국에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유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외국에 영주거주 하는 경우, 이민국에 반납할 수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아이슬란드 이민국(www.utl.is)

10. 기타사항 : 영주권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격 및 취득조건이 강화되는 추세임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8개월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상시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사회보장(의료보험, 무료교육, 연금 등) 혜택 부여

I. 영주권

1. 명칭

- 유한영주권(Without Condition As To Time Endorsements)
- 무한영주권(Without Condition Endorsement)
- 장기거주권(Long Term Residency)

2. 형태

- 유한영주권 : 스탬프(여권에 날인, STAMP5)와 거주허가카드로 구성
 - STAMP 5 내용 : “THE HOLDER OF THIS PASSPORT IS PERMITTED TO REMAIN IN IRELAND WITHOUT CONDITION AS TO TIME”
 - 거주허가카드(Irish Residence Permit)를 수령해야 함
- 무한영주권 : 스탬프(STAMP6)를 여권에 날인
- 장기거주권 : 스탬프(여권에 날인, STAMP4 or STAMP3)와 카드로 구성

3. 유효기간

- 유한영주권 : 여권 만료일까지(여권교체 시 재발급 신청 필요)
- 무한영주권 : 무기한(단, 여권교체 시 재발급 신청 필요)
- 장기거주권 : 5년(단, 1, 2년 단위로 허가)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유한영주권 : 아일랜드 내 적법하게 총 9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 STAMP2(일반학생), STAMP2A(단기학생), STAMP4(거주) 중 임시방문의사 또는 주재원직원, STAMP1A(회계사 연수체류), STAMP3(조건거주) 중 주재원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
 - ※ STAMP4(거주자격) 소지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만 신청 가능
- 무한영주권 : 아일랜드 국적인(아일랜드 여권 소지자 또는 발급 대상인 자)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
 - ※ 아일랜드 국적 취득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
- 장기거주권 : △취업 자격(work permit/work authorisation/working visa)로 아일랜드 내에서 적법하게 60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STAMP1” 또는 “STAMP4” 소지자 해당, △취업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STAMP3”)으로 아일랜드 내에서 적법하게 60개월 이상 거주한 자, △아일랜드인과 혼인한자, EEA국민, EEA국민과 혼인한 자, 학생(“STAMP2”, “STAMP2A”), 워킹홀리데이, 주재원직원, 주재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대사관 직원, 창업자격거주자, 난민 및 난민가족은 신청 불가

5. **수속절차** : 아일랜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산하 이민국(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단 무한영주권은 승인을 위한 인터뷰 약속만으로 신청 가능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유한영주권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범죄 행위자나 아일랜드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 무한영주권 : 간첩활동 등으로 아일랜드의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 장기거주권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90일 이상 제3국 체재 등 해외거주로 판명되는 경우, △범죄행위자나 아일랜드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7. 부활제도

- 유한영주권 : 무한영주권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간주
- 무한영주권 : 별무
- 장기거주권 : 별무

8. 포기제도

- 유한영주권 : 별무
- 무한영주권 : 복무국적 불허 국가의 국적 취득을 위해 아일랜드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포기 가능
- 장기거주권 : 별무(장기거주권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간주)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아일랜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산하 이민국(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 이민국 홈페이지(www.inis.gov.ie)

10. 기타사항

- 기존 GNIB(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 Card)카드가 2017년 12월 11일부터 IRP(Irish Residence Permit) 카드로 변경(혜택, 자격 등은 동일)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유한영주권 : 유효기간 내 기간에 관계없이 제3국 체재 가능
- 무한영주권 : 기간에 관계없이 제3국 체재 가능
- 장기거주권 : 90일 이내 제3국 체재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한영주권/장기거주권 : 재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도 유효한 IRP/GNIB 카드를 소지할 경우 재입국 비자 신청 불요(IRP/GNIB 카드와 여권으로 충분), 단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비자 필수 국가 국민은 국외에서 비자 신청 필요
- 무한영주권 : STAMP6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비아일랜드여권으로 여행 후 귀국시 재입국 허가 신청 가능(등기 신청)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유한영주권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 취업허가(Employment Permit) 없이도 취업 및 창업 가능, 참정권은 없으며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 무한영주권 : 여타 아일랜드 국적자와 동일
- 장기거주권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 취업허가(Employment Permit)갱신 없이도 취업 및 창업 가능(단, 배우자 또는 자녀“STAMP3”는 취업허가 필요), 참정권은 없으며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4. 기타사항 : 2019년 5월 13일부터 재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도 유효한 IRP/GNIB 카드를 소지할 경우 재입국 비자 신청 불요(IRP/GNIB 카드와 여권으로 충분)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아일랜드 국적 및 시민권 법 1956(Irish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56)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혈통, 입양 등에 의한 자연취득, 결혼 등 귀화에 의한 취득

- 아일랜드 국적자와 3년 이상 지속적인 결혼생활 혹은 사회적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한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청 시 심사 가능(심사 6개월 정도 소요 가능)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I. 영주권

1. 명칭 : Permit for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카드 (종이에 코팅된 형태, 열은 분홍색)
3. 유효기간 : 5년 (5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 만료 3개월 전 연장 신청, 연장신청 횟수제한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거주허가증(1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50만 마나트 이상 투자한 자
 -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 10만 마나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소유한 자
 - 아제르바이잔 은행 계좌에 10만 마나트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자
 - 경제, 산업, 군, 과학,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자
 - 임시거주허가증 및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가족의 구성원인 자
 - 해외 기업의 지사장, 법인장 및 그 기업을 대표하는 자
 - 아제르바이잔 내 회사설립 대표로서 법적인 지위를 가진 자
 - 아제르바이잔 국적자와 친밀한 관계인 자 (혼인, 친척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2매 (3*4), 출생증명 사본 공증본(18세 미만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의 성, 이름, 생년월일, 직업, 거주등록지 및 거주지 기입 필수), 질병진단서(AIDS진단서, B형, C형간염진단서), 전문직 및 특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공증본 (전문직 일 경우), 임시거주허가증 사본, 임시허가증 발급 근거 서류 사본 공증본, 예상 거주등록지 관련 서류(아파트 임대계약서, 부동산증명서 등), 세금증명서, 재산증명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거주지 제공자의 신청서(아파트 집주인), 거주지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 동의서 공증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공증본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180일 이상 국외 거주, 범법행위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www.migration.gov.az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80일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제외 아제르바이잔 국적자와 동일

III . 국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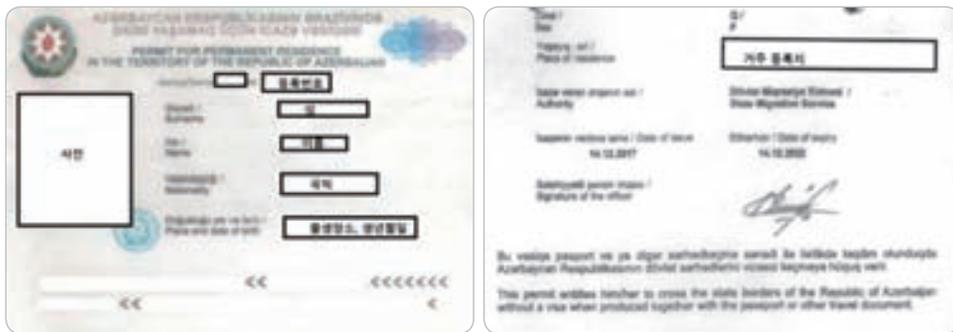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아제르바이잔 국적법 2조14항에 의거 국적취득 신청 시 민족, 인종, 출신, 사회적 지위, 성별, 교육환경, 언어 등에 관계없이 국적법으로만 판단

- 2. **국적취득조건** :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무국적자 중 아제르바이잔어 구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을 직접 포기하는 경우, 국적이 박탈되는 경우, 아제르바이잔 국제적인 조약에 위배되는 경우

IV. 영주권 건본

1. 영주권 카드



알바니아

Republic of Albania

I. 영주권

1. 명칭 : LEJE QENDRIMI PER TE HUAJT(RESIDENCE PERMIT of THE ALIEN)
2. 형태 : A4 크기의 문서(과거에는 스탬프형식)
3. 유효기간 : 10년 (7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은 실질적으로 무제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알바니아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
5. 수속절차 : 체류허가증을 연속하여 5년 이상 발급받은 후 체류허가증 갱신 시 영주권 신청 가능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알바니아에 12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 및 치안에 위험이 될 경우,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허위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경찰서 이민국 (<http://mb.gov.al/>)

Ⅱ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알바니아 시민처럼 경제활동의 자유, 교육,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Ⅲ . 국적제도

1. 국적취득조건 : 국적취득 절차 시 18세 이상, 알바니아에서 최소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 내국인과 혼인, 경제부 및 문화부의 증명 추천이 있는 공로자, 알바니아에 5년 이상 거주한 무국적자,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알바니아 내 거주 증명, 알바니아 기초어학 능력
2. 국적상실조건 : 거짓증빙자료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자, 본인 의지에 따라 국적 포기 신고한 자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증명서

Nr. _____



REPUBLIKA E SHQIPËRISË
MINISTRIA E BRENDSHMË
DREJTORIA E PËRGJITHSHMË E POLICISË SË SHETËTIT
DEPARTAMENTI PËR KUFIRIN DHE MIGRACIONIN
Drejtoria Rajonale e Kufirit dhe Migracionit _____

LEJE QENDRIMI PËR TË HUAJT
RESIDENCE PERMIT OF THE ALIEN

TIP **C**
Type

EMRI (AT), MBIEMRI _____
First name (s), Family name

VENDLINDJA _____
Place of birth

DATELINDJA dd.mm.yyyy
Date of birth

DOKUMENTI UDHËTIMIT _____
Travel document

SHITËSIA _____
Nationality

GJINIA _____
Sex

GUENJA CIVILE _____
Civil Status

Foto
Photograph

MOTIVI I QENDRIMIT _____
Purpose of Stay

ADRESA NE SHQIPËRI _____
Address in Albania

Kjo Leje Qendrimi është e vlefshme nga data dd.mm.yyyy deri me datën dd.mm.yyyy
This Residence Permit is valid from _____ until _____

DIRECTOR

Nenshkrimi, Vula e Autoritetit
Signature, Stamp of Authority

I. 영주권

1. 명칭

- Residence Permit Type A
- Residence Permit Type B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살구색, 연보라색 혼용된 색상)

3. 유효기간

- Residence Permit(거주증) Type A : 1년
- Residence Permit Type(거주증) B : 3년
- Permanent Residence Permit(영주권)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Type A : 체류 허가 소지
- Type B : 5년 이상 거주
- 영주권 : 10년 이상 거주 또는 내국인과 혼인

5. 수속절차

이민국(Serviço de Migração e Estrangeiros, SME)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발급 심사 및 승인 - 지문등록 - 접수증 발급 후 1주일 이내 카드발급 완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체류를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국내법 위반 또는 국가안보에 위배가 되는 자
- 특정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 추방명령을 받은 자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Serviço de Migração e Estrangeiros, SME)
- www.sme-angola.com

10. 기타사항

- Type A 신청자격 : 앙골라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2회 갱신 가능
- Type B 신청자격 : Type A 취득 후 3년(2회 갱신) 후, 1회 갱신 가능
- 영주권 신청자격 : Type B 취득 후 6년(1회 갱신) 후, 5년 마다 갱신

II . 거주증 소지자 및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학업, 건강 목적인 경우 이민국(SME)에 사전 등록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2. 영주권



3. 거주증, 영주권 번역

(앞면)

양골라 공화국
내무부
이민국
거류허가

성명
출생지
직업
발급일

생년월일
만료일

(뒷면)

주소
체류시작일
발급자 서명

발급처

에스토니아

Estonia

I. 영주권

1. 명칭 : 장기 체류허가(Long-term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별도 통지일까지 유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① 임시 체류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로 5년간 거주, ② 유효한 임시 체류허가를 소지, ③ 에스토니아 거주 등록 ④ 생계유지 가능한 장기적 법적 수입, ⑤ 건강보험에 가입, ⑥ 기본적인 에스토니아어 구사 능력(언어법에 따르는 B1 이상의 수준)
5. 수속절차 : 경찰-국경수비청에 신청서, 신분증, 생활능력(수입) 증명서, 언어능력 확인서,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여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①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신청 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 국가 반역죄로 처벌되고 그 범죄 기록이 소멸되지 않은 자, ④ 효력상실 신청, ⑤ 12개월 이상 연속해서 비EU 국가에 거주, ⑥ 기타 EU국가에서 장기체류자력을 부여받은 경우, ⑦ 6년 이상 에스토니아 미거주 시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있음(신청인의 요청)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경찰-국경수비청(<http://www.politsei.ee>)
10. 기타사항 : 거주허가증 신청 시 지문 채취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비EU 국가에 12개월 미만, 에스토니아 이외 국가 6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만 인정. 출산수당, 양육수당 등 일부 복지제도의 혜택이 있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중국적 인정 안 함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
 - 부, 모가 에스토니아 국적자일 경우, 부의 사망 후 출생 시 부가 에스토니아인일 경우
 - 에스토니아에서 발견/신고된 아동
- 후천적 신청으로 인한 국적취득
 - 15세 이상, 장기거주증 소지, 기본적인 에스토니아어 구사 능력(언어법에 따르는 B1 이상의 수준), 에스토니아 헌법 및 국적법을 이해하고, 생계유지 가능한 장기적 법적 수입, 에스토니아 국가에 반하지 않으며, “나는 에스토니아 헌법에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를 해야 함
- 미성년자 때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부활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상실/포기신고 시
- 타국적 취득 시

4. 기타사항 :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면 3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함

에콰도르

Ecuador

I. 영주권

1. 명칭 : Visa de inmigrante

- 임시영주거주비자 : Visa de residencia temporal
- 영주거주비자 : Visa de residencia permanente

2. 형태

- 임시영주거주비자(2년) 및 거주지 행정기관 발급신분증(Cedula) 취득 후 21개월 차부터 영주거주비자 신청가능
- 영주거주비자 및 거주지 행정기관 발급 신분증(Cedula) 취득 가능

3. 유효기간

- 임시영주거주비자 : 2년
- 영주거주비자 : 무기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에콰도르의 해외공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이민사증을 소지하여야함
- 에콰도르 무비자(T-3, 90일)로 입국 후, 임시영주거주비자 신청 가능함

5. 수속절차

- 이민사증 소지자
-거주외국인관리국(Unidad de Extranjeria)에서 발행된 신분증(Cedula) 발행 허가서를 Registro Civil(주민청)에 제출, Cedula 수령.

- 일반사증 소지자
 - 에콰도르 입국 후 이민사증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거주외국인관리국(Unidad de Extranjeria)에 이민사증 신청서류 구비 후 신청
 - 상기 접수기관은 접수 후 대략 15일내에 이민사증 발급여부를 결정
 - 이후 절차는 상기 이민사증 소지자의 경우와 동일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임시영주비자 취득 후 24개월 동안 1, 2차 년도 해외 체류기간이 각각 3개월 미만이어야 함
- 영주비자를 취득 후 24개월 동안 1, 2차 년도 해외 체류기간이 각각 6개월 미만이어야 함. 36개월 지난 후부터는 5년까지 해외에 거주할 수 있으며, 5년 초과 시, 영주비자 상실되며 영주비자 상실 후 1년 뒤 영주비자 재신청 가능
- 외국인 소지 영주권은 사증이 무효화되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

7. 부활제도 : 최초의 신청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영주권취소신청서 및 여권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외국인관리국(Unidad de Extranjeria)

<http://www.cancilleria.gob.ec>

10. 기타사항 : 최근 영주권 수속 절차 장소가 Dirreccion General de Extranjeria 에서 외교부에 속한 Unidad de Extranjeria로 변경되었음(2017년 변경)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임시영주거주비자 취득 후 24개월 동안 1, 2차 년도 국외 체류기간이 각각 3개월 미만
- 영주거주비자를 취득 후 24개월 동안 1, 2차 년도 국외 체류 기간이 각각 6개월 미만이어야 함

2. 재입국 허가제도 : 별도 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 취득 5년 후 선거권 획득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이 시민권자와 차이가 없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하여 국적취득이 가능함
- 출생에 의해 취득한 에콰도르국적은 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기 할 수 없음

2. 국적취득조건 : 신분증(Cedula)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 거주 시(단, 에콰도르 자녀 있는 경우 2년)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취득 후 특별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외체재 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적취득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비자



2. 영주권 카드



엘살바도르

El Salvador

I. 영주권

1. 명칭 : Residencia Definitiva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4년(4년마다 영주권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이상 거주(1년 단기거주권을 5번 갱신)
 - 내국인과 혼인하고 2년 이상 거주(결혼 전 기간 포함)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단기거주권 5년 보유자
 - 신청서
 -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
 - 단기거주권(Carné de Residente Temporal) 사본
 - 엘살바도르 경찰청 발행 무범죄경력 증명서
(Solvencia de Policía Nacional Civil de El Salvador)
 - 전염병 비 보균자임을 증명하는 엘살바도르 의사 발행 건강진단서
(Constancia de salud expedida por médico salvadoreño, que haga constar no padecer de enfermedades infectocontagiosas)
 - 납세증(NIT : Númer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 기본증명서(Certificación de Partida de Nacimiento, 대사관 영사확인)

- 유급 근로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사회보장연금 및 의료보험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필요)
 - 노동계약서
- 사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사업가의 성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필요)
- 내국인과 혼인한 자
 - 신청서
 -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
 - 결혼증명서
 - 단기거주권(Carné de Residente Temporal) 사본
 - 기본증명서(Certificación de Partida de Nacimiento, 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 출생국 또는 2년 전에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 경력 증명서(영사확인 필요)
 - 엘살바도르 경찰청 발행 무범죄 경력 증명서
(Solvencia de Policía Nacional Civil de El Salvador)
 - 전염병 비 보균자임을 증명하는 엘살바도르 의사 발행 건강진단서
(Constancia de salud expedida por médico salvadoreño, que haga constar no padecer de enfermedades infectocontagiosas)
 -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 유급 근로자인 경우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필요)
 - 노동계약서

- 사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사업가의 성명이 명시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필요)
- 비취업자 또는 연금 수령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재정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공증 필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허가 없이 1년 이상 제3국 체류 시
- 영주권 유효기간(4년) 만기 전 미 갱신 시

7. 부활제도 : 영주권 유효기간(4년) 만기 전 미 갱신한 경우, 영주권 기간 만료일 부터 최대 1년 이내 벌금(\$2,86 ~ \$11.43) 지불 후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이민국에 포기 내용의 서면을 제출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사법 및 공공안전부, <http://www.seguridad.gob.sv>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내국인과 동등(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음)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y(PR) : EEA(유럽경제지역 19개국) 및 스위스 국민과 그들의 가족만 해당
-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 PR 해당자 외 국적자

2. 형태 : 전자 칩 내장 카드

- BRP(Biometric Residency Permit) CARD 형태

3. 유효기간 : 무기한

- 영주 체류 기간은 무기한이지만, BRP CARD 자체는 유효기간이 있어 재발급 필요(성인의 경우 약 10년, 미성년자의 경우 약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다양한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보통 ①현재 체류 기반인 비자로 5년 거주, ②방문자 비자를 제외한 합법적 비자(종류 상관없음)를 기반으로 10년 장기 거주한 자

가. 신청 가능 비자 조건 및 체류 의무 기한

소지 비자 자격	영국 체류 의무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자의 18세 미성년 자녀 혹은 입양자녀 - 영주권자가 부양하는 18세 이상 성인자녀 혹은 친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부모의 비자 종류에 따라 자녀의 제출 서류가 추가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인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 - 고용허가비자 - 사업 비자 및 투자자 - 해외 방송사, 항공사, 기타 회사의 영국 지사 직원 - 운동선수, 작가, 예술가, 변호사 - 4년 이상 영국군에 근무 중이거나 은퇴한 자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비자의 경우 사업체가 창출한 일자리 수 및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비자 의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음 -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비자 의무 기간이 2년, 3년, 5년으로 다양
기타 적법한 비자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영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10-year Private Life Route	<p>적법한 비자 없이 영국에 거주해온 경우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10-year Private Life Route"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0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생애의 절반 이상을 영국에서 거주한 경우 - 25세 이상이며 영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18세 이상이며 영국에서 20년 미만 거주하였으며, 영국 외 다른 나라에 연고가 없는 경우 - 기타 	

※ Private Life Route 의 경우 불법적으로 영국에 체류 중인 자에게도 영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 단, 최초 체류 자격은 2.5년이며 추후 심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2.5년의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 해당 기간 중 1회 국외체재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동시에 12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 하지 않아야 하는 등 소지 비자의 종류에 따라 국외체재기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됨

나. 영국 생활 전반에 대한 상식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영주권 신청자에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의무화(유효기간 없음)

- 영국생활 전반에 대한 기본 상식 시험으로 45분간 컴퓨터로 실시(총 24 문항 중 7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처리)

- 영국 내 30여개 지역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2019.6월 기준 응시료는 50파운드

다. 영어 구사능력

- 영국정부가 공인하는 영어성적(2년 미만 내 실시) 제출 필요
 - 영어로 진행되는 학위 및 연구과정 수료자의 경우 학교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아래의 신청자는 영어성적 제출 면제
 - 65세 이상 신청인
 - 영국정부가 인정하는 영어 사용 국가의 국민
 - 영국인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 영주권자의 미망인, 영국군 제대자

5. 수속절차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예약 후 -> 비자 접수 센터(Visa application centre) 방문(online Apply : <https://visas-immigration.service.gov.uk/next>)
 - ※ 온라인 접수 시 일반(Standard)과, 특급(Super Priority) 중 선택 가능
 - ※ 일반(Standard)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약 6개월, 특급(Super Priority)의 경우 1일 소요(단, 추가 비용 발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 취득이후 2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내무장관이 법적인 이유로 동 영주권자의 추방을 결정한 경우
- 기망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 입국 심사 시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부활제도

- 2년 이상 국외체류로 인해 영주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재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t Visa, 유효기간 없음) 신청을 통해 영주권 회복 가능
 - ※ 재입국비자는 반드시 영국 재입국 전 해외에서 취득 필요

8. 포기제도

- 별도의 포기제도는 없으며, 2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자동 상실됨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영국 내무부(Home office)
- 홈페이지 : UKVI <https://www.gov.uk/settle-in-the-uk>

10. 기타사항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하는 절차는 폐지 되었으며, 현재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부모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신청해야 함.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2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할 수 없으며, 입국 심사 시 영국 거주가 아닌 해외 거주가 주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재입국 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항 등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반 입국자 보다 제한된 범위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무기한(영구적) 체류 허용
- 자유로운 직업 선택 가능
- 시민권자와 동일한 복지혜택 :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가의료혜택, 주택보조금 등 수령 가능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 1981 (National Act 1981)에 따라 국적 취득 자격이 6가지로 분류되며, 상세내용 아래 참조

2. 국적취득조건

- 영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부모로부터 영국 또는 영국 해외 영토에서 출생한 자
 - 예) 한국 국적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동인의 자녀에게는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
- 혈통(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입양에 의한 국적 취득
-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 외국 국적자가 영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 예) 한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
- EEA(유럽경제지역 19개국) 또는 스위스 국민과 그들의 가족만 해당되며 EU조약에 따른 국적 취득
- 등록에 의한 국적 취득
 - 예) 영국에서 출생한 자가 18세 이전에 부모가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

3. 국적상실조건

-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적취득 신청 시 사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오스트리아

Austria

I. 영주권

1. 명칭 : Daueraufenthalt-EU(전 : Daueraufenthalt-EG)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하기 정착허가증을 5년간 연속 취득한 외국인으로 독일어 능력(Modul II : B1 수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정착허가증(준영주권)

-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Karte)
- EU 블루카드(Blaue Karte EU)
- 레드-화이트-레드 플러스 카드(Rot-Weiß-Rot Plus Karte)
-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쿼터제

○ 포인트 시스템

(포인트 계산기 : www.migration.gv.at/de/service-und-links/punkterechner.html)

- 고급전문인력(100점/70점 이상)
- 오스트리아 부족 전문인력 (100점/50점 이상)
www.migration.gv.at/de/formen-der-zuwanderung/dauerhafte-zuwanderung-rot-weiss-rot-karte/fachkraefte-in-mangelberufen.html
- 오스트리아 대학을 졸업한 기타 우수인력(100점/50점 이상)

나. 오스트리아/EU 국민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입양자녀, 배우자의 미성년 부양자녀, 등록된 동성파트너

5. 수속절차

- 정착을 목적으로 한 정착허가증을 5년간 연속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착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영주권 교부일이 서면으로 통보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 카드를 교부받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 소지자가 비EU국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 영주권 소지자가 지난 6년간 오스트리아에 더 이상 정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영주권 취득 전 “블루카드 EU”를 취득하였던 자는 2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비EU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7. 부활제도

- 장기 해외체류로 영주권(Daueraufenthalt-EG/EU)의 효력이 상실 된 경우, 위에 명기한 정착허가증(준영주권) 중 하나를 다시 취득하여 오스트리아 내에 지속적으로 30개월 체류한 후(5년 대신) 영주권(Daueraufenthalt-EU)을 재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거주 등록해지 후 귀국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오스트리아 내 하기 특별자치시(Statutarstaedten) 신청기관 : Magistrat Wien, Eisenstadt, Graz, Innsbruck, Klagenfurt, Krems, Linz, Rust, Salzburg, St. Pölten, Steyr, Villach, Waidhofen an der Ybbs, Wels, Wiener Neustadt

※ 해당 구청(Magistrat) 검색사이트 :

www.help.gv.at/linkaufloesung/applikation-flow?flow=lo&quelle=HELP&leistung=LA-HP-RL-Fremdenpolizei

-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연방주별 신청기관 : Bezirkshauptmannschaft
 - Wien : www.wien.gv.at/verwaltung/personenwesen/
 - 니더외스테라이히 : www.noel.gv.at/Bezirke/Alle-Bezirke.wai.html
 - 오버외스테라이히 : www.land-oberoesterreich.gv.at/cps/rde/xchg/ooe/hs.xsl/12737_DEU_HTML.htm
 - 부른겐란트 : www.burgenland.at/politik-verwaltung/bezirkshauptmannschaftenW
 - 슈타이어마르크 : www.bezirkshauptmannschaften.steiermark.at/cms/ziel/106195/DE/
 - 잘츠부르크 : www.salzburg.gv.at/themen/bezirke.htm
 - 케른텐 : www.ktn.gv.at/39868_DE-VERWALTUNG-Bezirke
 - 포어아를베르크 : www.vorarlberg.at/vorarlberg/bezirkshauptmannschaften/uebersichtbezirkshauptman.htm
 - 티롤 : www.tirol.gv.at/bezirke/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특별한 경우에만 최대 24개월까지 비EU국 체류 가능(예 : 중병을 앓고 있는 자, 병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하며, 출국 전 반드시 이민국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투표권은 없으나, 복지제도의 의무와 혜택은 내국인과 동일함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 관련 규정법 : 『2017년 사회통합에 관한 협약』

(Integrationsvereinbarung 2017)

『연방국적법(StBG, Staatsbürgerschaft)』

2. 국적취득조건

- 최소 10년 연속으로 오스트리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로 최소 5년간 정착 허가증을 소지한 자
- 형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진행 중인 형사소송이 없어야 함
- 행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
- 충분한 재정 능력 증빙 : 직업을 통한 고정적인 수입 및 사회보장보험 증빙
- 독일어 능력, 민주주의 및 오스트리아 역사에 대한 지식 시험 합격증
- 오스트리아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지닌, 국가의 안녕에 위협을 하지 않을 자
- 체류금지령 또는 이에 갈음하는 조치의 대상이 아닌 자
- 귀국명령을 받지 않은 자
- 타EU국가 또는 스위스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지 않은 자
- 지난 18개월 동안 출국조치를 받지 않은 자
- 극단주의 테러세력과 관련이 없는 자
- 기존 국적을 포기하는 자
- 오스트리아의 국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자

3. 국적상실조건

- 타국의 국적 취득
- 자의로 타국의 군에 입대할 경우 국적박탈

- 2018.09.01. 이후 체류허가증 샘플(영주권 포함)

<https://www.bmi.gv.at/302/start.aspx>

2. 영주권 증명서: 유럽경제공동체 및 스위스 국민에게만 발급

REPUBLIC ÖSTERREICH

Zahl: _____

BESCHEINIGUNG DES DAUERAUFENTHALTS
für
EWB-Bürger/-innen und Schweizer Bürger/-innen
gemäß 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 (NAG)

Familienname(n) _____
Vorname(n) _____ Geburtsdatum _____
Staatsangehörigkeit _____

Erwerb des Rechts auf Daueraufenthalt

gem. § 53a Abs. 1
 gem. § 53a Abs. 3
 gem. § 53a Abs. 4 oder 5

Datum _____ ausstellende Behörde _____

Gebühr anstehend

Hinweis: Diese Bescheinigung des Daueraufenthalts gilt für EWB-Bürger/-innen und Schweizer Bürger/-innen sowie deren Angehörige (die selbst EWB-Bürger oder Schweizer Bürger sind), die das ununterbrochene Recht auf Daueraufenthalt erworben haben.

Im Fall der Beendigung oder der beabsichtigten Beendigung des Aufenthalts wird ersucht, die ausstellende Behörde von diesem Umstand Kenntnis zu verschaffen. Das Recht auf Daueraufenthalt geht unter, wenn die Abwesenheit vom Bundesgebiet mehr als zwei aufeinander folgende Jahre beträgt.

Befähigung: Ich nehme zur Kenntnis, dass gem. § 19 Abs. 11 NAG der Verlust und die Unräumbarkeit der Bescheinigung des Daueraufenthalts sowie Änderungen der dem Inhalt der Bescheinigung des Daueraufenthalts zugrunde gelegten Identitätsdaten der Behörde unverzüglich zu melden sind.

I. 영주권

1. 명칭 : Residencia Permanente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1년~5년(유효기간 만료시 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 임대업자
 - 나) 연금수급자
 - 다) 투자자
 - 라) 가)~다) 해당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생활능력 없는 성년 자녀, 부모
 - 마)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적자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남매
 - 바) 출생에 의한 온두라스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 사) 이주거주자
 - 아) 가)~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온두라스 내무부(Secretaria de Gobernación, Justicia y Descentralización)의 허가 받은 자
5. 수속절차 : 온두라스 내무부에 관련 서류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내무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민법령을 위반한 경우(예를 들어 12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또는 이민청의 허가 없이 온두라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7. 부활제도

- 분실 : 분실 경위 설명 제출한 뒤 이를 당국이 승인한 후, 재발급
- 만료기간 경과
 - 6개월 이하 : 기간 및 사유에 상응하는 벌금 납부 후 갱신 가능
 - * 4개월 이상 ~ 6개월 이하 : 신청서류가 폐기된 경우 재신청
 - 6개월 초과 : 재신청

8. 포기제도 : 신청에 따라 변경 및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온두라스 내무부(Secretaria de Gobernación, Justicia y Descentralización), <https://www.sgjd.gob.hn/>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법적 지위 및 허가 조건에 따라 상이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온두라스 국적자와 같은 법적 의무 및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등 제외), 복지제도 적용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 제1장 22조-29조(외국인의 국적 취득 사항 명시)
- 헌법 제1장 30조-35조(혈통주의 및 출생지주의 적용)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 온두라스 영토 안에서 출생한 자(외교관 자녀 제외)
- 온두라스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온두라스 국적자
- 온두라스 군용선 또는 군용기에서 출생하거나 온두라스 영해 내 선박에서 출생한 자
- 부모가 불분명하고 온두라스 영토 내에서 발견된 아동

○ 귀화

- 일반 조건(모두 충족)
 - 현재 국적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지산 또는 한정자산 신고를 받지 않은 자
 - 자산 및 직업 등 생활을 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
 - 온두라스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품행이 올바르고 범죄경력이 없는 자
 - 귀화시험을 통과한 자
- 중미국가 국적자로서 온두라스 1년 이상 거주자
-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등 이베로아메리카 국적자로서 온두라스 2년 이상 거주자
- 그 외 외국인의 경우 3년 이상 거주자
- 특정 업무 종사자로서의 온두라스 국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온두라스 정부가 과학, 농업, 산업 목적으로 초청한 자로서 온두라스 1년 이상 거주자

* 이중국적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온두라스인은 외국국적을 선택하더라도 온두라스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 출신 국적 포기를 요구하지 않음.

* 혼인이나 이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국적에는 변동 없음.

3. 국적상실조건

- 외국국적을 취득
- 적법 절차에 따른 귀화 승인 취소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전면



후면

I. 영주권

1. 명칭 :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신청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5년, 10년, 영구 등으로 명시하여 체류기간을 부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연속 10년을 거주하고, 범죄와 체납사실 및 파산이 없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한자
 - 또는 우간다 국적인과 결혼 후 3년이 지난 자
5. 수속절차 : 영주권 신청서(Form E), 여권, 무범죄증명서, 사진, 결혼증명서(결혼인 경우)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이민국(Nation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Board)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귀국의사 없이 우간다를 떠나거나 사망한 경우 영주권이 취소 또는 상실됨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있음(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본인이 포기하면 수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Department of Immigratio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http://www.immigration.go.ug/>

Ⅱ.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 유효기간 동안은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3.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 없으며 기타 모든 법적 지위에서 외국인에 준함
 - 국립공원이거나 공공시설 입장 시 요금 절감 혜택이 있음

Ⅲ. 영주권 견본



우루과이

Uruguay

I. 영주권

1. 명칭 : Cédula de Identidad / Residencia Legal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3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기업, 연구, 유학, 예술, 종교활동 등의 장기체류목적(6개월 이상)으로 입국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5. 수속절차 : 증명사진 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입국증명(입국도장 찍힌 여권 사본),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만 18세 이상),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를 내무부 이민국 수속과에 접수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3년 이상 우루과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장기 체류권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제도 : 신규 장기체류권 신청 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우루과이 내무부 이민국 (Departamento de Residencias de la 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ón)
 - 홈페이지 : tramites.gub.uy

Ⅱ.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장기체류권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최장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원칙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은 없으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건실한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15년 이상 거주 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며, 사회보장 보험, 양로연금 및 의무교육 수혜 가능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우루과이 법령 16021(우루과이 국적)
 - 제1조 : 우루과이에서 출생한 남성 및 여성은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함
 - 제2조 : 제1조에 언급한 조건을 갖춘 자의 자녀 또한 출생지에 관계없이 우루과이 국적취득 가능
 - 제3조 :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우루과이 국적을 갖게 되나 태생적 시민권자가 아닌 바, 제1조 및 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제4조 : 헌법 제3장74조에 의거,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적취득의 의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외국인의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
- 우루과이 헌법 섹션 3(시민권 및 선거 관련)
 - 제1장75조A항~C항 : 외국인의 국적취득조건 명시
 - 제4장80조1항~7항 : 우루과이 국적보유 외국인의 국적상실조건 명시

2. 국적취득조건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우루과이 국민과 가족인 선량한 외국인이 우루과이에 충분한 경제적 자본 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학, 예술 또는 산업에 기여하며 우루과이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우루과이 국민과 가족이 아닌 선량한 외국인이 우루과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우루과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여를 하거나 훌륭한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루과이 총회가 특별히 부여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적응의 경우
- 형사 사건에 합법적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의 경우
- 유죄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 국외추방, 교도소 또는 정치적 권리 행사 결격에 관한 형을 받을 경우
- 도덕적 불명예스러운 활동을 상습적으로 행사할 경우
-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전파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기관의 일원인 경우
- 선량한 행위의 유지 결여의 경우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 2015년 갱신된 영주권 카드(9 cm X 5 cm)

우크라이나

Ukraine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新영주권(카드), 舊영주권(여권형태)
3. 유효기간 : 新영주권 유효기간 10년, 舊영주권 소지자 만 25세, 45세에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쿼터 적용 대상 - 쿼터는 내각에서 결정
 - ※ 공통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 3장, 신분증명서 사본, 거주 증명서 사본, 결혼증명서(결혼한 경우), 건강진단서
 - 우크라이나 국익에 부합하는 과학 및 문화계 인사 [공통구비서류 + 우크라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 우크라이나 국익에 있어 아주 필요한 특수 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자 [공통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 최소 미화 10만불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자 [공통구비서류 + 재정증명서]
 - 우크라이나 국적의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손녀가 있는 자 [공통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 사본]
 -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졌었던 자 [공통구비서류 + 전국적증빙서류]
 -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계 부모, 배우자, 자녀(미성년) [공통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빙서류 사본, 가족의 이민증명서류, 재정능력 증빙서류]
 -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 된 후 3년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한 자 [공통구비서류 + 사실인정서류]
 -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3년 이상 복무한 자 [공통구비서류 + 병역사실확인서류]

○ 쿼터 비적용 대상

- 우크라이나 국민과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및 우크라이나 시민의 자녀와 부모 [공통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사본]
- 우크라이나 국민의 후견인이거나 위탁 보호자 [공통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사본]
-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을 취득 할 권리를 가진 자 [공통구비서류 + 우크라이나 국적법 제8조에 따른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우크라이나 국익에 부합하는 자 [공통구비서류 + 우크라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서]
- 우크라이나 재외동포, 재외동포 자녀가 우크라이나로 이민이나 거주할 경우 [공통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사본]

5. 수속절차

- 우크라이나의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이민비자를 받아야 함.
- 이민비자는 내각의 의한 이민 쿼터 범주와 이민 쿼터 외 특정 범주 이민자에게 부여
- 이민비자 신청은 거주국 우크라이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 및 신청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우크라이나 이민청에 신청
- 이민비자 소지자는 우크라이나 내 거주지 관할 이민청에 영주권 신청
 - ※ 우크라이나 국가이민청 (또는 그 행정서비스 제공 센터)
 - 주소 : Volodymyrska st. 9, Kyiv, Ukraine
 - 웹사이트 : <https://infodmsu.gov.ua>
 - 전화 : +38 044 278-50-30
 - 팩스 : +38 044 226-23-39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발급
- 1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우크라이나 시민의 안전과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 이민자(외국인과 무국적자)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반할 경우
- 기타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

7. 부활제도

- 영주권 포기 혹은 발급 거부 이후 그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포기 가능함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우크라이나 이민청 / dmsu.gov.ua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무기한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며 병역 의무는 없음.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6조, 국적 취득 기본원리
 - 우크라이나 국적은 출생, 속지주의, 귀화, 국적 재취득, 입양, 후견인 설정, 금치산자에 대한 보호인 설정,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 부모의 국적에 따라, 친자관계 또는 출산 인지, 우크라이나의 국제 협약에 따른 근거에 따라 취득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7조, 출생에 따른 우크라이나 국적
 - 출생 시 양부모 혹은 부모 중 한쪽이 우크라이나 국민인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이 된다.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태어난 자로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거주자인 무국적자의 자식은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된다.
 - 우크라이나에서의 합법적·영구적 거주자인 무국적자의 자식으로 외국에서 태어나고 출생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자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된다.
 -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태어난 자로, 우크라이나에서의 합법적·영구적 거주자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출생 시 부모의 국적을 따르지 않은 자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된다.
 -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태어난 자로 부모 중 한 명이 난민이거나 혹은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경우,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된다.
 -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견된 자로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우크라이나 국민이 된다.
 - 출생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국민이다.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8조, 속지주의에 따른 우크라이나 국적
 - 자신,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 조부모 중 한 명, 자매나 형제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법적 상속에 대한” 우크라이나 법 5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역이 된 지역과 더불어 Ukrainian National Republic, Western Ukrainian National Republic, Ukrainian State, Ukrainian Socialist Soviet Republic, Transcarpathian Ukrain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Ukr.SSR) 지역에서 태어난 자와 1991년 8월 24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그리고 그들의 자식은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간주된다.
 - 무국적자인 자로, Ukr.SSR 영토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이거나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국적취득 신청 시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간주된다.

- 부모가 외국인이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태어난 미성년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받은 이후 그 국적을 포기 했을 때 부모 중 한 명 혹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국적을 받기위해 외국 국적 포기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원국적국 관련 기관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 불가
 - 1)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혹은 대량 학살의 행위를 한 자
 - 2) 중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 받은 자 (형을 마치거나 석방될 때까지)
 - 3) 우크라이나 국외에서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중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우크라이나 국적을 받기위해 외국 국적 포기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원국적국 관련 기관에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10조, 우크라이나 국적회복
 -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받지 않고 국적 재취득을 하려는 자는 9조 5항에 결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우크라이나 영구 거주자 혹은 다른 나라 거주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11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의한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
 - 우크라이나 국민에 의해 입양되는 외국국적 혹은 무국적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입양일로부터, 미성년자가 영구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혹은 외국에서 거주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국민이 된다.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12조, 후견인(보호자)에 의한 미성년자의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
 - 우크라이나 국민이 외국국적 혹은 무국적자인 미성년자의 후견인(보호자)이 될 경우, 그 날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이 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조 13항, 우크라이나 국민인 후견인에 의한 금치산자의 국적 취득
 -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금치산자인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우크라이나 국민인 후견인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16조, 청소년의 의무적 우크라이나 국적 선택
 - 15~18세 청소년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적을 택할 수 있다.

2. 국적취득조건

- 우크라이나 국적법 2장 9조, 우크라이나 국적 부여
 -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는 정당하게 신청을 한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의 준수, 우크라이나 헌법과 법에 의한 승인
- 2) 원 국적 포기 혹은 무국적 상태
- 3) 5년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지속적 · 합법적인 거주
- 4) 우크라이나 영구적 거주 허가증
- 5) 자유로운 공식어 구사력 혹은 공식어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 의사소통에 문제없는 수준. 이 항목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는 예외
- 6) 적법한 생계 수단. 이 항목은 난민 상태 혹은 망명자는 예외
 - 3)~6) 항은 고도의 기술 혹은 우크라이나 국익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우크라이나에 영구적 거주 허가를 받은 부모의 둘 중 한 명 혹은 보호자를 둔 우크라이나에 사는 미성년자는 1), 3)~6)항의 조건들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국적상실조건

- 우크라이나 국적법 19조 2001.01.18
 - 외국국적을 자의적으로 취득한 자는 우크라이나 국적이 상실된다.
- 우크라이나 국적법 25조 2001.01.18
 - 우크라이나 국민은 외국에서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 영사관련 기관에서 국적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IV. 영주권 견본

1. 구 영주권



2. 신 영주권



이스라엘

Israel

I. 영주권

1. 명칭 : 토샤브 케바

2. 형태 : 수첩 및 카드(청색)

3. 유효기간 : 영주권 자격은 특정 유효기간 없음(영주권 카드는 10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A/5 비자 소지자로서 이스라엘에 통상 5년 체류한 자(ex.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 이스라엘에 비교적 장기간(특정 기간제한은 없음)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안보, 경제 및 기타 중요사안에 대해 현저히 기여한 자

5. 수속절차

- 이스라엘 내무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 이스라엘 경찰의 신원조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7년 이상 이스라엘 국외 거주
- 타국의 영주권 취득
- 신청에 의한 타국의 시민권 취득
- 영주권 부여시 조건이 부과되었으나, 일정기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로 영주권 취득을 한 경우
- 영주권자가 이스라엘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을 상실한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
- 신청자의 국외거주 사유 및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 또는 연관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8. 포기제도

- 이스라엘 내무부 또는 해외주재 공관에 출두,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 및 카드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스라엘 내무부(https://www.gov.il/en/departments/ministry_of_interior)

10. 기타사항

- 비유대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매우 어려움. 한국인의 경우 이스라엘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이 대부분임. 그 외의 사유로는 비유대인이 영주권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 기존에는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주황색 국민배우자 카드를 부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청색으로 통일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7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특별한 규정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제반 영역에서 시민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향유하나, 투표권행사에 제약(ex. 이스라엘 국회(크네셋)의원 투표 불가)이 따르며, 이스라엘 여권도 소지할 수 없음.

4. 기타사항

- 혼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영주권 신청시 개인이 내무부에 신청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시민권법(Law of Citizenship 1952)
- 귀화법(Law of Return 5710-1950)

2. 국적취득조건

- 귀화법에 따른 유대혈통자(유대인, 유대인의 자녀/증손, 유대인 증손의 배우자, 유대교 개종자 등)
-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거주한 팔레스타인 시민
- 부 혹은 모가 이스라엘 국적자인 자
- 이스라엘 영토 내 출생 한 무국적자가 18~21세 사이에 신청시(신청 전 이스라엘에서 5년 이상 지속거주 요)
- 아래 조건에 부합한 외국국적자
 - 신청 직전 이스라엘에 3~5년 지속거주
 - 영주거주 자격 소지
 - 히브리어 소통 가능
 - 기존 소지국적 포기
 - 이외 기타 내무부 장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국적 충성 선언을 한 귀화자

- 1947년 이후 이스라엘 군복무를 마친 자, 이스라엘 군복무 기간 중 순직한 자녀를 둔 부모

3. 국적상실조건

- 국적포기서 작성 시
- 타 국적 취득/유지를 위해 국적 자진포기 시
- 적국으로 불법 입국 시
- 내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시
- 위조/허위 증빙으로 귀화했을 시

4. 기타사항

- 혈통 상 유대인이 아닌 경우 국적취득이 상당히 어려우며, 이스라엘 국적자와 혼인 시에도 유예기간(약 5년)동안 매년 배우자 사증을 갱신한 뒤에야 영주권/국적 취득이 가능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이탈리아

Italy

I. 영주권

1. 명칭 : Permesso di Soggiorno CE per soggiornanti di lungo periodo(장기 체류자를 위한 유럽공동 체류허가증)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형태(또는 우편엽서크기 종이)
3. 유효기간 : 기한없음. 단, 5년마다 사진 교체하여 재발급
4. 신청자격(취득조건) : Permesso di soggiorno(일반 체류허가증)으로 10년 이상 거주 경력과 함께 최근 2년 연속 체류한 자이며, 2017년 기준으로 연소득 최저 5,824.91€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로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A-2급의 이탈리아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
5. 수속절차
 - ‘친절창구(sportello amico)’가 설치된 우체국(Ufficio Postale)에서 ‘비치양식(kit)’을 이용하여 신청하며, ‘사업, 의료, 스포츠 경기, 인도주의 목적, 망명, 미성년자, 무국적자, 동반자녀 추가, 초청’ 분야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경찰서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연소득 증명서 사본(가정부 등 분야 노동자는 INPS 발급 소득증명 제출), 범죄경력증명서, 주거지 증명, 당해 연도 소득 증명, 가족상황 및 거주 관련 증명서류, 30.46€짜리 체류증용 수입증지, 반송우편료 16€, 등기우편료 30€, 기여금 납부 사본

- 비치양식(kit)은 '1양식(modulo 1)과 2양식(modulo 2)'가 있으며, 2양식은 소득이 있거나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 각 신청서 및 서류는 내무부 정보통신과에서 범죄사실 조회 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
- 관할 경찰서에서 서류 심사 후 체류허가증(체류증)을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사기적 방법으로 취득
- 추방
- 공공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취득조건 상실
- 유럽연합 이외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동일한 장기체류증(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6년 이상 이탈리아에 있지 않은 경우

7. 부활제도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재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장기체류증 재취득 후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 유럽연합 이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동일한 장기체류증(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8. 포기제도 : 체류증을 받은 지방경찰청(Questura)의 이민과로 포기편지를 송부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우체국 : <http://www.poste.it>
- 경찰청 : <http://www.poliziadistato.it>

10. 기타사항 : 2019년도 신규 조건으로 이탈리아에 10년 이상의 체류경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최근 2년 연속하여 체류하였어야 하며, 'A2' 급의 이탈리아어 구사능력 증명하여야 함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유럽연합 이외 국가 : 1년
- 유럽연합 국가 : 6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한 노동, 교육, 사회 보장, 세제혜택분야에서 이탈리아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2018.12.1.자 제132호 법률
- 2009.7.15.자 제94호 법률
- 1992.2.5.자 제91호 법률

2. 국적취득조건

- 혼인에 의한 경우, 이탈리아 국적자와 혼인하여 이탈리아에 12개월 이상 거주, 또는 혼인 내 자녀 또는 입양자가 존재,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24개월 이상 이탈리아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취득 가능
- 거주를 통한 귀화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출생하여 적법하게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출생을 통한 이탈리아인의 직계 자녀 또는 조카인 외국인으로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입양된 후 5년 이상 이탈리아에 적법하게 거주한 경우, 이탈리아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소 5년 이상 이탈리아 국익을 위해 일한 경우, 무국적자 또는 난민으로서 이탈리아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일반 체류허가증 및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이탈리아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외국의 병역의무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 또는 전쟁 중인 외국에 군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책임으로 입양이 취소된 경우
- 외국에 거주하면서 이탈리아 영사관에 국적 상실을 신고한 경우
- 출생에 의하여 이탈리아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에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성년이 되어 입양되었다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입양이 취소된 경우
- 테러, 헌법질서 전복 등의 범죄혐의로 최저 5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형벌이 확정된 경우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I. 영주권

1. 명칭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일반영주자(一般永住者)

2. 형태 : 카드형 신분증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특별영주자증명서
- 일반영주자(一般永住者) : 재류카드

3. 유효기간 : 영주자격 자체는 무기한이나, 신분증은 7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특별영주자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1945. 9. 2이전 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일본에서 출생 하여 계속 체류하는 자
- 일반영주자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출입국 관리법 22조)
 - 소행이 선량할 것
 - 독립생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
 -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국에 체류할 것
 -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고, 납세의무 등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 공중위생상으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것
- 10년 체류 원칙의 특례
- 일본인 또는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하고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친자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정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법무성령(고도전문직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점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할 것 (80점 이상의 포인트 보유자는 체류기간이 1년으로 완화)

5. 수속절차

- 특별영주자 : 원칙적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시구정촌(도도부현)에 신고
- 일반영주자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특별영주자
 -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등으로 금고 이상에 처해진 경우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지고 법무대신이 일본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정해진 재입국기한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

- 일반영주자
 - 입관법 제22조의4에 규정된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불법입국, 허위서류 제출 등)
 - 정해진 재입국기한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moj.go.jp 또는 www.immi-moj.go.jp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영주자 :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연장(1년 단위) 등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국외에 체류 가능. '미나시 재입국허가'의 경우 2년까지 국외 체류 가능하나, 연장은 불가
- 일반영주자 :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연장(1년 단위) 등을 통해 최대 5년까지 국외 체류 가능. 미나시 재입국허가의 경우 1년까지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미나시 재입국허가(간주재입국허가) 제도 : 별도 출입국관서 방문 없이 공항에서 신고하고 출국. 1년 또는 2년이며 연장은 불가
- 재입국허가 :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영주자 : 강제퇴거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 등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강제퇴거 대상이 됨

- 일반영주자 : 체류기간 갱신 없이 계속 체류 가능하며 직업 활동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 이외에는 일반 외국인과 거의 동일
- ※ 특별영주, 일반영주 모두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은 공권력 행사에 관계없는 분야에 대해 지자체 실정별로 인정 가능 (국가공무원은 불가)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 제10조 :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을 규정
- 국적법 제4, 5조 : 외국인은 귀화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하며, 귀화의 요건 등에 대해 규정
- 국적법 제11조 : 국적 상실 사유 등에 대해 규정

2. 국적취득조건

- 주소조건
 - 귀화 신청시 계속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것
- 능력조건
 - 연령이 20세 이상이고, 본국법에 의하여 성인일 것
- 소행조건
 - 품행이 선량할 것. 범죄경력 유무, 납세상황,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사회통념으로 판단
- 생계조건
 - 생활이 곤란하지 않고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로 판단하므로 신청자 본인의 수입 뿐 아니라 배우자나 기타 친족의 자산·능력 등에 의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조건 충족 가능

- 복수국적방지 조건
 - 원칙적으로 귀화에 의해 그전까지의 국적을 상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기존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귀화가 가능
- 헌법 준수 조건
 - 일본 정부를 파괴하는 것을 기도하거나 그런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귀화허가가 되지 않음
 - ※ 그 외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일본에서 출생한 자,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의 자, 과거에 일본인이었던 자 등)에 대해서는 상기 조건의 일부가 완화됨

3. 국적상실조건

-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에 귀화 등을 한 경우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 상실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 일본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해 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 상실

IV. 영주권 견본

1. 특별영주자 : 특별영주자 증명서



2. 일반영주자 : 재류카드



자메이카

Jamaic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Status
2. 형태 : 별도의 영주권 또는 증명서 없이 신청자의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 날인으로 영주권 발급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다음 각 항 요건자의 경우 신청자격이 됨
 - 최소 3년 이상 자메이카에서 직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자메이카 국적자와 혼인 상태인 자
 - 고국에서 퇴직하여 자메이카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
5. 수속절차 : 하기 서류를 자메이카 이민국에 제출 후, 인터뷰 실시
 - 영주권 신청서
 - 유효한 국적 여권(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함)
 - 출생증명서(자메이카 국적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메이카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도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체검사서
 - 국적국가 발급 신원조회서(자메이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메이카 발급 신원조회서도 첨부)

- 영주권 신청 레터(사유 기재)
- 재정상태 증명서류
- 추천서(자메이카 국적자 2인)
- 여권용 사진 1매
 - ※ 수수료 30,000J\$(자메이카 달러)
 - ※ 접수된 구비서류가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민국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 및 언어능력(일상 생활영어 수준)을 확인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자메이카 이외 장기 거주 시 자동상실

7. **부활제도** : 이민국에 재신청

8. **포기제도** : 포기 신청서 이민국 제출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자메이카 이민국(PICA), www.pica.gov.jm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외국체류 또는 여행 시 이민국을 통해 재입국 비자를 신청, 발급 받아 허용된 기간동안 국외 체류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재입국 비자)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나, 사회보장제도, 의무교육 수혜 가능

Ⅲ. 영주권 견본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책자(2018년까지), 카드(2019년부터 신규도입)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잠비아인의 배우자로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고용주(혹은 워크퍼밋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 투자자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 은퇴한 퇴직자
 -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및 NGO 종사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 없음
5. 수속절차
 - 수속기관 :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 신청절차
 - 영주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은 일단 발급되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거나 아래의 경우 효력이 상실됨
 - 중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경우
 - 잠비아 내무부가 기피인물(persona-non-grata)로 지정하는 경우
 - 1년 이상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잠비아를 떠난 지 5년이 되지 않은 과거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 과거 거주사실증명 및 재정증명 제출 필요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의사를 이민국에 통보하고 영주권을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https://www.zambiaimmigration.gov.zm/index.php>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 소지자는 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잠비아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THE CITIZENSHIP of ZAMBIA ACT, 2016 [No. 33 of 2016 675]

2. 국적취득조건

- 잠비아에서 출생한 자
- 잠비아 국적자와 혼인을 하고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부모나 조부모 중 잠비아인이 있는 자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취득자가 사기, 허위진술, 물질적으로 해당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본인이 잠비아에서 출생하였지만 국적취득을 포기할 경우
- 6개월 이내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잠비아 국적으로 인정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2. 영주권 책자



조지아

Georgi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플라스틱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조지아 국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취득하여 조지아에서 6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단, 유학, 치료, 외교단 혹은 이와 같은 성격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과학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조지아의 국익을 위해 조지아에 체류 중인 운동선수, 예술가
 - 투자금 50,000 미불을 유치한 자
 - 조지아 국적을 상실한 자
 -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하는 경우
5. 수속절차 : 아래의 서류를 제출(단, 접수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는 가감될 수 있음)
 - 공통제출서류
 - 신청자의 여권(혹은 여행증명서) 사본

- 현재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조지아 비자, 조지아 입국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3×4cm)
- 수수료 입금증(180GEL, 급행의 경우 300GEL)
- 합법적 소득 증빙 서류(단, 조지아 국적을 상실한 자의 경우 불요)
- 추가제출서류
 - 조지아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취득하여 조지아에서 지난 6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난 6년간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조지아 국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손녀, 입양인, 형제자매, 조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 과학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조지아의 국익을 위해 조지아에 체류 중인 운동선수, 예술가 : 조지아 정부의 초청사실 증명서류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을 위해 허위서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지아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의 근거가 되는 활동을 종료한 경우
- 조지아 국적자의 후견인/보호자 혹은 피후견인/피보호자 자격으로 Permanent Residence Permit을 취득했으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Residence Card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을 위해 사기 결혼을 한 경우
- 추방을 당하는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발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경우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Public Service Development Agency of Georgia (<http://sda.gov.ge>) 혹은 Public Service Hall(<http://psh.gov.ge>)
 10. 기타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체류국 주재 조지아 대사관/영사관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심사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급행수수료 지불시 20일 이내 처리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Card for Temporary/permanent residence 소지시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조지아 국적자는 조지아 헌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
 - 조지아 국적은 출생과 귀화를 통해 취득할 수 있음.

2. 국적취득조건

-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조지아 국적 취득 조건(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국적취득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지난 5년 연속 조지아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 한 자(1년간 90일 이상 조지아 영토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연속 거주로 간주됨)
 - 일정 수준의 조지아어 구사 능력
 - 일정 수준의 조지아 역사 및 조지아 관련 기본 지식
- 간단한 절차에 따른 조지아 국적 취득 조건(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조지아 국적자와 혼인 후 지난 2년 연속 조지아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1년간 90일 이상 조지아 영토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연속 거주로 간주됨)
 - 본국 송환 자격을 가진 자

3. 국적상실조건

- 조지아 국적 철회
 - 조지아 정부의 허가 없이 타국에서 군인, 경찰 및 국가보안기관의 직원이 될 경우
 - 위조된 문서로 조지아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 타국 국적을 얻게 될 경우
- 조지아 국적 상실
 - 조지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조지아 형법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법정에서 형을 받았을 경우

IV. 영주권 건본

(앞면)



(뒷면)



I. 영주권

1. 명칭 : 외국인영구거류증(外國人永久居留證)

2. 형태 : 카드형 신분증

3. 유효기간 : 5년(18세 미만), 10년(18세 이상)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중국법률을 준수하고 신체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중국에서 직접 투자하여 연속 3년간 투자실적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한 자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사업에 합계 50만 달러 이상 투자
- 중국 서부지역 및 국가 빈곤퇴치 중점 현(縣) 개발 사업에 합계 50만 달러 이상 투자
- 중국 중부지역에 합계 100만 달러 이상 투자
- 중국내 합계 200만 달러 이상 투자

– 중국에서 고위직(부사장, 부공장장, 부교수, 부연구원 등 이상 직위)근무자로서 4년 이상 근무, 중국 거류누계 3년 이상, 납세기록이 양호한 자

- 국무원 각 부문 또는 각 성급인민정부 산하 기관 재직
- 중점 고등교육기관 재직
- 국가 중점 공정 또는 중대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 집행 기업, 사업단위 재직
- 벤처기업, 외상투자독려기업, 외상투자선진기술기업 또는 외상투자상품수출기업 재직

- 중국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자 및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
- 상기 1,2,3항에 해당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18세 미만 자녀
- 중국공민 및 중국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 5년 이상, 중국에서 5년 연속 거류(매년 9개월 이상 거류)하면서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고 주거지가 있는 자
- 부모에게 위탁하는 만 18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만 60세 이상의 외국에 직계가족이 없고 중국내 직계가족에 위탁하는 자로서 이미 중국에서 연속 만 5년을 거류하고 매년 중국에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주거지가 있는 자
 - 직계가족 :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만 18세 성인자녀 및 배우자, 만 18세 성인 손자녀(외손자녀) 및 그의 배우자

5. 수속절차

- (신청)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직할시 공안분국이나 현(縣) 공안기관
- (심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공안국)
- (비준) 공안부
 - ※ 공안부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불허결정을 내려야 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자
- 법원에서 강제추방결정을 받은 자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으로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자
- 비준을 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매년 중국에서의 거류일자수가 누계 3개월 미만 또는 5년 내 중국 거류일자수가 누계 1년 미만인 자

7. 부활제도 : 유효기간이 만기되었거나 내용변경, 훼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재발급 가능

- 8. 포기제도 : 관련 내용 없음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국가이민관리국(<http://www.mps.gov.cn/n2254996/>)
- 10. 기타 사항 : 2004년 8월 15일부터 시행

Ⅱ . 영주권자

-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매년 중국에서의 거류일수가 누계 3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중국에서 누계로 3개월을 거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류지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또한 5년 내 중국 거류일수가 누계 1년 이상이어야 함
-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기간내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음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원칙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다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없음)
- 4. 기타사항 : 외국인영구거류증은 통칭 “뤄카(녹색카드의 의미)”라고 불리고 있음

Ⅲ . 국적제도

-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중국의 국적취득·상실·회복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에 따라 적용
-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 조건
 - 부모 중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인 경우
 - ※ 외국에서 단순 출산한 경우도 중국국적자이나, 부모 중 쌍방 또는 일방이 외국에 정착하여 출생한 경우 외국 국적자임
 - 중국에 정착한 무국적 또는 국적 불분명 부모에 의한 출생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국적취득 조건
 -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 중국에 정착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 국적탈퇴 신청이 승인된 경우

4. 기타사항

- 이중국적 불인정

IV. 영주권 견본

(출처 : 국가이민관리국 홈페이지 2017.10.25자)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증명서, 비자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허가 또는 동반가족허가를 받고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고용 노동허가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불가
 - 100만불 이상 투자자
 - 노동허가를 받고 3년 이상 거주한 기술자로 30만 불 이상 투자자
 - 정부소속 고용인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동의 필요
 -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및 NGO 종사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자격 없음
5. 수속절차
 - 수속기관 :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 신청절차
 - 영주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은 일단 발급되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거나 아래의 경우 효력이 상실됨
 - 중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경우
 - 짐바브웨 내무부가 기피인물(persona-non-grata)로 지정하는 경우
 - 1년 이상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짐바브웨를 떠난 지 5년이 되지 않은 과거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 과거 거주사실증명 및 재정증명 제출 필요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의사를 이민국에 통보하고 영주권을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http://www.zimimmigration.gov.zw>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 소지자는 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짐바브웨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ZIMBABWEAN CITIZENSHIP BILL 2018(Zimbabwe Act [Chapter 4 :01])

2. 국적취득조건

- 노동허가 또는 동반가족허가를 받고 10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짐바브웨 국적자와 혼인을 하고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부모나 조부모 중 짐바브웨인이 있는 자녀

3. 국적상실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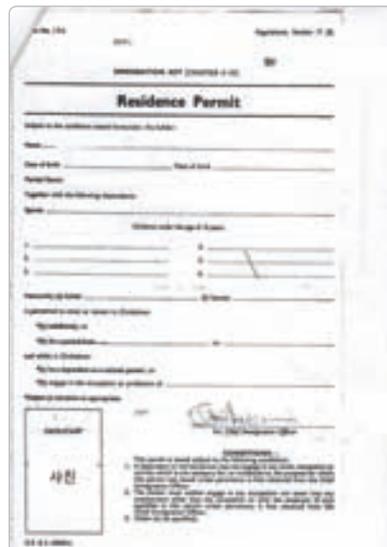
- 국적취득자가 사기, 허위진술, 물질적으로 해당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부모 혹은 조부모가 짐바브웨 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Ⅳ.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2. 영주권 증명서



체코

Czech Republic

I. 영주권

1. 명칭 : Povolení k trvalému pobytu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적색, 청색 혼합)
3. 유효기간 : 10년(10년 단위로 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연속 5년간 체코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 연속 2년간 체코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였으며 EU 시민과 1년 이상 가족관계에 있는 非EU 시민
5. 수속절차
 - 신청자 본인이 체코 내무부 또는 체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15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
 - 신청서 :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www.mvcr.cz)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 연속 5년간 체코에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2장
 - 거주지 증명서
 - 재정증명서
 - 체코어 어학증명서
 - (별도 요청 시) 무범죄증명서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체코어 어학능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발급 일로부터 180일간만 유효함(단, 사진의 경우 외모의 변화가 없다면 제외)
-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체코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 번역 공증 필요),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이어야 함
-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친자확인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임신, 출산, 중병, 학업, 취업 등의 중대 사유 없이 EU 외 국가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체코 외 국가에서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체코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 범죄행위로 인해 체코에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다른 EU 또는 쉥겐 국가에서 추방당한 경우
- 영주권 종료 90일전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체코 내무부 또는 체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주권 종료 3일 전까지 영주권 카드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mvcr.cz(영주권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불가)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임신, 출산, 중병, 학업, 취업 등의 중대 사유 없이 EU 외 국가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체코 외 국가에서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영주권 취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투표권을 제외하고 체코인과 동일한 지위와 혜택 부여
4. **기타사항** :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체코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시민권에 관한 법률 186/2013호(Act No.186/2013 Coll., on Citizenship of the Czech Republic)에 의거하여 체코 시민권 취득 및 상실 조건, 관련 기록 보존 등에 관해 규정
2. **국적취득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족관계, 직업적, 사회적으로 체코 사회에 융화되어 있음
 - 체코의 안보, 주권, 민주주의, 건강 등을 위협하지 않음
 - 체코 영주권 소지(非EU 시민인 경우 최소 5년 이상 영주권 소지)
 - 범죄경력 없음
 - 체코어 구사
 - 체코의 헌법, 문화, 지리,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세금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
 - 재정상태가 증명됨

3. 국적상실조건 : 체코 시민권은 시민의 동의 없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없음

4. 기타사항

- 체코 시민권에 관한 법률 186/2013호(Act No.186/2013 Coll., on Citizenship of the Czech Republic)는 복수 시민권을 허용하고 있음
- 체코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쪽이 체코 시민인 경우 자동적으로 체코 시민권을 가짐
- 체코에서 태어난 아이가 무국적자이고, 부모 중 한 쪽이 무국적자이면서 체코에서 90일 이상 거주 허가를 소지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체코 시민권을 가짐.

IV. 영주권 건본

1. 영주권 카드(비자) 또는 증명서



칠레

Republic of Chile

I. 영주권

1. 명칭 : Certificado de Permanencia Definitiva
2. 형태 : 종이
3. 유효기간 : 영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 취업, 유학, 임시비자 소지자
 - 체류/취업/유학 비자 소유 시는 2년, 임시비자 소유 시는 1년 이상 거주한 자(※단 유학비자는 졸업장을 취득해야 함)
 - 마지막 한 해 동안 국외체류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자
5. 수속절차
 - 수속기관 : 내무부 이민청
 - 제출서류(※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영주권 신청서
 - 범죄 유무관련 신원증명서-구청이나 경찰청 발급
 - 외국인 등록증명서-PDI 인터폴
 - 여권 사본 : 신원정보면 및 비자면 원본확인 필요-공증사무소
 - 칠레신분증 양면사본 : 원본확인 필요-공증사무소
 - 사진 3매 : 컬러 3x2cm, 얼굴 밑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1년)-PDI 인터폴

- 비자 만료일 90일 이내에 우편으로 신청, 발송 후 업무일 기준 약 45일 후 이민국 시스템에 등록되며, 이때부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우편으로 허가 여부 또는 보완요청이 통보되며, 허가될 경우 허가서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칠레국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면제)를 은행에 납부하여 이민국 사무실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함
- 영주권을 교부받고 30일 이내에 PDI 인터폴에 영주권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청에 신분증을 신청해야 함
- 신청이 불허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칠레 법령에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하고, 법원이 이를 최종 판정한 경우, 내무부는 체류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관련 외국인을 강제추방 조치
- 국외체류 허가기간(1년)을 초과할 경우 영주권은 자동 말소됨. 유학 또는 다른 정당한 사유로 입국을 하지 못할 경우, 만기일(출국 후 1년이 되는 날) 60일 전에 관할지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불가사유를 소명하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연속 4회까지 가능

7. 부활제도 : 없음(※ 최초 비자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함. 단, 이전 신분증 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청, www.extranjeria.gob.cl

10. 기타사항

- 신분증의 형태는 시민권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신분증’이라 표기되며 국적란에 해당하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음
- 선거권, 사회보험 등의 가입은 가능하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에서는 시민권자와 차이가 있음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각급 선거 투표권 부여
 - 국민의료보험 및 의무교육 수혜
 - 법적, 규정상 제한을 받지 않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외국인이 칠레국적 취득 시 외국국적 포기명령 없음.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칠레국적 취득 5년 후 공무원 등의 자리에 지원할 수 있음
2. 국적취득조건
 - 만 21세 이상인 자, 혹은 부 또는 모가 귀화자일 경우 만 18세 이상
 - 칠레 내에서 출국기록 없이 5년(첫 체류비자 부여일자 부터)이상 체류한 자
 - 유효한 영주권 소유자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자
3. 국적상실조건 : 칠레 법령상의 중대한 범법행위를 할 경우

IV. 영주권 견본

칠레 영주권(신형)



칠레 영주권(구형)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Card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카드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경제이민

- Express Entry System에 따라, 아래 3가지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각각의 프로그램별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언어능력 · 학력 · 취업경험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가 되어야만 이민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민의향서 제출자는 대기하고 있다가 상위 랭킹자로 선발되어 캐나다 정부(이민난민시민부)로부터 영주권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정식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음.

1) 연방전문기술인력 이민(FSWP)

- 최근 10년 이내 캐나다 직업군(NoC) 레벨 0(매니저급), 유형 A(전문직) 또는 유형 B(기술직)에 속하는 전문 직종에서 최소 1년 이상 유급으로 취업한 경력, 캐나다 언어 벤치마킹(CLB) 7급 이상, 고졸 또는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2) 연방전문기술인력 이민(FSTP)

-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직 종사자,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1년 이상의 고용 제안(Job offer) 혹은 캐나다에서 발급한 기술 면허증 필수, 최근 5년 이내 최소 2년 이상 경력, 최소 언어능력 4급~5급, 학력 제한 없으나 대학 학위 소유자에게 가산점 부여

3) 캐나다경력 이민(CEC)

-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캐나다 직업군(NoC) 레벨 0(매니저급), 유형 A(전문직) 또는 B(기술직)에 속하는 전문 직종에서 일한 경험, 언어능력 (CLB) 직업군에 따라 5급 또는 7급, 학력 제한 없으나 대학 학위 소유자에게 가산점 부여

나. 연방 사업이민

1) 창업 비자(Start-Up Visa)

-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창업자본 지원을 약속받은 해외 유능창업주 대상, 언어능력(CLB 레벨 5 이상) 및 기본 자산 증명 필요(4인 가족 기준, \$23,542)

2) 자영업 이민

- 운동선수, 예술가, 문화인, 농장경영인에 국한, 자기 자신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농장을 매입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자에 해당
-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 요구

다. 주정부 지명 이민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연방정부가 각 주에 일정한 쿼터를 배분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일정 인력을 선발, 최초 이민 신청 시 해당 주 정부에 신청
- 각 주별로 언어능력, 보유기술, 투자금액 등 자체 이민 요건 설정

라. 퀘벡주 선발 전문인력 이민

- 연방 이민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퀘벡주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퀘벡주정부에서 이민자로 선발된 후, 연방정부를 통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거침.

마. 가족 이민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자, 18세 이하 미혼 자녀(입양아 포함), 부모, 조부모를 초청 후 20년간 초청한 분들을 부양해야 하며, 지난 3년간 소득이 가족 수에 따라 증명 가능해야 하고, 최소 소득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바. 돌보미 이민

- 간병인이나 육아돌보미로 2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짐.

사. 난민 : 국제법 및 캐나다 국내법에 따른 기준 충족 필요

5. 수속절차

- 연방전문인력이민,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캐나다경력이민
 - 이민난민시민부 Express Entry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절차 시작
 - 이민의향서 제출→이민신청 가능자로 선발될 때까지 대기→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로부터 이민신청통보가 오면 영주권 신청→영주권 발급
- 창업 비자(Start-Up Visa), 자영업 이민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신청비 결제→지문과 사진 찍기(biometrics)→신체검사와 신원조회→영주권 발급
- 주정부지명이민, 퀘벡주 선발 전문인력 이민
 - 주정부 이민부를 통해 최초 이민수속, 추후 연방정부의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거쳐 영주권 취득
- 가족이민, 돌보미이민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신청 절차 시작

○ 난민

- 캐나다 난민심사위원회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후,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 영주권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 기간 중 혹은 최근 5년 중, 캐나다 체류기간이 730일(2년) 미만인 경우

7. 부활제도 : 효력이 상실된 영주권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상실사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영주권 발급 가능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 영주권자는 영주권 포기 신청서(IMM 5782)를 작성하여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html>

10. 기타사항

- 캐나다 이민정책은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선별 수용하는 경제중심 이민정책으로 전환(과거 투자이민 제도 폐지)
- 2015.1.1일부터 취업경력, 언어능력, 학력 등 점수에 따라 이민신청 가능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Express Entry System)으로 전환, 점수제 선발방식이 도입되면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이민초청이 있어야 이민신청 자체가 가능함.
- 노동인구가 부족한 분야 중심으로 젊은층, 언어능력 보유자 등 준비된 인력 위주로 선발해 영주권 발급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5년 기간 중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가 3년을 초과해 국외에 체재했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얻은 추가정보를 검토한 후, 입국허가 여부 및 지위(영주권자 혹은 외국인으로 입국여부)를 결정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투표권, 선거출마권 및 연방 공직자 임용을 제외하고는 법적지위에서 시민권자와 차이가 없음.
 - 무료 보건혜택, 노령연금 포함 각종 연금혜택, 세제 혜택 및 무상 교육 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캐나다 국적제도의 규정법령은 캐나다 시민권법(Canadian Citizenship Act)임.
* 최근 개정된 시민권법 발효(2017.6.19. 발효)
2. 국적취득조건
 - 영주권 취득 후 총 5년 중 3년 거주(영주권 취득 전에 유학, 취업 등 임시비자로 거주한 기간도 의무 거주 50% 인정, 최대 365일까지 인정해줌.)
 - 소득세 납부 3년 증빙
 - 시민권 신청자가 18-54세인 경우 영어(또는 불어) 시험 및 시민권 시험 통과해야 함.

3. 국적박탈사유

○ 캐나다 시민권 법에 근거

- 캐나다 시민권 신청 시 : 허위진술, 사기, 고의로 은폐 정황이 있을시
-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 테러행위, 반역죄 또는 첩보활동 등 유죄판결을 받았고, 접수된 형에 따라, 캐나다와 무력 충돌이 있는 국가나 조직무장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자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전면



후면

2. 영주권 증명서



Government
of Canada

PROTECTED - B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Family name: _____

Given name(s): _____

Date of birth: _____

Sex: _____

Citizenship: _____



UCI



App. no.



Document no.

PERSONAL DETAILS - PA

Marital status:	Place of birth:	COB:
Height (cm):	Eye color:	COR:
Last entry at:	Last entry date:	Orig. entry date:
Became P.R. at:	Became P.R. on:	Undertaking (now):
Travel doc. no.:		Expiry date:
Country of issue:		

APPLICATION DETAILS

Issued at:	Issued date:	Valid to:
Category:	Prvs. of dest.:	City of dest.:
Special program:	Trans. loan no.:	Flight no.:
CSQ no.:	ESOC no.:	PNC: _____

Conditions:

NONE

Charged/convicted of a crime or offence in any country, refused admission to Canada or required to leave Canada?

MEDICAL DETAILS

MIE no.:	Surveillance code: 1	Valid to:
----------	----------------------	-----------

SPONSOR INFORMATION

Sponsor:	Name:
DOB:	Relationship:
Address:	

DEPENDANT(S) INFORMATION

Have you any dependants other than those listed below?

REMARKS

Immigration Officer: _____ Date (YYYYMMDD): _____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I fully understand the conditions imposed.

Date (YYYYMMDD): _____

CLIENT COPY



케냐

Keny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비자를 7년 이상 받아온 자로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일까지 케냐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 케냐인과의 결혼하여 3년 이상 된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Form 23) 2매 작성 및 자기소개서
- 노동비자 사본 및 여권사본 및 여권용 사진 2매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원본)
- 신청 수수료 500,000케냐실링 및 수속 비용 10,000케냐실링 지불
- 배우자의 경우 결혼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신청 수수료 50,000케냐실링 및 수속 비용 5,000케냐실링 지불
-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등으로 가족관계 증명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케냐 시민권법(under section 38) 위반 또는 의무 이행을 하지 못했을 때
- 케냐 정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케냐 정부의 판단)
- 결혼사실이 위장이나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7. 부활제도

- 내무부장관(Minister of interior coordination)에게 서면으로 영주권 부활을 요청할 경우 심사 및 판단을 거쳐 승인

8. 포기제도

- 본인의 포기 의사에 의해 이민국 국장에게 서신으로 통보 시

9. 신청 및 홈페이지

- e-citizen 계정이 생긴 후 온라인으로 신청
- <https://fns.immigration.go.ke/> (link for eFNS)

10. 기타사항

- 케냐 이민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폐지되고 온라인으로 신청 (www.ecitizen.go.ke 또는 <https://fns.immigration.go.ke/>)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기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제도가 필요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케냐에서 고용될 수 있는 권리
- 교육 제공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합법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Regulations, 2012

2. 국적취득조건

- 케냐에서 출생한 경우
- 케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7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 과부
- 국적 신청시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계속해서 케냐에 거주한 자
-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부모가 케냐 시민권자일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국적 포기를 선언한 자
- 케냐 여권 원본 및 ID 카드
- 국적 상실 양식 2매 작성 제출
- 다른 나라 국적 여권사본 또는 시민권 사본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증명서

Form 24

№ 0799

CERTIFICATE OF PERMANENT RESIDENCE

..... is authorized to enter and remain in Kenya as a permanent resident in accordance with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s 37, 38 and 39 of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No. 12 of 2011.

Issued this day of 20.....

.....
Director of Immigration Services

File Reference number.....

코스타리카

Costa Rica

I. 영주권

1. 명칭

- 임시거주권(Residencia Temporal)
-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임시거주권 : 1년, 2년(카테고리에 따라 상이)
- 영주권 : 2년, 3년, 5년(카테고리에 따라 상이)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거주권
 - 코스타리카 국민의 배우자
 - 기업중역 및 기술인력(배우자 및 자녀 포함)
 - 투자자
 - 과학자, 전문인력 및 연수생
 - 운동선수
 - 주재원 및 언론가
 - 자영업자 및 취업근로자
 - 외교부가 인정한 종교의 종교인
 - 연금수급자 등

- 영주권
 - 임시거주권 취득 후 3년 이상된 자
 - 코스타리카 국민의 가족(부모, 자녀 및 형제 포함)
 - ※ 자녀 및 형제는 미성년 혹은 장애가 있는 성인의 경우만 해당
-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코스타리카 출입국청에 제출
- ※ 카테고리 별 구비서류는 출입국청 홈페이지(www.migracion.go.cr)로 확인 가능
-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법령이 지정한 영주권 부여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출입국청의 통제없이 불법 출입국한 경우
 - 최근 10년간 코스타리카나 해외에서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영주권자가 4년 연속 정당한 사유(학업, 건강, 가족 등) 없이 해외 체류한 경우
 - 임시거주권자가 2년 연속 정당한 사유(학업, 건강, 가족 등)없이 해외 체류한 경우
 - 허위 서류로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 권한이 없는 자가 허가없이 영리행위를 한 경우
 - 치안 및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거나 전력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신분증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이민목적으로 코스타리카 국민과 허위 혼인한 경우
- 7. 부활제도**
- 이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 8. 포기제도**
- 이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코스타리카 출입국청(www.migracion.go.cr)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4년(해당 기간 이상 해외체류 시 영주권 박탈)

- 1년 이상 해외체류 후 영주권 갱신 시, 사유서 및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 불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헌법에 명시된 코스타리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행사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헌법 2조 13항)
 - 부 또는 모가 코스타리카 국적자이며, 코스타리카에서 출생한 자
 -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나 코스타리카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등록된 자
 - 외국인의 자녀이나 코스타리카에서 출생한 자
-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헌법 2조 14항)
 - 이전 법령에 의해 귀화를 인정받은 자
 - 출생에 의한 중남미 및 스페인 국적자 중 공무의 목적으로 5년간 코스타리카에 거주하고 법령이 정한 조건을 만족한 자
 - 출생에 의하지 않은 중남미 및 스페인 국적자 중 공무의 목적으로 7년간 코스타리카에 거주하고 법령이 정한 조건을 만족한 자
 - 코스타리카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으로 본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코스타리카 국적자와 혼인 후 2년 경과한 자로 동일한 기간 코스타리카에서 거주한 자

2. 국적취득조건(헌법 2조 15항)

-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한 자
- 품행이 올바르며 스페인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보유하고 코스타리카 역사 및 가치관에 관한 시험 통과한 자
- 코스타리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자

3. 국적상실조건(헌법 2조 17항)

-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국제협약 상 양해를 받은 경우 제외)
- 귀화에 의한 코스타리카 국적취득자 중 6년 연속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콜롬비아

Colombia

I. 영주권

1. 명칭 : Visa de Residente(RE) 및 Cedula de Extranjeria(CE)
2. 형태 : 비자 및 ID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콜롬비아 국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콜롬비아 국적인 경우
 - 콜롬비아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 혼인(TP10)비자를 소지하고 콜롬비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 자격 부여
 - 일반인의 영주권 취득
 - 유학(TP3), 취업(TP4), 종교인(TP5), 은퇴·투자(TP7), 난민(TP9)비자를 소지하고 콜롬비아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 자격 부여
 - 콜롬비아에서 강력 범법사실이 없는 경우(18세부터 65세 이내는 범죄증명서 필요)
 - 콜롬비아 월 최저임금의 650배 이상을 투자하고 콜롬비아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 영주권 취득이 될 수 없는 비자
 - 특혜, 상용, 예우, 상용, 승무원비자 소지자, NGO 또는 비영리 봉사단체 일원, 사법(행정)처리를 위한 방문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불가
- 5. 수속절차** : 영주권 취득 조건이 충족되면, 콜롬비아 외교부에 신청
 - 먼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이민청) 받은 후 비자를 신청(외교부)하고 마지막으로 ID 카드를 발급(이민청)받음
-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국가에 해가 되는 범죄를 범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콜롬비아에서 추방될 경우
 -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기 문서일 경우
 - 콜롬비아에서 출국 후 연속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7. 포기제도** : 포기제도는 없으나, 영주권 유효기간이 5년이어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효력 상실
-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비자 발급 · 갱신 : 외교부
http://www.cancilleria.gov.co/tramites_servicios/visas/clases
 - 직접 방문, 인터넷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ID 발급 : 이민청, <http://www.migracioncolombia.gov.co>
 -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 영주권

1. 명칭 : 영주비자(VISA D'etablissement Permanent)
2. 형태 : 여권 내 스탬프 형식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5년 이상 콩고민주공화국 내 거주 외국인
5. 수속절차 : 구비서류는 신청서(\$100), 여권, 거주증명서(거주지역 관공서 발행), 재직증명서 등 체류목적 소명서류, 콩고민주공화국 세금납부 증빙서류, 무범죄 증명서(한국에서 발행한 것과 체류지역 내 관할 관공서 발행), 자산보유 증빙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영주권비자 승인 시 비자수수료 \$1,500 및 각종 서류발행 시 수수료 있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징역형 및 형법상 중대 징계를 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이민국에 서한 발송 시, 여타 절차 없이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Direction Générale de Migration),
www.dgm.cd
10. 기타사항 : 출국 시 출입국비자(Visa sortie-retour) 신청 의무 면제

Ⅱ.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없음. 의료 및 연금 납부 시 혜택 부여

Ⅲ. 영주권 견본



쿡제도

Cook Islands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y
2. 형태 :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나 영주권 증서
3. 유효기간 : 무기한 유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쿡제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뉴질랜드 국적보유자에 한하여 3년 이상 거주) 쿡제도에 주요한 공헌을 하거나 투자한 사람
 -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기술, 경험, 공동체 활동, 재정 투자 등을 통해 쿡제도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음과 선량한 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영주권 신청 시 외국어 능력 (영어 능력 - 상, 쿡제도 마오리어 - 소통 가능)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
5. 수속절차 : 쿡제도 수도인 아바루아에 위치한 외교이민부에 비치된 영주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 시 쿡제도에 거주하여야 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3년을 초과하여 쿡제도 외에 거주하는 경우 외교이민장관에 의해 영주권 취소가 가능함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쿡제도 외교 이민부

○ 공식 홈페이지 : www.mfai.gov.ck

○ 공식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mfaicookislands/>

*공식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치 않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상기 쿡제도 외교이민부의 공식 페이스북의 대화하기 기능을 통하는 것을 권장

10. 기타사항

○ 쿡제도의 영주권 발급은 650건으로 제한(내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또는 5년 미만의 거주 목적을 위한 영주권 신청은 제외)

○ 쿡제도는 영주권 취득이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음

○ 외국어 요건 (영어와 쿡제도 마오리어)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이 있으면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재입국 허가를 받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을 취득하고 쿡제도에 거주중이라면 쿡제도의 시민과 동일하게 참정권, 노후연금, 육아수당과 출산휴가 등의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음

Ⅲ. 영주권 견본




 OFFICE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RAROTONGA

CERTIFICATE OF PERMANENT RESIDENCE

THIS IS TO CERTIFY THAT _____

of _____ i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Cook Islands
 pursuant to Section 5 of the Entry, Residence and Departure Act 1971-72.

Dated at _____ this _____ day of _____ 20 ____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This certificate may be cancelled if the persons whom it relates is absent from the Cook Islands continuously for a period exceeding three years in circumstances indicating that he has ceased to make his home the Cook Islands. A permanent resident is no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Entry, Residence and Departure Act 1971-72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of entry and residence permits.



**COOK ISLANDS
IMMIGRATION**

Passport No: _____
 is a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Entry,
 Residence and Departure Act 1971-72,
 with free right of Entry.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
 Date: _____

크로아티아

Republic of Croatia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Stalni Boravak)
2. 형태 : 카드(생체인식 거주허가증, Biometrijska dozvola boravka, EU 표준)
3. 유효기간 : 무기한(카드는 5년마다 재발급)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 거주 허가 취득 후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 5년 기간중 국외체류 기간이 1회 6개월 이내, 총 10개월 이내인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
 - 일용직 및 단기 계약 근로자, 외국 고용주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체류 및 노동허가를 받아 거주한 기간과 신고를 받아 복역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에 불포함
 - 유학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한 기간 및 망명 또는 보호처분을 받아 거주한 기간은 실 거주기간의 50%만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인정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생활능력이 있는 자
 - 의료보험 가입자
 -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문자의 구사·해독이 가능하고, 크로아티아 문화 및 사회체제에 대한 지식 보유자

- 미취학자, 크로아티아에서 초·중·고 또는 대학 교육 이수자, 65세 이상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결혼이민자도 예외 인정)

○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자

※ 상기 조건에 관계없이 크로아티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는

- 크로아티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 크로아티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다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동의한 경우
- 크로아티아에서 출생하고 계속 거주한 외국인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로 거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음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경찰청/경찰서에 영주권 발급을 신청
- 최종 영주권 부여 여부는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가 결정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관계당국의 결정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입국 및 거주가 금지된 경우
-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재한 경우
- 영주권 신청 시 영주권 부여 결정을 하는 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권 포기를 신청한 경우
- 망명 또는 보호처분을 박탈당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영주권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경찰청/경찰서, 내무부(<http://www.mup.hr>)

10. 기타사항 : 2013년부터 스티커형 영주권 사증은 발급 중단 (카드형만 존재)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내

-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재한 경우 영주권 효력 상실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한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재입국 허가 불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또는 영리활동이 가능
-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 교육 및 장학제도 대상
- 사회보장제도(연금, 건강보험, 양육보조)에 가입 및 수혜 가능
- 조세 혜택, 공공재화 및 서비스 접근 가능
- 노조 및 사회단체 가입 가능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크로아티아 국적법(Croatian Citizenship Act)에서 국적의 취득, 취득조건, 상실조건 등 국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율
- 크로아티아 국적은 △혈통,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출생(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무국적자만 해당되며, 외국인의 자녀는 불포함), △귀화, △국 제조약에 의거해 취득 가능

2. 국적취득조건

- 18세 이상으로 직업능력을 보유한 자
- 국적 신청일 현재 혹은 국적 취득 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명 필요
- 국적 신청일 현재 최소 8년 이상 계속 크로아티아에 거주한 영주권자
-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문자의 구사·해독이 가능한 자
- 크로아티아 법령과 관습을 존중하고, 크로아티아 문화를 수용하는 자

3. 국적상실조건

- 크로아티아 정부의 공식적인 국적 취소 처분
- 본인의 자발적인 국적 포기
- 국제조약에 의한 국적 상실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카드형 : 85,6mm × 53,98mm)



I. 영주권

1. 명칭 : 외교영구거류증(外僑永久居留證)
2. 형태 : 카드(하늘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무기한(단, 매년 타이완 체류기간 183일 미만일 경우 자동 효력상실)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근 5년 이내 범죄기록 무보유,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합법적으로 연간 183일 이상씩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 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 또는 외국국적 자녀로서 10년 이상 거주자(그 중 5년은 매년 183일 이상 거주)
 - 상기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
 - 문화, 예술, 과학기술, 체육, 산업 등 전문영역에서 국제적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한 자
 - 영리사업에 1,500만 NTD 이상 투자하고 5명 이상의 타이완인을 3년 고용한 투자자, 또는 중앙정부 공채 3,000만 NTD 이상 3년 투자자
5. 수속절차 : 신청서류 구비 후 타이완 이민서에 방문하여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매년 타이완 거주기간 183일 미만의 경우
- 허위 신청자료 제출 · 불법취득 · 위, 변조 문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서(<http://www.immigration.gov.tw>)

10. 기타사항 : 수수료 10,000 NTD, 처리기간 14일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매년 183일 이상 타이완에 체류해야 함. 단, 특이 사유로 이민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허가 필요 없음(복수 출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법적지위 부여되지 않음
- 사회복지 혜택은 없음(국민건강보험은 거류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부여됨)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근거법령 : 타이완 국적법 제1~23조
- 핵심내용 : 중화민국(타이완)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및 철회는 동 법의 규정을 따름

2. 국적취득조건

- 만 20세 이상으로, 타이완 내에서 합법적으로 연간 183일 이상씩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범죄기록, 언어능력, 재정능력 증명 등 관련 서류 필요)
- 타이완 내에서 합법적으로 연간 183일 이상씩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가 타이완 국적인 자
 - 타이완 경내에서 출생한 자
 - 타이완 국적 소유자의 친권자
 - 부 또는 모가 현재 또는 과거에 타이완 국적을 보유한 자(미성년 자녀의 경우,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양부 또는 양모가 타이완 국적인 자 (미성년 자녀의 경우,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3. 국적상실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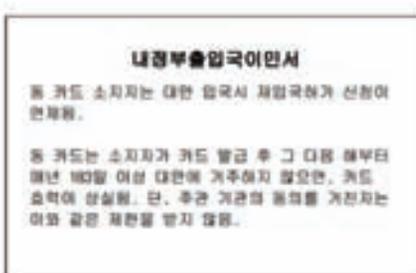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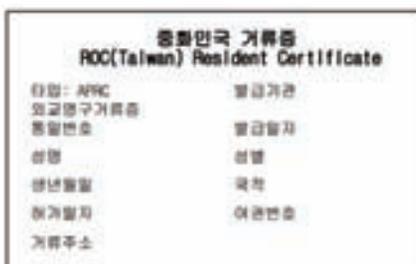
- 타이완 국적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내정부의 허가를 거쳐 타이완 국적을 상실함
 - (양)부 또는 (양)모가 외국국적인 자로서, 해당 국적을 취득하여 국외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국적자의 배우자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상실 신청자가 만15세 이상의 병역미필 남자이거나 현역 군인 또는 공직자일 경우, 상실허가를 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속인주의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을 인정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I. 영주권

1. 명칭 :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태 : 수첩

3. 유효기간 : 영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공통 자격 : 태국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한 자로서 태국어 의사소통 및 이해가 가능하고 인터폴의 수배자가 아니어야 함. (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입국규제자가 아니어야함.)

가. 투자에 의한 영주권 신청

- 태국에 투자한 자본금이 10,000,000 바트 이상으로 송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태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투자일 경우만 가능
- 투자한 법인이 태국의 안정과 질서, 문화 및 태국시민의 도덕성에 상반되지 않아야 함.
-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년 9월말까지 투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취업에 의한 영주권 신청

- 취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10,000,000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태국 정식 등록 법인이어야 함.
- 직위는 간부급 (이사급)으로 회사 등록 서명권한을 가진 자로, 영주권 신청 일시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 신청인의 월급이 최소 5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2년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세한 경우이어야 함.
- 해외통상관련 업계의 경우 3년간 평균 한해 20,000,000바트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동 사항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국내 제조업체에게 대출해준 경우에는 과거 3년 동안 100,000,000바트의 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관광업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최소 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법인으로 관련기관으로 부터 동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업계 종사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최소 5,000,000바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어야 함.
-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노동허가증을 유지한자, 현재 근무지에서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자,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간 지속적으로 월급이 80,000바트 이상이거나 연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액이 100,000바트 상당이어야 함.

다. 태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 (1) 태국 국적인의 외국인 배우자
 -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혼인등록하여 둘 사이의 자녀가 있어야 함
- 불임인 경우 병원에서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녀가 없으나 병원에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전에 혼인 등록을 필한 자
- 한쪽 또는 두 명의 수입이 생활하기에 충분하거나,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바트이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을 제출해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나이가 연로한 경우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인 자
-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혼인등록을 필한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자의 과거 2년 동안의 1년 평균 월급이 65,000바트 이상인 자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2) 태국 국적 부모의 외국국적 자녀

○ 태국 국적의 부 또는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

-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자의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태국 국적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 친부모이어야 하며, 부모관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자의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3) 태국 국적 자녀의 외국 국적 부 또는 모

- 태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외국 국적 부 또는 모
 - 친부모이어야 하며, 부모관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보호자의 과거 2년 동안의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태국 국적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외국 국적 부 또는 모
 -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부양자는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4) 영주권자의 배우자

-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를 부양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자
 -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혼인등록을 필한 자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5) 영주권자의 자녀

- 영주권을 소지한 부 또는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
 -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부 또는 모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 영주권을 소지한 부 또는 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
 - 친자이어야 함
 -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 부 또는 모는 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6) 영주권자의 부 또는 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보호하여야 하는 부 또는 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부 또는 모는 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 또는 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라. 전문가(전문직업 종사자)

-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태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 3년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한 자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마. 기타

- 개인으로 태국에 이익을 주었다고 태국 정부가 인정하여 태국 정부기관이 공한을 발급하여 준 자

5. 수속절차

가.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태국이민청의 신청일자를 확인한 후 영주권 신청

- 신청 수수료 : 7,600바트(환불되지 않음)

나. 신청일로부터 결과통보가 있을 때까지 180일 단위로 태국 거주 허용

다. 신청 후 태국어 의사소통 및 이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일자를 통보받고 출석

- 14세 이상의 경우는 범죄경력 확인
 - 지문을 통해 태국 내 범죄경력여부 확인
 - 태국 이민청의 입국 규제자 여부 확인
 - 인터폴 수배자 여부 확인
 - 원국적 국가의 범죄 경력 확인

라. 심사

- 내무부, 외교부, 경찰청, 노동부, 검찰청, 투자청, 국가 안보청, 관광청, 이민청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이민청 위원회의 심사와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결정
- 수입, 재산, 직업능력, 가족관계, 인성, 건강, 태국어 이해능력과 태국의 경제, 사회, 정책 상황에 어울리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 심사기간은 위원회와 내무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됨.
- 영주권 191,400바트, 태국인 또는 태국 영주권이 있는 자와 혼인한 경우, 태국인 또는 태국 영주권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95,700바트 (태국이민법 발효 전 입국자의 경우 19,000바트)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국 허가 기간을 위반한 경우
- 태국 법을 위반한 경우(특히 태국 이민법53조 및 12조를 위반한 경우)
- 투자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국이 지정한 조건(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간 투자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7. 부활제도 : 취소가 된 경우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름.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태국이민국 : www.immigration.go.th
- 전화 : 02-141-9889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료보험 수혜, 의무교육 혜택은 없으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인 90일마다 주소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1965년 재정된 후 1992년 수정된 국적법 9항 및 10항에 따름.
- 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을 하면 내무부 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국적이 부여됨.

2. 국적취득조건

- 태국법과 원국적 국가의 법에 따라 성년인 자
- 품행이 바른 자
- 재직여부 확인
 - 태국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월급이 8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3년간 납세사실이 있어야 함.

- 태국인과 혼인, 태국인 자녀가 있거나 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의 경우 : 월급이 4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3년간 납세사실이 있어야 함.

- 5년 이상 계속하여 태국에 주소가 있을 것
- 태국어 의사소통 및 이해 능력이 있는 자로 태국국가 및 왕실찬가를 제창할 수 있어야 함.
- 태국 국적을 취득 후 해당 대사관을 방문하여 기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신청 당시 위조서류를 사용한 경우 국적을 취득한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
- 태국 국적취득 후 원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 태국 안정과 질서에 영향을 주거나 국가를 경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태국 시민의 도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년 이상 태국에 거주지가 없이 다른 나라에 거주한 자
- 태국과 전쟁이 발발한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던 자는 심사에 의해 결정됨.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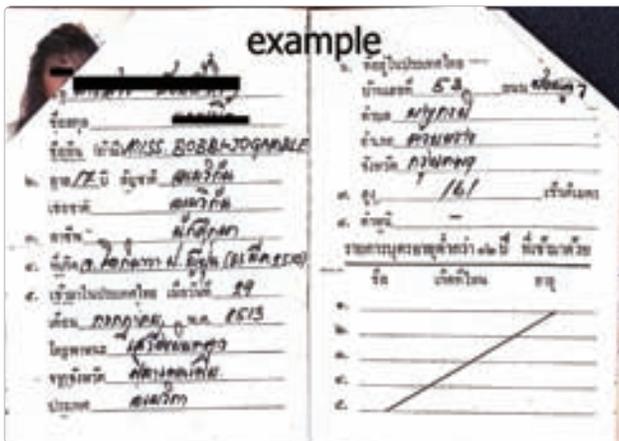
- 수수료 : 5,000바트
- 연락처 : +66 2-252-1714, +66 2-252-2708, +66 2-205-2970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2. 영주권 증명서



트리니다드토바고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I. 영주권

1. 명칭 : Grant of Resident Status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
 - 트리니다드토바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트리니다드토바고 국민의 배우자 혹은 부모
 -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
5. 수속절차
 - 영주권 신청양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요청 서한을 아래 서류와 함께 국가안보부(Ministry of National Security)에 제출
 - 출생등록증 원본/사본, 결혼 증명서 원본/사본, 여권, 사증, 여권 사진 3매, 세금증빙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하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력 상실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국가안보부(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http://www.immigration.gov.tt>

10. 기타사항 : 신청비용은 없으나, Certificate 수령비용 TT\$ 1,000 (약 162미불)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여권에 Resident status 스탬프가 찍혀있어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권

파나마

Panama

I. 영주권

1. 명칭 : 영주권(Permiso de Residente Permanente 또는 Permanencia Definitiva)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 (갱신 불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파나마에서 우리 국민은 ‘우호국 영주권’과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비자 소지 경력자를 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가. 우호국 영주권 (Residencia Permanente para Países que poseen relaciones de Amistad con Panamá)

- 파나마 정부는 2012.5.16자 공공안전부령 제343호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하여, 우호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은 5천불 이상의 금액을 파나마 은행 계좌를 예치하고, 파나마 내에서 노동·투자 등 경제활동을 할 경우,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우호국 영주권은 갱신이 필요 없으며 신청자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나.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비자 소지 경력자를 위한 영주권 (Residencia Definitiva en calidad de Personal Permanente que haya trabajado para una ‘Sede de Empresa Multinacional (SEM)’)

- SEM 비자(유효기간 5년)는 SEM 라이선스를 취득한 다국적 기업의 파나마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온다고 인정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파나마 정부는 2013.8.2.일자 공공안전부령 제222호를 통하여 SEM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직원으로서 SEM 비자(5년)를 소지하고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파나마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함.
 - 단,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SEM 비자 발급의 근거가 된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라야 함.

5. 수속절차 : 파나마 이민청에 변호사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청에서는 유효기간 1년의 출입국 비자와 체류 허가증을 발급(사실상 영주권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이 발급됨.

가. 우호국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여권사본(파나마 공증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를 통한 원본대조필, 성인만 필요,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파나마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동 기간 해외체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파나마 경찰청 사법조사국(DIJ, Direccion de la Investigacion Judicial)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파나마 의사가 발행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수취인을 국고(Tesoro Nacional)로 하는 수표 250불(이민 절차 진행)과 수취인을 이민청으로 하는 수표 800불(절차 중단 시 비용 보전을 위한 예치금적 성격)
- 개인정보진술서(변호사가 양식 제공)
- 혼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를 통한 원본대조필)
 - 본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 시만 필요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경제활동 증명서류
 - 파나마에 대한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 등록 증명서, 영업신고서
 -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 신청 : (파나마 사회보장보험(CSS)에 가입된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 지급능력 증명 서류 : 파나마 은행잔고 5천불 초과 또는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최근 1개월분 은행잔고 증명서 또는 명세서
- 본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거주지의 수도, 전기, 또는 전화요금 영수증
- 신청인 증명사진 6매

나. SEM 비자 소지 경력자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이민청에 제출할 영주권 발급 신청서 및 변호사 위임장
- 신청인 증명사진 6매
- 파나마 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여권 발행 기관이나 파나마 주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여권 사본
- 파나마 의사가 발행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개인정보진술서(변호사가 양식 제공)
- 파나마 대한 투자 증거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만족시켜야 함)
 - 최소 15만 불이 예치된 신청인 본인 명의의 파나마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명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15만 불 이상의 부동산 등기 등본
 - ※ 예금액과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15만 불 이상인 경우도 투자 증거로 인정
- 신청인이 근무했던 회사(SEM 라이선스 하에 운영)의 법인장이 서명한 회사의 근무 경력확인서(파나마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신청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SEM 라이선스 하에 설립된 회사임을 확인하는 SEM 라이선스 위원회(Comision de Licencias de Sede de Empresas Multinacionales)가 발급한 확인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이민법(Decreto Ley3 de 2008) 제31조에 규정

- 국외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면서, 사후 해당 체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 국가 안보 위협, 영주권 부여 근거에 맞지 않는 활동, 허위 문서 제출, 조세 범죄나 사기로 처벌받은 경우 등

7. 부활제도

- 국외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상실하였으나 해외 체류 사유가 합리적이었음을 확인받는 경우

8. 포기제도 : 자발적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파나마 이민청(Servicio Nacional de Migración Panamá)
- 홈페이지 : <http://www.migracion.gob.pa>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파나마에서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파나마 신분증(Cedula) 수령이 가능함.
- 사회보장기금(CSS)에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가능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파나마 헌법 제8조) 파나마의 국적은 출생, 귀화 또는 헌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다.
- (파나마 헌법 제12조) 귀화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국가는 도덕, 안전, 건강,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등을 사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파나마 헌법 제13조) 출생에 의해 취득된 파나마 국적은 상실되지 않으나,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통해 시민권 행사는 유예된다.

2. 국적취득조건 :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음.

가. 필요 제출 서류

- 파나마 경찰청과 출생국에 의해 발행된 범죄경력증명서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파나마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영주권 사본
- 경제적 지불능력 확인서
- 소득세 납부 내역
- 파나마 의사가 발행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나. 귀화 시험 : 파나마 선거재판소는 신청자에게 귀화 시험 일자를 통보하며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음.

- 파나마 역사 및 지리
- 파나마 시민권에 관한 사항
- 스페인어 능력

3. 국적상실조건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상실되지 않으나, 명시적(서면을 통해 제출) 또는 암묵적(적성국을 돕거나 자발적으로 타국 국적을 취득한 때)인 포기를 통해 시민권 행사가 유예됨.
4. 기타사항 : 귀화 신청 시 파나마 법무부는 필요 제출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류 심사 단계에서 국적 취득이 거부될 수 있음. 또한 국적 획득은 파나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2-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됨.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앞/뒷면)



파라과이

Paraguay

I. 영주권

1. 명칭

- Admision Permanente (영주권)
- Admision Temporario (임시영주권)
- Residencia Precaria (임시체류허가)

2. 형태

- 카드(영주권)
- 여권에 고무인날인(임시체류허가)

3. 유효기간 : 영구 / 임시영주권 1년 / 임시체류허가 6개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투자이민
- 투자 목적 사업
- 취업(현지고용주의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5. 수속절차

- 제출서류
 - 파라과이 입국 사증(Visa)
 - 본국(거주국)의 무범죄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건강증명서(진단서)

- 유효한 여권

○ 수속기관

- 경찰국 수사과에 외국인 등록

- 이민청에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수령 후 경찰국에 주민등록 (Cedula de Identidad)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무기징역 수형 시

○ 3년 이상(신고 없이) 국외체재 시

7. 부활제도 : 최초의 신청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외국국적 취득 경우 현지 법원에서 확인서 발급 시 영주권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청, <http://www.migraciones.gov.py>

10. 기타사항

○ 2005년 영주권제도와 비교하여, 유효기간 10년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없어
짐(한번 발급된 영주권은 계속 유효함)

○ 영주권에 '유효기간 10년'이 기재되어 있어도, 갱신(재발급)이 필요 없음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3년간 복수 재입국

○ 재입국 증명절차 없이 출·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과태료 부과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및 투표권 행사(대통령, 상·하의원 선거
시 투표권 없음)

- 영업행위
- 부동산 소유
- 의무교육혜택

Ⅲ. 영주권 견본

1. 종전 발급되던 영주권 형태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 (내무부 직인)

제목 : 영주권

유효기간 : 10년

일련번호 : A 시리즈

신청인 서명

IC (외국인등록번호) :

성명 :

출생지 :

생년월일 :

Civil Status : 기혼, 성별 :남

접수번호 : - , 1992년 05월 26일

비고 : 영주권 갱신

발급지 / 발급일 : 아순시온, 2005년 11월 09일
(이민청장 서명과 직인)

파키스탄

Pakistan

I. 영주권

1. 명칭 : POC(Pakistan Origin Card)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7년 및 5년(파키스탄인의 배우자)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외국인중 과거 국적자, 부모/조부모 국적자와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자녀
5. 수속절차 : 파키스탄 국립자료등록소(NADRA) 및 재외공관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파키스탄 국적 회복 시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nadra.gov.pk
10. 기타사항 : 내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에게도 발급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무제한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무제한 허용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무사증입국, 외국인등록면제, 부동산거래가능, 은행계좌 개설
- 4. 기타사항 : 동 카드로 신분증(CNIC) 대체 가능

Ⅲ. 영주권 견본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여권유효기간 이내, 자격 유지 시 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250인 이상 고용하고 5년 이상 운영, 1천만 키나(약 330만 미불) 이상 매출액
 -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의사, 교육자 등)
 - 5년 이상 거주하고 년 25,000 키나(약 8,000 미불) 이상인 종교인
 - 5년 이상 거주한 55세 이상 은퇴자로서 년 5만 키나(약 17,000 미불) 소득 있는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 건강진단서, 신원조사서 및 기타 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PNG 법에 의해 3개월 이상 수감될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12개월 이상 국외체류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파푸아뉴기니 이민국(<http://www.immigration.gov.pg>)

10. 기타사항

- 영어 또는 파푸아뉴기니 언어(피진어) 구사자로 거주 지역에서 평판이 좋아야함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12개월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노동법에서 면제(가족은 해당 없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Constitution and Citizenship act in 2016, 일부국가(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피지, 바누아투, 사모아) 이중국적 허용
2. 국적취득조건 : 6개월 이상 거주 국가 경찰서 발행 신원확인서, 보증인, 재정능력 증명서, 기존국적 포기서,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등 모든 서류를 공증 받아 이민국에 접수
3. 국적상실조건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일부국가 이중국적 허용

페 루

Peru

I. 영주권

1. 명칭 : Carné de Extranjeria (INMIGRANTE)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권 취득 후 2년 이상 연속 페루거주자로서, 최근 2년간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5. 수속절차 : 이민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Naturalización)에 신청
 - 신청서식 F-004 (홈페이지 www.digemin.gob.pe에서 내려받기 가능)
 - 수수료(S/. 117.60) 납부 영수증 (납부은행 : Banco de la Nación)
 - 신분증의 복사본 :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외국인 등록증(Carne de Extranjeria), 의전신분증(외교관, 영사관, 공무원), 페루출입국 카드 (TAM : Tarjeta Andina de Migracion)¹⁾
 - 인터폴 전과조회서 (Ficha de Canje Internacional – INTERPOL) (미성년자 제외)
 - 신청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연간 10 UIT²⁾ 이상의 소득납부 재정증명
 - 체류자격의 지속성 입증-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체류증 소지

1) 단기 방문자의 경우에 한함. TAM은 페루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스탬프를 찍어준 출입국카드를 말함

2) UIT :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과세단위)로 SUNAT에서 매년 고지하며, 2014년은 S/. 3,800 임

※ 참고사항

- 신청 서식지는 신청인이 직접 서명할 것
- 신청인은 신청 시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소지하고 있을 것
- 카톨릭계 종교인은 인터폴 전과조회서 첨부 미해당
- 신청인이 종교인으로 페루에 합법 거주하고 있을 경우, 상기 10 UIT 소득 증명은 페루 국내에서의 교수직이나 건강 관련 업무로 인한 소득 또는 외국에서 입금되는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취업자, 전문직업인 또는 투자자 자격으로 페루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10 UIT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 내역,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을 통해서 신고해야 함. 전문직업인의 경우에는 수입료 영수증 발급 내역 또는 연간 소득신고 납부 내역 등의 서류를 통해서 증명해야 함
-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 첨부 필수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페루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며, 영주권카드는 5년의 유효 기간이 있어서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함
- 영주권 취소는 영주권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취소를 신청하거나 범법행위(중범죄)가 있을 경우 페 정부의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음

7. 부활제도 : 이민국에 부활 신청

8. 포기제도 : 본인이 포기의사 표명시 관련절차에 따라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http://www.migraciones.gob.pe>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의 면에서 페루 국민과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페루 국적자와 같이 납세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 페루 국민이 주민등록증(DNI, Documento Nacional de Identificacion)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영주권(Carne de Extranjeria)을 제시하는 차이가 있음. 영주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외국인의 경우, 페루의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함

III. 영주권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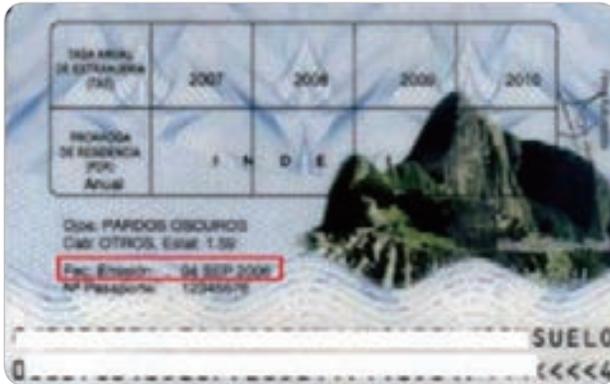
1. 종전 발급되던 영주권 형태



페 루 공 화 국
이주귀화국
이주자격 : 이민

성(Apellidos) :
명(Nombres) :
국적(Nacionalidad) : 성별(Sexo)
:
생년월일(Nacimiento) :
유효기간(Vencimiento) 혼인상태
(Estado Civil) : 미혼(S)

구외국인증번호(Carne
ExtranjeriaAnterior) :
외국인등록증 번호 :



외국인 세금 (TAE)	2007	2008	2009	2010
체류 연장 (PoR)	무	기	한	

눈색깔(ojo)
 머리색깔(Cab.): 신장(Esta.):
 발급일자(Fec.Emision) : 2006.09.04.
 여권번호(No. Pasaporte)

2.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 형태



포르투갈

Portugal

I. 영주권

1. 명칭 : 영주허가(Autorização de residência permanente)

2. 형태

- 플라스틱카드(Título de Residência) : 비EU국민에게 발급. 가로 86mm* 세로54mm, 양면.
- 종이카드(Cartão de Residência Permanente) : EU국민의 가족에게 발급. 가로 209mm*세로 104mm. 총 6면으로 된 접이식 카드

3. 유효기간 : 플라스틱카드의 경우 5년, 종이카드의 경우 10년마다 카드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포르투갈 내국인과 혼인한 자
- 최소 5년간 임시거주허가(Autorização de residência temporária)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 포르투갈에 거주한 근 5년간 포르투갈 법상 누적 1년 이상의 구류형을 받지 아니한 자
- 재정능력 및 주거지, 납세의무준수, 사회보장가입을 입증한 자
- 포르투갈어 기본 지식을 가진 자(포르투갈어 어학과정 수료증, 포르투갈어 사용국가 학위증, 교육부 지정 기관에서 발행한 포르투갈어 능력시험 합격증 등 제출 필요)

5. **수속절차** :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신청. 영주거주허가 최초 신청시 60일 이내, 갱신의 경우 30일내 통보 원칙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거주증 신청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진 경우
- EU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유사 행위를 시도할 계획이 입증되는 경우
- 공중질서와 치안의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연속 24개월 또는 3년 통산 30개월간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 국내부재 최대허용기간을 초과하려는 자는 출국 이전 부재사유를 허가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이전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출국 이후 신청
 - 직업적 또는 문화·사회적 사유로 본국에 체류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부재 최대허용기간 초과 인정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포르투갈 이민국(SEF - Serviço dos Estrangeiros e Fronteiras)
- 홈페이지 : www.sef.pt

10. **기타사항**

- 관련법령 : 외국인법(Lei de Estrangeiros, Lei n° 23/2007)

Ⅱ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속 2개월 또는 3년 통산 30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교육, 취업, 의료제도, 사회복지, 조세혜택 등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향유

Ⅲ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관련법령 : 국적법(Lei da Nacionalidade, Lei n° 2/2006)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포르투갈의 국민인 자
- 외국인의 자녀로, 포르투갈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최소 5년간 포르투갈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였고 해당국 정부의 공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 포르투갈에서 출생 당시 무국적자

3. 국적상실조건

- 포르투갈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국적포기 의사를 신고하는 자로, 신고 당시 다른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

4. 기타사항

- 신청기관 : 포르투갈 법무부 산하 등기소(IRN - Instituto dos registos e do notariado)
- 홈페이지 : www.irn.mj.pt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 플라스틱카드(Título de Residência)



○ 종이카드(Cartão de Residência Permanente)



I. 영주권

1. 명칭

- EU 장기거주증 (Pobyt Rezydenta Długoterminowego UE)
- 영주권 (Pobyt Stały, osiedlenie się)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 (단, 거주허가카드의 경우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이상 합법적 거주/학업 경우 10년 이상 거주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소득 증명

5. 수속 절차 : 폴란드 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주정부,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국 주재 폴란드 대사관 또는 영사관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폴란드 및 EU 영토 지정기간 이상 이탈

7. 부활제도 : 영주권 상실 후 합법적인 폴란드 거주 기간 3년

8. 포기제도 : 해당 거주지 주정부에 포기신청 및 카드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행정부 외국인송환국, 홈페이지 : www.udsc.gov.pl

10. 기타사항 : 2019년부터 폴란드어 언어자격증명서 제출(B1 이상)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폴란드 영토에서 미체류 6년, 기타 EU국가 미체류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체류자격 상실시 재입국허가 필요
3.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공직취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폴란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폴란드 국적에 관한 법령 (1962.2.15 발효, 2009.4.2 개정)

2. 국적취득조건

- 폴란드 영주권 또는 EU장기거주증 소지자로서 폴란드 내 최근 거주 3년 이상의 자(폴란드 내 정기 소득이 있고, 아파트/집을 소유 또는 임대하는 자)
- 폴란드 내 합법적 거주 10년 이상자로서 현재 영주권 또는 EU장기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폴란드 내 정기 소득이 있고, 아파트/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자)
- 폴란드 내 합법적 거주 2년 이상(영주권 또는 EU장기거주증 소지자), 폴란드인과 혼인관계 3년

3. 국적상실조건 : 본인에 의한 국적포기 신청

4. 기타사항 : 대통령 승인 필요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2. 영주권 증명서 : 상기 카드가 증명서를 대신함

I. 영주권

1. 명칭 : 영구거주증(carte de résident permanen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장기체류증을 연속으로 2회(20년) 소지한 자
 - 60세 이상
5. 수속절차
 - 장소 : 거주지 관할 경시청에 본인이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출생 및 가족관계 증명서
 - 거주 증명서
 - 만료기간이 가까운 장기체류증
 - (일부다처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일부다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최근 10년간) 3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 프랑스 국내법 준수 각서
 - 프랑스 이민 통합사무소(ofII)에서 발급하는 계약서 및 통합교육 이수 증명서
 - 프랑스어 능력 증명서(학위, 언어자격증 등)
 - 사진 3장
 - 수수료 : 269유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일부다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추방 또는 재입국금지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이미 장기체류증이 무효된 경우(갱신불가)
 - 6년 이상 연속적으로 프랑스 이외 국가에 거주한 경우
 - 타 유럽국가에서 장기체류증을 발급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결격요건이 해결되었을 경우, 재발급 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파리 : <http://www.prefecture-police-paris.interieur.gouv.fr>
- 기타 지역 거주시, 거주지 관할 경시청

10. 기타사항 : 장기체류증 연장 또는 신청과는 달리, 영주권 신청은 경시청에서 거절을 할 수 있음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내국인과 동일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민법(code civil) 17조-33조

2. 국적취득조건

가. 당연취득

- 프랑스인의 배우자
 - 프랑스인의 배우자로서 결혼 후 4년 이상 프랑스 내 체류한 자
- 프랑스인의 부모/조부모
 - 65세 이상
 - 프랑스인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
 - 프랑스 합법체류중이며 25년 이상 거주한 자
 - 6개월 이상의 징역형, 테러혐의로 인한 형, 중대한 국가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형을 받지 않은 자
 - 추방이나 입국금지 대상이 아닌 자
- 프랑스인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외국인 부모 하에서 프랑스 내 출생하고 프랑스국적을 취득
 - 6세 이후부터 프랑스 내 합법체류
 - 프랑스 내에서 의무교육 이수
 - 6개월 이상의 징역형, 테러혐의로 인한 형, 중대한 국가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형을 받지 않은 자
 - 추방이나 입국금지 대상이 아닌 자
- 프랑스인에게 입양
 - 국적 신고 시 미성년자일 것
 - 신고 당시 프랑스 거주

나. 허가 후 취득

- 난민
- 프랑스어권 국가(Pays francophone) 출신으로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자
 - ※ 프랑스어권 국가 : 벨기에, 베냉,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가봉, 기니, 적도기니, 아이티,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나코,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세이셸, 스위스, 차드, 토고, 바누아투
- 프랑스어권 국가 출신으로 프랑스어로 정규교육을 5년 이상 받은 자
- 프랑스군에서 복무한 자
- 프랑스군 복무 중이거나 전쟁 시 프랑스의 동맹군에서 복무 중인 자
- 프랑스에 예외적으로 기여한 자
-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수학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능력과 재능을 고려하여 프랑스에 중요한 기여를 했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자
- 프랑스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자

3. 국적상실조건

- 중대한 국가이익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테러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가의무법(code du service national)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공공행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예 : 개인의 자유 침해, 차별)
- 다른 국가를 이롭게 하는 행위들을 수행했고 이 행위가 프랑스인 자격과 양립 불가능한 경우

I. 영주권

1. 명칭 : 영주 허가(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마다 카드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지속적 거주허가(continuous residence permit)를 받아 연속으로 4년간 핀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법(Aliens Act)상 영주허가 부여에 문제가 없는 자
5. 수속절차 : 이민청 홈페이지로 방문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서, 여권, 사진, 재정 확인서/결혼증명서, 수수료 등을 제출하여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신청 시 본인의 신원 및 기타 결정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허위정보를 적시하거나 영주허가 불허 사유를 은폐한 경우
 - 영주허가 취득당시 증명한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른 생전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영구 출국한 경우 또는 장기거주 목적으로 계속해서 2년간 해외 거주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migri.fi>(이민청)
10. 기타사항 : 거주허가증 신청 시 지문 채취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법적지위는 시민권자와 동일하나,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만 인정. 복지제도의 혜택은 핀란드 시민권자와 동일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359/2003)에 따라 선천적, 후천적으로 국적취득(외국인법(301/2004)) 가능하며, 이중국적을 인정함

2. 국적취득조건 : ①부,모가 핀란드국적자인 경우의 자녀(입양도 포함) ②핀란드에서 태어나고 선천적으로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③외국에서 출생했다더라도 부모의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 ④후천적으로 신청(18세 이상, 연속적으로 5년 이상 핀란드에 영주거주, 핀란드법상 체무불이행의 기록이 없을 경우,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며, 생활가능한 소득증명, 핀어/스웨덴어 YKI 3급 수준의 생활언어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①이중국적자인 22세가 되었을 때 핀란드와의 “충분한 연관성”¹⁾(㉞핀란드에서 태어나고 22세 당시 핀란드에 주소지를 둔 자, ㉟22세가 되기 전에 핀란드 혹은 여타 북유럽국가(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총 7년 이상 거주한 자, ㊱18~22세 사이에 아래 활동을 한자<핀란드 여권/신분증을 신청 또는 발급받은자, 핀란드 병역의무를 완료 및 수행하고 있는 자, 핀란드 시민권을 획득한자, 핀란드 국적 유지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해외공관

1) 상세내용 : <https://migri.fi/en/retaining-finish-citizenship-at-the-age-of-22>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Visa
2. 형태 : 외국인등록증(카드 형태, ACR I-Card)
3. 유효기간 : 영주권 자체에 기한은 없으나 ACR I-Card는 5년마다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3 : 쿼터(Quota) 비자, 필리핀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의 국민에 한하여 한 해 50명에 제한적으로 발급되며, 발급 시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도 발급
 - 13(A) : 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
 - 13(B) :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
 - 13(C) : 부모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
 - 13(D) : 필리핀 여성으로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 및 그 사람의 미혼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
 - 13(E) : 과거 영주권을 소지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 일시 방문 후 영주권을 재개하려는 사람에게 발급
 - 13(F) : 필리핀 이민법 발효 이전에 영주권을 소지하였던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
 - 13(G) : 필리핀 태생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필리핀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발급

5. **수속절차** : 관련 서류를 갖추고 이민청(본청)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영주권 취득 요건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이민법에 규정된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의 안위, 공공의 안전 또는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활제도** : 있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청, www.immigration.gov.ph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유효기간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 허용
 - 법에서 허용하는 기업 활동 가능 (단, 소매업 등 금지 업종은 불가)
 - 취업활동 가능 (노동고용부의 취업허가 불필요)
 - 학생의 경우 유학비자나 특별학업허가(SSP) 없이 학업 가능
4. **기타사항**
 - 이민청에 등록의무가 있으며, 체류지 변경 시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필리핀 헌법 제4절 제1조(1987 Philippine Constitution, Article IV, Section 1)
- 개정 귀화법(Commonwealth Act No.473, Revised Naturalization Law)
- 행정귀화법(RA ACT No.9139, The Administrative Naturalization Law of 2000)

2. 국적취득조건

- 일반적인 귀화 요건(개정 귀화법 제3조)
 - 만 21세 이상일 것
 - 필리핀에 연속으로 1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필리핀 여성과 혼인한 사람, 필리핀에서 태어난 사람 등 일부 대상은 5년으로 단축됨)
 - 품행이 단정하고, 필리핀 헌법의 주요 원칙들을 믿으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문제없이 행동하였을 것
 - 필리핀에 최소 5천 페소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직업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을 것
 - 필리핀 전체 거주 기간 중 취학 연령의 자녀를 필리핀 관계 기관으로부터 인가받고 필리핀 역사, 정부조직, 국민윤리 등이 교과과정으로 포함된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다니도록 등록하여야 함
-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계속 필리핀에서 거주한 18세 미만의 외국인인 다음의 요건이 적용됨(행정귀화법 제3조)
 -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거주하였을 것
 - 신청일 당시 만 18세 미만일 것
 - 품행이 단정하고, 필리핀 헌법의 주요 원칙들을 믿으며,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문제없이 행동하였을 것

- 교육·문화·체육부의 인가를 받은 공·사립 기관으로서 필리핀의 역사, 정부 조직, 국민윤리 등이 교과과정으로 포함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이수하였어야 함. 신청자에게 취학연령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사한 교육 기관에 등록해야만 함
 - 신청인 본인이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을 것, 다만, 신청인이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국적으로 인해 전문직종에 종사할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필리핀어 또는 필리핀의 방언으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을 것
 - 필리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필리핀 사람들의 관습, 전통, 이상을 배우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을 표현해야 함
- 제한사유(개정 귀화법 제4조, 행정귀화법 제4조)
- 조직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 또는 조직된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러한 이론을 교육하는 단체 혹은 사람의 집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거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폭력이나 폭행, 암살의 필요성 또는 적절성을 옹호하거나 교육하는 사람
 - 일부다처주의자 또는 일부다처의 관행을 믿는 사람
 -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정신적 장애 또는 불치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필리핀인과 사회적으로 교류하지 못하였거나, 필리핀의 관습, 전통, 이상을 배우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이 없는 사람
 - 필리핀과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
 - 필리핀인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민

3. 국적상실조건

-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단, RA No.9225에 따라 필리핀 태생인 사람은 필리핀에 충성선서를 할 경우 필리핀 국적의 유지 또는 재취득 가능)
- 국적 포기의사를 표명한 경우

- 21세가 된 이후에 외국의 헌법이나 법률을 지지한다는 충성선서에 동의한 경우. 단, 필리핀이 어느 국가와 전쟁 중인 때에는 필리핀인은 그의 국적을 스스로 박탈하지 못한다.
- 외국 군대에 봉사하거나 임무를 맡는 경우. 단, 필리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귀화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 사면되지 않은 전시 탈영병으로서 관할 관청의 공표가 있는 경우
-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으로서 남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IV. 영주권 견본 : 외국인등록증(ACR I-Card)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Card (Állandó tartózkodási kártya)
- EC Permanent Residence Permit (EK letelepedési engedély)
- Interim Permanent Residence Permit (Ideiglenes letelepedési engedély)
- National Permanent Residence Permit (Nemzeti letelepedési engedély)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분홍색)

3. 유효기간 : 5년 (5년 단위 연장)

※ Permanent Residence Card (Állandó tartózkodási kártya) : 10년 (10년 단위연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Permanent Residence Card (Állandó tartózkodási kártya)
 - 헝가리 국민의 가족구성원으로 헝가리 영토 내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
 -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로부터 헝가리 영토 내 출생한 자녀
 - 헝가리 국민의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으로 최소 1년 이상 체류한 자

- 헝가리 국민의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로 최소 1년 이상 법적 동거인으로서 간병을 하는 자
 - 헝가리 국민과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자
 - EC Permanent Residence Permit (EK letelepedési engedély)
 - 헝가리 영토 내 거주지를 갖고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가입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자로, 헝가리 영토 내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 또는,
 - EU 블루카드 소지자로 헝가리 영토 내 2년 이상/EU회원국 영토 내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
 - Interim Permanent Residence Permit (Ideiglenes letelepedési engedély)
 - 타 EU국가에서 발행된 EC장기체류증(영주권)을 소지한 자로, 헝가리 영토 내 임시직을 제외한 영리활동, 취업, 학업, 직업연수 및 기타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 National Permanent Residence Permit (Nemzeti letelepedési engedély)
 - 헝가리 영토 내 거주지를 갖고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가입 자 또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자로, 헝가리 체류 허가증 또는 임시영주권을 소지, 헝가리 영토 내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
 - 헝가리 이민, 영주 또는 난민지위를 가진 자의 직계가족으로, 동일한 가구에서 최소 1년 이상 함께 체류한 자
 - 헝가리 이민, 영주 또는 난민지위를 가진 자와 혼인 후 2년이 경과된 자
 - 헝가리 이민, 영주 또는 난민 지위를 가진 자의 미성년 자녀
 - 헝가리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헝가리 재외동포
- 5. 수속절차** : 신청서를 관할 이민국에 제출
-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영주권 발급 시 적용받은 영주허가 자격요건이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현저하게 변경된 자

- 가족관계에 의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민 또는 영주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자 제외) 그 사유가 없어진 때(배우자 사망 3년 이내인 경우 제외), 양육권 박탈시
-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단, 이주 이외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6개월 이상, 2년 미만 체류를 위해 관할 이민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자* 제외)
 - * 서면 통지시점 기준, 이전 1년 이내 180일 이상 헝가리 영토 내 체류한 자에 한함
- 영주권 허가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 헝가리 배우자가 제3국 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 헝가리 영토에서 추방당한 경우
- EC Permanent Residence Permit(EK letelepedési engedély)소지자의 경우,
 - EU영토 내 12개월 이상 부재한 자
 - EU회원국 외 제3국 영주권(장기체류허가)을 취득한 자
 - 헝가리 영토에서 6년 이상 부재한 자
 - EU블루카드 소지자 및 소지자의 가족으로, EU영토 내 24개월 이상 부재한 자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 시 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www.bmbah.hu)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최대 2년

※ 이주 이외의 목적으로 제3국 체류를 위해 출국 전 관할 이민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자는 최대 2년까지 허용 (예 : 병역, 질병치료 등)

- 단, 서면 통지시점 기준, 이전 1년 이내 180일 이상 헝가리 영토 내 체류한 자에 한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으며, 복지혜택은 헝가리인과 동일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관련 법령 (ACT LV OF 1993)

- 헝가리 국적의 도덕적 무게를 보존하고, 일반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경의와 함께 헝가리에 대한 헝가리 시민들의 애착과 헌신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가족 내 시민권 통일을 촉진하고 무국적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권에 관한 헝가리 법률의 전통과 국제 협약의 조항에 관하여, 의회는 권리, 귀화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헝가리 시민권 취득과 헝가리 시민권의 해지에 관한 다음 법을 채택했다.
- 기본 원칙
 - 시민권의 취득 또는 취득의 법적 근거에 상관없이 헝가리 국민과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임의의 근거로 시민권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이 법은 소급 효력이 없다.
 - 헝가리 시민권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시민권과 관련된 사실 또는 사건이 발생할 때 시행 중인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헝가리 국민은 헝가리 법 적용을 위해 헝가리 국민으로 간주된다.

2. 국적취득조건

- 8년 이상 헝가리 영토 내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 중 헝가리 귀화시험을 통과하였거나, 또는 법으로 면제될 만한 사유를 갖는 자
- 3년 이상 헝가리 영토 내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 중,
 - 3년 이상 헝가리 국민과의 혼인을 유지하거나, 헝가리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상태가 중단된 자
 - 미성년자 자녀가 헝가리 국적자인 자
 - 헝가리 국민의 상속을 받은 자
 - 헝가리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무국적자인 자
- 10년 이상 헝가리 국민과의 혼인상태를 유지한자
- 5년 이상 헝가리 국민과의 혼인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자녀를 출생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외국 국적 취득자
- 헝가리 주민/주소 미등록자
- 해외 영주목적으로 헝가리를 떠난 자

4. 기타사항 : 국적 상실 확정 후, 3년 이내 국적회복 신청 가능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비자)



- ① 성명
- ② 유효기간
- ③ 발급지, 발급일자
- ④ 문서종류
- ⑤ 비고
- ⑥ 출생지, 출생일
- ⑦ 국적
- ⑧ 성별

I. 영주권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영주 (단, 국외 여행의 사유가 있을 시, 5년 마다 갱신 필요)

※ 일반적으로 영주 비자는 5년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travel facility)을 가지며, 기간 만료 시에는 국외 여행이 제한됨. 이에, 국외 여행의 필요가 있는 영주권자는 영주 비자(국외 여행 허가 기간)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가족이민

○ 배우자 : 2년간 결혼 관계 유지

○ 미성년자녀 : 별도 요건 없음

○ 성년자녀 : 25세 미만 full-time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녀인 경우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

○ 부모 : 신청인의 전체 자녀의 과반수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

○ 형제자매 : 기술, 나이, 경력, 영어 등 호주 이민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일반적인 기술이민 심사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나 형제자매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이민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나. 기술이민 : 점수제(60점 이상)

- 고용주 후원 이민 비자(ENS : Employer Nomination Scheme)
 - 부족직업군(SoL) 기술 및 3년 이상 경력 보유, 기술심사 통과, 고용주 후원, 공인 영어 점수 (IELTS 각 과목 6.0 이상 등), 45세 미만
- 지방 고용주 후원 이민비자(RSMS :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부족직업군(SoL) 기술 및 3년 이상 경력 보유, 기술심사 통과, 규정상 지방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의 고용주의 후원, 해당 고용주 밑에서 최소 2년 근무 필요, 공인 영어 점수 (IELTS 각 과목 6.0 이상 등), 45세 미만
- 주정부 후원 기술 이민 비자(Skilled Nominated)
 - 점수제(65점 이상), 부족직업군(SoL) 기술, 기술심사 통과, 주정부 후원, 공인 영어 점수 (IELTS 각 과목 6.0 이상 등), 45세 미만
- 독립 기술 이민(Skilled Independent)
 - 점수제(65점 이상), 부족직업군(SoL) 기술, 기술심사 통과, 주정부 후원, 공인 영어 점수 (IELTS 각 과목 6.0 이상 등), 45세 미만

다. 기 타 : 사업이민, 투자이민 등

5. **수속절차** : 호주 외 체류 시는 거주국 관할 호주대사관, 호주 내 체류 시는 내무부 이민 국적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Home Affair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Services)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비자 조건 위반, 1년 이상 형 선고 등
7. **부활제도** : 해당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호주 내무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
[www.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permanent-resident](http://www.immi.homeaffairs.gov.au/visas/permanent-resident)

II .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속 3년 미만

※ 최근 5년 중 총 2년 이상 호주 체류기록이 없으면, 영주 비자 갱신 불가

2. 재입국 허가제도 : 일반적으로 영주 비자는 5년의 국외 여행 허가 기간(travel facility)을 가지며, 기간 만료 시에는 국외 여행이 제한됨. 이에, 국외 여행의 필요가 있는 영주권자는 영주 비자(국외 여행 허가 기간) 갱신 필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없음, 기타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Australian Citizenship Act (국적법)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40> (국적법 홈페이지)

2. 국적취득조건

가. 당연취득(automatic acquisition of Australian citizenship)

○ 출생(citizenship by birth) : 호주 국내 출생자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 입양(citizenship by adoption) : 호주 시민권자에 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입양된 자

- 기아(citizenship for abandoned children) : 호주에서 발견된 기아

나. 절차에 의한 취득(acquisition of Australian citizenship by application)

○ 출생(citizenship by descent) : 호주 국외 출생자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호주 시민권자

- 귀화(citizenship by conferral) : 영주권자의 시민권 시험을 통한 국적 취득
 - 국적재취득(resuming citizenship) : 국적상실자의 국적 재취득
3. **국적상실조건** : 다른 나라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포기(renunciation by application), 국적취득 취소(revocation by minister) 등

IV.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 영주권 관련 별도 증서는 없으며, 여타 비자와 마찬가지로 Visa Grant Notice만 발급함
2. **영주권 증명서** : 위와 동일

I. 영주권

1. 명칭 : 香港永久性居民身份證(HONG KONG PERMANENT IDENTITY CARD)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영주권 신청일 직전까지 홍콩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아 연속해서 7년을 거주한 경우
5. 수속절차
 - 홍콩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신청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모든 서류를 구비하였을 경우 처리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6주의 기간이 필요하며, 신청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통상적으로 연속해서 36개월 간 홍콩에 거주하지 않았을 때
7.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홍콩 입경사무처(入境事務處), www.immd.gov.h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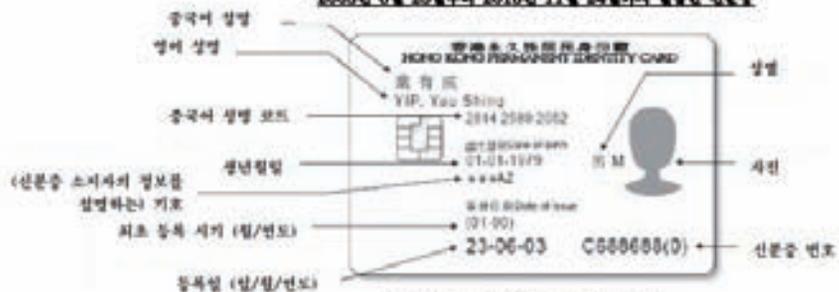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통상적으로 연속해서 3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 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구직, 학업, 사업 등 가능

III. 영주권 견본



2003년 6월 23일부터 2018년 11월 24일까지 발급한 신분증



2018년 11월 28일부터 발급하는 신분증





영주권제도 편람

영주권제도 없는 나라

Part 2

가봉(2012)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수단(2012)
네팔(2012)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벨기에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에티오피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200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자흐스탄

카타르
카보베르데(2012)
캄보디아
코모로
코트디부아르(2009)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2009)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피지

가봉

Gabon

I. 장기체류권

1. 명칭 : 체류증(cartre de séjour)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2년(2년 후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공·사기업체 근로자, 기술협력요원, 개인사업자, 선교사 등(동 가족구성원 포함)
5. 수속절차 : 취업허가서, 영업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노동청에서 고용계약 승인을 득한 후 내무부 산하 이민국(D.G.D.I : Direction Générale de la Documentation et de l'Immigration)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노동허가 없이 취업하거나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고용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2개월 이내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경우
 - 체류증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갱신하지 않는 경우
7. 부활제도 : 이민국(D.G.D.I : Direction Générale de la Documentation et de l'Immigration)에 신청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이민국, <http://www.dgdi.ga>

II.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간 국내 의무체류기간(183일)을 제외한 기간 중 잔여 유효기간 까지 해외 체류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 시 재입국 비자를 사전 취득해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사회보장 제도인 CNSS(Caisse 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에 가입하면 의료보험과 퇴직연금, 미성년 자녀 보조금 혜택이 있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 제47조(법률로 규정하는 사항)
 - 개인의 국적·지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외국인의 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사항
- 가봉 국적법
 - 상기 헌법 조항에 따라 가봉 국적 취득 및 상실 조건 등에 대한 사항 규정

2. 국적취득조건

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11조
 - 출생 당일 부(父) 또는 모(母)가 가봉인인 자
 -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가봉에서 출생한 자
(예외 : 미성년일 때 외국인 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성년이 된 지 12개월 안에 가봉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부(父) 또는 모(母)가 가봉에서 출생한 경우, 가봉에서 출생한 적자(嫡子)
 - 외국인 친부 또는 친모가 가봉에서 출생한 경우, 가봉에서 출생한 혼외자

- 국적법 제12조
 - 가봉에서 발견된 신생아는 가봉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 국적법 제13조
 - 부(父) 또는 모(母)가 가봉인인 적자(嫡子)
 - 친부 또는 친모가 가봉인인 혼외자

나. 인정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14조
 - 가봉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성년이 되기 전 12개월 이내 국적 취득 선언에 서명하고, 선언일 기준 최소 5년 연속으로 가봉에 상거소를 가진 자
 - 가봉 영토에서 25km 범위 내 위치한 접경 지역에서 출생, 성년이 되기 전 12개월 이내 국적 취득 선언에 서명하고 최소 10년 연속으로 가봉에 상거소를 가진 자
 - 14세 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또는 가봉인이 가봉으로 받아들인 자
 - 미성년자일 때 그의 이름으로 가봉 국적을 포기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다.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22조
 - 가봉인과의 결혼식을 한 지 3년 후 가봉 국적 취득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여 취득 가능(입양·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법 제25조
 - 가봉인에게 입양된 미성년자
- 국적법 제26조
 - 가봉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가봉으로 귀화한 자의 미성년 자녀

3. 국적상실조건

- 국적법 제34조 : 하위 법령으로 별도 규정
(국적의 박탈)

○ 국적법 제36조

- 서류를 위조하거나 당국의 착오를 유도하는 등 기만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가봉 국적 취득 후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 또는 범법행위로 형을 선고 받는 자
- 가봉 국적 취득 후 7년 내 가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가봉 또는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는 자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
- 가봉 국적 취득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IV. 장기체류권 견본

1. 체류증



감비아

Gambia

I. 장기체류권

1. 명칭 : RESIDENTIAL PERMIT "A", "B", "C"
 - "A" : 학생, 은퇴 외국인, "B" : 일반 종사자, "C" : 전문직종 종사자
2. 형태 : 별도의 카드를 발급
3. 유효기간 : 6개월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에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사본1부, 사진 3매, 범죄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국적증명서, 병원진단서(질병 확인), 체류증명서류(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 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필요서류(반납사유서, 등록증)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감비아 내무부

Ⅱ.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중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Ⅲ. 장기체류권 견본



기 니

Guinea

I. 장기체류권

1. 명칭 : Recepisse Tenant Lieu de la Carte de Sejour
2. 형태 : 별도의 증명카드 발급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
5. 수속절차 : 여권, 증명사진 2장, 신청비(70,000FG, 약 93미불)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갱신 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MINISTRE DE SECURITE DIRECTION GENERALE
DE LA POLICE NATIONAL

II.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Ⅲ. 장기체류권 견본



기니비사우

Guinea-Bissau

I. 장기체류권

1. 명칭 : Cartao de Identificacao de Cidadao Estrangeiro
2. 형태 : 별도의 카드를 발급
3. 유효기간 : 1년~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 사본 1부, 사진 3매, 범죄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국적 증명서, 병원진단서(질병 확인), 체류증명서류(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 만료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 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필요서류(반납사유서, 등록증)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기니비사우 내무부

II.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나이지리아

Nigeria

I. 거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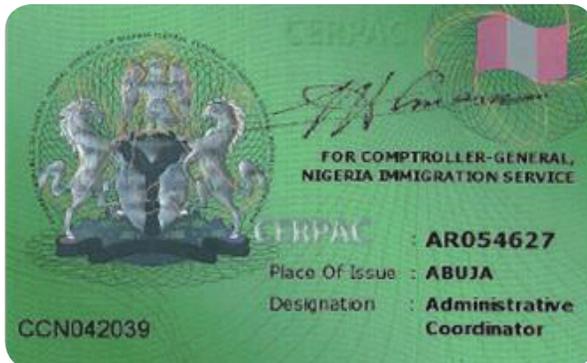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초록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정당한 입국비자 소유자로서 이민국에서 입국쿼터를 인정 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5. 수속절차 : 관련 서류를 나이지리아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소속 사업장 변경 및 사직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거주허가 1년 단위 갱신 필요)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거주허가 취득 후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Nigeria Immigration Service, immigration.gov.ng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한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는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한 복지 혜택 없음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 재입국비자(Re-entry visa)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



I. 장기체류권

1. 명칭

- 특별 거주허가(Special Residence Permit)
- 보통 거주허가(Ordinary Residence Permit)
- 임시 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2. 형태 : 스티커

3. 유효기간

- 특별 거주허가 : 5년
- 보통 거주허가 : 2년
- 임시 거주허가 : 1년

4. 신청 자격(취득조건)

- 특별 거주허가 : 5년
 -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문화, 기술, 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 부처 장관이 남수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 5년간 유효하며 동일기간으로 갱신 가능
- 보통 거주허가 : 2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문화, 기술, 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 부처장관이 남수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 2년간 유효하며 동일기간으로 갱신 가능
- 임시 거주허가 : 1년
 - 특별 또는 보통 거주허가를 보유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 12개월 이내에서 유효하며 12개월 이내에서 갱신 가능
- 관광객 :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남수단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상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5.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특별 및 보통 거주허가 소지자가 재입국 사증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
- 특별 및 보통 거주허가 소지자가 재입국 사증보유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네 팔

Nepal

I. 거주권

1. 명칭 : Residential Visa
2. 형태 : Visa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국제적 명성이 있는 자
 - 네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에 탁월한 기여를 할 역량을 보유한 자
 - 네팔 산업에 최소 1회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를 네팔 대사관/총영사관에 접수 후, 해당 공관이 네팔 외교부를 경유하여 네팔 내무부 소속 이민국으로 송부하여 비자 심사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국제 건강 증명서(International Health Certificate)를 요청받았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심각한 정신 질환에 걸린 경우
 -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경우
 - 심각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 네팔의 평화, 안보 및 일반 대중의 화합을 저해한 경우

- 범죄 혐의가 있거나 네팔의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 네팔의 법과 제도를 위반한 경우
- 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네팔 내무부 소속 이민국(네팔 공관 및 네팔 외교부 경유), www.moha.gov.np(내무부), www.immi.gov.np(이민국)

10. 기타사항

- 2019.6월 현재 외국인 대상 영주권 제도 시행 중단

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네팔 국적법(2006.11.26.부터 시행)

2. 국적취득조건

- 네팔 국적법 시행 전 출생에 의해 네팔 국적을 취득한 자
- 부친 또는 모친이 출생 시 네팔 국적이었던 자
- 부모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네팔에서 발견된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의 국적이 밝혀지기 전에는 네팔 국적을 출생에 의해 취득하게 됨.
 - 네팔 국적의 모친에게서 출생하였으며 네팔에서 양육되었으나 부친의 국적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에 의해 네팔 국적을 취득하게 됨.
- 네팔 국적의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네팔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연방 법률에 의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함.

니제르

Niger

I. 체류허가증

1. 명칭 : 체류허가증(Permis de Séjour)
2. 형태 : 오렌지색 용지(삼단 접이식)
3. 유효기간 : 1년 단위로 유효 기간 연장, 5년 차에 체류증 갱신 해야 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3개월 이상 체류한 자
5. 수속절차 : 영토감시국(DST/ la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과 동시에 지문 채취를 하며 2주 내에 체류허가증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유효 기간 지나면 자동 효력 상실/ 재신청 가능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영토감시국(DST/ la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홈페이지 없음

Ⅱ. 체류허가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체류허가증 유효기간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니제르 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 니제르에 10년 이상 체류한 자(국적법 제25조)
3. 국적상실조건 : 해당사항 없음

Ⅳ. 체류허가증 견본



라이베리아

Republic of Liberia

I. 거주권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수첩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정당한 입국비자 소유자로서 이민국에서 입국쿼터를 인정 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5. 수속절차 : 입국 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라이베리아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소속 사업장 변경 및 사직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거주허가 1년 단위 갱신 필요)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거주허가 취득 후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Liberia Immigration Service, lis.gov.lr

II. 거주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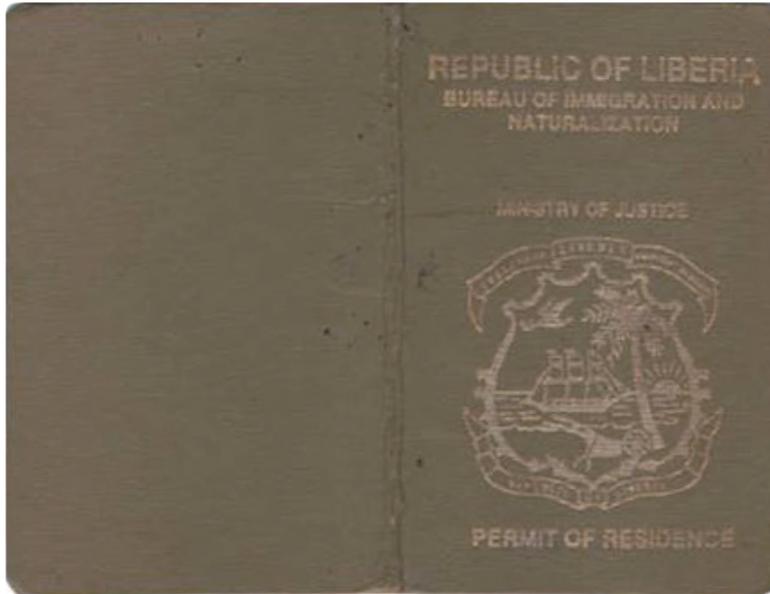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한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소지자가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라이베리아에서 출국 전 재입국 사증(Re-entry Visa)을 미리 취득해야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한 복지 혜택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헌법에 국적 취득 및 상실 관련 사항 규정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양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이 라이베리아 국적자인 경우 및 흑인으로서 라이베리아에서 출생한 경우), △귀화(흑인이거나 조상이 흑인이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라이베리아에 입국하여 귀화 신청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라이베리아에 체류, 품성이 바르고 라이베리아 헌법 준수, 구국적 포기), △라이베리아 국적자와의 결혼(흑인만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귀화자가 기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귀화 당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판명된 경우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증명서 :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수첩형태로 발급



레바논

Lebanon

I. 거주권

1. 명칭 :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거주신청을 정당화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보안총국(General Security)에 서류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형사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Condemnation)을 받고 보안총국에 의해 구금(detained) 된 경우 → 추후 입국 금지
 - 형사범죄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보석 결정이 있는 경우 → 추후 통보 시까지 입국 금지
 - 불법입국 시도를 하다 적발된 경우 → (1회) 5년 간 입국 금지 (2회) 10년 간 입국 금지
 - 체류조건을 위반한 경우 → (1회) 3년 간 입국 금지 (2회) 10년 간 입국 금지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본인이 거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보안총국, www.general-security.gov.lb

Ⅱ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이사항 없음

Ⅲ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부계 혈통주의
2. 국적취득조건
 - 레바논 남성과 결혼한 경우
 - 레바논 남성의 자녀로 출생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해당없음

룩셈부르크

Grand Duchy of Luxembourg

I. 장기거주권

1. 명칭 : 장기거주증(TITRE DE SÉJOUR, Résident de longue durée)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연장 가능)
* 유럽연합 시민과 결혼 시, 룩셈부르크 거주 5년 뒤 10년 유효 장기거주증 신청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룩셈부르크에 합법적으로 연속 5년 이상 거주한 비EU국가 국민
5. 수속절차 : 룩셈부르크 외교부 이민국에 신청서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제3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유럽연합 시민 결혼 후 10년 장기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제3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취득절차 다시 진행)
8. 포기제도 : 룩셈부르크 이민국에 카드 반납 및 관할구청에 영구 출국 신고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외교부 이민국(www.mae.lu)

Ⅱ . 장기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관할구청에 해외거주 신고 시 최대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룩셈부르크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 향유

Ⅲ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룩셈부르크 국적법(Loi du 8 mars 2017 sur la nationalité luxembourgeoise)

2. 국적취득조건

가. 단독법률효과에 따른 룩셈부르크 국적부여

- 룩셈부르크 국적의 부 또는 모의 출생자
- 룩셈부르크 국적자에게 입양된 미성년자
- 부모가 외국인이나 룩셈부르크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룩셈부르크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룩셈부르크 국적이 부여
 - 룩셈부르크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의 외국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국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부모의 외국국적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부모 국적의 국가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일 경우 룩셈부르크 국적이 부여됨

나. 의사행위를 통한 룩셈부르크 국적 취득

- 귀화(Naturalisation)
 - 귀화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성인에게 허가됨

- 룩셈부르크에 거주지를 가지고 최소 5년간 연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 룩셈부르크 언어 평가시험 합격증명서를 갖고있는 경우
- “룩셈부르크에서 같이 삽시다”(Vivre ensembl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 강좌를 수강한 경우 또는 동 강좌코스의 시험을 합격하였을 경우

○ 선택권(l'option)

- 성인은 다음의 경우 ‘선택’을 통해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룩셈부르크 국적 부모의 자녀 또는 룩셈부르크로 입양된 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국적 부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룩셈부르크 국적 조부모의 국적이 부모에게 부여가 안 되어있는 경우 성년이 된 자녀는 선택을 통해 취득 가능
- 룩셈부르크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다음 조건 충족 시 ‘선택’을 통해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룩셈부르크 언어 평가시험 합격증명서를 갖고 있는 경우
 - “룩셈부르크에서 같이 삽시다”(Vivre ensemble au Grand-Duché de Luxembourg) 강좌를 수강한 경우 또는 동 강좌코스의 시험을 합격하였을 경우
- 룩셈부르크 공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룩셈부르크 사립학교에서 최소 7년간 학업을 이수 한 외국인 성년의 경우, 룩셈부르크에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국적 선택 신청시 최소 12개월 간 룩셈부르크에서 거주한 경우 ‘선택’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룩셈부르크에서 최소 20년간 연속 거주하고 룩셈부르크 언어교육 과정참여 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선택’을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3. 국적상실조건

- 룩셈부르크 국적자는 국적을 상실할 시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있음

르완다

Rwanda

I. 거주권

1. 명칭 : Visa (체류자격에 따른 비자)
2. 형태 : 여권 부착식 스티커(Visa)
3. 유효기간 : 3개월 ~ 3년 (체류자격 및 기관과의 계약기간 등에 따라 기간부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여권과 함께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법률위반(범죄 등)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www.migration.gov.rw)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비자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가능(복수비자)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자격

리비아

Libya

I. 거주권

1. 명칭 : 거주 비자(Resident's Visa)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1~5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취업자(리비아 정부에 등록된 해외법인 또는 리비아 현지 회사에 취업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고용회사가 리비아 노동부에 거주 비자 신청 → 리비아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발급 후 이민국으로 서류 전달 → 이민국에서 거주 비자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법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고용된 현지 회사에서 퇴직 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리비아 노동부 (labour.gov.ly)

Ⅱ.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6개월(주로 3개월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시 출국전 재입국(re-entry)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재입국하지 않을시 출국 전 출국(exit) 비지만 발급 받아 출국
* 재입국 비자나 출국 비자가 없는 경우 출국 불가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얻는 것 이외의 별도의 복지제도는 없음

Ⅲ. 거주 비자 견본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I. 장기체류권

1. 명칭 : 체류비자(VISA DE SÉJOUR), 체류증(CARTE DE RÉSIDENT)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카드(흰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1년 ~ 무기한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투자비자 : 개인 사업가 또는 회사고용주
 - 노동비자 : 일반회사 근로자
 - 가족결합비자 : 장기체류비자 신청인의 직계 가족
 - 선교비자 : 마다가스카르 활동 종교단체 소속 활동가
 - 은퇴비자 : 은퇴 후 정기연금 수혜자
 - 학생비자 : 마다가스카르 소재 학교 유학 학생
 - 봉사활동비자 : 비종교 봉사단체 소속 활동가
 - 연구비자 : 마다가스카르 소재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5. 수속절차
 - 투자비자, 노동비자 및 관련자 가족결합비자 : 회사 정관, 노동계약서, 회사 납세증명서, 노동허가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 위원회(EDBM)에 신청

- 그 외 비자 : 소속 단체 종사 확인서, 학위증, 재학 또는 입학허가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마다가스카르 내무부 이민국(Service de l'Immigration et de l'Émigration)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시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 www.diplomatie.gov.mg
-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위원회(EDBM) : edbm.mg
- 마다가스카르 내무부 이민국(MID - Service de l'Immigration et de l'Emigration)

10. **기타사항 :** 장기체류비자 신청 시 △대한민국을 겸임하고 있는 주일마다가스카르대사관에서 “1달 기한 변경가능비자(Visa Transformable)”를 발급받은 후 입국하여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또는 △본인 또는 대행자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외교부에서 “상륙허가증(Accord d'Embarquement)”을 받아 입국하여, 외교부에 “1달 기한 변경가능비자(Visa Transformable)”을 받은 후,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음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mg-ko/index.do) “사증” 게시판에 게재된 “마다가스카르 장기체류비자 신청 가이드라인” 참고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체류중에 표기된 체류허가기간 만큼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1960.7.22. 제정 마다가스카르 국적법 Ordonnance N. 60-064
 - 부모 중 일방이 마다가스카르인일 경우 해당 자녀는 마다가스카르 국적 취득
 - 혼외자식일 경우라도, 부모 중 일방이 마다가스카르인일 경우 자녀는 마다가스카르 국적 취득
 - 부모의 국적이 불명이나, 부모 중 일방의 국적이 마다가스카르인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마다가스카르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마다가스카르 국적 부여

2. 국적취득조건

- 친자관계, 출생 또는 입양에 의한 국적 취득
 - 어머니가 마다가스카르인, 아버지가 외국국적자인 자녀의 경우 성년(21세)이 될 때까지 마다가스카르 국적 취득을 요구할 수 있음
 - 혼외자식일 경우라도, 부모 중 일방이 마다가스카르인일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마다가스카르 국적 취득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양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마다가스카르인일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마다가스카르 국적 취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적 취득 신고 시 마다가스카르에 5년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혼외자식이지만 미성년기간동안 인지된 자녀의 경우, 아버지가 마다가스카르인일 경우 마다가스카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아버지가 마다가스카르인인 경우, 입양 준정(準正) 대상 자녀는 마다가스카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결혼을 통한 국적 취득
 - 마다가스카르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국적 여성은 해당 여성의 확실한 의사 표명이 있거나 또는 해당 여성 원국적법에 의해 원 국적을 포기할 경우 마다가스카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3. 국적상실조건

-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성인은 마다가스카르 원국적을 상실한다
- 15살 미만자의 경우, 마다가스카르 원국적 상실 및 포기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허가를 요한다.
-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국적 포기 및 상실을 요구할 경우, 마다가스카르의 정부의 허가를 통해 해당자는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 외국 국적자와 결혼한 마다가스카르인은 해당자가 상대방 외국국적취득 의도를 명백하게 표명하지 않는 한, 마다가스카르 국적을 유지한다. 다만, 혼인 후 주거지를 마다가스카르 국외로 옮기고 해당자가 외국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필수적으로 득해야 하는 경우, 해당자는 마다가스카르 원국적을 상실한다.

4. 기타사항

- 미성년자의 마다가스카르 국적상실 및 포기절차 완료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I. 장기체류권

1. 명칭 : VISA D'ENTREE
2. 형태 : 여권에 기재하는 형식(스탬프)
3. 유효기간 : 1년(1달~최대 5년 선택가능, 3~5년 체류권은 납세실적 등을 감안 제한적으로 부여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소속기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원본, 사진 2매, 신청금(180,000FCFA, 1년 기준)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 만료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DIRECTION DE LA POLICE DES FRONTIERES
(SECTION VISA)

II.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Ⅲ. 장기체류권



모로코

Morocco

I. 거주권

1. 명칭 : CARTE D'IMMATRICULATION 또는 CARTE DE RESIDENCE

2. 형태 : 카드(8.5 X 5.5 cm)

3. 유효기간 : 1년, 5년, 10년

- 첫회는 무조건 1년
- 갱신할 경우, 3년~5년까지 가능
- 3년~5년 후 갱신할 경우, 10년 유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사업비자 : 개인 사업가 또는 회사 고용주 및 동반가족
- 고용비자 : 일반회사 근로자 및 동반가족
- 학생비자 :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최대 1년)

5. 수속절차

- 사업비자 : 회사 정관과 계약서 및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경찰청에 신청
 - 상세구비서류
 - 모로코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 정관
 - 회사 은행잔고증명서
 - 개인 은행잔고증명서

- 사업장 계약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거주증 신청 시)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거주증 신청 시)
 - 범죄경력증명서
 - 여권 사본(모로코 첫 입국일자 및 고유 식별 번호가 찍힌 페이지 포함)
 - 증명사진(최초 신청 시 9매, 재신청 시 6매)
 - 경찰청 체류허가신청서(3부)
 - 모로코에서 발급 받은 건강진단서
 - 비자수수료
- 고용비자 : 모로코 노동부 발급 노동허가서 및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경찰청에 신청
- 상세구비서류
- 모로코 노동부에서 허가된 노동허가증 및 고용계약서
 - 주책임차계약서(경우에 따라 수도, 전기세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함)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거주증 신청 시)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거주증 신청 시)
 - 범죄경력증명서
 - 여권 사본(모로코 첫 입국일자 및 고유 식별 번호가 찍힌 페이지 포함)
 - 증명사진(최초 신청 시 9매, 재신청 시 6매)
 - 경찰청 체류허가신청서(3부)
 - 모로코에서 발급 받은 건강진단서
 - 비자수수료
- 학생비자 : 소속 대학교 확인서 및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경찰청에 신청

- 상세구비서류

- 소속 대학교 확인서
- 신청인의 은행 잔고
- 출생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주택임차계약서
- 여권 사본(모로코 첫 입국일자 및 고유 식별 번호가 찍힌 페이지 포함)
- 증명사진(최초 신청 시 9매, 재신청 시 6매)
- 경찰청 체류허가신청서(3부)
- 모로코에서 발급 받은 건강진단서
- 비자수수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과 동일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관할 경찰청

10. 기타사항

- 관할 내무부 경찰청(Direction Générale de la Sûreté Nationale)에 신청하며, 신청인의 여건과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하여 일부 구비서류가 가감 될 수 있음
- 혼인한 여성의 경우, 남자 배우자가 먼저 비자를 신청한 후, 남자 배우자의 재종보증서와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 진행(자녀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현지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 발급 서류들은 한국에서 아랍어 또는 불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 또는 아랍어 또는 불어 번역하여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거주등록허가를 위한 신청등록이 접수되면, 거주등록허가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임시체류허가영수증(Récépissé)을 발급하여 줌(일반적으로 신청접수 후, 1주~3주 정도 이후에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거주허가증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 2019년 9월부터 외국인(성인)의 자녀(미성년자)들도 체류증을 신청해야 함(상세정보는 모로코 외교부를 통해 파악 중)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별도의 허용기간 없으며 체류권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권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하며 한모로코 사증면제 협약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도 입국 가능. 단 무비자 입국 허가 기간인 90일 이내에 체류권 재신청 필수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4. 기타사항 : 체류증의 만료 최소 한 달 전에 갱신 필수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취득, 상실, 회복에 관한 실체규정으로서 모로코 민법전 국적편 (Dahir No.1-58-250(21 Safar 1378)/ 12 Sept.1958)
 - 출생에 의한 국적부여의 경우 부모양계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병행 적용하고 있음
 - 출생 이외의 사유의 경우, 자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자국 국민에게 입양된 외국인 등에게 국적을 부여함

- 귀화의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거주한 성인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

2. 국적취득조건

- 속인주의, 속지주의(5년 거주 단서로) 2가지 병행
- 당연취득
 - 부모 중 일방이 모로코 국적자의 자녀
 - 모로코 출생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모로코 출생자
 - 모로코에서 출생한 자로서 여타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
 - 모로코인에 의해 입양된 자
 - 모로코에서 출생한 자로서 18세에 달한 자(13세부터 연속 5년 거주 필요)
- 허가후 취득
 - 모로코 출생자로서 13세에 달한 자 : 8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
 - 모로코 출생자로서 16세에 달한 자 : 11세 이후 5년 거주증명 필요
 - 모로코인과 혼인하여 4년이 경과한 자
 - 18세 이상자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자

3. 국적상실조건

- 귀화에 의한 외국국적 취득자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경우
- 외국인과의 혼인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모로코 국적자의 자녀로서 모로코 국적을 취득한 자가 모로코 국적포기 신고를 할 경우
- 부모 중 일방이 모로코에서 출생하여 모로코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모로코 국적 포기 신고를 할 때
- 부모와 모로코 국적을 수반취득한 자로서 모로코 국적 포기 신고를 할 경우
- 모로코 정부의 허가에 의한 국적상실 및 재판에 의한 국적상실

IV. 거주등록증 견본

1. 거주등록증 카드



모리타니아

Mauritania

I. 거주권

1. 명칭 : CARTE DE RESIDENCE

2. 형태 : 카드(8.5 X 5.5 cm)

3. 유효기간 : 1년

- 입국후 3개월이 지나야 함. 최초 입국 시에 비자를 받고 2회 비자 연장 후에 거주증 신청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허가 혹은 고용계약 등 장기체류 증빙이 가능한 경우

5. 수속절차

- 거주사실증명서, 범죄사실확인서, 건강진단서, 노동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 거주사실증명서는 여권, 본인명의 집 계약서, 본인명의 수도 혹은 전기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자녀재학증명서 등을 시청 및 구청에 제출하여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과 동일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모잠비크

Mozambique

I. 거주권

1. 명칭 : DIRE
2. 형태 : 거주증
3. 유효기간 : 단기(1년), 장기(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단기(모잠비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모잠비크 법령에 부합한 신청자격을 가진 자)
5. 수속절차
 -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접수
 - 범죄경력회보서(90일 이내 발급)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 워크비자 또는 거주 비자 사본
 - 모잠비크 거주 재정 증명 서류(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월급 명세서)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모잠비크 노동부에서 발급된 노동 허가서
 - 노동계약서
 -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모잠비크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시
7. 부활제도 : 해당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내무부 이민국)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단기(1년), 장기(5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워크비자, DIRE(2종류/ 단기, 장기)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모잠비크에 1년 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DIRE 또는 워크비자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2018년 후반부터 장기 거주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 DIRE 대신 워크비자 신청 필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이민법 208/2014 32조, 33조, 34조 : 모잠비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모잠비크 법령에 부합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자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정당하게 체류할 수 있음.
2. 국적취득조건 : 모잠비크 내 10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에게는 장기 거주증 DIRE(5년 유효, 5년 마다 재갱신) 신청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해당 없음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증명서



I. 거주권

1. 명칭 : 거주증(Certificate of Alien Registraion)
2. 형태 : 카드(파란색 플라스틱 바탕에 사진, 인적사항,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QR코드가 인쇄됨)

3. 유효기간

- 공무 목적 거주자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 같은 기간으로 연장 가능
 - ※ 단, 양국 정부 협의에 따라 고용허가 면제 기관 근무자는 초청기관 요청에 따라 3년으로 발급 가능하며 연장 가능.
- 사적 목적 거주자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 같은 기간으로 연장 가능. 유효기간 만료 5일 전 연장신청 가능
 - ※ 단, 몽골 국민의 외국 국적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는 만료일 3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 가족결합 목적 중 몽골 국민의 외국 국적 배우자는 최초 1년 발급, 연장은 최초 1년이나, 그 이후 장기거주 희망 시 3년으로 연장 가능. 55세 이상인 자는 국적국과의 호혜 원칙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을 '영구'로 부여할 수 있음.
 - ※ 이민자의 경우 최초 1년 발급, 연장은 최초 1년이며, 그 이후 장기거주 희망 시 2년으로 연장 가능. 단, 몽골에서 출생한 이민자의 경우 이민 허가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함.
 - ※ 투자 자격은 최초 1년 발급이며 이후 3년까지 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공무 목적 : 취업, 공무(A2), 가족(A-2-F)
- 사회 목적

- 가족결합(몽골인의 외국 국적 배우자, 몽골 국민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 자녀, 외국 국적 배우자의 부모, 몽골에서 이민하여 거주하는 자의 가족, 투자자의 가족, 외국 법인 근무(이사 결정권 근무자 및 가족), 외국 비정부기관 또는 국제비영리기관 근무자의 가족, 종교 단체 근무자의 가족, 대학원생의 가족)
- 이민
- 취업
- 투자
- 외국 법인 근무
- 유학, 학술, 실습, 연구·조사
- 기타 목적
 - 몽골 체류 필요가 있는 국적 이탈자
 - 몽골 국민의 외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 자녀
 -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 법정 판결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수속절차

- 외국인 등록
 - 30일 이상 체류 시 거주 등록이 필수이며, 3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단기 거주자, 사적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 공무(몽골 정부 초청을 받은 자, 정부 간 기관 근무자)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의 초청 기관이 외국인 관리 정부기관에 등록
 -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24조 4항¹⁾에 따른 기관 근무자 및 가족에 경우 초청기관이 외교 문제 총괄 중앙정부기관에 등록

1)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24조 4항: 몽골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유엔, 유엔 산하 기관 몽골 소재 지사에 서 근무 외국인, 외국인의 가족이 몽골 입국일로부터 7일내로 외교 문제 총괄하는 정부기관에 등록

○ 거주허가증 발급

-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32조 1항²⁾에 따른 기관 근무자 및 가족에게 외교 문제 총괄 정부기관에서 거주허가증 발급 및 기간 연장
-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32조 2항³⁾에 따른 기관 근무자 및 가족은 몽골 입국일로부터 21일 내로 외국인 관리 정부기관에 거주허가를 신청

6. 효력상실(취소사유)

- 공무 목적 : 유효기간 만료 후 출국 시 거주허가증 반납
- 사적 목적 : 유효기간 만료 후 출국 시 거주허가증 반납.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받은 거주허가증 효력 상실 또는 거주허가 기간 연장 취소 가능
 - 정보국 및 경찰청 근거 규정
 -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따른 사증, 등록, 체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8조⁴⁾ 위반하는 경우
 - 사증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허가증, 서류 등을 수정, 위조 또는 변조 제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2)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32조 1항 : 몽골 주재 대사관 및 영사관, 유엔, 유엔 산하 기관 몽골 소재 지사에서 근무 외국인, 외국인의 가족에게 외교 문제 총괄하는 정부기관에서 거주허가증 발급 및 기간 연장

3)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32조 2항 : 몽골 정부 초청을 받은 자, 정부 간 기관 근무 외국인에게 거주 허가를 초청기관 요청에 근거하여 외국인 관리 정부기관에서 허가증 발급 및 기간 연장

4)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8조 : 외국인에게 몽골 국토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된다. 몽골국민의 권리와 자유, 인권 또는 몽골 국익에 반하는 행위, 대통령 및 국회 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 투표, 정치 활동 및 정치적 활동 목적으로 기관 설립, 정치 활동에 참여, 투자, 재정적 지원, 몽골 민족 통일을 해치는 광고 및 홍보, 몽골 풍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영리 기관 활동과 종교 활동, 각종 폭력, 음란물과 마약 홍보 및 유포, 사증 및 체류, 등록 규정 위반, 거주허가증 자격 외 활동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몽골 이민청 : www.immigration.gov.mn
- 몽골 외교부 : www.mfa.gov.mn

10. 기타 사항 : 정부령 145호(2018.05.23), 정부령 146호(2018.05.23)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공무 목적 :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입국
- 사적 목적 : 1년 최대 180일, 180일 이상 국외체류 시 거주허가증 반납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허가증 소지 시 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국민투표권 없음.
- 직장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무직자의 경우라도 연금보험, 복지보험, 산재보험 등에 자진가입 가능
-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 무상의무교육 제공
- 토지소유권은 없으나 토지에 대한 장기임차권은 인정

4. 기타 사항 : 정부령 145호(2018.05.23.), 정부령 146호(2018.05.23.)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에 관한 법』(1995.06.05. 제정)

2. 국적취득조건

- 외국 국적자는 몽골 국적 취득을 희망 시 국적이탈 후 몽골 국적 취득 신청
 - ※ 단, 당사자 국가 법률에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 시 현 국적이 상실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이 필요 없으며 관련 기관 서류 제출
- 몽골 국적 취득 희망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생계를 유지할 능력, 생계를 유지할 근원이 있어야 함
 - ② 몽골 풍습, 몽골 공식 언어, 몽골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국적 취득 신청 전 몽골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
 - ③ 외국인 관리 정부기관에서 ①과 ② 범위에서 관련 정책을 근거하여 만든 기타 조건을 충족
 - ④ ②에 기재된 기간 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함
 - ⑤ 몽골 국적 취득 후 당사자의 국외적 관계가 몽골의 명성과 국익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몽골 국익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몽골 특수 인력으로 필요한 자, 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대통령이 ①과 ②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몽골 국적 부여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몽골 국적 상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국제 법률에 반영된 인류에 반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정된 경우
 - 국가 안전과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국제 테러 단체 회원으로 공개된 자일 경우

- 법정에서 증범자로 확정되는 경우
- 기존에 몽골에서 강제 퇴거된 자일 경우
- 강제퇴거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미경과일 경우
- 몽골 풍습과 몽골 법에 반하는 종교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нүүрэн тал



нүүрэн тал (preprinted)



нүүрэн тал (background)



ар тал



ар тал (preprinted)



ар тал (background)

I. 거주권

1. 명칭 : RESIDENCE VISA
2. 형태 : 비자 (여권 비자 면에 부착)
3. 유효기간 : 5년, 10년, 15년, 영주(은퇴자)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장기 거주 : 투자규모에 따라 거주허가 기간 상이
 - 5년 : 투자액 25 백만 바투 (약 22만 불)
 - 10년 : 투자액 5천만 바투 (약 44만 불)
 - 15년 : 투자액 1억 바투 (약 88만 불)
 - 은퇴자 매월 3십만 바투(약 2,600불) 이상 연금 수령자
 - 바누아투 투자청(VIPA)으로부터 받은 투자승인서를 받은 자
5. 수속절차 : 여권, 건강진단서, 신원조사서, 투자확인서 및 기타증명서등을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당사항 없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바누아투 이민국 www.immigration.gov.vu

II. 국적제도

1. 국적취득조건 : 1년 이상 거주국가 경찰서 발행 신원확인서, 보증인, 재정능력 증명서, 기존국적 포기서,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투자청 발행 투자확인서 등 이민국에 접수

III.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비자)



바레인

Kingdom of Bahrain

I. 거주권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여권에 스티커 용지로 부착
3. 유효기간 : 통상 2년(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바레인 정부, 기업, 개인, 바레인 주재 외국기관에 고용된 자 및 동반 가족
5. 수속절차
 - 구비서류 : 여권원본, CPR(바레인 체류 신분증), 건강증명서, 고용계약서, 스폰서의 NOC(No Objection Certificate)
 - 구비서류를 갖추어 노동청에 신청
 - 이민국에서는 여권사본으로 범죄 등 위법행위 여부 체크하고, 입국허가 여부 체크 후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NOC를 노동청에 통보
 - 노동청은 NOC와 함께 거주허가에 관한 신청사항 승인을 스폰서에 통보
 - 스폰서는 노동청에 거주허가증 발급 등 수수료 BD350(\$935 미불 상당) 납부 후 피고용인을 위한 거주허가증 발급받음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해고, 고용계약 만료, 스폰서의 의사
7. 부활제도 : 없음(재신청해야 함)
8. 포기제도 : 있음(스폰서만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lmra.bh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거주허가증에 표기된 바레인 체류 허가기간 만큼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취득 필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체류 허가 시 허용된 조건에 따름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이민법
2. 국적취득조건
 - 남성 : 바레인 25년 이상 거주 및 아랍어 능통해야 신청 가능
 - 여성 : 바레인 남성과 혼인하고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법적 저촉사항 발생시(바레인 안보, 치안 등 불안 선동 등)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비자, 여권에 부착)



2. 신분증(카드형태 발급)



벨기에

Belgium

I. 장기거주권

1. 명칭 : 외국인 ID 카드(La carte d'identité d'étranger 또는 Identiteitskaart voor vreemdelingen 또는 Personalausweis für auslander)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벨기에에 합법적으로 연속 5년 이상 거주한 비EU국가 국민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구청에 신청 ⇒ 이민국 심사 ⇒ 관할구청 교부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제3국에서 12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처음부터 다시 진행)
8. 포기제도 : 관할 구청에 영주 출국신고 및 카드 반납 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구청(Commune),
<http://dofi.ibz.be>(벨기에 이민청)
10. 기타사항 : EU회원국 국민의 경우 E-card, EU회원국 국민의 제3국 국적자 가족(국제결혼,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F-card(5년 유효) 발급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사전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12개월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구청에 허가신청 및 재입국시 구청 보고 필수)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벨기에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벨기에 헌법 제9조 : 귀화는 연방입법권에 의하여 부여
- 벨기에 국적법(Le Code de la nationalité)(1984.06.28. 제정)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입양에 따른 국적부여, 신청·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분류

가. 출생/입양에 따른 벨기에 국적부여

- 벨기에 국적의 부 또는 모의 출생자 국적부여
 - 벨기에 국적자 부 또는 모 아래 벨기에에서 태어난 자녀
 -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 벨기에에서 출생한 벨기에 국적자의 부 또는 모의 자녀, 또는 벨기에 관할영역 아래에 있는 영토 내에서 출생하거나, 벨기에 관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벨기에 국적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5년 내 자녀의 벨기에 국적부여 신청을 한 경우
- 벨기에 국적자에게 입양된 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벨기에 국적부여

나. 신청/귀화에 따른 벨기에 국적취득

○ 국적신청에 따른 벨기에 국적취득

– 국적취득신청 가능유형

- 벨기에 내 출생 후 합법적으로 벨기에에서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만 18세 이후 신청 가능
- 벨기에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 벨기에에서 10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5년 거주자 대비 구비 서류 간소화)
- 벨기에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벨기에인과 혼인하였거나, 벨기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외국인
- 벨기에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직업활동에 제한을 갖는 외국인

– 국적신청에 따른 국적취득 조건

- 외국인이 벨기에 국적신청을 위해서는, 체류기간 동안 합법적인 거주등록지가 있어야 함
- 외국인이 벨기에 국적신청 시 벨기에 장기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외국인이 벨기에 국적신청 시 벨기에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외국인이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벨기에 공식언어(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중 1개 언어 구사능력을 증명하여야 함. 언어구사능력 최소기준은 유럽연합 공통 언어기준 최소 A2 레벨
-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중 결혼에 의한 또는 벨기에 국적 미성년자의 부모, 장애인, 직업활동 불가능자 및 연금수령 나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5년의 기간 동안 벨기에에서 경제활동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귀화에 따른 벨기에 국적취득
 - 귀화는 스포츠분야, 과학 분야 또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외국인과 법원에 의하여 무국적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인정됨

3. 국적상실조건

가. 18세 이후 자발적으로 타국적을 취득한 경우

- 2007년06월09일 이전 자발적으로 타국적을 취득한 경우, 벨기에 국적을 상실함
- 2007년06월09일 ~ 2008년04월28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타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국가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벨기에 국적을 상실함 :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 2008년04월28일 이후 자발적으로 타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

나. 국적보유신고 누락의 경우

- 국적보유신고 누락 시, 28세가 되는 해 다음의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벨기에 국적이 상실됨
 - 1967년1월1일 이후 외국에서 태어나고,
 - 18세에서 28세 사이 벨기에 거주지등록이 안되어 있고,
 - 외국에서 벨기에 정부를 위해서나, 또는 벨기에법에 따른 벨기에회사 또는 협회에서 일하지 않고,
 - 18세에서 28세 사이 벨기에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보유신고를 누락하였으며,
 - 하나 또는 다수의 타국적을 취득하고,
 - 18세 이후 자발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다. 국적포기신고

- 18세 이상의 경우, 벨기에 국적자는 관할구청을 통해 명시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벨기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음. 이때, 국적포기신청자는 타국가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부룬디

Burundi

I. 거주권

1. 명칭 : 장기체류사증
2. 형태 : 여권 부착식 스티커(Visa)
3. 유효기간 : 2년, 20년, 99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여권과 함께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법률위반(범죄 등)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Police de l'Air, des Frontieres et des Etrangers(PAFE)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가능(복수비자)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Loi no. 1-013 du 18 juillet 2000 portant reforme du Code de la nationalité (2조, 4조, 6조, 7조)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가족 중 한명이 부룬디인인 경우, 부룬디인과 결혼 후 5년 경과 시, 10년 이상 부룬디 거주 시 국적취득 신청 가능 등

Ⅳ.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비자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I. 거주권

1. 명칭 : 이까마(Iqama, Resident Identity Card)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일반적인 신분증 크기)
3. 유효기간 : 1년 또는 2년(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스폰서(사우디 정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그 동반가족, 사우디 교육기관의 적법한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사증을 취득한 후 입국한 유학생 등
5. 수속절차
 - 사우디대사관으로부터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사우디에 입국
 - 사우디 보건부 지정병원에서의 신체검사
 - 민간 의료보험 가입
 - 엔지니어의 경우 사우디 엔지니어링 협회에 등록
 - 노동허가(work permit) 또는 학생증 신청 및 취득
 - 이까마 신청 및 취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고, 기간 만료 등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용주(스폰서)의 의사에 따라 효력 상실 / 학업 기간 만료 및 이까마 기간 만료 시 효력 상실
7. 부활제도 : 다른 고용주(스폰서)와 고용계약을 통해 취업시 재입국하여 재신청

8. 포기제도 : 본인에 의사에 의해 이까마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용주와의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계약파기 및 출국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www.moi.gov.sa)

10. 기타사항 : 사우디 정부는 2019.5월 '특별거주증(Premium Residency)법'을 공포한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 발급대상 : 사우디 국적 미보유자로서, 신청일 기준 적법하게 사우디에 체류 중인 21세 이상인 자
- 필요서류 : ▲유효한 여권, ▲자산 증명, ▲범죄경력 증명(범죄사실 부재 증명),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건강진단서(전염병 미보균자 증명) 등
- 주요혜택 : ▲동반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체류, ▲친척 등에 대한 초청비자 발급, ▲자유로운 입출국 및 사우디인 전용 입국통로 사용, ▲부동산(거주용, 상업용, 산업용 등) 소유(메카, 메디나 및 일부 국경지역은 제한), ▲개인 이동수단 보유, ▲사우디 내 민간기업 취업 및 자유로운 이직, ▲사우디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사우디 내 사업 및 고용 등
- 의무사항 : 사우디 국내법 준수, 실제 사우디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특별거주증 보유 기간 동안 세금 등 사우디 국내법상 의무 적용
- 취소조건 : ▲60일 이상의 구금형 또는 10만 리얄(한화 3천만원 상당) 이상의 벌금형 확정, ▲법원의 추방 명령, ▲위조 서류 등 제출 적발, ▲국내법 위반, ▲본인의 권리 포기, ▲사망, ▲상기 외 공공이익이 필요로 하는 경우
- 신청방법 : 경제개발위원회(CEDA) 산하 특별거주증센터(Premium Residency Center)를 통해 신청서 접수
- 분류 및 비용 : ▲무기한 특별거주증(80만 리얄, 한화 2억 4천만 원 상당), ▲1년 유효 특별거주증(10만 리얄, 한화 3천만 원 상당)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통상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사우디로부터 출국 및 사우디 재입국을 위해서는 출국사증 (Exit visa) 및 재입국사증(Re-entry visa)을 발급받아야 하며, 동 사증들은 이까마 취득 후 신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사우디 내 합법적 체류 가능, 별도의 복지혜택은 없음.
4. **기타사항** : 각 사업장의 자국민 의무고용제도(Saudization)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불법인력 사용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제도” 이슬람력 1374년 1월 25일 결정문 4번
2. **국적취득조건**
 - 사우디 국적 남성의 자녀
 - 사우디 국적 여성의 자녀(사우디 국적을 선택한 미성년자의 경우)
 - 사우디 국적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사우디 국적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불가)
 - 규정상 심신이 건강한 외국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적취득 신청할 수 있으나, 총리(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외국인 미성년자의 국적취득 불가

3. 국적상실조건

- 사우디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 정규군에 근무하는 자
- 사우디가 전시 상황일 때 외국 정부에서 근무하는 자
- 사우디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퇴직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불복한 자

IV. 거주권 견본



I. 장기체류권

1. 명칭 : CARTE D'IDENTITE D'ETRANGER
2. 형태 :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 증명사진 3매,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신청금(15,000FCFA), 비자보증금(307,000FCFA)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시
7. 부활제도 : 다른 해당 체류자격을 구비치 않으면 부활 불가
8. 포기제도 : 반납사유서, 영수증(취득 시 지급한 등록비 영수증), 등록증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POLICE DES ETRANGERS DIEUPPEUL
10. 기타사항 : 장기체류권 취득 후 매년 별도의 재발급신고절차 필요

Ⅱ.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비자제도 폐지,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Ⅲ. 장기체류권 견본



수 단

Sudan

I. 거주권

1. 명칭

- 특별 거주허가(Special Residence Permit)
- 보통 거주허가(Ordinary Residence Permit)
- 임시 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 ※ 수단 최초 입국시 local stay permit (최초 1개월, 최장 3개월)을 받은 후, 거주 보증인의 추천으로 임시거주 허가가 주어짐
- ※ 보증인은 수단국적인 또는 학교, 기업체가 될 수 있음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특별 거주허가 : 10년
- 보통 거주허가 : 5년
- 임시 거주허가 : 1년
- ※ 각각 동일기간으로 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특별 거주허가 : 10년
 - 1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보통 거주허가 3번째 취득하는 자
 -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문화, 기술, 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내무장관이 수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 과학, 문화 예술, 상업 및 경제 분야 등의 저명한 외국인

- 보통 거주허가 : 5년
 -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부처 추천으로 내무장관이 인정할 경우
- 임시 거주허가 : 1년
 -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최초 입국한 후 Local stay permit을 받은 자가 수단 거주 보증인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5. 수속절차

- 수단에 도착 후 3일 이내 내무부 이민국에 입국등록 신청하여야 함
(등록 후 30일 체류 Local stay permit이 주어짐,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3개월까지 임)
- 유학이나 취업 등 체류목적인 경우 Local stay permit을 받은 후 수단 거주 보증인을 통하여 1년간 체류가능한 Temporary residence permit으로 전환할 수 있음
-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5년이 되면 Ordinary residence permit을 받을 수 있음(체류기간 연장 시 보증인 재추천 필요)
- Ordinary residence permit은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15년째 되면 Special residence permit을 받을 수 있음(체류기간 연장시 보증인 재추천 필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특별 거주허가
 - 재입국 사증 없이 계속 6개월 이상 국외체재 시
 - 수단에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 HIV 양성반응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 재입국 사증 없이 계속 2년 이상 국외체재 시

- 보통 및 임시거주허가
 - 당초의 허가사유가 소멸한 때
 - 수단에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 HIV 양성반응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 7. 부활제도 : 보증인의 재추천과 내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효력이 회복됨
- 8.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수단 내에서 재입국 허가(re-entry) 또는 복수비자 소유자는 외국에 나가서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특별거주 허가자도 외국인이므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의료 및 교육 등 수혜는 일반 외국인의 경우와 동일
4. 기타사항
 - 입국등록
 -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수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인 수단에 도착 후 3일 이내에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함
 - 복수비자의 다른 의미
 - 수단대사관에서 발행하는 6개월 복수비자는 6개월 이내에 복수에 걸쳐서 수단을 입국할 수 있다는 입국비자에 불과하며, 수단에 입국하여서는 별도로 입국신고를 해야 함. 아울러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출국비자

- 수단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다 출국할 경우에는 별도로 출국비자를 받아야 함. 이는 세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수단 국민들도 출국 시에는 모두 출국비자를 받아야 함

Ⅲ. 거주권 견본



스리랑카

Sri Lanka

I. 거주권

1. 명칭 : 거주비자(Residence Visa)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1-5년(대부분의 경우 1년)
 - 취업
 - 관련 당국의 추천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정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 가능
 - 기업의 Director(부장 이상)급의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 갱신 가능
 - 투자
 - 유효기간 1년, 갱신 가능
 - 종교
 - 학생
 - 관련 당국의 추천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이 정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 가능
 - 1954 협정에 의해 등록된 인도인
 - 유효기간 1년, 갱신 가능
 - 前 스리랑카인 및 그 가족
 - 유효기간은 1년, 갱신 가능

- 스리랑카인의 가족
 -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 스리랑카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스리랑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외교관 및 공용 비자
- My Dream Home 비자
 - 유효기간 2년, 갱신 가능
- Resident Guest Scheme Visa
 - 최대 유효기간은 5년, 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취업
 -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인력
 - 스리랑카 투자청(BOI)의 감독하에 있는 프로젝트에 고용된 인력
 - 은행에 고용된 인력 및 그 가족
 - 자원봉사 및 NGO 소속 인원
 - 스리랑카 주재 해외 공관 소속 기관(institution), 조직(organization), 프로젝트(project)에 고용된 인력
 - 민간 회사에 고용된 인력 및 그 가족
- 투자
 - 스리랑카에 자본을 투자하려는 자
- 종교
 - 성직자
- 학생
 - 대학교 학생
 - 정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의 재학생
 - 종교기관 소속 학생

- 1954 협정에 의해 등록된 인도인
 - 前 스리랑카인 및 그 가족
 - 스리랑카에 도착한 이후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을 거주한 前 스리랑카인 및 그 가족
 - 스리랑카인의 가족
 - 스리랑카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 스리랑카인의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녀
 - 외교관 및 공용 비자
 - My Dream Home 비자
 - 55세 이상 외국인으로 15,000미불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해외통화를 스리랑카의 은행에 송금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매월 1,500미불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해외통화를 스리랑카 은행에 송금하는 자
 - My Dream Home 비자 지원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 부양 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매월 750미불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해외통화를 스리랑카 은행에 송금
 - Resident Guest Scheme 비자
 - (투자분야) 최소 250,000미불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해외 통화를 중앙은행이 승인한 은행의 계좌에 송금하여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부양가족의 경우는 1인당 최소 35,000미불을 송금하여야 함.
 - (전문가분야) 스리랑카 지정 은행 계좌에 매월 최소 2,000미불 이상을 송금하는 자로서 스리랑카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 그 부양가족의 경우는 1인당 매월 1,000미불 송금하여야 함.
- 5. 수속절차 :** 스리랑카 거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국 소재 스리랑카 공관이 발급한 스리랑카 입국비자(entry visa)를 취득하여 스리랑카에 우선 입국하여, 콜롬보의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방문비자(visit visa)로 입국한 경우 거주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당사항 없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스리랑카 이민국(www.immigration.gov.lk)
 - 2019.6.3(월) 이후 스리랑카 거주 비자(Residence Visa)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스리랑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Nutrition and Indigenous Medicine)가 도입한 새로운 의료보장보험(Health Protection Plan)가입이 필수

Ⅱ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없음

Ⅲ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Citizenship Act에 의해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함.
2. 국적취득조건 : 출생과 동시에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며, 외국에서 태어난 스리랑카인의 자녀는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에 의해 국적 취득
3. 국적상실조건 : 스리랑카 대사관이나 이민국의 시민권 부서(Citizenship Division of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에 국적 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
 - 1987년 국적법개정(Citizenship Act of 1987)으로 특정한 요건하의 前-現 스리랑카인의 이중국적을 인정

- 스리랑카 내전(1983-2009) 당시 인도로 피난갔던 타밀인과 그 자녀 등의 시민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출신을 위한 시민권 부여 법안(act no 39 of 1988, act no 35 of 2003)'을 통해 이들에게 스리랑카 시민권 부여
- 스리랑카 독립 이전인 2차대전 시기에 중국에서 스리랑카로 이주해서 살아왔지만 스리랑카 국적도 중국 국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 2008-2013년 한시적으로 '중국출신을 위한 시민권 부여 법안(act no 38 of 2008)'을 통해 이들에게 스리랑카 시민권 부여

IV. 거주비자 견본

1. 거주비자



시에라리온

Republic of Sierra Leone

I. 거주권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종이 카드(1장을 반으로 접어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신분증으로 사용)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정당한 입국비자 소유자로서 이민국에서 입국쿼터를 인정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5. 수속절차 : 관련 서류를 시에라리온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소속 사업장 변경 및 사직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거주허가 1년 단위 갱신 필요)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거주허가 취득 후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Sierra Leone Immigration Services, www.immigrationservices.gov.sl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한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는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한 복지 혜택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귀화(Naturalization)’ 및 ‘혼인등록(Registration)’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규정
2. **국적취득조건** : △출생(혹인으로서 부 또는 조부가 시에라리온에서 출생한 경우), △귀화(시에라리온 국적자와 혼인중인 여성, 또는, 성년의 혹인으로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라리온에 거주한 사람(혹인이 아닌 경우에는 15년 이상 계속 거주)으로 구 국적을 포기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귀화자가 △귀화 후 7년 이내 사기 등 관련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 △시에라리온에 대한 불충(disloyal)의 언사나 행위를 표현한 경우, △전시 시에라리온의 적국과 불법 교역에 종사하거나 적군에 대한 방조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적국과 불법적으로 교신함으로써 시에라리온의 국익을 해한 경우, △외국에 7년간 계속 거주하면서 거주지 관할 시에라리온 대사관에 매년 소정의 방식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않고 시에라리온 국적 계속 보유 의사를 해당 부처 장관에게 서한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증명서 : 종이 증명서 발급

VALIDITY			
Date	Yearly Serial No.	Valid Until	Signature of Registration Officer


 REPUBLIC OF SIERRA LEONE
 IMMIGRATION DEPARTMENT

B 02673

 NON-CITIZ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ddress: _____

Employer (if any): _____ / _____

Employer's Address: SAME
AS ABOVE

THIS IS TO CERTIFY
 Mr./Mrs./Miss _____
 Nationality: _____
 has been duly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Non-Citizen (Regulations) Rules, 1967
 Public Notice No. 46 of 1967.
 Occupation: _____
Domestic Worker
 Registration No. _____
 Date: _____


 (R.G.)

아이티

Republic of Haiti

I. 장기체류권

1. 명칭 : PERMIS DE SEJOUR
2. 형태 : 여권형태(사증면 32쪽)
3. 유효기간 : 1년 (여권 사증에 이민국 직인 및 서명)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주재원, 특정 단체 소속원, 순수 개인도 취득 가능
5. 수속절차
 - 제출서류 : 이민국 필수 서류 제출 지참 후 이민국 방문
 - 이민국 방문 시 사진촬영 후 취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상실
7. 부활제도 : 유효기간 만료 이후 신규절차로 재신청
8. 포기제도 : 관련 규정 없으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이민국 (DIRECTION DE L'IMMIGRATION ET DE L'EMIGRATION)
 - 홈페이지 : 없음

Ⅱ.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유효기간 내 국외체재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금융계좌 개설 가능

Ⅲ. 장기체류권 견본

1. 장기체류증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I. 거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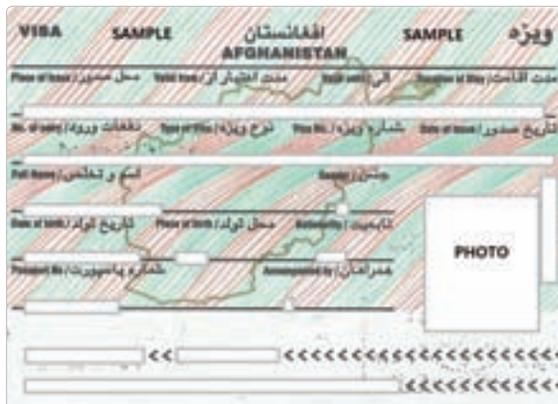
1. 명칭 : Employment Visa, Family Residence Visa
2. 형태 : 체류비자
3. 유효기간 : 3개월, 6개월, 1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 (취득조건)
 - 취업비자 : 내무부 발행 허가를 받은 자
 - 가족비자 : 취업거주 비자를 받은 자의 가족
5. 수속절차 : 일반 비자 신청 절차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 만료
7. 부활제도 : 해당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주한아프가니스탄대사관
 - 홈페이지 : <https://www.seoul.mfa.af/consular-affairs/visa-application.html>
10. 기타사항 :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비자 발급 불가

Ⅱ.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불허
 - The Official Gazett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Republic of Afghanistan(1992,3.19)
2. 국적취득조건 : 속인주의, 현지인과의 혼인, 5년 이상 체류자(무범죄경력자)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상실 신고 시(무범죄경력자로서 아프간 내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4. 기타사항 : 아프간인과 혼인으로 국적취득 시 반드시 이슬람개종이 필요하지는 않음

Ⅲ.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비자)



알제리

Algeria

I. 거주권

1. 명칭 : 체류증(La carte de résident 또는 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2. 형태 : 종이(3단으로 접을 수 있는 두꺼운 파랑색 종이)
3. 유효기간 : 조건에 따라 상이(※ 관련 신청기관에 확인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알제리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외국인
5. 수속절차 : 관할 경찰서 및 도청에 관련서류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진 5장
 - 건강진단서(14세 이하는 예방접종증명서 필요)
 - 여권 및 여권사본, 비자 사본
 - 장기체류를 증명할 집 계약서
 - 기타(해당사항에 맞게 준비)
 - 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허가증
 - 교직원일 경우 학교 재직증명서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업, 수공업, 상업, 자영업에 관한 증명서
 -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재원에 대한 증명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필요
8. 포기제도 :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관할경찰서(외국인과가 있는) 및 도청(Wilaya),
<http://www.interieur.gov.dz/>(알제리 내무부 홈페이지)
10. 기타사항
 - 도난, 분실한 지 48시간 내 거주구역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신고
 - 여권사진(최소 2장), 재발급비(1,000디나) 지참 필요
 -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 6개월 이상 거주할 새 거소를 마련하여 이동하는 경우, 새주소로 이전한지 15일 이내 거주 주소 변경 신청 필요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없음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법무부 고시 법령 05-1
2. 국적취득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알제리 국적인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국적취득

- 알제리인과 결혼할 경우
 - 3년 이상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
 - 알제리 거주
 - 품행이 바르고 올바른 도덕관념을 지님
 - 충분한 생계수단
- 결혼 이외의 경우
 - 귀화신청을 위해서는 7년이상 알제리 체류
 - 귀화 승인시점에 알제리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음
 - 성년
 - 품행이 바르고 불명예 처벌기록이 없음
 - 충분한 생계수단
 - 건강한 심신
 - 알제리 사회에 동화되었음을 입증

3. 국적상실조건

- 범죄를 저지른 경우
- 5년 이상의 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군복무중 탈영한 경우
- 알제리 국익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에티오피아

Ethiopia

I. 장기체류권

1. 명칭 : Resident Permit

2. 형태 : ID 카드

3. 유효기간 : 1년(매년 갱신)

※ 에티오피아 이민국에서 2019년부터 일부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유효기간 5년의 ID 카드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1년임. (에티오피아 투자청(EIC)은 관련 규정을 곧 개정할 예정이라고 안내)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투자자 : 에티오피아 투자법에 규정된 일정 자본금(20만불)을 투자한 자 (Investment Licence 보유자)
- 일반근로자 : 상기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 소속직원 또는 일반인은 노동부의 노동 허가(Work Permit)를 받은 자

5. 수속절차

- 투자자 : 투자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사업면허증 획득시 이민국으로부터 ID 카드 수령
- 일반근로자 : 소속 투자기업(투자가)또는 기업경영주가 노동부에 신청하여 개인별로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ID 카드 수령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투자자 : 매년 사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일반근로자 : 매년 노동허가(Work Permit)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제도 : 이민국의 심사

8. 포기제도 : 제3국으로 영구 이주할 경우 이민국에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10. 기타사항 : 투자법에 의한 자본금이 10만불에서 20만불로 상향 변동됨

II .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ID 카드 유효기간(1년)내 제한 없음

2. 재입국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등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음

III . 장기체류권 견본

1. 장기체류권 카드



예멘

Yemen

I. 거주권

1. 명칭

- 특별 거주권(Special Residency)
- 일반 거주권(Regular Residency)
- 임시 거주권(Temporary Residency)
- 특수 거주권(Exceptional Residency)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특별 거주권 : 10년
- 일반 거주권 : 5년
- 임시 거주권 : 1년
- 특수 거주권 : 3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예멘 입국 허가가 있어야 하며, 입국 불허 목록에 있지 않아야 함.
- 국외추방을 당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인이 어떤 질병도 갖고 있지 않다는 공인 건강증명서를 소유해야함.

5.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신청자가 국외추방당하거나 국가안보, 안전, 경제, 도덕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경우

- 6. 부활제도 : 신청자의 국외추방처분이 회수될 경우
- 7.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여권사무국

II . 거주권자

-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신청 재입국비자에 따라 3개월, 6개월로 상이함.
-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 전 출입국 비자 신청자에 한해 허가함.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예멘 국적법(1990)
- 국적제도의 핵심 내용 : 예멘 국적법 Section II -국적획득에 관한 법률, Article 4 / 예멘 국적법(1990), Chapter III -국적 회수에 관한 법률, Article 18

2. 국적취득조건(예멘 국적법(1990), Section II -국적획득에 관한 법률, Article 4)

- 출생 당시에 부(父), 모(母)가 예멘의 국민인 자
- 예멘에 연속 10년 이상 합법 거주권을 소지한 채 거주하고, 국적변경신청서를 작성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父), 모(母)가 예멘 국민이 아닌 경우 신청자가 범죄경력이 없고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국적변경신청서를 작성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예멘 공화국과 아랍국가에 크게 기여한 자
- 예멘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부(父)계의 할아버지 또한 예멘에 거주했음을 증명하고, 신청인이 예멘 국적 획득 시 관련 혜택을 전부 포기할 경우

3. 국적상실조건(예멘 국적법(1990), Chapter III-국적 회수에 관한 법률, Article 18)

-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예멘 거주 시 일련의 문제로 인해 2년 연속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예멘 국적 획득 시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 예멘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타국 정치조직의 일원인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려 하거나 가한 경우

I. 거주권

1. 명칭 : 외국인 거주(Foreigners' Residence)
2. 형태 : 거주증(Resident Card)
3. 유효기간 : 2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취업(Employment), 가족(Family Residence), 투자거주(Investor Residence) 등 비자 취득자
5. 수속절차 : 해당비자를 취득하고 오만보건부의 신체검사 통과 후 오만경찰청(Directorate General of Civil Status)에 거주증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 만료 및 계약 취소 등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http://www.rop.gov.om>(오만경찰청)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사항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비자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 외국인 등록

Ⅲ. 거주권 견본



I. 거주권

1. 명칭 : 거주허가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년,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비자 : 요르단 스폰서 또는 요르단에 등록된 기업에 의해 고용된 자
- 투자비자 : 요르단에 투자한 자
- 학생비자 : 요르단 내 대학 또는 어학연수기관에 등록한 자
- 결혼비자 : 요르단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 동반비자 : 요르단 거주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5. 수속절차

- 노동비자 : 요르단 스폰서 또는 요르단에 등록된 기업체가 노동부로부터 근로허가 승인을 받은 후 내무부에 제출
- 투자비자
 - 요르단에 5만 디나르(약 7만 불 상당)를 투자한 후 투자증명서를 산업통상부와 내무부에 제출
 - 요르단에 20만 디나르(약 28만 불 상당) 이상의 자산을 구입 후 토지측량국(Department of Lands and Survey)의 확인을 받아 내무부 제출
- 학생비자 : 대학 또는 어학연수기관에 등록 후 등록증을 내무부에 제출

- 결혼비자 : 요르단 국적자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무부에 제출
 - 동반비자 : 요르단 거주허가를 받은 자와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무부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이직, 실직, 학업 중단, 투자 취소, 이혼 등 해당 신청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보안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또는 요르단에서 추방을 결정한 경우
 - 6개월 이상 요르단을 떠나있는 경우
7. 부활제도 : 재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moi.gov.jo(요르단 내무부)
10. 기타사항 : 2018.2월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주권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2018.11월 영주권 대신 5년 거주허가 제도로 변경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별도 재입국 허가 없이 거주허가 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Jordanian Nationality Law No.6 of 1954)
 - 요르단 국적자의 정의
 - 요르단 국적법에 의해 요르단 국적 또는 요르단 여권을 취득한 자

- 1948.5.15.이전 유대인이 아닌 팔레스타인 국적자로 1949.12.20.-1954.02.16.기간에 요르단에 거주한 자
- 요르단 국적으로 태어난 아이(아버지가 요르단 국적을 보유) 등
- ※ 요르단은 요르단 내 출생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음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 요르단 국적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녀
- 혼인
 - 요르단 국적 남편과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아랍 국적 여성
 - 요르단 국적 남편과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비아랍 국적 여성
- 국적허가 : 요르단에 15년 이상 체류한 아랍인으로 범죄경력이 없고 직업이 있으며 각료 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
- 귀화 : 요르단에 4년 이상 체류한 자로 범죄경력이 없고 직업이 있으며 각료 회의의 귀화 승인을 얻은 자
- 투자 :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해당 시 신청 가능
 - 150만 불을 5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Central Bank of Jordan에 예금
 -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150만 불 채권 구입
 - 5년간 150만 불 이상 유가증권 매입
 - 3년간 요르단 중소기업에 100만 불 이상 투자
 - 요르단 내 200만 불 이상 또는 암만 외 지역에 150만불 이상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로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3. 국적상실조건 : 투자 조건 위반, 타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포기,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에서 병역을 수행하는 경우, 각료 회의를 거쳐 국왕의 국적상실 승인을 받은 경우 등

4. 기타사항 : 2018.2월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적취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8.11월 국적취득 조건을 수정함. 투자 자격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 3년간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임시 여권이 발행되며, 3년 이후 모든 권리를 가진 시민권으로 변경

IV. 거주권 견본

1. 거주허가증 카드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MINISTRY OF INTERIOR
RESIDENCE AND BORDERS DEPARTMENT

المملكة الأردنية الهاشمية
وزارة الداخلية
إدارة الإقامة والحدود

Name : [REDACTED] : الاسم
Nationality : [REDACTED] : الجنسية
Date of Birth : [REDACTED] : تاريخ الميلاد
Passport No. : [REDACTED] : رقم 여권
Residence No. : [REDACTED] : رقم الإقامة
Issue Date : [REDACTED] : تاريخ الإصدار
Expiry Date : [REDACTED] : تاريخ الانتهاء

مكة المكرمة

Profession : [REDACTED] : المهنة
Address : [REDACTED] : العنوان
Police Station : [REDACTED] : المركز الأمني
Dependants : [REDACTED] : المرافقون

مدير الأمن العام

إذا مكث حاملها خارج البلاد أكثر من ستة أشهر تعتبر الإقامة
Will be invalid if holder's stay abroad exceeds 6 months.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I. 거주권

1. 명칭 : 외국인을 위한 거주증명서(IDENTITY CARD FOR FOREIGNERS RESIDENT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2. 형태 : 수첩(16페이지로 구성)
3. 유효기간 : 5년
 - 한 번 발급된 거주권은 5년씩 5회 연장이 가능하며 5회 연장 후에는 거주권 갱신 필요. 단, 거주권은 외국인의 여권 유효기간만큼 발급됨
 - 60세 이상인 외국인은 여권 유효기간만큼 발급됨
 - 무국적자를 위한 거주권은 5년씩 5회 연장이 가능하며 5회 연장 후에는 거주권 갱신 필요
 - 60세 이상인 무국적자는 기한제한 없는 거주권 취득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5. 수속절차
 - 장기체류허가 신청절차 : 장기체류허가 발급 신청서(내무부 소정양식) 2장, 친척·지인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주택 주인의 공증된 거주동의서, 주택 소유 관련 서류, 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수수료 납입영수증, 35×45mm 사진 2매 등
 - ※ 내무부에서 허가된 장기체류허가서는 거주권 발급의 근거임
 - ※ 장기체류허가 검토는 보안부, 시청·주정부, 내무부, 필요시 외교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부처·관청마다 검토 기간은 1개월을 상회하면 안됨.

- 거주권 신청절차 : 거주권 발급신청서(내무부 소정양식) 1장, 최초에 접수할 경우),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국적상실 증명서(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35 × 45mm 사진 5매, 거주지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거주권 발급 검토기간은 15일을 상회하면 안 됨
-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영구 출국했을 경우
 - 해외로 출국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 무국적자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포기한 경우
 - 거주권 신청 시 허위·위조 서류 제출했을 경우
 - 해외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무국적자 증명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했을 경우(무국적자에 해당)
- 7. **부활제도** : 거주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장기체류허가서를 재차 받은 뒤 거주권 발급이 가능(부활제도 없음)
- 8. **포기제도** : 거주권 포기 신청을 직접 하거나 공증된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또는 타국의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기 가능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지역사무소) /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홈페이지 (www.mvd.uz)
- 10. **기타사항** : 우즈베키스탄 거주권제도와 관련 해당규정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여권제도 개선과 관련 제UP-2240호 (1999.02.26.) 명령의 외국인·무국적자를 위한 거주권 및 무국적자 증명서와 관련 제2규정
 -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외국인·무국적자의 출입국·체류·통과(트랜짓)에 관한 제408호(1996.11.21.)결의의 외국인·무국적자의 출입국 절차와 관련 제1규정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이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 사증없이 재입국 가능(취소여부를 해당 재외공관에서 확인 필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일부제한(선거, 고등학교 · 대학교 무상교육, 정부기관 채용 등)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우즈베키스탄 국적 제도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헌법,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법,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명령 UP-426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여권 시스템》(2011.01.05.) 및 UP-500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과 관련 문제 검토 절차》(1992.11.20.)에 따른다.

2. 국적취득조건 : 우즈베키스탄 국적법 17조에 따라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출신, 민족, 성별, 교육수준, 언어, 종교, 정치 이념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 취득 가능.

- 국적법 17조 2항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 취득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외국 국적 포기
 -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거주
 - 합법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 증빙
 - 우즈베키스탄 헌법 인정 및 준수
- 아래의 경우 국적 취득 신청을 불허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입헌주의 정체성을 부정할 경우

-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위반하는 단체 및 당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령 위반으로 수감된 경우

- 국적취득 절차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명령(1992.11.20. / #У II-500)에 따라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거주지역 경찰서를 통해서 국적 취득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헌법 수호, 헌법 및 법령 준수, 외국 국적 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2 부
 -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무국적자 제외)
 - 자기소개서 2 부
 - 소득증명서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발급)
 - 사진 4장
 - 가족의 거주지 확인서 2 부
 - 수수료 납입 수료증/영수증

3. 국적상실조건 : 아래의 경우 국적을 상실한다.

- 대상자가 외국의 군대, 정보기관, 경찰,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취직한 경우
- 대상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에서 3년 이상 장기 거주하며 재외국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을 허위정보 및 서류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
- 대상자가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 공익 및 국가에 위해, 안전을 위협할 경우
 - 대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외국 국적 취득 대상자는 30일내에 상기 사실을 경찰관서 및 우즈베키스탄 재외공관에 통보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은 대통령 명령 승인 날로부터 상실

4. 기타사항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 확인 서류는 여권, 여권 발급 이전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임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여권은 16세에 발급 받고 10년의 유효기간으로 발급함
- 16세 미만의 국민이 해외 출국할 경우 5년의 유효기간으로 여권을 발급함
- 우즈베키스탄 여권은 우즈벡어 및 영어로 (카라칼파크스탄공화국을 위한 우즈벡어, 영어, 카라칼팍어) 작성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여권을 발급함
 - 대상자 16세 될 경우
 - 16세 미만 대상자 출국 경우
 - 아이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적 취득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 본인 및 아버지 개명, 민족,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 여권에 오타가 있을 경우
 - 등록 정보 및 사증 페이지 완료된 경우
 -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여권을 분실한 경우

IV. 거주권 견본



이라크

Iraq

I. 거주권

1. 명칭 : Departure & Returning Visa(residence permit에 해당)
 - 우리 기업 직원들은 그간 상기 복수비자로 거주권을 갈음해 왔음
2. 형태 : 스티커(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3개월, 6개월, 1년
 - 체류기간에 따라 수수료는 \$200~\$400 소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정당한 입국비자로 입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입국 후 10일 내에 각 지역 이민국 사무소(IQMA)에 신청
 - 거주권 신청 시 혈액검사 필요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신청기관 : 이민국(MUDERLAT AL IQMA RESIDENCY DIRECTORATE)
8. 기타사항
 - 최근에는 투자기업 사업장에서 근무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 대해 노동허가권(Work Permit, ID Card 형태)도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 노동허가권은 노동·사회부에서 신청비용(유효기간 1년인 경우 150만 IQD) 지불 후 관련서류를 받아 지역 이카마(IQMA) 사무소에 제출

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Citizenship Law of 2006
2. 국적취득조건 : 10년 이상 이라크 체류(이라크인과 결혼한 경우 3년) 필요
3. 국적상실조건 : 범죄, 허위취득 등

III. 거주권 견본



이 란

Iran

I. 거주권

1. 명칭 : Residence Permit(거주 허가)
2. 형태 : 여권 사증란에 스티커(외교·관용여권) 또는 스탬프(일반여권)로 표시
3. 유효기간 : 1년(일반여권), 3년(외교·관용여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근로자, 투자자, 유학생 등 유효한 비자 소지자
5. 수속절차 :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후, 관할 이민경찰서에 거주 허가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이란 법령 위반 등
7. 부활제도 : 재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Immigration & Passport Police(이민경찰), www.moi.ir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출국 시 이민경찰이 허용하는 기간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 전 이민경찰에 출국허가 및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자동차 소유, 휴대전화 등록, 은행계좌 사용 등(부동산 소유는 금지)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이란 민법 979조
2. 국적취득조건 : 18세 이상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국 군복무 회피자가 아니며,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또는 이란 공익을 위해 헌신한 자, 이란인 배우자 및 그 자식이 있는 자, 내각이 승인한 자 등
3. 국적상실조건 : 명시 규정 없음.
4. 기타사항 : 이란인 남성 배우자와 혼인한 “여성”은 자동적으로 이란 국적을 취득함. 또한, 복수국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타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이란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란에서는 이란인으로만 대우하며, 타국 국적은 인정치 않음

Ⅳ.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비자) : 스티커식 및 스탬프식



I. 장기체류권

1. 명칭

- Special Residence
- Regular Residence
- 3-Year Residence
- 5-Year Residence
- Temporary no-tourists visa
- Work Visas/Permits

2. 형태

- Special Residence-비자(여권부착)
- Regular Residence-비자(여권부착)
- 3-Year Residence-비자(여권부착)
- 5-Year Residence-비자(여권부착)
- Temporary no-tourists visa-비자(여권부착)
- Work Visas/Permits-비자(여권부착)

3. 유효기간

- Special Residence-10년
- Regular Residence-5년
- 3-Year Residence-3년
- 5-Year Residence-5년

- Temporary no-tourists visa-1년
- Work Visas/Permits-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Special Residence-1952.5.26. 이전 이집트에서 출생한 외국인 또는 동 연월일 기점으로 20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거주한 자와 동인의 부인과 자녀
- Regular Residence-1952.5.26. 기점으로 15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거주한 자와 동인의 미성년 자녀
- 3-Year Residence-이집트 부인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
- 5-Year Residence-외국인 투자자와 동인의 부인과 자녀
- Temporary no-tourists visa
 - 이집트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기업에 고용된 자와 동인의 부인과 자녀
 - 이집트 정부에서 승인한 은행에 최소 미화 5만불(또는 이에 상당한 다른 통화)을 예치한 자(최소 1년간은 예치)
 - 최소 미화 5만불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동 부동산은 국가 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하고 매매 대금은 이집트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어야 함
- Work Visas/Permits-이집트 내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내무부 이민국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공공의 안녕(국가보안, 안전, 경제, 윤리, 국민건강 등)에 위배되는 행위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10. 기타사항 : 해외투자자 유치 및 외화 확보 차원에서 아래 규정 신설

- 이집트 정부에서 승인한 은행에 최소 미화 5만불(또는 이에 상당한 다른 통화)을 예치한 자(최소 1년간은 예치)
- 최소 미화 5만 불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동 부동산은 국가 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하고 매매 대금은 이집트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어야 함

II .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
 - 국적 취득
 - 이집트 국적 간주
 - 이집트에서 출생
 - 이집트 부모로부터 출생
 -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 귀화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 국적 철회

- 이집트 국적 재취득
- 이중 국적

2. 국적취득조건

가. 이집트 국적 간주

- 1914.11.5. 이전부터 이집트에 거주하는 자로 외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으며 현 국적법 시행 시까지 이집트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이집트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집트 국민으로 간주(속주주의)
- 모가 이집트 국민이나 부의 국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이집트 부모에게 출생

- 이집트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나 이집트 할아버지가 있는 자(속인주의)

다. 혼인에 의한 국적 취득

- 이집트 국민의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2년 후 남편의 동의 하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라. 귀화

- 이집트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집트 시민으로 귀화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국적상실
 - 이집트 국민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이 상실됨
- 국적 철회
 - 이집트 국적 취득자는 취득 후 10년 내 위조된 방법이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것이 발각된 경우 국적이 철회됨
 - 국적 취득 후 5년 내 형사범죄로 형을 선고 받거나 국가안전에 반하는 범죄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 내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없이 2년 연속 이집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4. 기타사항

- 2004년 국적법 개정으로 이집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이집트 국적을 부여(양계혈통주의로 변경)

IV. 거주권 견본

1. 거주비자



I. 거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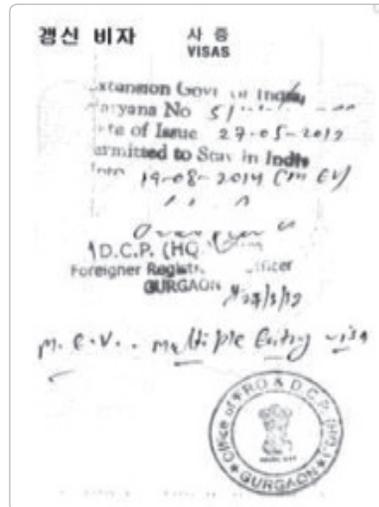
1. 명칭 : 외국인 체류자에게 체류비자(Stay VISA)를 발행
2. 형태 : 최초 부여 시에는 여권에 스티커 부착 및 FRRO발행 용지, 연장 시는 여권상에 스탬프. 인도인 배우자와 결혼한 자는 수첩형태
3. 유효기간 : 학생 · 상사주재원 · 전문직 1년, 결혼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관광목적 이외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 상사주재원, 전문직 종사자, 인도인과 결혼한 자)
5. 수속절차 : 내무부 산하 FRRO(Foreigners Regional Resistration Office)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비자기간 경과, 불법행위 등
7. 부활제도 : 비자기간 경과 시에는 내무부에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포기제도 없음. 거주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사유가 명시된 한국대사관 협조서한을 내무부에 제출하여 출국비자를 받은 후 출국이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산하 이민청(<http://boi.gov.in>)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외 체류기간 제한은 없으나, 비자 유효기간 내 인도에 입국을 해야 함
2. 재입국 허가제도 : 단수비자의 경우 출국 전 내무부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계속하여 12년 이상 거주 시 시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특별한 혜택은 없음

III. 거주권 견본

1. 여권 상에 최초비자 및 갱신비자



2. 외국인등록소(FRRO :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에 등록

- 6개월 이상 체류 예정 시 도착 14일 내에 체류지역 FRRO에 필히 등록하여야 하며, FRRO에서는 체류비자(하단 좌측)와 등록증(하단 우측)을 발행함

외국인등록증

STAY VISA

Registration Certificate / Residency Permit (RC/RR)

1. Name: [Name]

2. Date of Birth: [Date]

3. Sex: [Gender]

4. Nationality: [Nationality]

5. Date of Issue: [Date]

6. Validity: [Validity]

7. Issued by: [Signature]

외국인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 Residency Permit (RC/RR)

1. Name: [Name]

2. Date of Birth: [Date]

3. Sex: [Gender]

4. Nationality: [Nationality]

5. Date of Issue: [Date]

6. Validity: [Validity]

7. Issued by: [Signature]

인도네시아

Indonesia

I. 장기체류권

1. 명칭 : KITAP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며, 매 5년 단위로 연장가능(1회 연장시 5년 부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외국인투자회사(PMA)의 임원으로 3년이상 KITAS를 소지한 자
- KITAP을 소지한 부모의 인니 출생자

5. 수속절차

- 해당 거주지역 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 허가서류를 지역이민국에 접수 → 중앙이민청 허가 신청→허가 서류를 지역이민국에 재접수 → 허가 받은 후 해당 거주지역 이민국에 서류확인 후 KITAP 획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최초 신청시의 체제 목적 위반
- 국적 변경시
- 인니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재입국 기간(국외체재기간)내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부활제도 : 한 번 만료 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함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IMIGRASI.GO.ID

10. 기타사항 : 기존의 KITAP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체류한 KITAS 소지자 였으나, 현재는 일반 KITAS 소지자가 5년 이상 체류하더라도 KITAP 신청 불가. 반드시 외국인투자회사(PMA)의 임원이어야 함.

II.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재입국허가를 득하고 최대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이민국으로부터 출국과 입국허가를 득하여야 함

- 명칭 : Exit and Reentry Permit
- 기간 : 1년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소지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5년 발급
- KITAP 소지 시 국적변경신청 가능

III. 장기체류권 견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I. 거주권

1. 명칭 : La Carte de Sejour
2. 형태 : 종이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일반체류증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체류 중인 13세 이상 3개월 장기 visa(immigrant visa long sejour)를 받은 모든 외국인
5. 수속절차 : 소정양식에 따라 이민국에 신청
 - ※ 구비서류 : 신청서, 노동확인서(Attestation de travail), 신원보증서(Casier judiciaire), 건강진단서(Certificat medical), 여권사본(Passeport), 사진 4매, 3개월 이민 VISA(visa imigrant), 보증금(caution 귀국항공료에 해당)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 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10. 기타사항
 -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체류증 갱신
 -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출국 시 반드시 출국허가(Quitus)를 받아야 함

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중앙아프리카 국제법 제1961,212조_1961. 04. 20 제정
2. 국적취득조건
 - 중앙아 국민과 결혼한 경우
 - 100,000 달러 이상의 투자 이민
 - 장기체류자로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자
3. 국적상실조건 : 현저히 중앙아 법령을 위반한 경우

III.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차 드

Chad

I. 거주권

1. 명칭 : la carte de sejour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차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장기비자를 가진 자
5. 수속절차 : lettre de demande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 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구분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차드국적에 대한 1962년 8월14일 33/PG.-INT. 법령
- 1963년 11월 6일 제정 차드국적법 시행령 211/PG.-INT. 번 법령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 차드에서 태어난 아이는 차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 부모의 국적법이 허락할 경우 18세가 되었을 때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 결혼 : 차드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인 본인의 국가에서 허가할 경우 차드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국적회복 : 차드국적 상실자가 차드에 국가적으로 공헌한 경우 차드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 귀화 : 내무부장관과 보건부장관이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경우 차드국적을 가질 수 있다.

3. 국적상실조건

- 결혼 : 차드 국적이인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그것을 허락할 경우
- 사기로 차드 국적을 취득한 것이 드러난 경우
- 국제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차드정부의 명령이 있는 후 해당 활동을 6개월까지 중단하지 않은 경우
- 차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카메룬

Cameroon

I. 거주권

1. 명칭

- 단기거주권 : la carte de sejour
- 장기거주권 : la carte de residentla

2. 형태 : 플라스틱카드

3. 유효기간

- 단기거주권 : 2년
- 장기거주권 : 10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단기거주권 : 카메룬에서 거주 중인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장기비자를 소지한 자
- 장기거주권 : 단기 체류증을 2번 갱신한 자

5. 수속절차 : 경찰청 이민국에 소정양식으로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 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본인이 카메룬에서 영구히 출국하여 거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표현 시 해당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단기거주권 및 장기거주권 종류 불문하고 거주권자의 해외 체재 목적 및 기간에 따라 출국 비자를 받아야 함. 출국 비자의 종류는 단수출국비자, 단수출입국비자, 멀티출입국비자(유효기간 각 3개월, 6개월, 1년)로 다섯 가지가 있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11/6/68의 68-LF-3 번 법령 ‘카메룬 국적법 제정’
- 16/12/68의 제 68-DF-478 법령 ‘국적법에 따른 절차 규칙 제정’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 부모 중 한명이 카메룬 국적일 경우. 단, 아이가 카메룬 밖에서 출생하였거나, 카메룬인이 아닌 다른 부모의 국적법에 따라 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성년이 되기 6개월 전에 카메룬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 카메룬 국적은 카메룬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지만, 부모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메룬 국적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
- 취득
 - 외국인 여성이 카메룬국적의 남성과 결혼하면 그 여성은 카메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카메룬에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거주중인 사람은 카메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카메룬에서 태어났거나, 카메룬국적의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혹은 카메룬에 공헌한 외국인은 카메룬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다.

3. 국적상실조건

- 상실
 - 고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경우
- 박탈
 -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보안을 해친 경우
 -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카자흐스탄

Kazakhstan

I. 거주권

1. 명칭 :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분홍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최대 10년, 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카자흐스탄 거주권 신청을 위한 B8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5. 수속절차 : 신청서, 3.5*4.5 사진, 여권원본 및 사본, 국가동의서(대사관발급), 자기소개서(러시아어), 재정능력증명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거주지임차계약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서류(필요시)를 내무부 산하 담당기관에 제출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범죄기소 및 범법행위, 183일 미만 카자흐스탄 체류, 서류 위조 등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10. 기타사항 :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및 러시아어 번역공증, 그 외 서류도 러시아어 번역공증이 필요, 거주권 신청 내무부 산하 기관에 사전문의 필요

Ⅱ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 사업체등록 가능, 부동산 취득 가능

Ⅲ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권 법률(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 국적취득조건
 - 카자흐스탄 내 5년 이상 연속거주
 - 카자흐스탄 배우자와 3년이상 혼인관계 유지
 - 카자흐스탄인 친족을 가진 구소련 국적자
3. 국적상실조건
 - 타국가의 공적활동 수행
 - 국적취득 시 서류위조
 - 타국가 국적취득 시
 - 테러, 극단주의 활동참여 등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카타르

Qatar

I. 체류허가증

1. 명칭 : Residency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3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카타르 노동허가 및 스폰서 초청 취득자
5. 수속절차
 - 스폰서(해당회사)가 노동부에 워크비자 신청 및 입국 후 체류허가증 발급 절차 진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고 또는 고용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스폰서의 요청 시
 - 법률 위반으로 추방될 경우
7. 부활제도 : 새로운 워크비자 신청
8. 포기제도 : 스폰서만이 이민국에 체류허가증 포기 신청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Immigration)
<https://portal.moi.gov.qa/wps/portal/en>

II . 체류허가증 소지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스폰서가 이민국에 재입국허가 신청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의료보험 제도는 없으나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의료카드를 발급 후 진료 가능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Qatari Nationality Law No.38 of 2005

2. 국적취득조건 : 위 국적법에 따른 아래 조건

- 제1항 ▲1961년 법률 제2호의 시행일('61.1.1)까지 합법적 거주자, ▲카타르인 혈통으로 판명된 자 및 국왕령으로 공포한 자, ▲카타르 국적 회복자, ▲카타르인 부의 자녀
- 제2항 ▲거주요건 : 25년, 단일 연도에 10개월 이상 카타르 거주 필요, ▲소득요건(구체 기준 불확실), ▲좋은 평판을 갖추고 범법기록이 없을 것, ▲충분한 아랍어 이해력의 상기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 ※ 카타르인 어머니를 둔 신청자에 우선권 부여
- 제17항 1년에 국적 부여자 50명 이하로 제한

3. 국적상실조건

- 제11항 ▲ 타국 국적 취득 (그 외, ▲ 카타르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고용될 경우 등)

4. 기타사항 : 2018년 영주권 관련법을 제정(Law No. 10 of 2018 on permanent residency)하였으나, 아직 시행관련 자격요건, 절차 등에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IV. 체류허가증 견본

1. 체류허가증 카드



카보베르데

Cabo Verde

I. 장기체류권

1. 명칭 : AUTORIZACAO DE RESIDENCIA
2. 형태 : 별도의 카드를 발급
3. 유효기간 : 1년~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6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는 자로서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여권, 신청서 외 기타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 만료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 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필요서류 (반납사유서, 등록증)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GESTAO DA IMIGRACAO E FRONTEIRA

II.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캄보디아

Cambodia

I. 거주권

1. 명칭 : 사증(VISA)
2. 형태 : 스티커식 사증
3. 유효기간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캄보디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5. 수속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공항 또는 육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당사항 없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서 취득
 - 캄보디아 도착 후 공항 또는 육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취득
 - 캄보디아 e-VISA : <http://evisa.gov.kh>
 - 장기체류 비자연장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체류 자격에 해당되는 구비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10. 기타사항

- 체류 목적과 다르게 체류하다가 이민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거나 체류자격 변경 경고를 받을 수 있음
- 불법체류 시 \$10/일 벌금부과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외 체류기간 제한은 없으나, 비자 유효기간 내 캄보디아 입국가능, 만료 시 비자 재발급 필요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 기간 내 입국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 핵심 내용 : 캄보디아 국적 소지자가 캄보디아 국민임을 규정 / 출생, 혼인,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조건 / 국적상실 조건과 캄보디아 신분증 또는 여권 등을 사용 또는 위조한 자에 대한 형벌량 등을 규정

2. 국적취득조건

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출생 장소에 관계없이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캄보디아 국적/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의 적출자
 - 캄보디아 국적/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자녀로 인자된 자
 - 부모에 의해 유기되었으나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의 자녀가 틀림없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 캄보디아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취득
 - 합법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출생하여 거주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
 - 신원미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출생하여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신생아는 캄보디아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

나.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 제5, 6조)

- 캄보디아인과 혼인신고 후 3년 이상 동거한 외국인은 캄보디아 국적 취득을 요청할 수 있음
- 캄보디아 국민은 외국인과 혼인함으로써 인하여 캄보디아 국적을 상실하지 않음

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귀화의 조건 (국적법 제8조)
 - ① 거주지 관할 기관장¹⁾이 발행한 선행사실증명서²⁾
 - ②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과거 범죄기록증명서³⁾
 - ③ 캄보디아 이민법에 의해 발행된 거주증명(residence card)을 수여 받은 날짜로부터 7년 이상을 캄보디아에서 영주하였음과 거주주소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 ④ 귀화신청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 거주지 보유
 - ⑤ 크메르어 회화와 독해가 가능하고, 크메르 역사에 대한 이해. 캄보디아 사회에서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캄보디아 전통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증명
 - ⑥ 국가에 위협을 유발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건전한 심신의 보유
- 캄보디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상기 ③의 7년간 거주 조건을 3년으로 완화 (국적법 제9조)

1) Chief of commune(Khum) or district(Sangkat)

2) Certificate of Good behaviour and moral conduct

3) Letter of Certification of past criminal records

- 캄보디아개발위원회⁴⁾ 또는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투자허가를 받고, 초기 자본이 1,250,000,000 리엘(Riel)⁵⁾ 이상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외국인은 상기 ③의 7년간 거주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음 (국적법 제10, 11조)
- 국가재정에 1,000,000,000 리엘(Riel)⁶⁾ 이상의 현금을 기부하여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은 캄보디아 국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기 ①, ②, ⑤ 및 ⑥ 항의 조건을 면제 받음 (국적법 제12조)
- 캄보디아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성과를 이룬 업적이 있는 외국인은 상기 ③ 항의 조건을 면제 받음 (국적법 제13조)

3. 국적상실조건

- 18세 이상의 캄보디아인이 타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의에 의해 캄보디아 국적 포기 신청 가능(국적법 제18조)

4. 기타사항

- 처벌 (국적법 제19-22조)
- 캄보디아 국적자만이 캄보디아 신분증(identity card of Khmer nationality)와 여권을 가질 수 있음 (국적법 제19조)
- 캄보디아 신분증과 여권을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외국인은 5-10년의 징역에 처함 (국적법 제20조)
- 캄보디아 신분증과 여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빌려준 경우, 또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자는 5-10년의 징역에 처함 (국적법 제21조)
- 캄보디아 국적자가 아닌 자에게 캄보디아 신분증이나 여권을 제공하거나 방조 및 공모한 공무원, 정부기관 및 직원은 국적법 제20조 및 제21조와 동일한 처벌을 적용

4) Cambodian Development Council (약자 CDC)

5) US\$1.00은 약 4,000Riel이며, 1,250,000,000Riel은 약 US\$312,500에 해당함

6) 약 US\$250,000에 해당함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비자)

- 최초 입국비자 예시



- 연장된 체류비자 예시



코모로

Comoros

I. 장기체류권

1. 명칭 : 외국인 체류증(CARTE DE SEJOUR DES ETRANGERS)
2. 형태 : 3면으로 접을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선홍색 문서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3개월 이상 코모로 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내무부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당 외국인이 코모로 국내 공공질서, 국민 보건, 공공도덕, 공공안전 또는 국가경제에 위협이 되는 경우 동 외국인은 체류허가 취소 후 추방 가능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코모로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코모로 국적법(LOI N.79-12 du 12 Decembre 1979 portant code de la Nationalité Comorienne)

2. 국적취득조건

- 부모 쌍방이 모두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코모로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는 코모로 국적을 취득한다.
- 코모로 국적 남성과 혼인한 외국국적 여성은 혼인식 후 호적담당 공무원 면전에서 코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부모를 둔, 코모로 영토 내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는 해당자가 코모로에 적어도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지를 두고 있고, 출생의 증거가 합당한 경우에 코모로 국적으로 신고(declaration)를 통해 국적취득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적상실조건

- 국가의 내적·외적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경우
- 정부 기관(Institution)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경우
- 외국의 이익을 위해, 코모로인으로서의 품성에 맞지 않고, 코모로 국가의 이익에 해로운 행위에 가담한 경우
- 코모로 또는 외국에서 코모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Ⅲ. 장기체류권 견본

1. 장기체류권 증명서

VISA DE LA CARTE		UNION DES COMORES Union Indépendante Démocratique	
ANNEES	TIMBRES ET ENCHARGEMENTS		
20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20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20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20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20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20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CARTE DE SEJOUR
DES ETRANGERS**

N° [REDACTED]

VISA DE LA CARTE	
ANNEES	TIMBRES ET ENCHARGEMENTS
[REDACTED]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REDACTED]	ART. 1. BRIS. P. 004 / CE 20 / 10 / 09 / 2011

NOM et PRENOMS [REDACTED]
 Date et lieu de naissance [REDACTED]
 Situation de famille [REDACTED]
 Lieu de domicile avant d'arriver aux Comores [REDACTED]
 Date d'arrivée aux Comores [REDACTED]
 N° de visa d'entrée // // [REDACTED]
 Profession exercée aux Comores [REDACTED]
 Adresse actuelle aux Comores [REDACTED]

Délivré par **LE CHEF DE SERVICE
DES SEJOURS DES ETRANGERS**
 M. [REDACTED]
MOHAMAD MOHAMED
 Officier Principal de Police
 Signature de l'Officier [REDACTED]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I. 거주증

1. 명칭 : 거주증 (CARTE DE RESIDEN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코트디부아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국가신분등록사무소(ONI, Office National Identification) 사무실에서 거주증 신청 예약 후 해당일에 필요 서류 제출과 동시에 지문채취를 하며, 신청일로부터 최소 72시간 후에 거주증 발급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유효기간 지나면 자동 효력 상실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carteresident.ci/Resident-Card.html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거주증 유효기간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코트디부아르 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국적 신청 자격이 부여됨(국적법 제26조)
3. 국적상실조건 : 해당사항 없음

Ⅳ. 거주권 견본



I. 거주권

1. 명칭 : 거주비자 (Visa de Résident)
2. 형태 : 스티커 형태
3. 유효기간 : 단기(3개월~1년), 장기(3년), 특별(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콩고공화국 내 거주 외국인 또는 그의 가족
5. 수속절차 : 영토안보국에 구비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거주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체류목적 소명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단기 및 특별비자 수수료 106,000CFA(210달러)/장기 206,000CFA(410달러))를 준비하여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장기간의 징역 및 형법상 중대 징계를 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별도 규정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영토안보국(DGST :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du Territoire)

Ⅱ.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비자 유효기간 내 제한 없음
2.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외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

Ⅲ. 거주권 견본



쿠웨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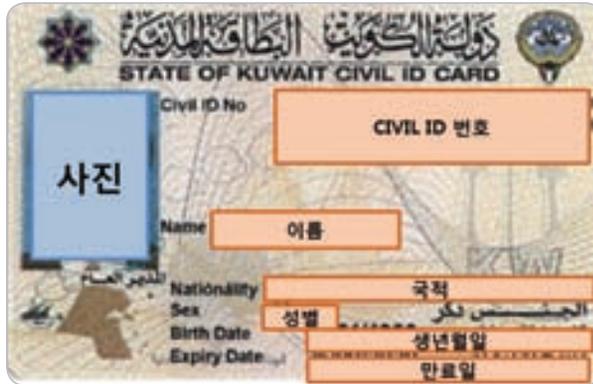
Kuwait

I. 거주권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노동허가(Work Permit)
 -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통상 1~3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 Civil ID(구 : 스티커식 거주사증) 갱신하는 방법으로 장기체류가 가능
2. 형태 : Civil ID(거주사증 발급후 일정기간 이내에 별도 신청하여 발급)로 외국인 장기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음.
3. 유효기간 : 1~3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쿠웨이트 정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고용된 자 및 동반가족
5. 수속절차
 -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쿠웨이트 스폰서 조치)
 - 쿠웨이트 스폰서가 NOC 신청서, 취업허가서, 여권사본, 공항권 등 구비서류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NOC를 한국 내 사증신청자에게 송부
 - 신원조회서(Criminal Record) 발급
 - 사증 신청자는 NOC, 여권사본, 신원조회뢰서(별도 양식은 없으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요망)를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에 제출하고 신원조회서 발급을 신청
 -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은 경찰청에 직접 의뢰하여 신원 조회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 신청인에 전달

- 사증 신청인은 신원 조회서를 수령하여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여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건강 진단서(Medical Test) 발급
 - 사증 신청인은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영문 건강진단서를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에 제출해야함.
 - 건강진단서에는 간염, 결핵, AIDS, 매독, 말라리아, 사상충 감염 여부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 질병 감염 시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사증신청
 - 사증신청인은 상기 신원조회서 및 건강진단서와 함께 사증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1매, NOC, 사증수수료 은행입금증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출하고 취업사증을 신청
 -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이 취업사증을 발급한 이후 동 사증을 휴대하고 쿠웨이트에 입국
 -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발급(쿠웨이트 입국 후 조치)
 - 사증신청자는 쿠웨이트 입국 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 신청(동시에 의료 보험에 의무가입)
 - 상기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쿠웨이트 내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재차 받고 지문 채취 후,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음.
 - 거주 허가 발급 후 1개월 내에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을 신청하여 동 신분증을 받으면 입국관련 절차가 완료됨.
-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기간만료, 해고, 고용계약 만료, 쿠웨이트인 스폰서의 의사에 따라 효력상실, 6개월 초과 국외체류
- 7.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www.moi.gov.kw
- 8. 기타사항 :** 쿠웨이트 체류사증 발급 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쿠웨이트 내무부 이민국을 방문하여 신 여권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II. 장기체류권(Civil ID) 견본



키르기스스탄

Kyrgyz Republic

I. 거주권

1. 명칭 : Residence Permit for a Foreign National

- 장기 거주권(5년), 단기 거주권(1년) 두 종류가 있음

2. 형태 : 책자(120×90mm)

- 남색 : 장기 거주권
- 흰색 : 단기 거주권

3. 유효기간 : 5년(장기 거주권), 1년(단기 거주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장기 거주권
 - 5년 이상 키르기스스탄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만18세 이상의 성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이 원칙임
 - ※ 단, 예외적으로 투자 사증을 받은 경우, 6개월 후에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거주권을 받은 경우, 동 부모가 미성년 자녀 관련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동반자 자격으로 거주권 신청 가능함
 - 부부 중 한 명만 장기 거주권을 받은 경우, 자녀는 동반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는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함
- 단기 거주권
 - 학생 또는 사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5. 수속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 결정
-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 거주권은 약 1년, 단기 거주권은 약 1개월
- 수수료는 장기 거주권 15,000솀, 단기 거주권 10,000솀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키르기스스탄의 법률 위반으로 거주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 키르기스스탄에서 영구 출국 시
- 신청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사망 시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 국가등록청(State Registration Service) 산하 주민등록국(Population Registration Department)
- 주소 : 58 Kievskaya Street, Bishkek (Tel. 0312-431-216)

II.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거주권 유효 기간 동안 자유 출입국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유효 기간 동안 자유 출입국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권 만료일까지는 비자 및 노동허가증 불필요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 70, 2007.5.21.〈개정〉

2. 국적취득조건 : 출생 또는 국적취득신청조건 구비

- 키르기스스탄에서 출생
- 키르기스스탄에 5년 이상 합법적 체류
- 러시아어 또는 키르기즈어 구사능력, 재정 및 신분능력 구비
- 국제결혼으로 배우자가 키르기즈 국적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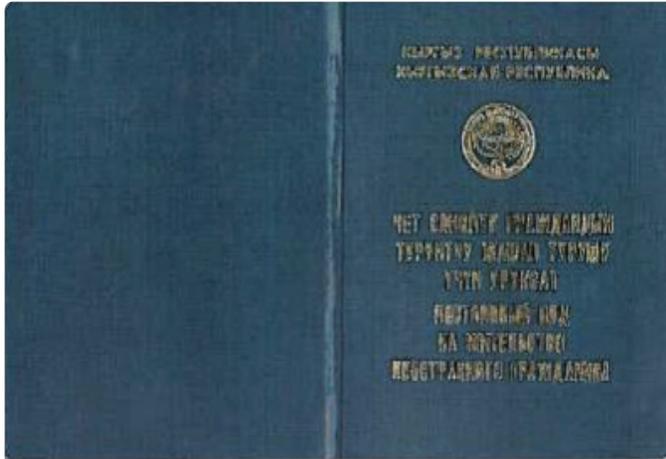
3. 국적상실조건

- 키르기스스탄 법률 위반으로 국적상실 결정을 받는 경우
- 제3국의 군대 입대 시

4. 기타사항 :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적취득 심사 소요 기간은 약 6개월

IV. 거주권 견본

1. 장기 거주권 견본 및 표제 번역



<견본 및 표제 번역: 키르기스공화국 외국인 장기 거주권>

2. 단기(임시) 거주권 견본 및 표제 번역



<견본 및 표제 번역: 키르기스공화국 외국인 단기(임시) 거주권>

타지키스탄

Tajikistan

I. 거주권

1. 명칭 :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2. 형태 : 수첩(여권과 유사)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카드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 타지키스탄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6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와 거주등록을 소지해야 함
5. 수속절차 :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진 6장(3.5x4.5cm), 여권, 비자, 거주등록증, 혼인신고서,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타지키스탄에서 영구 출국, 세금 미납부, 위법, 민형사상의 범죄, 전염병 환자, 타지키스탄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타지키스탄 이민청(Immigration service)

II. 거주권자

1. 재입국 허가제도 : 출입국시 허가 획득
2.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 및 피선거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이 시민권자 등과 차이가 없음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시민권 관련 법령 제23조

2. 국적취득조건

- 외국인이 타지키스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최소 5년 이상 타지키스탄에 체류해야 함.
- 구소련 국적자, 국가 유공자 및 타지키스탄 국민의 배우자는 상기 관련 예외 인정

3. 기타사항

- 국적포기
 - 타지키스탄 국법상 이중국적 소지 불가로 타국가 국적 취득 시 국적 포기
 - * 러시아-타지키스탄간에는 양국간 협약으로 이중국적 인정
 - * 국적포기 접수 후 완료까지 평균 최대 9개월이 소요되며 해외 체류 타지키스탄 국민의 경우 체류국 내 자국 대사관을 통하여 국적포기 서류를 타지키스탄 내무부로 송부 가능
 - * 만 18세부터 국적 선택 및 포기 가능
 - *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국적을 가지게 되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타국적 취득 가능

I. 거주권

1. 명칭 :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2. 형태 : 신청자 여권에 허가 기간이 표시된 스탬프가 날인되며 연두색 B5 정도 크기의 증명서 발급
3. 유효기간 : 2년 (매 2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장기체류 목적에 부합되는 유효기간 3개월의 사증을 사전 발급받고 입국 전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도 가능
 - A Class : 자영업자 (투자자)
 - B Class : 기업, 사설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C Class : 연구원, 은퇴자, 선교사, NGO 종사자, 자원 봉사자, 인턴학생 등
5. 신청절차 : 탄자니아 거주 허가증 취득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 및 노동 허가증이 우선 발급되어야 함 (은퇴자는 노동 허가증 발급 불요)
 - 비자 취득 : 주한탄자니아대사관 신청 또는 입국 비자 가능 (최대 3개월)
 - 노동 허가증(Work Permit) : 탄자니아 노동부 (도도마 지역 소재)에 신청,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며 입국 전 서류를 고용주 등 대리인을 통한 사전 접수 가능
 -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 입국 후 사증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노동 허가증 및 기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탄자니아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이민국(다레살람 소재)에서 심사를 거쳐 체류허가 취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체류허가기간 종료, 국가안보·치안·보건상 위험, 이민법 위반, 위조문서 제출 등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https://eservices.immigration.go.tz/online/permit/guidelines>
10. **기타사항**
 - 거주 허가 신청은 2018.12.27.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변경
 - 최근 자국민 우선 고용제도 확대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그리고 불법인력의 사용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거주 허가증 소지 시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III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Tanzania Citizens Act of 1995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에 의한 취득 : 탄자니아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 (외교관 자녀 제외)
 - 출신에 의한 취득 : 해외에서 출생한 자의 부모 중 한 명이 탄자니아 시민인 경우

- 귀화를 통한 취득 자격 요건
 - 귀화 신청 직전 12개월 동안 탄자니아에 거주한 자
 - 신청 직전 12개월을 포함한 최근 10년 동안 탄자니아 거주한 기간의 총 합산 기간이 7년 이상인 자
 - 탄자니아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복지 등에 기여했거나 잠재적 기여가 예상되는 자에 대해 내무부 장관이 승인한 자
 - ※ 단, 귀화를 통해 탄자니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탄자니아에 거주하여야 함
 - 이중 국적자 허용 여부 : 탄자니아는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출생에 의해 이중 국적을 취득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한해서 예외적 허용
 - ※ 단, 해당 미성년자가 18세 이후 외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탄자니아 국적은 자동 소멸

3. 국적상실조건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의 국적 상실
 - 자발적 국적 포기는 가능하나 자동 박탈은 불가능하며 탄자니아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탄자니아 여권 반납 및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자의 국적 상실
 - 귀화 신청 당시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자
 - 귀화 5년 이내 최소 12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귀화 후 탄자니아가 아닌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자

IV. 거주권 견본

1. 거주 허가증 여권 스탬프 날인

〈거주허가증 여권 스탬프 예시〉



2. 거주 허가증 증명서

〈거주허가증 증명서 예시〉



터 키

Turkey

I. 거주권

1. 명칭 : 거주허가증(장기허가증/단기허가증)
2. 형태 : 카드(붉은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무기한, 1년, 2년 등(서류심사에서 결정됨), 학생(재학기간동안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무비자 거주 가능 기간 이상 장기 체류 목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5. 수속절차 : 이민청(Goc idaresi)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청, 예약날짜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연장일 경우 방문하지 않고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가능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불법 체류, 불법 노동 활동 등 체류자격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청, <https://e-ikamet.goc.gov.tr/>

Ⅱ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별도로 언급된 사항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증 유효기간까지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Ⅲ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5901 터키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 최근 5년간 터키에 거주, 의사소통이 가능한 터키어 구사 능력, 매달 일정 수입 존재
3. 국적상실조건 : 해당사항 없음

Ⅳ . 거주권 견본

1. 거주허가증 카드(비자)



통 가

Tonga

I. 거주권

1. 명칭 : Assured Income Visa

2. 형태 : 스티커

3. 유효기간 : 2년이며 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은퇴 후 통가에서 여생을 보내고자하는 외국인으로서, 통가 외 국가로부터 일정한 연금 소득이 보장되는 자
- 단, 동 비자로는 취업, 유학 사업 활동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 변경 승인 필요
 - 사업설립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Business Permit이나 Employment Permit비자가 필요함

5. 수속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통가 이민국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여권 사진 2매, 여권
 - 건강진단서 및 2인의 추천서, 범죄경력증명서
 - 자금 출처가 순수한 소득증명서 (연간 최소 통가 T\$10,000이상)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해당사항 없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통가 이민성(visatonga@gmail.com)
Tel) (676) 26 696 / 970

II. 거주권 견본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I. 거주권

1. 명칭 : Residence Permit
2. 형태 : 증명서
3. 유효기간 : 특별한 언급 없음(for a certain period라고 명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 투르크멘 민족
 - 투르크멘 국적자와 혼인
 - 투르크멘 국적자인 가까운 친척(남편/부인, 친조부모/외조부모, 부모/형제 자매/자녀/손자)이 투르크에 거주
 -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르크멘 국적자의 후견인이나 위탁관리인으로 등록
 - 50만 미불 이상 투르크멘에 투자
 -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기타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거나 고급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익에 공헌
 - CIS 국민 또는 CIS 출신의 무국적자로서 CIS국가들 간의 비자제도 도입시 점 이전에 투르크멘에 등록된 사람
5. 수속절차
 - 투르크멘 내 체류 중인 외국인, 무국적자는 이민청에 신청

- 투르크멘 영토 밖에 체류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재외 투르크멘 외교공관을 통해 신청
- 거주허가 여부는 이민청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부모에게 발급된 거주허가는 16세 이하 자녀에게도 적용(유효). 16세에 도달하는 자녀에게는 투르크멘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의 서면동의가 있을 시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거주허가 발급
- 다음의 경우 거주허가 갱신이 필요
 -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 거주허가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 거주허가증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된 경우(훼손 등)
 - 거주허가증의 공란이 없어 추가 기재할 여백이 없는 경우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발급 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The State Immigration Service
- <http://migration.gov.tm>

II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한 언급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사증 없이 복수 출입국 가능

튀니지

Republic of Tunisia

I. 거주권

1. 명칭 : Carte de Sejour(체류증)

※ 유의 : '체류증'과는 별도로 '여권'에도 체류자격(기간) 등이 기재된 '체류사증' 스탬프가 찍혀 있음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통상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유학(어학연수 포함), 기업활동 등으로 장기 체류 시 신청

※ 유의 : 한국-튀니지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상에는 무사증기간이 30일이나 실제 튀니지는 한국을 포함, 많은 국가들에 대해 90일 미만 무사증 체류를 허가

5. 수속절차 : 구비서류를 관할 경찰서(거주지 기준)에 제출

※ 유의 : 입국 후 유학 등 목적의 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발급 시까지는 3개월이 넘는 경우가 많아 유학생뿐만 아니라 지상사원 등도 체류사증 만료로 인근국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해야 하는 경우 발생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체류목적 소멸, 공공질서 위해 등 일반적 사유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관할 경찰서(거주지 기준)

Ⅱ . 거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Ⅲ .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 출생에 의한 취득
 - 튀니지 영토내에서 출생했다는 조건만으로는 취득 불가. 다만 튀니지에서 발견된 부모가 분명하지 않은 기아나 또는 부모가 무국적인 경우 튀니지 국적 부여
- 혈통에 의한 취득
 - 출생시 아버지가 튀니지 국적인 경우
 - 아버지가 튀니지 국적이고 아버지가 외국국적으로 아버지의 요청시 튀니지 국적 부여
 - 아버지가 튀니지 국적이고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 혼인에 의한 취득
 - 외국여성이 튀니지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여성측의 본국 법령상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 혼인식을 거행하는 순간부터 튀니지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외국여성이 튀니지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여성측의 본국 법령상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체류 시 국적취득 신청 가능

3. 국적상실조건

- 본인 의사에 의한 자발적 상실
 - 관련 대통령령에 의거 허가를 받아 가능

○ 비자발적 상실

- 중대범죄
- 반역
- 병역기피
- 이민국에 허위정보 제출로 국적 취득한 경우
-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자인 경우, 혼인이 무효로 선언될 경우 취소 등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2. 거주권 비자(여권상 사증 스탬프)



I. 거주권

1. 명칭 : 취업허가(Work Permit),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스탬프
3. 유효기간 : 3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취업허가 : 현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거주허가 : 45세 이상으로 최소 FJD100,000 이상 지참하고 매년 FJD30,000-FJD40,000 이상 해외에서 송금받을 수 있는 경우 3년의 체류 허가 부여 가능
5. 수속절차 :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에서 신청
6. 효력상실 사유(취소사유) : 허가 조건 위반
7. 부활제도 : 재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피지 이민국(<http://www.immigration.gov.fj>)
10. 기타사항
 - 유학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소위 엄마유학자)는 특별거주허가(special purpose permit) 형태로 거주허가 부여

Ⅱ. 거주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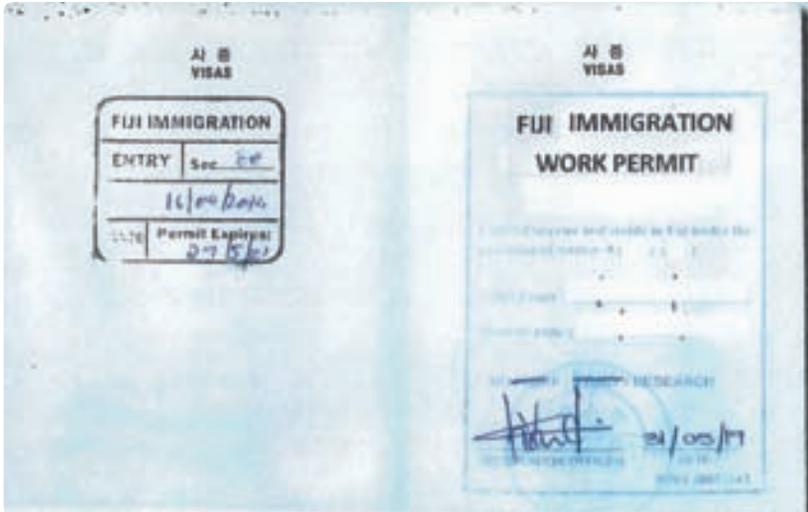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의료(국영의료기관 무료) 및 교육 수혜 가능

Ⅲ.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국적법(Fiji Decree 2009)
2. 국적취득조건 : 출생(부모중 1명 이상이 피지국적자인 경우), 귀화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 국적 신청 당시 최근 10년 중에서 5년 이상 피지 거주
 - 복수 시민권 인정에 따라 타국 시민권 포기 불필요
 - 출생국 및 피지 경찰 신원조회서
 - 영어 구사 능력 입증서류
 - 충성확인선서 등

IV.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2. 거주권 증명서



2019 영주권제도 편람

- 인 쇄 | 2020년 6월
- 발 행 | 2020년 6월
- 발행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영사지원팀
- 인 쇄·편 집 | 주)마스타상사 (02-730-8241)